

외국인 고용통계 개선방안

2010. 11.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통 계 청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수탁연구과제 『외국인 고용통계 개선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1.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 주 섭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참여연구자 :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재(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설동훈(전북대학교 교수)

이기재(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목 차

| | |
|--------------------------------------|----|
| 요 약 | i |
| 제1장 서론 | 1 |
| 제2장 외국인 인력의 현황 및 사회경제적 특징 분석 | 3 |
| 제1절 체류 외국인의 현황 | 3 |
| 1. 체류 외국인의 개념 및 현황 | 3 |
| 제2절 외국인 인력의 사회경제적 특성 | 15 |
| 1. 비전문 외국인 인력의 사회경제적 특성 | 15 |
| 2. 전문외국인력의 사회경제적 특성 | 28 |
| 3. 유학생의 사회경제적 특성 | 35 |
| 4. 이민자 수용이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 53 |
| 제3장 외국인력 통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66 |
| 제1절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 66 |
| 1.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 66 |
| 제2절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 | 76 |
| 1. 마이크로데이터 개요 | 76 |
| 2. 고용허가제 원 자료를 통한 분석 가능수준 | 84 |
| 제3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95 |
| 제4절 출입국통계 자료 | 99 |
| 1. 자료 개요 | 99 |

| | |
|---------------------------------|-----|
| 2. 제공정보 | 99 |
| 3. 체류외국인 관련 정보 | 100 |
| 4. 출입국통계 자료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109 |
| 제5절 유학생 통계 | 113 |
| 1. 통계작성개요에 대한 소개 | 113 |
| 2. 외국인 인력 통계의 현황 | 114 |
| 3. 현행 통계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 119 |
| 제6절 경제활동인구조사 | 121 |
| 1. 통계작성 개요에 대한 소개 | 121 |
| 2. 외국인 인력 통계의 현황 | 124 |
| 3. 현행 통계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 125 |
| 제7절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 126 |
| 1. 조사 개요 | 126 |
| 2. 최근 조사 결과 | 128 |
| 3. 외국인력 통계로서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 131 |
| 제8절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133 |
| 1. 조사 개요 | 133 |
| 2.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참가 관련 조사결과 | 137 |
| 3. 외국인력 통계로서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 143 |
| 제4장 외국의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 사례 | 145 |
| 제1절 국제적 기준 및 통계 현황 | 145 |
| 1.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정의 | 145 |
| 2. 국제연합 전 세계 이주 데이터베이스 | 146 |
| 3.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력이동 데이터베이스 | 149 |
| 4.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인구이동 데이터베이스 | 151 |
| 제2절 외국의 외국인 인력 통계작성 사례 | 153 |
| 1. 일본 | 153 |

| | |
|--|-----|
| 2. 대만 | 174 |
| 제5장 외국인 인력통계 개선방안 | 188 |
| 제1절 외국인 인력 통계작성 기본 방향 | 188 |
| 제2절 외국인 경제활동실태 분석을 위한 통계작성 방안 | 189 |
| 1. 모집단과 표본추출틀 | 189 |
| 2. 비자 유형별 특성 구분 | 194 |
| 3.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 방안 | 196 |
| 제3절 외국인 취업자 임금·근로실태 및 외국인력 수요통계 개선방안 | 208 |
| 1. 행정통계 개선방안 | 208 |
| 2. 조사통계 개선방안 | 213 |
| 제6장 결 론 | 221 |
| 참고문헌 | 236 |
| 【부 록】 | 240 |

표 목 차

| | |
|--|----|
| <표 2-1-1> 체류자격 유형 | 3 |
| <표 2-1-2>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 4 |
| <표 2-1-3> 이민 외국인정책의 대상 및 정책수단 | 5 |
| <표 2-1-4> 체류 외국인 현황 | 7 |
| <표 2-1-5>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2010. 7. 31 현재) | 8 |
| <표 2-1-6> 취업활동이 가능한 사증(실무상 '취업사증'이라고 함) | 9 |
| <표 2-1-7> 외국인 경제활동 조사를 위한 모집단 범위 및 규모(2009년) | 10 |
| <표 2-1-8> 국적 취득 유무별 구분 | 12 |
| <표 2-1-9> 주요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의 변화 | 13 |
| <표 2-1-10> 불법체류자 추이 | 14 |
| <표 2-2-1> 비전문 외국인 인력의 현황 | 15 |
| <표 2-2-2>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의 업종별 현황 | 16 |
| <표 2-2-3>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의 국적별 현황 | 16 |
| <표 2-2-4>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 | 17 |
| <표 2-2-5> 전체 고용인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 | 18 |
| <표 2-2-6> 업종별 내외국인 임금격차 분석(2009년) | 20 |
| <표 2-2-7>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 21 |
| <표 2-2-8> 노동이동 횟수 | 23 |
| <표 2-2-9> 사업장 이동 후 임금의 변화 | 24 |
| <표 2-2-10> 사업장 이동 후 작업환경의 변화 | 25 |
| <표 2-2-11> 외국인력 체류 전망 | 25 |
| <표 2-2-12> 한국에 오기 위해 지불한 금액 | 27 |
| <표 2-2-13> 비자 유형별 전문외국인력 현황 | 28 |
| <표 2-2-14> 비자 유형별 전문인력의 연령 및 입국년 분포 | 29 |

| | |
|---|----|
| <표 2-2-15> 비자 유형별 전문인력의 주요 출신국 | 30 |
| <표 2-2-16> 비자 유형별 불법체류자의 국적별 비중 | 31 |
| <표 2-2-17> 비자 유형별 평균 연령 및 평균 체류기간 | 32 |
| <표 2-2-18> 전문인력 고용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 33 |
| <표 2-2-19> 비자 유형별 취업사업장 규모 | 34 |
| <표 2-2-20> E7 비자 취득자의 주요 직종명 | 34 |
| <표 2-2-21> 외국인 유학생 추이 | 35 |
| <표 2-2-22> 2010년 9월 현재 유학생(D2)의 출신지역 및 입국년 분포 | 36 |
| <표 2-2-23> 세부범주별 연령분포 | 37 |
| <표 2-2-24> 세부 범주별 유학중인 학교의 소재지 | 37 |
| <표 2-2-25> 국제결혼건수(1990~2009년) | 44 |
| <표 2-2-26>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2006~2010년) | 45 |
| <표 2-2-27>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 추계(2009~2020년) | 45 |
| <표 2-2-28> 불법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구성(2000~2010년) | 50 |
| <표 2-2-29>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신국과 체류자격(2009년) | 51 |
| <표 2-2-30> 불법체류 외국인 중 16~60세 인구(2009~2010년) | 51 |
| <표 2-2-31>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 1989~2009년 | 52 |
| <표 2-2-32> 이민자 증가에 따른 편익과 비용 | 62 |
| <표 2-2-33>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2009~2020년) | 64 |
| <표 2-2-34> 결혼이민자 지원비용 정부 예산(2009~2020년) | 65 |
| <표 3-1-1>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의 영역별 조사항목 | 68 |
| <표 3-1-2> 현원,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 71 |
| <표 3-1-3>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 71 |
| <표 3-1-4>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 72 |
| <표 3-1-5> 사업체 규모별 부족인력 해소노력 실태(다중응답) | 72 |
| <표 3-1-6> 외국인력의 산업별 분포 | 73 |
| <표 3-1-7> 자격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2009년말 현재) | 74 |
| <표 3-1-8> 외국인력의 직종별 분포 | 75 |
| <표 3-2-1> 외국인 기본정보 마스터의 주요 변수 | 79 |

| | |
|---|-----|
| <표 3-2-2> 사업장 기본정보 마스터의 주요 변수 | 80 |
| <표 3-2-3> 구직신청 및 사업장 변경신청 | 81 |
| <표 3-2-4> 구인신청 마스터의 주요 변수 | 82 |
| <표 3-2-5> 근로계약서 마스터의 주요 변수 | 83 |
| <표 3-2-6> 고용허가제 일반과 특례자의 인적 특성 | 85 |
| <표 3-2-7> 외국인력 스스로 평가한 한국어 및 영어 능력수준 | 86 |
| <표 3-2-8> 일반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희망 업종 및 지역 | 87 |
| <표 3-2-9>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희망임금 수준 | 88 |
| <표 3-2-10>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취업사업체 분포 | 89 |
| <표 3-2-11>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연도별 월평균 통상임금 및 임금지급 방법 | 90 |
| <표 3-2-12>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 및 기숙사/식사제공 비율 .. | 91 |
| <표 3-2-13> 국적별 평균연령 및 체류자 및 출국자의 평균 체류기간 | 92 |
| <표 3-2-14>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 추이 | 93 |
| <표 3-2-15> 외국인 유형별 외국인 고용 여부별 사업장 창출·소멸 추이 | 94 |
| <표 3-2-16> 외국인고용사업장의 고용구조 | 94 |
| <표 3-3-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조사항목(사업체 조사) | 96 |
| <표 3-3-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조사 개인조사표(21개항목) | 96 |
| <표 3-3-3> 사업체 규모별 현원 및 부족인원 | 98 |
| <표 3-3-4> 산업대분류별 내외국인 분포 | 99 |
| <표 3-4-1> 통계 제공 체계 및 제공정보 | 100 |
| <표 3-4-2>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 개정 2010.6.10) | 102 |
| <표 3-4-3> 전문기술인력 마이크로데이터 변수 | 109 |
| <표 3-4-4> 전문인력 비자 유형별 인적 특성 | 109 |
| <표 3-4-5> 전문인력 비자 유형별 평균 연령 및 평균 체류기간 | 110 |
| <표 3-4-6> 전문인력 고용사업장의 업종 및 지역별 분포(불체자 제외) | 111 |
| <표 3-4-7> 전문인력의 취업업종 분포 | 112 |
| <표 3-5-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1(2009. 4. 1 기준 집계) | 114 |
| <표 3-5-2>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 | 114 |

| | |
|--|-----|
| <표 3-5-3>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 115 |
| <표 3-5-4> 국내 대학별 유학생 수 및 중도탈락 수 | 115 |
| <표 3-5-5> 사이언스 카드 연도별 발급 실적 및 발급 기관별 실적 | 117 |
| <표 3-5-6> 유학생 통계: 법무부 | 117 |
| <표 3-5-7> 연도별 유학생 증감 추이 | 117 |
| <표 3-5-8> 학위과정별 유학생 현황(2009.12.31 현재) | 118 |
| <표 3-5-9> 외국인유학생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황(2009.1.1~2009.12.31) | 118 |
| <표 3-6-1> 2010년 조사대상 기간 | 122 |
| <표 3-6-2> 2010년 6월 고용동향 | 123 |
| <표 3-7-1>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수(2008~2010년) | 130 |
| <표 3-7-2> 지역별 외국계 주민 수(2010년) | 132 |
| <표 3-8-1>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 135 |
| <표 3-8-2> 결혼이민자의 취업 여부(2009년) | 138 |
| <표 3-8-3>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직종(2009년) | 141 |
| <표 3-8-4> 결혼이민자의 근로소득, 2009년 | 142 |
| <표 3-8-5> 자녀수 추계를 통해 본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특성(2009년) | 144 |
| <표 4-2-1> 일본의 외국인수(2005년 국세조사 결과) | 154 |
| <표 4-2-2> 일본의 연령별·경제활동상태별 외국인 수(15세 이상; 2005년 국세조사 결과) | 159 |
| <표 4-2-3> 일본의 산업별·종사상지위별 외국인 취업자 수(15세 이상; 2005년 국세조사 결과) | 160 |
| <표 4-2-4> 외국인에 관한 특별집계(2005년 국세조사 결과) | 161 |
| <표 4-2-5> 연도별 출입국통계 | 163 |
| <표 4-2-6> 일본 출입국관리통계 일람 | 164 |
| <표 4-2-7> 성별 등록외국인 통계(2009년) | 165 |
| <표 4-2-8> 등록외국인 수 통계 현황 일람 | 171 |
| <표 4-2-9> 산업별 외국인 고용사업체 수·외국인 근로자 수(2009년 10월 현재) | 172 |
| <표 4-2-10> 외국인 고용상황 조사 결과 | 173 |
| <표 4-2-11> 재학 단계별 외국인유학생 수(2009년 5월 1일 현재) | 173 |

| | |
|--|-----|
| <표 4-2-12> 외국인유학생 관련 통계(외국인유학생 재적상황 조사) | 174 |
| <표 4-2-13> 대만내 외국인노동자 인력통계(업종별 구분) | 179 |
| <표 4-2-14> 대만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인력통계 | 180 |
| <표 4-2-15> 국적별 외국인 인력 현황 | 180 |
| <표 4-2-16> 외국인 인력 중 행불자(불법체류자) 수 | 181 |
| <표 4-2-17> 산업별 및 사회복지부문 외국인노동자 인력통계(업종별) | 187 |
| <표 5-2-1> 목표모집단 현황 | 190 |
| <표 5-2-2> 각 비자유형별 분류범주 및 체류자 현황 | 195 |
| <표 5-2-3> 각 분류 범주별 체류자 현황 및 조사 가능성 | 196 |
| <표 5-2-4> 비자 유형별 이용가능한 정보 | 198 |
| <표 5-2-5> 각 표본추출틀의 특징 비교 | 202 |

그림 목 차

| | |
|--|-----|
| [그림 2-2-1] 유학생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종류 | 40 |
| [그림 2-2-2] 시간제취업 지도교수 추천서 | 42 |
| [그림 2-2-3]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 43 |
| [그림 2-2-4] 결혼이민자의 유입경로(2009년) | 47 |
| [그림 2-2-5] 16~60세 체류자 중 불법체류 외국인(2003~2010년) | 53 |
| [그림 2-2-6] 이민자 수용의 경제적 효과 | 57 |
| [그림 3-1-1] 인력수요동향조사 Layout(2008년 하반기) | 70 |
| [그림 3-2-1]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선정·도입 절차 | 77 |
| [그림 3-2-2] 외국국적동포(H-2) 선정·도입 | 78 |
| [그림 3-4-1] 사증발급인정서 건본 | 101 |
| [그림 3-5-1] 시간제 취업 지도교수 추천서 | 116 |
| [그림 3-7-1] 외국계주민의 구성 비율(2010년) | 128 |
| [그림 3-7-2] 외국계주민의 규모 변동(2009~2010년) | 129 |
| [그림 3-7-3] 외국계 주민 수, 2006-2010년 | 129 |
| [그림 3-7-4]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수(2007~2010년) | 130 |
| [그림 3-7-5]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근로자 수(2008년 5월 기준) | 131 |
| [그림 3-8-1]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수행체계 | 137 |
| [그림 4-1-1] 세계 각국의 이민수용정책, 1996~2005년 | 146 |
| [그림 4-1-2] 국제인구이동의 흐름 | 147 |
| [그림 4-1-3] 유엔 전 세계 이주 데이터베이스(2010년) | 149 |
| [그림 4-1-4] ILO 노동통계 데이터베이스(2010년) | 150 |
| [그림 4-1-5] ILO 국제노동력이동 데이터베이스(2010년) | 151 |
| [그림 4-1-6] 국제이주 전망(2010년) | 152 |
| [그림 4-2-1] 대만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별 통계 | 178 |

| | |
|-------------------------------------|-----|
| [그림 5-2-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의 포괄 범위 | 192 |
| [그림 5-2-2]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의 포괄 범위 | 203 |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 외국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나 고용상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기반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일부 업종에서 외국인 인력의 유입 증가로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외국인 인력의 도입 규모, 업종별 배분 등 외국인 인력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한 실증적인 접근이 요구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외국인 인력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통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도 증대할 전망
- 국내 체류외국인 인력의 규모, 특성 검토 및 향후 변화 예측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외국인력 통계 개선방안 마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고용통계를 위한 체류외국인의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경제활동상태 파악을 위한 모집단의 범위로 비자 유형으로는 등록외국인의 범주로 하되, 외국인의 규모는 체류외국인 수로 파악하며, 추가적으로 등록외국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를 모집단에 포함하며 단기취업비자(C-4)의 경우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외국인 모집단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총 모집단 규모는 등록외국인 비자의 체류외국인수+단기취업비자+비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수로 계산되며 2009년 말 기준 101만 6,209명임.
- 다만 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이 15세 이상임을 고려할 때 이들 비자에서 15세 미만을 제외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의 제한으로 여기서는 연령을 고려하지 못하였음.

□ 현행 외국인력 통계 현황

-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업종, 직종, 사업장규모, 숙련수준별 고용인원 및 부족인원임.
 - 5인 미만이 제외되어 있고,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
-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
 -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와 외국국적동포(H-2)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관련 정보가 누적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구직신청시 제출하는 외국인 근로자 개인정보와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업종, 직종, 지역, 임금 등)를 포함.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으나 전체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포괄하는 데 한계
- 출입국통계 자료
 - 사증 발급, 출입국 심사, 체류민원처리, 조사사범 보호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축적되는 각종 통계자료 및 해당 부서의 자료를 기초로 집계·제공

-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 외국국적동포, 난민불법체류자별로 구분되어 통계가 제공
- 출입국 통계 마이크로데이터에는 외국인 관련 인적 특성 및 취업자의 경우 사업장 특성 정보가 수록

○ 유학생 통계

- 교과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사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 통계가 대학 알리미 통계시스템을 통해 공시

○ 경제활동인구조사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 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외국인 여부를 따로 조사하거나 층화 변수로 고려는 하지 않지만, 15세 이상 인구라는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직근 반기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증감을 15세 이상 인구에 반영하나 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함.

□ 외국인 고용통계 개선방안

○ 외국인 경제활동실태 분석을 위한 통계작성 방안

- 외국인 경제활동상태 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가능인력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
- 외국인 인력통계의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을 정의하였고, 비자 유형별 특성 분석을 통해서 가구조사와 외국인 등록정보를 통한 접근 가능성을 검토
- (이중추출틀 조사(dual frame survey)) 전체 외국인력 모집단에 대한 추출틀의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외국인 등록 정도 추출틀(리스트)과 조사구 추출틀을 함께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

-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 설계가중치 작성과 무응답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현황(모집단 정보) 정보를 이용한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이나 사후층화 조정(post-stratification adjustment)을 적용

○ 외국인 취업자 임금 및 근로실태 및 외국인력 수요통계 개선방안

- (행정통계 개선방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통계의 연계 그리고 고용보험 DB와의 결합을 통해 행정통계 DB를 구축한 후 마이크로데이터로 관리하며 이를 분석하여 정기간행물로 발표
 - 통계관리 주체, 정기적인 통계자료의 내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상세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의 생성 기능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요청됨.
- (사업체 조사통계 개선방안)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저숙련 외국인 취업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통계를 신설
 - 중장기적으로 전문인력 실태조사를 추가
- (외국인력 수요조사 개선방안) 기존의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별도의 조사를 마련
 -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에서 누락된 농축산업·어업 및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표본틀을 구성하되 동 조사의 목적이 인력부족 및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에 초점이 있는 만큼 비자 유형이나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

제1장 서론

외국인력의 범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컫는 저숙련 외국인 인력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및 전문외국인 인력인 E1~E7 외에도 결혼이민자, 유학생, 단기 취업자 등 외국인력의 체류 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취업외국인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인 116.8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 취업중인 외국인 인력은 68.3만명으로 비전문외국인력(46.1만명), 전문인력(3.8만명), 불법체류자(17.8만명)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외국인 인력은 총 취업자의 2.9%(국내 임금근로자의 4.2%)에 이른다.

그 동안 저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력의 경제활동상태, 즉 취업 여부, 취업자 현황 및 고용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기반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 외국인 인력의 유입 증가로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거나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외국인 인력의 도입규모, 업종별 배분 등 외국인 인력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한 실증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외국인 인력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통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외국인 인력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나 고용허가제 등 주로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행정통계가 제공되어 왔으며, 전국 단위의 가구조사나 사업체조사의 경우 외국인 인력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포괄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도 증대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 인력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인력에 대한 통계 기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체류외국인 인력의 규모, 특성 검토 및 향후 변화 예측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외국인력 통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관

런 정책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 인력의 현황 및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인력 파악을 위한 모집단 범위를 설정하고 외국인 인력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 통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각 정부부처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사통계 혹은 행정통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통계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한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 사례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통계에 대한 국제기준을 살펴보고 국가별 사례로 일본과 대만의 외국인 통계 및 관리 현황을 정리하였다. 끝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앞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인력통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외국인 인력의 현황 및 사회경제적 특징 분석

제1절 체류 외국인 현황

1. 체류 외국인의 개념 및 현황

가. 체류자격 유형

한국에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자격은 활동 내용에 따라 <표 2-1-1>과 같이 분류된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입국자는 3년이며,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회화지도 2년, 예술홍행 1년, 특정활동 2년이고, 교수·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 등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2-1-1> 체류자격 유형

| 계열 | 세부자격 구분 | | | | |
|----|-----------|------------------------|----------------------|-------------------------|----------------------------------|
| | A | A-1(외교) | A-2(공무) | A-3(협정) | |
| B | B-1(사증면제) | B-2(관광통과) | | | |
| C | C-1(일시취재) | C-2(단기상용) | C-3(단기종합) | C-4(단기취업) | |
| D | D-1(문화예술) | D-2(유학) D-6(종교) | D-3(산업연수) D-7(주재) | D-4(일반연수) D-8(기업투자) | D-5(취재) D-9(무역경영) D-10(구직) |
| E | E-1(교수) | E-2(회화지도) E-6(예술홍행) | E-3(연구) E-7(특정활동) | E-4(기술지도) E-9(비전문취업) | E-5(전문직업) E-10(선원취업) |
| F | F-1(방문동거) | F-2(거주) | F-3(동반) | F-4(재외동포) | F-5(영주) |
| G | G-1(기타) | | | | |
| H | H-1(관광취업) | H-2(방문취업) | | | |

자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표 2-1-2>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9. 4.3> | | | |
|------------------------------------|---|---------------------|-------------------|
|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 관련) | | | |
| 체류자격(기호)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 체류자격(기호)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
| 1. 외교(A-1) | 재임기간 | 18. 무역경영(D-9) | 2년 |
| 2. 공무(A-2) | 공무수행기간 | 18의2. 구직(D-10) | 6개월 |
| 3. 협정(A-3) | 신분 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 19. 교수(E-1) | 5년 |
| | | 20. 회화지도(E-2) | 2년 |
| 4. 사증면제(B-1) | 협정상의 체류기간 | 21. 연구(E-3) | 5년 |
| 5. 관광통과(B-2) | 법무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22. 기술지도(E-4) | 5년 |
| 6. 일시취재(C-1) | 90일 | 23. 전문직업(E-5) | 5년 |
| 7. 단기상용(C-2) | | 24. 예술홍행(E-6) | 1년 |
| 8. 단기종합(C-3) | | 25. 특정활동(E-7) | 2년 |
| 9. 단기취업(C-4) | | 25의2. 삭제 <2007.6.1> | |
| 10. 문화예술(D-1) | 2년 | 25의3. 비전문취업(E-9) | 3년 |
| 11. 유학(D-2) | 2년 | 25의4. 선원취업(E-10) | 1년 |
| 12. 산업연수(D-3) | 2년 | 26. 방문동거(F-1) | 2년 |
| | | 27. 거주(F-2) | 3년 |
| | | 28. 동반(F-3) |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
| | | 28의2. 재외동포(F-4) | 3년 |
| 13. 일반연수(D-4) | 2년 | 28의3. 영주(F-5) | 상한 없음 |
| 14. 취재(D-5) | 2년 | 29. 기타(G-1) | 1년 |
| 15. 종교(D-6) | 2년 | 30. 관광취업(H-1) | 협정상의 체류기간 |
| 16. 주재(D-7) | 2년 | 31. 방문취업(H-2) | 3년 |
| 17. 기업투자(D-8)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 | |
|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 | |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10.

외국인 정책의 주요 대상을 정책대상별로 보면 외국인 인력, 외국인 관광객,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로 구분되며, 정책수단별로 보면 크게 사회통합정책, 출입국정책, 행정체계 및 인프라 개선정책, 체류질서 확립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정책대상별로 정책목표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민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정주형 외국인과 순환교체형

외국인에 대한 정책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류지원이나 사회통합정책 등 기본적인 정책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추진 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되고 있다.

<표 2-1-3> 이민 외국인정책의 대상 및 정책수단

| 정책 구분 | 정책분야 | |
|-------|---|-----------------------------------|
| 대상집단 | 관광객 | |
| | 유학생 | |
| | 외국 인력 | 전문인력 (E-1~E7) |
| | | 비전문인력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
| | | 기타 인력 (단기취업,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
| | 동포 | |
| | 결혼이민자 | |
| | 불법체류자 | |
| | 영주자 | |
| | 난민 | |
| 정책수단 | 사회통합정책 1. 인권보장 2. 체류지원정책 3. 노동시장정책 4. 기타 사회문화정책 | |
| | 출입국정책 1. 출입국 행정 2. 비자체계 | |
| | 행정체계 및 인프라 개선정책 | |
| | 체류질서 확립(범죄 예방 등) | |

외국인의 체류 유형을 보면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되며, 단기 체류는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고 장기체류는 체류기간 91일 이상을 의미하며, 영주는 체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나. 등록외국인

외국인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이며,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외국인 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외국인 등록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 예) B-2(관광통과) 소지 캐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 등록, 법무부

<표 2-1-4>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체류외국인수 | 750,873 | 747,467 | 910,149 | 1,066,273 | 1,158,866 | 1,168,477 |
| 등록외국인수 | 468,875 | 485,144 | 631,219 | 765,746 | 854,007 | 870,363 |
| 장기체류 | 491,409 | 510,509 | 660,607 | 800,262 | 895,464 | 920,887 |
| 단기체류 | 259,464 | 236,958 | 249,542 | 266,011 | 263,402 | 247,590 |
| 불법체류자 | 209,841 | 204,254 | 211,988 | 223,464 | 200,489 | 177,955 |

주 : 1) 체류외국인 통계는 매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 수치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

2) 체류외국인 수는 장기체류 + 단기체류 외국인이며, 불법체류자는 체류외국인중 불법체류 외국인 수 치임.

출처 : 법무부, 「출입국관리현황자료」.

체류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2007년 3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등록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8월 사상 처음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였고, 2007년 인구대비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어서, 2009년 12월말 현재 총 체류외국인은 1,168,477명으로 인구대비 2.35%에 이르고 있다.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단순노무인력과 방문취업자격(H-2) 동포는 줄었거나 그 증가세가 미미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13.2%)과 교수 내지 특정활동 등 전문인력(9.1%)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표 2-1-5>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2010. 7. 31 현재)

(단위 : 명, %)

| | 총체류자 | | 합법 체류자 | 불법체류자 | | 불법체류자 비율 |
|-----------|-----------|--------|-----------|---------|--------|-------------|
| | 인원 | 비율 | | 인원 | 비율 | |
| 전 체 | 1,229,461 | 100.00 | 1,056,703 | 172,758 | 100.00 | 14.05 |
| 사증면제(B1) | 29,444 | 2.39 | 15,180 | 14,264 | 8.26 | 48.44 |
| 관광통과(B2) | 79,880 | 6.50 | 67,571 | 12,309 | 7.12 | 15.41 |
| 단기상용(C2) | 29,868 | 2.43 | 6,292 | 23,576 | 13.65 | 78.93 |
| 단기종합(C3) | 80,917 | 6.58 | 44,625 | 36,292 | 21.01 | 44.85 |
| 단기취업(C4) | 1,828 | 0.15 | 1,566 | 262 | 0.15 | 14.33 |
| 유학(D2) | 65,282 | 5.31 | 60,324 | 4,958 | 2.87 | 7.59 |
| 산업연수(D3) | 5,405 | 0.44 | 1,561 | 3,844 | 2.23 | 71.12 |
| 일반연수(D4) | 16,904 | 1.37 | 12,642 | 4,262 | 2.47 | 25.21 |
| 종교(D6) | 1,564 | 0.13 | 1,506 | 58 | 0.03 | 3.71 |
| 상사주재(D7) | 1,523 | 0.12 | 1,496 | 27 | 0.02 | 1.77 |
| 기업투자(D8) | 7,724 | 0.63 | 7,040 | 684 | 0.40 | 8.86 |
| 무역경영(D9) | 3,994 | 0.32 | 3,976 | 18 | 0.01 | 0.45 |
| 교수(E1) | 2,192 | 0.18 | 2,188 | 4 | 0.00 | 0.18 |
| 회화지도(E2) | 23,225 | 1.89 | 23,119 | 106 | 0.06 | 0.46 |
| 연구(E3) | 2,163 | 0.18 | 2,149 | 14 | 0.01 | 0.65 |
| 기술지도(E4) | 250 | 0.02 | 245 | 5 | 0.00 | 2.00 |
| 전문직업(E5) | 574 | 0.05 | 554 | 20 | 0.01 | 3.48 |
| 예술홍행(E6) | 4,402 | 0.36 | 2,983 | 1,419 | 0.82 | 32.24 |
| 특정활동(E7) | 9,560 | 0.78 | 8,739 | 821 | 0.48 | 8.59 |
| 연수취업(E8) | 2 | 0.00 | 0 | 2 | 0.00 | 100.00 |
| 비전문취업(E9) | 213,027 | 17.33 | 168,335 | 44,692 | 25.87 | 20.98 |
| 선원취업(E10) | 5,958 | 0.48 | 4,729 | 1,229 | 0.71 | 20.63 |
| 방문동거(F1) | 44,355 | 3.61 | 37,825 | 6,530 | 3.78 | 14.72 |
| 국민의 배우자 | 126,993 | 10.33 | 117,414 | 9,579 | 5.54 | 7.54 |
| 동반(F3) | 14,673 | 1.19 | 14,244 | 429 | 0.25 | 2.92 |
| 재외동포(F4) | 67,546 | 5.49 | 66,424 | 1,122 | 0.65 | 1.66 |
| 영주(F5) | 36,329 | 2.95 | 36,329 | 0 | 0.00 | 0.00 |
| 방문취업(H2) | 291,668 | 23.72 | 287,902 | 3,766 | 2.18 | 1.29 |
| 기타 | 62,211 | 5.06 | 59,745 | 2,466 | 1.43 | 3.96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0년 7월호.

다. 외국인 인력 통계파악을 위한 체류외국인의 범위

체류뿐만 아니라 취업활동까지 가능한 취업사증으로는 단기취업자에게 발급되는 단기취업사증(C-4)과 전문기술인력에게 발급되는 전문인력사증(E-1에서부터 E-7), 단순기능인력에게 발급되는 사증(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그리고 관광취업사증(H-1)이 있다.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사증은 전문인력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등이 있다. 취업자격 비자는 비자유형에 따라 다른데 전문인력의 경우 회화지도 2년, 특정활동 2년, 나머지 비자는 5년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비전문인력의 경우 비전문취업 3년, 방문취업 3년, 선원취업은 1년의 체류자격을 부여한다(표 2-1-5참조)

<표 2-1-6> 취업활동이 가능한 사증(실무상 '취업사증'이라고 함)

| 유 형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
|---------------|-------------------|
| 단기취업(C-4) 사증 | 90일 |
| 교 수(E-1) 사증 | 5 년 |
| 회화지도(E-2) 사증 | 2 년 |
| 연 구(E-3) 사증 | 5 년 |
| 기술지도(E-4) 사증 | 5 년 |
| 전문직업(E-5) 사증 | 5 년 |
| 예술홍행(E-6) 사증 | 1 월 |
| 특정활동(E-7) 사증 | 2 년 |
| 비전문취업(E-9) 사증 | 3 년 |
| 선원취업(E-10) 사증 | 1 년 |
| 관광취업(H-1) 사증 | 협정상의 기간 |
| 방문취업(H-2) 사증 | 3 년 |

자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그러나 위의 범주 외에 언론인(D-5), 종교인(D-6), 상사주재원(D-7), 기업투자자(D-8), 무역경영자(D-9), 유학생(D-2), 구직연수자(D-10) 등도 넓은 의미의 전문인력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D-10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의 배우자(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등록외국인의 배우자(F-3)도 취업자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경제활동상태 파악을 위한 체류외국인 모집단의 범위로는 일차적으로 등록외국인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외국인의 경우 취업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점, 단기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등록외국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상당수가 경제활동상태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모집단의 규모가 실제보다 과소추정될 우려가 있다.

<표 2-1-7> 외국인 경제활동 조사를 위한 모집단 범위 및 규모(2009년)

| 비자 유형 | 합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 전체 |
|--------------------|-----------|------------|------------|
| 단기취업(C-4) 사증 | 423 | 292 | 715 |
| 교수(E-1) 사증 | 2,051 | 5 | 2,056 |
| 회화지도(E-2) 사증 | 22,547 | 95 | 22,642 |
| 연구(E-3) 사증 | 2,056 | 10 | 2,066 |
| 기술지도(E-4) 사증 | 192 | 5 | 197 |
| 전문직업(E-5) 사증 | 518 | 18 | 536 |
| 예술홍행(E-6) 사증 | 2,961 | 1,344 | 4,305 |
| 특정활동(E-7) 사증 | 8,172 | 724 | 8,896 |
| 비전문취업(E-9)사증 | 158,198 | 30,165 | 188,363 |
| 선원취업(E-10) 사증 | 4,078 | 1,129 | 5,207 |
| 관광취업(H-1) 사증 | 341 | 2 | 343 |
| 방문취업(H-2) 사증 | 303,005 | 3,278 | 306,283 |
| 문화예술(D-1) | 84 | 11 | 95 |
| 산업연수(D-3) | 1,170 | 12,155 | 13,325 |
| 일반연수(D-4) | 15,381 | 4,509 | 19,890 |
| 언론인(D-5) 사증 | 87 | 1 | 88 |
| 종교인(D-6) 사증 | 1,598 | 53 | 1,651 |
| 상사주재(D-7) 사증 | 1,461 | 31 | 1,492 |
| 기업투자(D-8) 사증 | 7,234 | 673 | 7,907 |
| 무역경영(D-9) 사증 | 3,265 | 17 | 3,282 |
| 유학(D-2) 사증 | 57,244 | 5,207 | 62,451 |
| 구직연수(D-10) 사증 | 1 | 0 | 1 |
| 방문동거(F-1) | 39268 | 5017 | 44285 |
| 국민의배우자(F-2) 사증 | 115,735 | 9,352 | 125,087 |
| 재외동포(F-4) 사증 | 50,039 | 625 | 50,664 |
| 영주권자(F-5) 사증 | 22,446 | 0 | 22,446 |
| 등록외국인의 배우자(F-3) 사증 | 14,274 | 378 | 14,652 |
| 합계 | 833,745 | 75,085 | 908,830(a) |
| 기타 불법체류자 | | 107,379(b) | |
| 모집단 현황(a+b) | 1,016,209 | |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09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경제활동상태 파악을 위한 모집단의 범위로 비자유형으로 등록외국인의 범주로 하되, 외국인의 규모는 체류외국인 수로 파악하며, 추가적으로 등록외국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를 모집단에 포함하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단기 취업비자(C-4)의 경우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고자 한다.

<표 2-1-7>은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외국인 모집단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총 모집단 규모는 등록외국인 비자의 체류외국인수+단기취업비자+비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수로 계산되며, 2009년 말 기준 101만 6,209명이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이 15세 이상 임을 고려할 때 이들 비자에서 15세 미만을 제외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의 제한으로 여기서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다.

2. 체류외국인 유형별 특징

가. 유학생

유학생 추이를 보면 2001년 7,428명에서 2004년에 9,708명으로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2005년에 24,797명으로 크게 증가한 후 매년 비약적인 증가를 보여 2009년 말에 80,985명으로 증가하였다. 국적별로 보면 2009년 말 현재 유학생 80,985명 중 중국국적이 59,683명(7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몽골(3,691명), 베트남(2,870명), 일본(1,626명), 미국(982명) 등의 순이다.

학위수준별로 보면 학사 유학이 40,368명(50.0%)으로 가장 많으며, 석사 유학 12,021명(14.8%), 전문학사 6,213명(7.7%), 박사 유학 3,562명(4.4%)이며 국어연수자는 18,534명으로 22.9%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유학생 통계는 유학비자인 D-2 및 D-4(국어연수)를 포함한 통계로 비자유형별 통계의 D-2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나.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란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 2001년 25,182명에서 이후 매년 1~2만여 명씩 증가하여 2006년에 94,786명, 그리고 2009년 말에는 125,087명이 체류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6년 이후 증가

율이 둔화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결혼이민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109,211명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는 15,876명이다.

결혼이민자는 1980년대에는 종교단체를 통하여 일본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베트남·캄보디아·몽골·타이 등으로 국적이 다변화되고 있다. 여자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이 55,874명(이 중 한국계는 25,75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30,014명, 필리핀 6,157명, 일본 4,557명 순이다. 남자의 경우 전체 15,876명 중 중국이 10,118명(이 중 한국계는 6,807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이 1,139명이다.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적 미취득자의 비율(68.9%)은 국적 취득자(31.1%)보다 훨씬 높으며 국적 취득자의 52.7%가 중국(한국계 포함)이며, 국적 미취득자인 79.0%가 중국(한국계 포함)이다.

<표 2-1-8> 국적 취득 유무별 구분

(단위: 명, %)

| 구분 | 전체 | 중국 (한국계)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일본 | 몽골 | 태국 | 대만 | 기타 |
|------------|-------------------|------------------|------------------|------------------|-----------------|----------------|----------------|----------------|----------------|------------------|
| 전체 | 181,671 (100) | 59,346 (32.7) | 51,348 (28.3) | 34,640 (19.1) | 10,610 (5.8) | 5,326 (2.9) | 2,602 (1.4) | 2,272 (1.3) | 1,042 (0.6) | 14,485 (8.0) |
| 국적 미취득자 | 125,087 (68.9) | 32,566 (26.0) | 33,426 (26.7) | 30,173 (24.1) | 6,321 (5.1) | 5,074 (4.1) | 2,292 (1.8) | 2,029 (1.6) | 325 (0.3) | 12,881 (10.3) |
| 국적취득 자 | 56,584 (31.1) | 26,780 (47.3) | 17,922 (31.7) | 4,467 (7.9) | 4,289 (7.6) | 252 (0.4) | 310 (0.5) | 243 (0.4) | 717 (1.3) | 1,604 (2.9) |

주 : 1) 캄보디아 3,230명(법무부, '09.12월 기준).

2) 국적 취득자는 행안부 통계상 혼인귀화자에 한함(기타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 제외).

자료 : 행정안전부(2010), 「외국계주민현황조사」.

다. 취업비자 외국인력

외국인력은 전문인력과 단순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문인력은 2005년까지는 21천여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6년부터 증가하여 2009년에 40,698명인데 여전히 전체 규모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회화지도(E-2)가 22,64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특정활동(E-7) 8,896명, 예술홍행(E-6) 4,305명, 연구(E-3) 2,066명, 교수(E-1) 2,056명이며 그 외 전문직업(E-5) 536명, 기술지도(E-4) 197명이다.

외국인 단순인력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07년 방문취업 제 실시로 동포인력의 급격한 증가로 2006년에 비해 21만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511,160명을 기록하여 2001년에 비해 4.6배 증가하였다. 여기서의 외국인력 통계는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력(불법체류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외국인력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나 유학생 입국자 중에서도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포함 할 경우 외국인력 규모는 70여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9> 주요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의 변화

(단위 : 명)

| | 총체류자 | 유학생 | 전문인력 | 단순인력 | 결혼이민자 |
|------|-----------|--------|--------|---------|---------|
| 2001 | 576,835 | 7,428 | 21,710 | 110,250 | 25,182 |
| 2002 | 629,006 | 7,288 | 21,955 | 128,229 | 34,710 |
| 2003 | 678,687 | 9,708 | 22,431 | 291,572 | 44,416 |
| 2004 | 750,873 | 9,705 | 21,729 | 295,087 | 57,069 |
| 2005 | 747,467 | 24,797 | 24,785 | 173,549 | 75,011 |
| 2006 | 910,149 | 38,649 | 29,011 | 231,773 | 93,786 |
| 2007 | 1,066,273 | 56,006 | 33,502 | 442,677 | 110,362 |
| 2008 | 1,158,866 | 71,531 | 37,304 | 511,269 | 122,552 |
| 2009 | 1,168,477 | 80,985 | 40,698 | 511,160 | 125,087 |

주 :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은 인력통계에서 제외하였으며, 해당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로 된 경우도 해당 비자에 포함.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라. 불법체류자

저숙련 외국인력이 취업을 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그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았는데 생산직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저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던 1991년에는 외국인력 중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93.4%까지 이르렀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이후 1994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비중이 58.9%까지 하락하였으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만으로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비중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79.8%까

지 다달았다. 2003년 8월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입법화하고 2003년 10월에 당시의 불법체류 외국인력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합법화함에 따라 2003년 12월에는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35.5%로 하락하였고 불법체류가 규모도 2002년 말의 289천명에서 138천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여만명 수준을 유지하여 오다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 17만 7천 여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2-1-10>은 총 체류자에서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0년 불법체류자 비중은 38.3%에서 2002년 46.0%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10> 불법체류자 추이

(단위 : 명, %)

| | 총 체류자 | 불법체류자 | 불법체류율 |
|-------|-----------|---------|-------|
| 2000년 | 481,611 | 184,547 | 38.3 |
| 2001년 | 576,835 | 255,206 | 44.2 |
| 2002년 | 629,006 | 289,239 | 46.0 |
| 2003년 | 678,687 | 154,342 | 22.7 |
| 2004년 | 750,873 | 207,841 | 27.7 |
| 2005년 | 767,467 | 204,254 | 26.6 |
| 2006년 | 910,149 | 211,988 | 23.3 |
| 2007년 | 1,066,293 | 223,464 | 21.0 |
| 2008년 | 1,158,866 | 200,489 | 17.3 |
| 2009년 | 1,168,477 | 177,955 | 15.2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년도

2009년 말 기준 현재 총 체류자 116만 8,477명 중 불법체류자 17만 7,965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5.2%이다.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단기상용(C-2) 및 단기종합(C-3)이 64,587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비전문취업(E-9) 30,165명, 사증면제(B1)·관광(B2)이 23,812명의 순이다. 불법체류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82,484명(46.3%)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14,664명(8.2%), 태국 12,383명(7.0%), 몽골 12,270명(6.9%), 필리핀 11,834명(6.6%) 등의 순이다. 국적별로 불법체류 경로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과 몽골의 경우 단기상용 및 단기종합 입국자의 불법체류자 비중(중국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47.9%, 몽골은 51.7%를 차지)이 높다. 태국은 사증면제 및 관광비자 입국자의 비중이 높으며, 베트남은 비전문취업, 단기상용 및 단기종합, 국민이 배우자 비중이 높다.

제2절 외국인 인력의 사회경제적 특성

1. 비전문 외국인 인력의 사회경제적 특성¹⁾

가. 비전문 외국인 인력의 현황

<표 2-2-1>은 단순기능인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의 최근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7월 현재 단순기능인력은 51만여명이며 이 중 합법체류자가 46만여명이고 불법체류는 49천여명이다.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체류자는 29만여명이며 이 중 합법체류자는 28만여명이다.

<표 2-2-1> 비전문 외국인 인력의 현황

| 구분 | | 2009 | | | | 2010. 7 | | | |
|----------------------------|----------------|----------|-----------|-----------------------|-------------------|----------|-----------|-----------------------|-------------------|
| | | 총 체류자 | 합법 체류자 | 불법 체류자 (16-60세) | 불법 체류자 (전체) | 총 체류자 | 합법 체류자 | 불법 체류자 (16-60세) | 불법 체류자 (전체) |
| 단 순 기 능 인 력 | 전체 | 499,853 | 465,281 | 32,247 | 34,572 | 510,672 | 460,985 | 46,824 | 49,687 |
| | 비전문취업 (E-9) | 188,363 | 158,198 | 28,550 | 30,165 | 213,027 | 168,335 | 42,901 | 44,692 |
| | 선원취업 (E-10) | 5,207 | 4,078 | 1,129 | 1,129 | 5,958 | 4,729 | 1,229 | 1,229 |
| | 방문취업(H-2) | 306,283 | 303,005 | 2,568 | 3,278 | 291,687 | 287,921 | 2,694 | 3,766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출입국통계월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인력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2010년 7월 현재 총 체류자 213천명 중 제조업이 157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 11천여명, 농축산업 8천여명, 어업 3천여명 순이다.

고용허가제 입국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2010년 7월 현재 베트남이 51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 26천여명, 태이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24천여명, 그리고 스리랑카 15천여명, 몽골 12천여명,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10여명 수준이다.

1) 이규용 외(2009)에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2-2-2>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의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

| | 2009 | | | | 2010. 7. | | | |
|-------------|----------|-----------|-----------|-----------|----------|-----------|-----------|-----------|
| | 총 체류자 | 합법 체류자 | 불법 체류자 | 불법 체류율 | 총 체류자 | 합법 체류자 | 불법 체류자 | 불법 체류율 |
| 전체 | 188,363 | 158,198 | 30,165 | 16.0 | 213,027 | 168,335 | 44,692 | 21.0 |
| 제조업(E-9-2) | 150,293 | 141,451 | 842 | 5.9 | 157,091 | 148,426 | 8,665 | 5.5 |
| 건설업(E-9-3) | 9,187 | 8,177 | 1,010 | 11.0 | 11,165 | 10,282 | 883 | 7.9 |
| 농축산업(E-9-4) | 7,896 | 6,676 | 1,220 | 15.5 | 8,356 | 6,946 | 1,410 | 16.9 |
| 어업(E-9-5) | 2,600 | 1,749 | 851 | 32.7 | 3,423 | 2,393 | 1,030 | 30.1 |
| 냉장냉동(E-9-6) | 135 | 113 | 22 | 16.3 | 270 | 242 | 28 | 10.4 |
| 재료수집(E-9-7) | 24 | 19 | 5 | 20.8 | 27 | 20 | 7 | 25.9 |
| 기타 | 18,228 | 13 | 18,215 | 99.9 | 32,695 | 26 | 32,669 | 99.9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출입국통계월보』.

<표 2-2-3>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의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

| 국적 | 2009 | | | 2010. 7. | | |
|--------|---------|--------|-------|----------|--------|-------|
| | 총체류자 | 불법체류자 | 불법체류율 | 총체류자 | 불법체류자 | 불법체류율 |
| 총계 | 188,363 | 30,165 | 16.01 | 213,027 | 44,692 | 21.0 |
| 베트남 | 46,360 | 4,185 | 9.03 | 51,474 | 8,110 | 15.8 |
| 필리핀 | 23,626 | 3,184 | 13.48 | 26,066 | 5,041 | 19.3 |
| 타이 | 25,011 | 3,113 | 12.45 | 24,900 | 3,424 | 13.8 |
| 인도네시아 | 21,793 | 2,061 | 9.46 | 24,501 | 3,537 | 14.4 |
| 스리랑카 | 13,362 | 459 | 3.44 | 15,281 | 1,041 | 6.8 |
| 몽골 | 11,990 | 3,315 | 27.65 | 12,478 | 3,698 | 29.6 |
| 중국 | 9,998 | 4,458 | 44.59 | 10,658 | 5,242 | 49.2 |
| 우즈베키스탄 | 7,858 | 888 | 11.30 | 10,534 | 1,846 | 17.5 |
| 네팔 | 4,693 | 290 | 6.18 | 7,000 | 980 | 14.0 |
| 방글라데시 | 4,183 | 1,297 | 31.01 | 6,863 | 2,446 | 35.6 |
| 한국계중국인 | 5,845 | 4,989 | 85.36 | 6,641 | 5,801 | 87.4 |
| 캄보디아 | 5,288 | 450 | 8.51 | 6,050 | 762 | 12.6 |
| 파키스탄 | 4,582 | 433 | 9.45 | 5,752 | 1,052 | 18.3 |
| 미얀마 | 2,263 | 123 | 5.44 | 2,830 | 591 | 20.9 |
| 기타 | 1,511 | 920 | 60.89 | 1,999 | 1,121 | 56.1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출입국통계월보』.

나.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구조

여기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외국인 근로자 DB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 DB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총 87,468개소이다(사업장 ID 누락된 140명 제외). 사업장 ID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사업장 DB와 연결한 결과 총 72,094개(82.4%)의 사업체 정보가 확인된다.

<표 2-2-4>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

(단위: 개소, %)

| |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
| | | 업체 | 비율 | 업체 | 비율 | 업체 | 비율 | 업체 | 비율 | 업체 | 비율 | 업체 | 비율 |
| 업 종 | 건설업 | 261 | 12.0 | 909 | 6.1 | 1,634 | 4.1 | 1,740 | 3.6 | 1,761 | 3.2 | 1,748 | 3.0 |
| | 농축산업 | 8 | 0.4 | 53 | 0.4 | 276 | 0.7 | 372 | 0.8 | 461 | 0.8 | 502 | 0.9 |
| | 어업 | | | 1 | 0.0 | 72 | 0.2 | 96 | 0.2 | 115 | 0.2 | 115 | 0.2 |
| | 제조업 | 1,187 | 54.4 | 10,001 | 67.0 | 30,532 | 76.4 | 37,791 | 78.7 | 45,043 | 81.5 | 47,079 | 81.5 |
| | 서비스업 | 724 | 33.2 | 3,966 | 26.6 | 7,468 | 18.7 | 8,045 | 16.7 | 7,914 | 14.3 | 8,310 | 14.4 |
| 규 모 | 5인 미만 | 606 | 27.8 | 3,343 | 22.4 | 8,015 | 20.0 | 10,120 | 21.1 | 10,688 | 19.3 | 14,203 | 24.6 |
| | 5~9인 | 434 | 19.9 | 3,582 | 24.0 | 8,323 | 20.8 | 9,940 | 20.7 | 10,950 | 19.8 | 13,179 | 22.8 |
| | 10~29인 | 717 | 32.9 | 5,282 | 35.4 | 13,485 | 33.7 | 15,878 | 33.0 | 19,466 | 35.2 | 19,707 | 34.1 |
| | 30~99인 | 354 | 16.2 | 2,332 | 15.6 | 8,109 | 20.3 | 9,780 | 20.4 | 11,567 | 20.9 | 8,887 | 15.4 |
| | 100~299인 | 64 | 2.9 | 349 | 2.3 | 1,825 | 4.6 | 2,070 | 4.3 | 2,320 | 4.2 | 1,635 | 2.8 |
| | 300인 이상 | 5 | 0.2 | 42 | 0.3 | 225 | 0.6 | 256 | 0.5 | 303 | 0.5 | 143 | 0.2 |
| 지 역 | 수도권 | 1,674 | 76.8 | 11,978 | 80.2 | 27,280 | 68.2 | 32,052 | 66.7 | 35,508 | 64.2 | 37,021 | 64.1 |
| | 충청권 | 149 | 6.8 | 949 | 6.4 | 3,323 | 8.3 | 3,979 | 8.3 | 4,598 | 8.3 | 4,800 | 8.3 |
| | 호남권 | 67 | 3.1 | 315 | 2.1 | 1,365 | 3.4 | 1,817 | 3.8 | 2,462 | 4.5 | 2,689 | 4.7 |
| | 경북권 | 98 | 4.5 | 574 | 3.8 | 2,764 | 6.9 | 3,304 | 6.9 | 3,788 | 6.9 | 3,841 | 6.7 |
| | 경남권 | 175 | 8.0 | 1,024 | 6.9 | 4,809 | 12.0 | 6,343 | 13.2 | 8,326 | 15.1 | 8,776 | 15.2 |
| | 강원제주 | 16 | 0.7 | 89 | 0.6 | 428 | 1.1 | 531 | 1.1 | 593 | 1.1 | 602 | 1.0 |
| | 미 상 | 1 | 0.0 | 1 | 0.0 | 13 | 0.0 | 18 | 0.0 | 19 | 0.0 | 25 | 0.0 |
| 전 체 | | 2,180 | 100.0 | 14,930 | 100.0 | 39,982 | 100.0 | 48,044 | 100.0 | 55,294 | 100.0 | 57,754 | 100.0 |

주: 연인원 기준임.

자료: 외국인 근로자 DB-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 DB 연결패널.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를 보면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에는 활용업체가 2,180개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09년의 경우 57,754개 업체가 1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업종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제조업이 80%를 상회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어서 서비스업, 건설업 순이다. 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의 경우 81.5%가 30인 미만이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규모 또한 4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소재지는 수도권이

60%를 상회하며, 이어서 경남권, 충청권 순으로 나타나 있다.

<표 2-2-5> 전체 고용인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

(단위: %)

|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업종 | 건설 | 9.7 | 14.9 | 17.8 | 19.6 | 23.4 | 24.0 |
| | 농축산 | 24.5 | 33.1 | 32.2 | 39.4 | 47.4 | 47.1 |
| | 어업 | | | 37.8 | 41.2 | 44.9 | 48.0 |
| | 가구제조 | 20.3 | 28.8 | 27.7 | 30.6 | 36.8 | 36.8 |
| | (비)금속제조 | 15.4 | 24.5 | 21.7 | 25.8 | 31.8 | 31.5 |
| | 섬유의복제조업 | 16.7 | 26.8 | 22.5 | 25.8 | 30.4 | 31.1 |
| | 인쇄출판 | 12.5 | 19.4 | 17.6 | 20.3 | 24.7 | 23.8 |
| | 음식료품제조 | 9.9 | 16.6 | 16.5 | 19.4 | 23.1 | 23.2 |
| | 기계제조 | 13.1 | 17.7 | 15.6 | 19.3 | 23.6 | 23.5 |
| | 화학제품제조 | 17.8 | 25.3 | 22.9 | 26.7 | 32.1 | 32.2 |
| | 기타제조 | 12.6 | 21.6 | 21.5 | 25.4 | 30.9 | 30.7 |
| | 도소매 | 21.3 | 15.6 | 21.8 | 16.1 | 13.2 | 12.3 |
| | 사회복지간병 | | 12.5 | 33.3 | 21.2 | 27.0 | 15.5 |
| | 청소폐기물처리 | 2.9 | 4.9 | 4.0 | 4.1 | 5.4 | 4.5 |
| | 숙박업 | | | | | 32.6 | 24.5 |
| | 음식점 | 45.7 | 45.8 | 46.7 | 39.6 | 40.5 | 39.3 |
| 수리업 | | 11.3 | 10.4 | 9.4 | 10.1 | 12.1 | |
| 규모 | 5인 미만 | 69.6 | 63.4 | 67.5 | 68.4 | 70.3 | 65.5 |
| | 5~9인 | 36.0 | 48.9 | 53.6 | 54.2 | 57.2 | 51.5 |
| | 10~29인 | 19.6 | 30.1 | 31.8 | 34.0 | 39.8 | 36.8 |
| | 30~99인 | 12.9 | 17.8 | 17.7 | 21.7 | 27.6 | 24.7 |
| | 100~299인 | 6.3 | 8.3 | 8.5 | 11.3 | 14.5 | 12.8 |
| | 300인 이상 | 1.4 | 3.9 | 4.3 | 5.0 | 6.5 | 4.0 |
| 전체 | 15.5 | 22.9 | 20.1 | 23.2 | 27.9 | 27.5 | |

주: 연인원 기준임.

자료: 외국인 근로자 DB-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 DB 연결패널. 이규용 외(2010),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발간 예정에서 재인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허가제 일반 및 특례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하여 이들 사업장에서 외국인력의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2004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15.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7.5%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어업이 4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농축산업(47.1%)과 음식업(39.3%)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다. 청소·폐기물처리업종, 사회복지·간병, 수리업, 도소매업 같은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낮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외국인 근로자 의존 비율

이 높아 2009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65.5%에 이르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2009년에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4.0%에 머무르고 있다.

다. 업종별 내·외국인 임금 및 근로시간 비교

내·외국인 인력간 임금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가 수행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중 임금격차 분석이 가능한 세 조사²⁾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노용진·이규용³⁾은 2003년에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을 대상으로 동일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수준을 조사하였다. 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조사 당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01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류형태별로 보면 불법취업자의 임금이 가장 높았으며(남자는 월평균 126만 원, 여자는 113만 원), 그 다음으로 연수취업자(남자 105만 원, 여자 104만 원), 산업연수생(남자 97만 원, 여자 92만 원), 해외투자기업연수생(남자 75만 원, 여자 65만 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실태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동 조사도 내외국 인력간 임금격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가 수집⁴⁾ 되어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2.5만원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7.2만원으로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약 45만원 가량 더 많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19.7% (총급여기준 16.1%)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03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의 분석 결과는 업종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자료작성 시점이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 이전이라는 한계가 있고 2008년의 조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00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위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내외국인간 임금격차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축산업과 음식업은 내외국인 임금격차가 유의하지 않으나 나머지 세 업종은 내국인

2) 여기서 조사된 임금자료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근로자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임금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유길상 외(2003),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제4장 pp108~119 참조, 한국노동연구원.

4) 이규용·정진호(2008), 「각국의 외국인력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적용현황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외국인에 비해 높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격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어업, 건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두 집단의 생산성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성을 감안한 두 집단간의 임금격차는 이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력의 경우 장시간근로를 선호하는 만큼 초과근로시간이 많으며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임금 유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2-6> 업종별 내외국인 임금격차 분석(2009년)

| | 건설업(N=474) | | 농축산업(N=85) | | 어업(N=84) | | 음식업(N=172) | | 제조업(N=539) | |
|---------|------------|----------|------------|----------|----------|----------|------------|----------|------------|----------|
| | 계 수 | 표준오차 | 계 수 | 표준오차 | 계 수 | 표준오차 | 계 수 | 표준오차 | 계 수 | 표준오차 |
| (상수) | 6.081 | 0.046*** | 5.970 | 0.100*** | 5.949 | 0.058*** | 5.917 | 0.136*** | 5.880 | 0.038*** |
| 성별더미 | | | 0.106 | 0.031*** | | | 0.078 | 0.057 | 0.068 | 0.012*** |
| 연령 | 0.002 | 0.001*** | -0.001 | 0.002* | 0.002 | 0.001* | -0.002 | 0.002 | 0.000 | 0.001 |
| 학력더미 | -0.021 | 0.012* | 0.016 | 0.030 | -0.039 | 0.018** | 0.023 | 0.041 | 0.012 | 0.011 |
| 근 속 | -0.004 | 0.001** | 0.001 | 0.001** | 0.006 | 0.002** | 0.000 | 0.001 | 0.002 | 0.000*** |
| 근속제곱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직종더미 | 0.072 | 0.018*** | -0.061 | 0.039 | 0.064 | 0.019*** | 0.012 | 0.038 | 0.035 | 0.010*** |
| 근로시간 | 0.000 | 0.000 | 0.000 | 0.000 | 0.001 | 0.000*** | 0.001 | 0.000*** | 0.001 | 0.000*** |
| 숙련더미 | 0.014 | 0.012 | 0.044 | 0.033 | 0.091 | 0.028*** | 0.061 | 0.044** | 0.011 | 0.010 |
| 종업원 수 | 0.000 | 0.000 | 0.010 | 0.006* | -0.008 | 0.002*** | 0.004 | 0.003 | 0.000 | 0.000** |
| 외국인비율 | 0.000 | 0.000 | 0.000 | 0.001 | -0.002 | 0.001*** | 0.000 | 0.001 | 0.000 | 0.000* |
| 내외국인더미 | 0.107 | 0.013*** | 0.060 | 0.040 | 0.099 | 0.026*** | 0.046 | 0.044 | 0.073 | 0.010*** |
| 조정된 R2값 | 0.380 | | 0.386 | | 0.745 | | 0.092 | | 0.356 | |

주: *** p<0.01, ** p<0.05, * p<0.10.

- 건설업과 어업은 남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
- 학력더미는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으로 구분
- 숙련더미는 숙련과 비숙련으로 구분
- 직종더미는 산업별로 직종이 다름
- 외국인 비율=외국인 종업원 수/종업원 수
- 내외국인 더미는 내국인=1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0), 「2009년 외국인 고용사업체 실태조사」.

라.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 한국어 능력

외국인력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업무의 숙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초창기 외국인력의 생산성은 한국어 능력에 크게 의존하며, 외국인력의 사회 통합이나 사회적 정착 과정에서도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표 2-2-7>은 입국 연도별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가평가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12.3%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8.0%는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입국 연도별로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최근에 입국한 인력일수록 언어능력에 문제가 많은데 특히 2009년 입국자의 경우 응답지의 1/4 가량이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한국어 능력 테스트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2-7>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 | | 사 례 수 | 한국어 능력 | | | | | | | | | | 무응답 | |
|------------------|-------------|-------------|-------------------|------|-------------------------------|------|----------------------------|------|-----------------------------|------|---------------------------------|------|-----|-----|
| | | |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 | |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 |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 가능하다 | | 한국인 동료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 가능 | |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언어상의 어려움 없음 | | | |
|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 |
| 전 체 | | 796 | 98 | 12.3 | 64 | 8.0 | 345 | 43.3 | 212 | 26.6 | 56 | 7.0 | 21 | 2.6 |
| 입 국 연 도 | 2004. 9. 이전 | 58 | 5 | 8.6 | 4 | 6.9 | 26 | 44.8 | 20 | 34.5 | 2 | 3.4 | 1 | 1.7 |
| | 2004.9~2005 | 126 | 10 | 7.9 | 11 | 8.7 | 41 | 32.5 | 45 | 35.7 | 13 | 10.3 | 6 | 4.8 |
| | 2006 | 127 | 17 | 13.4 | 10 | 7.9 | 59 | 46.5 | 22 | 17.3 | 15 | 11.8 | 4 | 3.1 |
| | 2007 | 116 | 7 | 6.0 | 13 | 11.2 | 54 | 46.6 | 32 | 27.6 | 7 | 6.0 | 3 | 2.6 |
| | 2008 | 193 | 24 | 12.4 | 14 | 7.3 | 92 | 47.7 | 53 | 27.5 | 9 | 4.7 | 1 | 0.5 |
| | 2009 | 90 | 23 | 25.6 | 8 | 8.9 | 40 | 44.4 | 14 | 15.6 | 2 | 2.2 | 3 | 3.3 |
| | 잘 모름 | 86 | 12 | 14.0 | 4 | 4.7 | 33 | 38.4 | 26 | 30.2 | 8 | 9.3 | 3 | 3.5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9), 「외국인력 실태조사」.

마. 사업장 이동과 외국인력의 체류 전망

저숙련 외국인력 제도와 관련하여 지원단체 등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라는 요구인 데 비해 사업주들의 경우에는 사업장 이동의 보다 엄격한 규제를 요구한다.⁵⁾ 사업장 이동규제 여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자는 저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동의 제한을 규정하는 현 정책방향이 맞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저숙련 외국인력의 도입 원칙이 내국인 노동시장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국내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의 공급정책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사업장 이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8>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이동의 평균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 몇 번째 직장인지에 대해 2.25회가 평균으로 나타났으며, 입국 연도가 오래될수록 사업장 이동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법 여부별로 보면 불법체류자의 사업장 이동 횟수가 더 많다. 2009년 입국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이동의 평균 횟수가 1.54회로 나타났다. 직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5명 중 448명이 응답하지 않아 응답의 대표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응답자의 경우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가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66명,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 35명, ‘임금을 계약상의 임금보다 적게 주기 때문’ 3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이직 계획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796명의 39.4%인 314명이 이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인력을 대상으로 이직하려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가 33.4%로 전체 응답자의 1/3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 ‘일이 너무 힘들어서’ 15.9%,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 12.7%,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새 직장을 구한 경로에 대해서도 응답률이 높지 않았는데 주요 방법으로 ‘고용지원센터 이용’ 104명,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국의 동료들 통해’ 78명, 친인척을 통해 5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사업주 단체가 이야기하는 일부 불가피성이 아닌 노동이동을 통한 임금 상승이라는 인센티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과 관련한 유입국의 노동시장 상황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 사업주들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및 신청 그리고 채용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수개월씩 걸리는 상황에서 배정받은 외국인력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비용손실이 만만치 않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8> 노동이동 횟수

| | | 사례수 | 한국 입국후 몇 번째 직장 평균: 번째 |
|---------|---------------|-----|-----------------------|
| 전 체 | | 546 | 2.25 |
| 입국 연도 | 2004. 9 이전 | 44 | 3.75 |
| | 2004. 9.~2005 | 82 | 1.96 |
| | 2006 | 100 | 2.25 |
| | 2007 | 82 | 2.52 |
| | 2008 | 123 | 2.01 |
| | 2009 | 63 | 1.54 |
| | 무응답 | 52 | 2.48 |
| 현재 체류자격 | 합법체류 | 264 | 2.04 |
| | 불법체류 | 219 | 2.57 |
| | 무응답 | 63 | 2.08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9), 「외국인력 실태조사」.

방문취업 입국 동포의 경우 사업장 이동의 평균 횟수는 일반 외국인에 비해 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동이동의 허용 외에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특성에도 기인한다. 동포 조사대상 451명의 사업장 이동 평균 횟수는 3.27회로 조사되었으며 입국 연도별로 보면 2006년 이전 입국자는 4.79회, 2007년 2.3회, 2008년 1.90회, 2009년 1.57회로 나타났다. 현재의 직업별로 보면 건설현장이 4.46회로 가장 많고, 음식숙박서비스업종이 2.83회, 공장의 생산직이 1.95회로 나타났다. 직장을 구한 주된 경로를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100명) 중 가족·친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0%이며, 직업소개소 38.0% 고향친구 3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자의 현재의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1.6%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며, 이직 계획이 있는 경우 ‘같은 직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이 16.0%이고, ‘다른 직종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함’이 22.3%로 나타났다. 직장이동을 계획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238명 중 35.3%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23.1%,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이 사업장을 이동한 결과는 어떠할까? 이는 사업장 이동의 원인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더 나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는 이들이 직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였다. <표 2-2-9>는 사업장 이동 후 임금의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로 미응답자가 많아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255명의 응답자 중 절반이 넘

<표 2-2-9> 사업장 이동 후 임금의 변화

(단위 : 명, %)

| | | 임금의 변화 | | | | | | | | 전체 | |
|----------------|------|----------------|--------|-------------|--------|------------------|-------|------|--------|-----|---------|
| | | 이전 직장보다 높아짐 | | 이전 직장 비슷 | | 이전 직장에 비해 떨어짐 | | 잘 모름 | | 인원 | 비율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
| 전 체 | | 135 | (18.1) | 90 | (12.1) | 30 | (4.0) | 490 | (65.8) | 745 | (100.0) |
| 현재 체류 자격 | 합법체류 | 48 | (15.7) | 45 | (14.7) | 10 | (3.3) | 203 | (66.3) | 306 | (100.0) |
| | 불법체류 | 74 | (21.0) | 32 | (9.1) | 13 | (3.7) | 234 | (66.3) | 353 | (100.0) |
| | 잘 모름 | 13 | (15.1) | 13 | (15.1) | 7 | (8.1) | 53 | (61.6) | 86 | (100.0)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9), 「외국인력 실태조사」.

는 135명이 이전 직장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하여 임금이 주 원인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합법취업여부별로 보면 합법취업자에 비해 불법취업자가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높아졌다’는 비율이 높아 불법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상승을 목적으로 일자리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직장이동 후 작업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이 <표 2-2-10>에서 확인된다.

동포 실태조사의 경우 응답자 487명이 응답한 617개의 일자리를 토대로 일자리가 바뀌면서 임금이 이전 직장보다 높아졌는지 비슷했는지, 아니면 더 떨어졌는지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전 직장
과 비슷’했던 일자리 이동이 61.4%로 가장 많았고, ‘이전 직장보다 높아졌다’는 일자리 이동이 29.5%였다. 직종별로는 간병인과 입주 보모가 일자리를 이동하면서 43~44%가 임금 수준이 더 높아진 반면 더 낮은 일자리로 이동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생산직, 가사도우미 종사자는 임금 수준이 비슷한 직장으로 이동한 경우가 60% 이상 되었고, 임금 수준이 더 낮은 직장으로 옮긴 경우도 10% 정도 되었다. 이들 직종 종사자의 경우 일자리 이동이 근로환경 등에 기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인력의 체류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외국인력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외국인력 중 본국으로의 귀국 계획에 대해 입국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최근 입국자의 경우 3년 정도의 체류기간을 충족하고 귀국하겠다는 비율이 높지만 장기 체류 희망 비율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응답자 796명 중 160명은 ‘영주권을 받아 한국에 정착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하기를 원하는 이유로는 ‘돈을 더 벌기 위해’(52.5%), ‘현재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의 교육이나 진로 문제

때문'(10.8%), '귀국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법개정을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3년+2년 범위 내에서 출국하지 않고도 계속 체류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장기체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10> 사업장 이동 후 작업환경의 변화

(단위 : 명, %)

| | | 작업환경의 변화 | | | | | | | | 전체 | |
|----------------|------|----------------|--------|--------------|--------|------------------|-------|------|--------|-----|---------|
| | | 이전 직장보다 높아짐 | | 이전 직장과 비슷 | | 이전 직장에 비해 나빠짐 | | 잘 모름 | | 인원 | 비율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
| 전 체 | | 133 | (17.9) | 64 | (8.6) | 36 | (4.8) | 512 | (68.7) | 745 | (100.0) |
| 현재 체류 자격 | 합법체류 | 55 | (18.0) | 23 | (7.5) | 18 | (5.9) | 210 | (68.6) | 306 | (100.0) |
| | 불법체류 | 69 | (19.5) | 28 | (7.9) | 12 | (3.4) | 244 | (69.1) | 353 | (100.0) |
| | 잘 모름 | 9 | (10.5) | 13 | (15.1) | 6 | (7.0) | 58 | (67.4) | 86 | (100.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9), 「외국인력 실태조사」.

동포의 경우도 조사대상 인력 570명 중 방문취업제 입국후 3년 이내 귀국 희망이 3.2%, 5년 이내 25.4%, 7년 이내 9.3%, 10년 이내 7.2%로 나타났으며 20.5%는 '여건이 허락하면 계속 머무르겠다' 그리고 30.4%는 '영주권을 받아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장기 체류 전망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입과정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표 2-2-11> 외국인력 체류 전망

(단위 : 명, %)

| | | 사례수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이후 | 정착을 원함 |
|----------|--------------|-----|------|------|------|------|------|------|------------|-----------|
| | | 796 | 2.0 | 17.7 | 29.4 | 15.1 | 5.8 | 5.0 | 4.9 | 20.1 |
| 입국 연도 | 2004. 9.이전 | 58 | 3.4 | 29.3 | 22.4 | 19.0 | 3.4 | 5.2 | 1.7 | 15.5 |
| | 2004.9 ~2005 | 126 | 0.8 | 11.1 | 37.3 | 12.7 | 3.2 | 5.6 | 4.8 | 24.6 |
| | 2006 | 127 | 5.5 | 13.4 | 18.1 | 26.8 | 7.1 | 0.8 | 7.1 | 21.3 |
| | 2007 | 116 | 1.7 | 43.1 | 12.1 | 2.6 | 7.8 | 3.4 | 5.2 | 24.1 |
| | 2008 | 193 | 0.5 | 10.9 | 48.7 | 7.3 | 7.3 | 8.3 | 4.7 | 12.4 |
| | 2009 | 90 | 0.0 | 8.9 | 20.0 | 38.9 | 5.6 | 7.8 | 5.6 | 13.3 |
| | 잘모름 | 86 | 3.5 | 16.3 | 29.1 | 8.1 | 3.5 | 2.3 | 3.5 | 33.7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9), 「외국인력 실태조사」.

바. 중개기관을 통한 기능의 장점-송출 비용의 축소

입국비용에 대한 조사는 국가별 운영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가별 비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또한 질문지의 형태, 번역된 설문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 그리고 송출 비용을 정확히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확한 조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국 비용에 대한 질문을 ① 송출기관 및 중개기관에 지불한 금액 ②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 지불한 금액 ③ 한국에 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총액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그런데 ①과 ② 그리고 ③에 대한 응답수가 달라 여기서는 ①과 ②의 응답결과만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2-2-12>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설문문항을 통해 입국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으로 올수록 입국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런 점에서 고용허가제의 도입 및 이후의 송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실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본 실태조사 이전에 수행된 조사에서도 송출 비용을 보고하고 있는데 유길상 외(2001년)의 조사에서는 산업연수생 453만 원, 불법취업자는 629만 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유길상 외(2007년)의 조사에서는 101만 원으로 보고되고 있고, 중소기업연구원(2008년)의 조사에서는 공식 비용과 비공식 비용을 합한 입국 비용이 평균 162.27만 원으로 보고되고 있다.⁶⁾ 이러한 조사 결과와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질문 항목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고,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즉 입국한 지 얼마되지 않은 인력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조사 비용에 대한 ‘움츠림’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와 상담소에 내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무튼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입국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포인력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을 질문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동포인력들의 경우 이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낮아 유의한 결과를 얻기가 곤란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송출기관이나 여행사 및 중개기관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 98명이 응답하였으며, 평균 지불 금액은 398만원이고 정부기관에 지불한 평균 금액은 156.17만원(100명 응답)으로 나

6) 유길상·이규용(20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외(2007),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백필규 외(2008),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을 위한 수급모델 개발 및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노동부 등을 참조.

<표 2-2-12> 한국에 오기 위해 지불한 금액

| | | 송출기관 및 중개기관에 지불 | | 정부기관에 지불 | |
|---------|---------------|-----------------|------------|----------|------------|
| | | 사례수 | 평균 금액(만 원) | 사례수 | 평균 금액(만 원) |
| 전 체 | | 389 | 307.12 | 388 | 168.85 |
| 입국 연도 | 2004. 9. 이전 | 29 | 535.86 | 23 | 341.04 |
| | 2004. 9.~2005 | 64 | 304.20 | 62 | 132.47 |
| | 2006 | 60 | 437.35 | 65 | 254.69 |
| | 2007 | 47 | 229.29 | 54 | 142.57 |
| | 2008 | 105 | 236.35 | 118 | 142.81 |
| | 2009 | 48 | 261.97 | 50 | 129.47 |
| | 무응답 | 36 | 279.19 | 16 | 117.38 |
| 현재 체류자격 | 합법체류 | 200 | 256.00 | 218 | 145.26 |
| | 불법체류 | 145 | 408.26 | 140 | 220.72 |
| | 무응답 | 44 | 206.16 | 30 | 98.23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9), 「외국인력 실태조사」.

타났다. 입국 연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방문취업제 이전에 입국하였다고 응답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송출기관이나 여행사 및 중개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평균 651.54만원(52명 응답)이고 정부기관에 지불한 평균 금액은 134.21만원(57명 응답)으로 나타났으나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에는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정착이 우회 경로를 통한 비정상적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송출기관을 통한 외국인력의 공급은 우수 외국인력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송출기관에 공급되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고용부담금 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고비용 문제는 고생산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고생산성 외국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

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⁷⁾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형태를 회사 내 기숙사, 회사 내 비주거용 간이시설, 회사 소유 일반주택, 회사소유 아닌 일반주택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업체수는 300개이나 일부 회사의 경우 복수 응답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 응답업체수는 조사대상업체 300개를 상회한다. 전체 조사대상업체 중 사내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174개사(58.0%)로 나타났다. 회사 내 비주거용 간이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21.0%인 63개사이며, 회사 소유 일반주택에 외국인력이 거주하도록 하고 있는 회사는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6.0%인 18개사이다. 전체 조사대상업체 중 회사 소유 아닌 일반주택 거주자에 외국인력이 주거하는 기업은 전체 조사대상업체의 19.7%인 59개사로 조사되었다.

2. 전문외국인력의 사회경제적 특성⁸⁾

<표 2-2-13>는 비자 유형별 전문외국인력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7월 현재 전문외국인력은 총 42,336명이며, 이 중 회화지도가 23,22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특정활동(9,560명)이다.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표 2-2-14>부터는 법무부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전문외국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2-2-13> 비자 유형별 전문외국인력 현황

| | 2000 | | | 2010. 7. | | |
|-----------|--------|--------|-------|----------|--------|-----------|
| | 총체류자 | 합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 총체류자 | 합법체류자 | 불법체류자(전체) |
| 전체 | 17,878 | 17,000 | 878 | 42,366 | 39,977 | 2,389 |
| 교수(E-1) | 725 | 718 | 7 | 2,192 | 2,188 | 4 |
| 회화지도(E-2) | 6,831 | 6,671 | 160 | 23,225 | 23,119 | 106 |
| 연구(E-3) | 834 | 805 | 29 | 2,163 | 2,149 | 14 |
| 기술지도(E-4) | 363 | 344 | 19 | 250 | 245 | 5 |
| 전문직업(E-5) | 411 | 398 | 13 | 574 | 554 | 20 |
| 예술홍행(E-6) | 5,243 | 4,747 | 496 | 4,402 | 2,983 | 1,419 |
| 특정활동(E-7) | 3,471 | 3,317 | 154 | 9,560 | 8,739 | 821 |

7) 유길상·이규용(2008.12),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중앙회.

8) 박영범(2010)에서 발췌.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2008년 9월말 현재 전문인력의 비자 유형별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8년 9월말 현재 전체 전문인력은 9,100명이며 비자 유형별로는 E-3(연구) 2,096명, E-4(기술지도) 154명, E-5(전문직업) 476명, E-7(특정활동) 6,365명으로 나타나 특정활동과 연구분야 전문인력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문인력의 연령을 보면 30~40대가 대부분이며 50세 이상은 많지 않다. 비자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E-3와 E-7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E-4와 E-5는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E-4는 50세 이상이 전체 비자 취득자의 50.0%에 이르고 E-5는 50대가 53.4%. 이러한 차이는 자격 특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전체 전문인력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나타났고 비자유형별로는 E-3(연구), 37.4세, E-4(기술지도), 49.1세 E-5(전문직업), 50.6세, E-7(특정활동) 36.4세로 계산된다.

<표 2-2-14> 비자 유형별 전문인력의 연령 및 입국년 분포

(단위 : %)

| | | 2005 이전 | 2005 | 2006 | 2007 | 2008 | 전체 | |
|-----|--------|---------|------|-------|-------|-------|-------|------|
| | | | | | | | 인원 | 비율 |
| E-3 | 30세 미만 | 13.2 | 27.5 | 28.7 | 25.1 | 25.9 | 490 | 23.4 |
| | 30대 | 47.2 | 47.5 | 52.2 | 52.6 | 49.8 | 1,050 | 50.1 |
| | 40대 | 20.1 | 15.4 | 10.7 | 12.3 | 13.1 | 301 | 14.4 |
| | 50세 이상 | 19.5 | 9.6 | 8.4 | 9.9 | 11.3 | 255 | 12.2 |
| | 소계 | 508 | 240 | 429 | 513 | 406 | 2,096 | |
| E-4 | 30세 미만 | 0.0 | 12.5 | 0.0 | 7.5 | 5.3 | 8 | 5.2 |
| | 30대 | 25.0 | 12.5 | 8.3 | 17.0 | 22.8 | 30 | 19.5 |
| | 40대 | 16.7 | 25.0 | 16.7 | 35.8 | 28.1 | 43 | 27.9 |
| | 50세 이상 | 58.3 | 50.0 | 75.0 | 39.6 | 43.9 | 73 | 47.4 |
| | 소계 | 24 | 8 | 12 | 53 | 57 | 154 | |
| E-5 | 30세 미만 | 1.2 | 3.4 | 0.0 | 0.9 | 1.0 | 5 | 1.1 |
| | 30대 | 1.2 | 0.0 | 3.0 | 17.4 | 9.1 | 32 | 6.7 |
| | 40대 | 26.2 | 24.1 | 37.3 | 43.1 | 58.6 | 182 | 38.2 |
| | 50세 이상 | 71.5 | 72.4 | 59.7 | 38.5 | 31.3 | 257 | 54.0 |
| | 소계 | 172 | 29 | 67 | 109 | 99 | 476 | |
| E-7 | 30세 미만 | 16.0 | 27.7 | 31.9 | 38.2 | 37.5 | 2,060 | 32.4 |
| | 30대 | 39.1 | 43.9 | 45.4 | 43.8 | 41.7 | 2,743 | 43.1 |
| | 40대 | 20.3 | 18.1 | 14.9 | 10.2 | 12.2 | 885 | 13.9 |
| | 50세 이상 | 24.6 | 10.3 | 7.8 | 7.7 | 8.6 | 677 | 10.6 |
| | 소계 | 921 | 697 | 1,358 | 2,235 | 1,154 | 6,365 | |

주 : 입국년 정보 부재(9명)로 비자유형별 전체 인원 상이.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표 2-2-15> 비자 유형별 전문인력의 주요 출신국

(단위 : 명, %)

| E-3 | | | E-4 | | | E-5 | | |
|---------|-------|-------|---------|-----|-------|----------|-----|-------|
| 국 가 | 인원 | 비율 | 국 가 | 인원 | 비율 | 국 가 | 인원 | 비율 |
| 인 도 | 575 | 27.4 | 일 본 | 25 | 16.2 | 미 국 | 64 | 13.4 |
| 중 국 | 431 | 20.5 | 러시아(연방) | 19 | 12.3 | 캐 나 다 | 45 | 9.5 |
| 일 본 | 302 | 14.4 | 필 리 핀 | 17 | 11.0 | 인도네시아 | 40 | 8.4 |
| 러시아(연방) | 206 | 9.8 | 독 일 | 16 | 10.4 | 브 라 질 | 35 | 7.4 |
| 한국계 중국인 | 98 | 4.7 | 미 국 | 15 | 9.7 | 오스트레일리아 | 33 | 6.9 |
| 미 국 | 59 | 2.8 | 프 랑 스 | 15 | 9.7 | 필 리 핀 | 30 | 6.3 |
| 우크라이나 | 47 | 2.2 | 영 국 | 11 | 7.1 | 영 국 | 26 | 5.5 |
| 베 트 남 | 46 | 2.2 | 인 도 | 5 | 3.2 | 말레이시아 | 26 | 5.5 |
| 방글라데시 | 31 | 1.5 | 덴 마 크 | 4 | 2.6 | 러시아(연방) | 22 | 4.6 |
| 프 랑 스 | 24 | 1.1 | 중 국 | 3 | 1.9 | 타 이 완 | 17 | 3.6 |
| 벨 로 루 시 | 22 | 1.0 | 터 키 | 3 | 1.9 | 불 가 리 아 | 14 | 2.9 |
| 독 일 | 21 | 1.0 | 오스트리아 | 3 | 1.9 | 독 일 | 11 | 2.3 |
| 네 팔 | 18 | 0.9 | 우크라이나 | 2 | 1.3 | 멕 시 코 | 11 | 2.3 |
| 파 키 스 탄 | 18 | 0.9 | 인도네시아 | 2 | 1.3 | 벨 기 에 | 9 | 1.9 |
| 우즈베키스탄 | 17 | 0.8 | 캐 나 다 | 2 | 1.3 | 남아프리카공화국 | 9 | 1.9 |
| 기타 | 183 | 8.7 | 기타 | 12 | 7.8 | 기타 | 84 | 17.6 |
| 전 체 | 2,098 | 100.0 | 전 체 | 154 | 100.0 | 전 체 | 476 | 100.0 |

| E-7 | | | 전체 | | |
|---------|-------|-------|---------|-------|-------|
| 국 가 | 인원 | 비율 | 국 가 | 인원 | 비율 |
| 중 국 | 2,348 | 36.8 | 중 국 | 2,782 | 30.6 |
| 미 국 | 788 | 12.4 | 인 도 | 1,081 | 11.9 |
| 인 도 | 500 | 7.8 | 미 국 | 926 | 10.2 |
| 일 본 | 378 | 5.9 | 일 본 | 706 | 7.8 |
| 필 리 핀 | 337 | 5.3 | 필 리 핀 | 401 | 4.4 |
| 캐 나 다 | 203 | 3.2 | 러시아(연방) | 367 | 4.0 |
| 베 트 남 | 198 | 3.1 | 한국계 중국인 | 290 | 3.2 |
| 한국계 중국인 | 192 | 3.0 | 캐 나 다 | 262 | 2.9 |
| 영 국 | 141 | 2.2 | 베 트 남 | 244 | 2.7 |
| 타 이 | 141 | 2.2 | 영 국 | 186 | 2.0 |
| 러시아(연방) | 120 | 1.9 | 타 이 | 152 | 1.7 |
| 오스트레일리아 | 83 | 1.3 | 오스트레일리아 | 120 | 1.3 |
| 프 랑 스 | 73 | 1.1 | 독 일 | 119 | 1.3 |
| 독 일 | 71 | 1.1 | 프 랑 스 | 116 | 1.3 |
| 네 팔 | 63 | 1.0 | 인도네시아 | 105 | 1.2 |
| 기타 | 736 | 11.6 | 기타 | 1,243 | 13.7 |
| 전 체 | 6,372 | 100.0 | 전 체 | 9,100 | 100.0 |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비자 유형별 출신국 분포를 보면 전문인력은 100여개 국가로부터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몇몇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현저히 높다.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체 전문인력의 30.6%(2,782명)를 차지한다. 이어서 인도(11.9%), 미국(10.2%), 일본

(7.8%), 필리핀(4.4%)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국가 출신 전문인력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비자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E-3는 인도가 2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순이다. 그러나 선진국 출신의 전문인력 비중은 높지 않고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구 사회주의 국가 출신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E-4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기술선진국 출신 비중이 높다.

<표 2-2-16> 비자 유형별 불법체류자의 국적별 비중

(단위 : %, 명)

| E-3 | | E-4 | | E-5 | | E-7 | |
|---------|------|-------|------|---------|------|---------|------|
| 인도 | 32.5 | 필리핀 | 44.4 | 캐나다 | 20.0 | 중국 | 75.8 |
| 중국 | 24.7 | 인도 | 22.2 | 미국 | 12.0 | 한국계 중국인 | 5.2 |
| 러시아연방 | 8.4 | 독일 | 11.1 | 독일 | 8.0 | 우즈베키스탄 | 3.5 |
| 일본 | 7.8 | 러시아연방 | 11.1 | 브라질 | 8.0 | 필리핀 | 2.0 |
| 방글라데시 | 4.2 | 미국 | 11.1 | 오스트레일리아 | 8.0 | 미국 | 1.7 |
| 한국계 중국인 | 4.2 | | | 필리핀 | 8.0 | 베트남 | 1.7 |
| | | | | | | 인도 | 1.7 |
| | | | | | | 타이 | 1.7 |
| 전체 | 166 | 전체 | 9 | 전체 | 25 | 전체 | 343 |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비자 유형별 불법체류자 국적을 살펴보면 E-3의 경우 전체 불법체류자 166명 중 인도와 중국이 각각 32.5%, 24.7%를 차지하여 불법체류자의 절반 이상을 2개 국가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연방과 일본도 각각 8.4%, 7.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비자 유형별 평균 체류기간을 보면, 전문인력의 평균 체류기간은 29.0개월이다. 비자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E-5가 48.5개월로 평균 체류기간이 가장 길고, 다른 비자는 큰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E-5의 30세 미만 집단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체류기간이 긴 편이다.

전문인력 고용사업장을 고용보험사업장 DB와 연결해 분석하였으며 정보가 연결된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하여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전문인력의 24.3%가 음식숙박업에 고용되어 있고, 제조업 21.2%, 사회서비스업 16.0%, 교육서비스업 14.2% 순으로 이들 4개 업종이 전체 전문인력의 75.7%를 점하고 있음. 나머지 업종은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비자 유형별로 취업업종을 비교해 보면 E-3는 제조업이 38.7%로 가장 많

<표 2-2-17> 비자 유형별 평균 연령 및 평균 체류기간

(단위 : 개월)

| | | E-3 | E-4 | E-5 | E-7 | 전체 |
|-------|---------|------|-------|-------|------|------|
| 연령 | 30세 미만 | 25.1 | 13.3 | 155.7 | 20.7 | 21.6 |
| | 30대 | 28.6 | 28.8 | 14.7 | 24.5 | 25.6 |
| | 40대 | 35.1 | 18.9 | 32.6 | 32.9 | 33.0 |
| | 50세 이상 | 42.2 | 32.5 | 60.2 | 42.8 | 45.7 |
| 불법 여부 | 불법 | 28.8 | 42.4 | 71.6 | 31.7 | 32.9 |
| | 합법 | 31.0 | 26.5 | 47.2 | 26.7 | 28.7 |
| 입국 연도 | 2005 이전 | 68.2 | 109.1 | 104.9 | 77.4 | 77.9 |
| | 2005 | 38.9 | 38.7 | 37.7 | 37.7 | 38.0 |
| | 2006 | 25.9 | 27.3 | 26.6 | 26.4 | 26.3 |
| | 2007 | 14.3 | 13.5 | 14.7 | 14.8 | 14.7 |
| | 2008 | 5.3 | 4.5 | 5.7 | 4.5 | 4.7 |
| 전체 | | 30.8 | 27.5 | 48.5 | 26.9 | 29.0 |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사업서비스업(25.1%), 교육서비스업(2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2.0%) 순으로 나타나 E-3비자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업체는 몇 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E-3비자는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E-4는 제조업(53.8%)과 사업서비스업(31.9%) 비중이 85.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업종은 1~2명에 불과하다. E-5는 98.5%가 운송업체 취업자이다. E-5 비자 취득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취업한 항공기 조종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5비자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 조종사만이 활용하고 나머지 전문자격증 취득자의 활용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E-7은 음식숙박업이 35.4%로 가장 많고, 제조업(16.2%), 사업서비스업(13.8%), 교육서비스업(13.3%) 순이다. E-7비자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성격의 직종이 혼재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요리사의 활용 정도가 높다.

<표 2-2-18> 전문인력 고용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단위 : 명, %)

| | E-3 | | E-4 | | E-5 | | E-7 | | 전 체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농업 및 임업 | 1 | 0.1 | 0 | 0.0 | 0 | 0.0 | 0 | 0.0 | 1 | 0.0 |
| 어업 | 0 | 0.0 | 0 | 0.0 | 0 | 0.0 | 3 | 0.1 | 3 | 0.0 |
| 광업 | 0 | 0.0 | 0 | 0.0 | 0 | 0.0 | 1 | 0.0 | 1 | 0.0 |
| 제조업 | 753 | 38.7 | 64 | 53.8 | 0 | 0.0 | 903 | 16.2 | 1,720 | 21.2 |
| 전기가스·수도사업 | 3 | 0.2 | 1 | 0.8 | 0 | 0.0 | 5 | 0.1 | 9 | 0.1 |
| 건설업 | 24 | 1.2 | 8 | 6.7 | 0 | 0.0 | 357 | 6.4 | 389 | 4.8 |
| 도소매업 | 16 | 0.8 | 2 | 1.7 | 0 | 0.0 | 333 | 6.0 | 351 | 4.3 |
| 숙박·음식점업 | 0 | 0.0 | 1 | 0.8 | 0 | 0.0 | 1,970 | 35.4 | 1,971 | 24.3 |
| 운수업 | 1 | 0.1 | 0 | 0.0 | 465 | 98.5 | 114 | 2.0 | 580 | 7.2 |
| 통신업 | 0 | 0.0 | 0 | 0.0 | 0 | 0.0 | 25 | 0.4 | 25 | 0.3 |
| 금융·보험업 | 0 | 0.0 | 0 | 0.0 | 0 | 0.0 | 165 | 3.0 | 165 | 2.0 |
| 부동산임대업 | 0 | 0.0 | 0 | 0.0 | 0 | 0.0 | 33 | 0.6 | 33 | 0.4 |
| 사업서비스업 | 488 | 25.1 | 38 | 31.9 | 0 | 0.0 | 769 | 13.8 | 1,295 | 16.0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 | 233 | 12.0 | 4 | 3.4 | 0 | 0.0 | 30 | 0.5 | 267 | 3.3 |
| 교육서비스업 | 413 | 21.2 | 0 | 0.0 | 0 | 0.0 | 739 | 13.3 | 1,152 | 14.2 |
| 보건·사회복지사업 | 6 | 0.3 | 0 | 0.0 | 7 | 1.5 | 6 | 0.1 | 19 | 0.2 |
|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 1 | 0.1 | 0 | 0.0 | 0 | 0.0 | 65 | 1.2 | 66 | 0.8 |
|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 5 | 0.3 | 1 | 0.8 | 0 | 0.0 | 51 | 0.9 | 57 | 0.7 |
| 전체 | 1,944 | 100 | 119 | 100 | 472 | 100 | 5,569 | 100 | 8,104 | 100.0 |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전문인력 고용사업체의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가 전체 전문인력의 40.2%를 차지하는 등 43.7%가 100인 미만 사업체에 취업 중이다. 반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취업한 자도 24.8%로 나타나는 등 36.6%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E-3는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취업자가 60.2%에 이르고, E-4 역시 74.7%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E-7을 제외한 전문인력 대부분이 사업장 규모가 큰 업체에 고용되어 있지만, E-7만 음식숙박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관계로 30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2-2-19> 비자 유형별 취업사업장 규모

(단위 : 명, %)

| | E-3 | | E-4 | | E-5 | | E-7 | | 전체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30인 미만 | 212 | 11.9 | 11 | 9.9 | 0 | 0.0 | 2,840 | 53.8 | 3,063 | 40.2 |
| 30~99인 | 207 | 11.6 | 2 | 1.8 | 1 | 0.2 | 819 | 15.5 | 1,029 | 13.5 |
| 100~299인 | 292 | 16.3 | 15 | 13.5 | 2 | 0.4 | 430 | 8.2 | 739 | 9.7 |
| 300~999인 | 437 | 24.5 | 43 | 38.7 | 131 | 29.3 | 291 | 5.5 | 902 | 11.8 |
| 1,000인 이상 | 638 | 35.7 | 40 | 36.0 | 313 | 70.0 | 895 | 17.0 | 1,886 | 24.8 |
| 전체 | 1,786 | 100.0 | 111 | 100.0 | 447 | 100.0 | 5,275 | 100.0 | 7,619 | 100.0 |

주 : 불법체류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DB」.

끝으로 E-7 비자 취득자의 세부 직종별 분포를 보면 주방장 및 조리사가 2,107명으로 전체 취득자의 33.1%를 차지하며, 이어서 외국학교 교사(12.6%),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 분야 공학분야 전문가(5.0%),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4.3%), 플랜트 공학 기술자와 해외 영업원(3.1%) 순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7비자의 경우 매우 다양한 유형의 직종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E-7 비자가 국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기 때문일 것, 즉 해당 분야 관리자에서부터 기술관련 전문가, 조리사, 디자이너, 어학 분야(교사, 통역가)까지 직무 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그만큼 동일한 비자유형임에도 전문성의 정도가 이질적인 직업이 존재한다는 의미한다.

<표 2-2-20> E7 비자 취득자의 주요 직종명

(단위 : 명, %)

| 직종명 | 인원 | 비율 | 직종명 | 인원 | 비율 |
|--------------------------|-------|------|----------------|-------|-------|
| 주방장 및 조리사 | 2,107 | 33.1 | 경제지원 관리자 | 100 | 1.6 |
|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교사 | 804 | 12.6 | 통신공학 기술자 | 97 | 1.5 |
|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 공학전문가 | 318 | 5.0 | 상품기획 전문가 | 91 | 1.4 |
|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 277 | 4.3 |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82 | 1.3 |
| 플랜트 공학 기술자 | 196 | 3.1 | 금융 및 보험 전문가 | 81 | 1.3 |
| 해외 영업원 | 196 | 3.1 | 판매사무원 | 78 | 1.2 |
| 번역가, 통역가 | 192 | 3.0 | 기계공학 기술자 | 77 | 1.2 |
| 전자공학 기술자 | 149 | 2.3 |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 74 | 1.2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 109 | 1.7 | 기타 교육관련 전문가 | 62 | 1.0 |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 107 | 1.7 | 경영 및 진단 전문가 | 61 | 1.0 |
|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 105 | 1.6 | 보험 및 금융관리자 | 61 | 1.0 |
| | | | 전체 | 6,372 | 100.0 |

주 : E-7비자만 분석함.
 자료 : 법무부, 「외국인력 리스트DB」.

3. 유학생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 외국인 유학생 추이

우수 해외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역시 우수 유학생 유치에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2004년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2003년 12,314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학생이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 75,850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연평균 35% 이상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세가 뚜렷한 것은 정부·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노력, 저렴한 유학 경비, 한류 등의 영향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유학생 비율이 전체의 92% 이상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비율이 높은 것은 한류 및 경제성장으로 인해 높아진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학별 유학생 유치노력 가속화, 국내 유학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지원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향후에도 외국인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2-21> 외국인 유학생 추이

(단위 : 명, %)

| | 아시아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북미 | 중남미 | 유럽 | 전체 |
|------|--------|------|-------|-------|-----|-------|--------|
| 2003 | 10,436 | 112 | 128 | 723 | 127 | 788 | 12,314 |
| | 84.7 | 0.9 | 1.0 | 5.9 | 1.0 | 6.4 | 100.0 |
| 2004 | 14,563 | 174 | 139 | 925 | 197 | 834 | 16,832 |
| | 86.5 | 1.0 | 0.8 | 5.5 | 1.2 | 5.0 | 100.0 |
| 2005 | 19,969 | 184 | 145 | 1,105 | 209 | 914 | 22,526 |
| | 88.6 | 0.8 | 0.6 | 4.9 | 0.9 | 4.1 | 100.0 |
| 2006 | 29,227 | 211 | 125 | 1,717 | 200 | 1,077 | 32,557 |
| | 89.8 | 0.6 | 0.4 | 5.3 | 0.6 | 3.3 | 100.0 |
| 2007 | 45,622 | 291 | 142 | 1,692 | 240 | 1,283 | 49,270 |
| | 92.6 | 0.6 | 0.3 | 3.4 | 0.5 | 2.6 | 100.0 |
| 2008 | 59,375 | 397 | 178 | 2,165 | 278 | 1,559 | 63,952 |
| | 92.8 | 0.6 | 0.3 | 3.4 | 0.4 | 2.4 | 100.0 |
| 2009 | 70,133 | 584 | 221 | 2,594 | 395 | 1,923 | 75,850 |
| | 92.5 | 0.8 | 0.3 | 3.4 | 0.5 | 2.5 | 100.0 |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나.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자료는 법무부의 출입국통계 마이크로데이터이다.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유학비자 취득자의 성, 출생년월일, 비자 유형, 국적, 대학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유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최종 학력과 대학재학 경험자의 경우 전공 등의 정보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세부 유학비자 유형별 연령, 국적, 대학 소재지 등의 정보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입국 연도별 유학생의 출신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 지역 출신자가 93.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입국 연도별로는 2007~2010년 입국자가 85.7%에 달하고 있다. 출신국별로 구분해 보면 중국이 12,102명(73.9%)으로 가장 많고 여기에 한국계 중국인(632명)을 더할 경우 중국 출신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77.8%에 이른다. 이어서 베트남(3.5%), 몽골(3.4%), 일본(1.8%), 미국(1.2%) 순이다.

<표 2-2-22> 2010년 9월 현재 유학생(D2)의 출신지역 및 입국년 분포

(단위 : 명, %)

| | | 출신 지역 | | | | | | 전 체 |
|-----|-------|--------|------|------|-----|-----|-------|----------------|
| | |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 | 북미 | 중남미 | 오세아니아 | |
| 입국년 | 06 이전 | 94.6 | 1.0 | 2.9 | 1.4 | 0.1 | 0.0 | 790 (4.8) |
| | 06 | 98.4 | 0.1 | 1.0 | 0.3 | 0.1 | 0.1 | 1,536 (9.4) |
| | 07 | 97.8 | 0.3 | 1.4 | 0.4 | 0.1 | 0.0 | 3,249 (19.8) |
| | 08 | 97.4 | 0.8 | 1.1 | 0.2 | 0.4 | 0.0 | 4,129 (25.2) |
| | 09 | 95.3 | 1.0 | 2.3 | 0.9 | 0.5 | 0.1 | 3,416 (20.9) |
| | 10 | 80.2 | 1.8 | 11.7 | 4.8 | 1.1 | 0.3 | 3,243 (19.8) |
| | 미상 | 85.0 | 0.0 | 5.0 | 5.0 | 5.0 | 0.0 | 20 (0.1) |
| | 전 체 | 15,331 | 145 | 591 | 225 | 77 | 14 | 16,383 (100.0) |
| | | 93.6 | 0.9 | 3.6 | 1.4 | 0.5 | 0.1 | |

유학생의 세부 비자 범주별 연령 분포는 아래와 같다. 전문대 재학중인 유학생은 7.2%에 불과하고 4년제 대학 유학생이 64.4%에 이른다. 대학원과정 유학생은 22.6%이며, 방문학생도 5.7%에 달하고 있다. 유학생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비자 특성상 20대가 거의 대부분이며 박사과정과 학술연구기관 유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30대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2-2-24>은 교육과정별 소재지 대학 분포를 보여주는데 유학생의 소재 대학을 보면 서울이

<표 2-2-23> 세부범주별 연령분포

(단위 : 세, %)

| | | 평균연령 | 20세 미만 | 20대 | 30대 | 40대 | 50세 이상 | 전체 |
|----------|--------|------|--------|------|------|------|--------|----------------|
| 비자 유형 | 전문학사과정 | 23.8 | 0.2 | 97.9 | 1.8 | 0.2 | 0.0 | 1,185 (7.2) |
| | 학사과정 | 23.3 | 0.2 | 98.9 | 0.7 | 0.1 | 0.0 | 10,550 (64.4) |
| | 석사과정 | 27.3 | 0.0 | 84.4 | 12.8 | 2.5 | 0.2 | 2,897 (17.7) |
| | 박사과정 | 31.8 | 0.0 | 44.0 | 48.2 | 6.7 | 1.1 | 795 (4.9) |
| | 학술연구기관 | 31.2 | 0.0 | 50.0 | 38.9 | 11.1 | 0.0 | 18 (0.1) |
| | 교환학생 | 22.6 | 0.3 | 98.9 | 0.7 | 0.0 | 0.0 | 938 (5.7) |
| 출신 지역 | 아시아 | 24.4 | 0.2 | 94.0 | 4.9 | 0.8 | 0.1 | 15,331 (93.6) |
| | 아프리카 | 31.1 | 0.0 | 49.7 | 39.3 | 9.0 | 2.1 | 145 (0.9) |
| | 유럽 | 24.5 | 0.2 | 93.4 | 5.8 | 0.5 | 0.2 | 591 (3.6) |
| | 북미 | 24.3 | 0.0 | 93.8 | 4.0 | 0.9 | 1.3 | 225 (1.4) |
| | 중남미 | 26.2 | 0.0 | 87.0 | 13.0 | 0.0 | 0.0 | 77 (0.5) |
| | 오세아니아 | 27.2 | 0.0 | 71.4 | 21.4 | 0.0 | 7.1 | 14 (0.1) |
| 전 체 | | 24.4 | 0.2 | 93.6 | 5.3 | 0.9 | 0.1 | 16,383 (100.0) |

<표 2-2-24> 세부 범주별 유학중인 학교의 소재지

(단위 : 명, %)

| | 서울 | 경인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기타 | 전체 |
|--------|------|------|------|------|------|------|-----|--------|
| 전문학사과정 | 5.1 | 11.6 | 15.8 | 16.5 | 30.0 | 13.3 | 7.7 | 1,185 |
| 학사과정 | 26.3 | 11.4 | 20.8 | 14.8 | 11.3 | 11.6 | 3.8 | 10,550 |
| 석사과정 | 39.8 | 14.9 | 14.2 | 8.8 | 7.1 | 11.8 | 3.4 | 2,897 |
| 박사과정 | 28.1 | 16.6 | 16.4 | 11.9 | 9.2 | 14.2 | 3.6 | 795 |
| 학술연구기관 | 66.7 | 11.1 | 11.1 | 0.0 | 0.0 | 11.1 | 0.0 | 18 |
| 교환학생 | 56.7 | 10.8 | 9.9 | 3.8 | 7.6 | 6.8 | 4.4 | 938 |
| 전 체 | 29.0 | 12.2 | 18.4 | 13.1 | 11.6 | 11.7 | 4.1 | 16,383 |

29.0%로 가장 많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41.2%에 이르고 있다. 이어서 충청권 18.4%, 영남권 23.3%, 호남권 13.1% 순으로 나타나 지방 소재 대학에 유학중인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편, 법무부가 관리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정보공시센터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법무부의 유학생정보시스템이 유학생 개인별 학업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

장 유용한 DB이지만 어떤 정보가 입력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 규정(학교 등의 장의 의무)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이 유학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변동사유는 입학 또는 연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한 때와, 제적·연수 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학교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정보(학과, 학번, 출석률, 취득학점, 성적 등)를 매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별(전문학사, 학사 등), 유학중단 사유별(미입학, 자퇴, 휴학, 제적 등)의 현황을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까지(연 4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의 자료는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등재되므로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는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및 대학별 집계 자료이므로 활용에 제한이 따른다.

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활동

유학생 비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야간대학원 포함)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체류자격과 병행하여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체류자격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유학생이 최소한의 유학 경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생 신분 및 유학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활동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허용한 것이다. 시간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래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격요건은 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1학기 이상의 수학과정을 마친 자 ② 정규학위(석·박사 포함)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준비 중인 자이다. 허용 범위는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기간 중 무제한)이며, 아르바이트 장소(근무처)는 2개로 한정되고, 체류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 1년간 허용(계속 연장가능)된다. 취업허용 분야는 ①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②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③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④ 취업 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이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분야는 취업이 제한된다. ① 산업기밀보호 차원에서 취업 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 ② 사행행위 분야, 유흥집객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③ 개인과의 교습행위 ④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 장관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이다.

유학(D-2)자격 소지자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를 받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시 통고처분 후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2차 위반시 통고처분 후 유학기간중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위반시 통고처분 후 유학자격이 취소된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자나 지정된 아르바이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며,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다가 적발된 고용주도 처벌된다.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전업 형태로 취업하다 적발된 경우는 일반불법취업자 처벌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라.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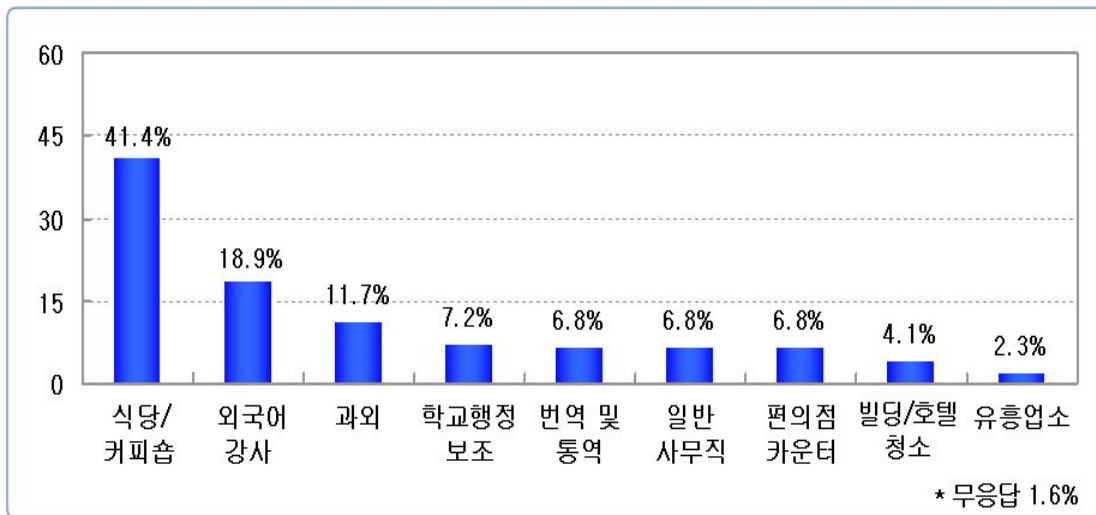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 중 얼마나 많은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지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를 통해 집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의 발주로 2009년 실시된 「외국인유학생 생활실태조사」를 기초로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 비율은 18.4%로 나타났고, 몽골(27.9%), 중국(21.5%), 한국계 중국인(17.8%)순으로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았다. 아르바이트 종류를 보면 식당/커피숍이 많고, 일부는 법적으로 금지된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아르바이트 시간은 주당 4시간 이하(29.7%)와 매일 4시간 이하(27.9%)가 많았으며, 매일 4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도 15.8%

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수준은 40만원 미만이 52.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만~80만원(39.2%)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바이트 신고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64.4%로 나타났지만 실제 신고를 한 경우는 51.0%로 그쳐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신고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하기 귀찮거나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고로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지도교수 추천서와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를 통해 아르바이트처의 업체명, 업종, 소재지, 근무시간, 시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1] 유학생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종류



자료 : 법무부(2009), 「외국인유학생 생활실태조사결과보고서」.

마. 외국인 유학생 관련 DB 개선방안

해외 우수인력 유치·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갖는 가치는 매우 크다. 선진국들 역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외국 유학생 유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외국 유학생은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2009)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보면 귀국을 하겠다는 응답이 53.4%로 가장 높고, 상급학교 진학(23.1%), 한국내 취업(14.7%) 순으로 나타나 유학생 중 일부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상당수가 한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우리나라 역시 인구고령화 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외국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행 유학생 유치와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활용 측면에서 유학생 관련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법무부와 교과부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관련 DB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DB상으로는 유학생의 인적 특성과 유학중인 학교의 특성만 파악할 수 있는데 법무부 출입국통계 자료와 유학생정보시스템,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졸업후 취업자격 취득자의 취득자격 및 취업사업장 특성을 연결해 우리나라의 유학생 유치정책이 우수인력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유학생이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유학생들이 국내법을 준수토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도교수 추천서와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의 서류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업체명 외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 코드(표준산업코드), 우편번호, 직종 등을 기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2-2] 시간제취업 지도교수 추천서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도교수 추천서 | | | | |
|---|------------------|-----------|-------------|-----------|
| 대상자 | 성명 | | 외국인 등록번호 | |
| | 학과(전공) | | 이수학기 | |
| | 전화번호 | | e-mail | |
| 취업예정 근무처 | 업체명 | | 업종 | |
| | 주소 | | | |
| | 고용주 | (인 또는 서명) | 전화번호 | |
| | 취업기간 | | 급여(시급) | |
| | 근무시간 | 평일 : | | 토·일요일 : |
| <p>위 유학생은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도 학업(또는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추천합니다.</p> <p>20 . . .</p> | | | | |
| 지도교수 | 소속 및 직위 | | | |
|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연락처 | |
| <p>○○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p> | | | | |
| 유학생 담당자 확인란 | 소속 및 직위 (연락처) | | 성명 | (인 또는 서명) |

[그림 2-2-3]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법 부 부 MINISTRY OF JUSTICE | | 신 청 서(신 고 서) APPLICATION FORM(REPORT FORM) | |  출입국·외국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 |
| 일 무 선 대 SELECT APPLICATION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⑥ 체류자격외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input type="checkbox"/> | PHOTO 35mm×45mm 외국인등록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 |
| <input type="checkbox"/> ② 등록증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⑦ 근무처변경·추가허가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 <input type="checkbox"/> | | |
| <input type="checkbox"/> ③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⑧ 재입국허가(단수·복수) REENTRY (SINGLE, MULTIPLE) | <input type="checkbox"/> | | |
| <input type="checkbox"/> ④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⑨ 체류지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input type="checkbox"/> | | |
| <input type="checkbox"/> ⑤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⑩ 등록사항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 <input type="checkbox"/> | | |
| 공 통 기 제 사 항 FOR ALL | | | | | |
| 성명 Full Name | Surname | Given Names | | 漢字姓名 | 성별 Sex <input type="checkbox"/> 남 M <input type="checkbox"/> 여 F |
|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or Alien Registration No.(if any) | 년 Year | 월 Month | 일 Day |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Registration No. | 국적 Nationality / Others |
| 대한민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 | 전화번호 Tel. No. | () - |
| 본 국 주 소 Home Address | | | | H·P No | - - |
| 근무처 Workplace | 직 위 Position | | |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여권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 | 여권유효기간 Passport validity | | |
| 신청 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 | | | E-Mail | @ |
| 선 택 기 제 사 항 CHOOSE YOUR APPLICATION | | |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⑤ ⑥ ⑦ 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Sojourn | 년(years) | | 월(months) | 일(days) | |
| <input type="checkbox"/> ⑧ 자격외 예정근무지 Place of Employment | | | 직위 Position | | |
| <input type="checkbox"/> ⑦ 변경·추가예정근무지 Alteration or Addition Place | | | 직위 Position | | |
| <input type="checkbox"/> ⑨ 재입국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 | | 종류 Type | <input type="checkbox"/> 단수 Single <input type="checkbox"/> 복수 Multiple | |
| <input type="checkbox"/> ⑩ 변경전주소 Previous Address | | | | | |
| <input type="checkbox"/> ⑪ 등록사항변경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 | | | | |
| 동반자 Dependent in Passport | 성명 Full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관 계 Relation | 성명 Full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input type="checkbox"/> | | | | | |
|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의 CONFIRMATION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에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agree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process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section 21, article 1. | | | | | |
|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I agree) (I disagree, I will supply all related documents by myself) | | | | | |
| 신청인 Applicant | (서명또는인) 신청인의 배우자 (sig/ seal) Spouse of applicant | | (서명또는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sig/ seal) Father/Mother of the applicant | (서명또는인) (sig/ seal) |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 | 신청인서명 Signature | | |
| 공 용 용 관 FOR OFFICIAL USE ONLY | | | | | |
| 기본사항 | 최초입국일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 접수사항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비 고 | | |
| 허가사항 | 허가일자 | 허가번호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접 계 | 담당 | 계 장 | 과 장 | 국 장 | 소 장 |
| | | | | 가 · 부 | |
| 수입인자 첨부란 (Revenue Stamp Here) | | | | | |
| 210mm×297mm (인쇄용지(목급) 70g/m ²) | | | | | |

주: 자격외 예정근무지(Place of Employment) 및 직위(Position)는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외활동 예정장소(근무처명, 학교명 등)와 직위를 의미하며, 변경·추가예정근무지(Alteration or Addition of Workplace)와 직위(Position)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근무처의 명칭과 직위를 의미함.

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이주한 사람을 가리킨다.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국제결혼건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표 2-2-25>에 의하면, 2003년 이후 국제결혼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대다수(1990~2009년 평균 70.4%)가 여성이다.

<표 2-2-25> 국제결혼건수(1990~2009년)

(단위 : 명, %)

| 연도 | 전체 | 국제결혼 (B) | | 외국인 아내 (C) | | 외국인남편 (D) | |
|-----------|-----------|----------|------|------------|------|-----------|------|
| | | 건수 | B/A | 건수 | C/B | 건수 | D/B |
| 1990 | 399,312 | 4,710 | 1.2 | 619 | 13.1 | 4,091 | 86.9 |
| 1991 | 416,872 | 5,012 | 1.2 | 663 | 13.2 | 4,349 | 86.8 |
| 1992 | 419,774 | 5,534 | 1.3 | 2,057 | 37.2 | 3,477 | 62.8 |
| 1993 | 402,593 | 6,545 | 1.6 | 3,109 | 47.5 | 3,436 | 52.5 |
| 1994 | 393,121 | 6,616 | 1.7 | 3,072 | 46.4 | 3,544 | 53.6 |
| 1995 | 398,484 | 13,494 | 3.4 | 10,365 | 76.8 | 3,129 | 23.2 |
| 1996 | 434,911 | 15,946 | 3.7 | 12,647 | 79.3 | 3,299 | 20.7 |
| 1997 | 388,591 | 12,448 | 3.2 | 9,266 | 74.4 | 3,182 | 25.6 |
| 1998 | 375,616 | 12,188 | 3.2 | 8,054 | 66.1 | 4,134 | 33.9 |
| 1999 | 362,673 | 10,570 | 2.9 | 5,775 | 54.6 | 4,795 | 45.4 |
| 2000 | 332,090 | 11,605 | 3.5 | 6,945 | 59.8 | 4,660 | 40.2 |
| 2001 | 318,407 | 14,523 | 4.6 | 9,684 | 66.7 | 4,839 | 33.3 |
| 2002 | 304,877 | 15,202 | 5.0 | 10,698 | 70.4 | 4,504 | 29.6 |
| 2003 | 302,503 | 24,776 | 8.2 | 18,751 | 75.7 | 6,025 | 24.3 |
| 2004 | 308,598 | 34,640 | 11.2 | 25,105 | 72.5 | 9,535 | 27.5 |
| 2005 | 314,304 | 42,356 | 13.5 | 30,719 | 72.5 | 11,637 | 27.5 |
| 2006 | 330,634 | 38,759 | 11.7 | 29,665 | 76.5 | 9,094 | 23.5 |
| 2007 | 343,559 | 37,560 | 10.9 | 28,580 | 76.1 | 8,980 | 23.9 |
| 2008 | 327,715 | 36,204 | 11.0 | 28,163 | 77.8 | 8,041 | 22.2 |
| 2009 | 309,759 | 33,300 | 10.8 | 25,142 | 75.5 | 8,158 | 24.5 |
| 1990-2009 | 7,184,393 | 381,988 | 5.3 | 269,079 | 70.4 | 112,909 | 29.6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http://kosis.nso.go.kr>.

<표 2-2-26>은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수를 보여준다. 결혼이민자 수는 2006년 104,768명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181,671명으로 늘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6년 25,246명에서 2010년 105,501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2-26>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2006~2010년)

(단위: 명)

| | 다문화가족 (A+B+C) | 결혼이민자 | | | 결혼이민자의 자녀(C) |
|------|------------------|---------|---------|----------|-----------------|
| | | 전체(A+B) | 비귀화자(A) | 혼인귀화자(B) | |
| 2006 | 130,014 | 104,768 | 65,243 | 39,525 | 25,246 |
| 2007 | 171,213 | 126,955 | 87,964 | 38,991 | 44,258 |
| 2008 | 202,392 | 144,385 | 102,713 | 41,672 | 58,007 |
| 2009 | 259,780 | 167,090 | 125,673 | 41,417 | 92,690 |
| 2010 | 287,172 | 181,671 | 125,087 | 56,584 | 105,501 |

주: 1) 조사기준 시점은 2006~2009년은 5월 1일 0시였고, 2010년은 1월 1일 0시임.

2) 자녀는 2006~2008년은 ‘국제결혼가정자녀’ 수를, 2009~2010년은 ‘외국인 부모’와 ‘외국인-한국인 부모’인 경우의 자녀수만 합한 값임. 행정안전부의 외국계 주민 자녀 통계는 만18세 이하만 집계함.

자료: 행정자치부, 『2006년 국내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2006.

행정자치부, 『2007년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2007.

행정안전부, 『2008년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2008.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09.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2010.

<표 2-2-27>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 추계(2009~2020년)

(단위: 명, 비)

| | 결혼이민자 | 자녀 | 전 체 | 결혼이민자 | 자녀 | 전 체 |
|------|---------|---------|---------|-------|-------|-------|
| 2009 | 167,090 | 99,684 | 266,774 | 1.000 | 1.000 | 1.000 |
| 2010 | 183,934 | 114,560 | 298,494 | 1.101 | 1.149 | 1.119 |
| 2011 | 200,753 | 130,411 | 331,164 | 1.201 | 1.308 | 1.241 |
| 2012 | 217,550 | 147,144 | 364,694 | 1.302 | 1.476 | 1.367 |
| 2013 | 234,319 | 164,698 | 399,017 | 1.402 | 1.652 | 1.496 |
| 2014 | 251,062 | 183,002 | 434,064 | 1.503 | 1.836 | 1.627 |
| 2015 | 267,775 | 201,942 | 469,718 | 1.603 | 2.026 | 1.761 |
| 2016 | 284,460 | 221,405 | 505,865 | 1.702 | 2.221 | 1.896 |
| 2017 | 301,112 | 241,263 | 542,375 | 1.802 | 2.420 | 2.033 |
| 2018 | 317,729 | 261,450 | 579,179 | 1.902 | 2.623 | 2.171 |
| 2019 | 334,314 | 281,943 | 616,257 | 2.001 | 2.828 | 2.310 |
| 2020 | 350,862 | 302,692 | 653,554 | 2.100 | 3.037 | 2.450 |

자료: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2009.

<표 2-2-27>은 2009년 행정안전부의 결혼이민자 수를 토대로 그 장래인구(연앙인구)를 추계한 값을 제시한다. 결혼이민자수는 2009년 167,090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350,862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녀수는 같은 기간에 99,684명에서⁹⁾ 302,692명으로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수는 181,671명이다. 출신국별로는 중국(한국계 중국) 60.9%(32.7%), 동남아 28.5%, 일본 2.9%, 몽골 1.4%, 남부아시아 1.3% 등의 순이고, 여성이 89.2%(161,999명)를 차지한다. 외국계 주민의 자녀 수는 121,935명이다.¹⁰⁾ 그 부모의 출신국 구성은 중국(한국계 중국) 50.2%(25.8%), 동남아 36.5%, 일본 4.7%, 중앙아시아 1.9%, 몽골 1.5% 등의 순이다.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거주지역 분포는 경기 27.4%(49,855명), 서울 22.6%(41,123명), 인천 6.2%(11,344명), 경남 6.0%(10,834명), 경북 4.9%(8,906명) 등의 순이고, 수도권 거주자가 56.3%(102,322명)를 차지한다. 외국계 주민 자녀의 거주지역 분포는 경기 24.6%(29,953명), 서울 15.6%(19,014명), 경남 7.6%(9,260명), 인천 6.4%(7,805명), 경북 6.3%(7,715명) 등의 순이고, 수도권 거주자가 46.6%(56,772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에서 2009년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9.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많다. 지역별로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에 큰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 지역의 여성 대비 남성 수(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 20.6, 경기도 12.0, 인천 11.1, 그 외 지역 1.3~7.7이다.

결혼이민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 33.3세, 남성 41.6세다. 결혼이민자는 여성은 20대 이하가, 남성은 40대 전후가 많다. 여성은 24세 이하가 21.1%, 25~29세가 20.2%이고, 남성은 40대가 30.5%, 35~39세가 20.9%다.

1990년 이후 결혼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난 경로를 조사한 결과, 결혼중개업체(25.1%)가 가장 많고, 다음은 가족·친척의 소개 (23.3%), 친구·동료의 소개 (23.1%)의 순이다.¹¹⁾ 그 외에도 스스로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18.2%, 종교기관을 통해서 만난 경우는 6.4%다. 결혼이민자의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은 결혼중개업체 (27.0%), 가족·친척의 소개(24.1%) 순이고, 남성은 스스로 배우자를 만난 경우(46.0%)가 가장 많다(그림 2-2-4 참조).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은 가족·친척의 소개(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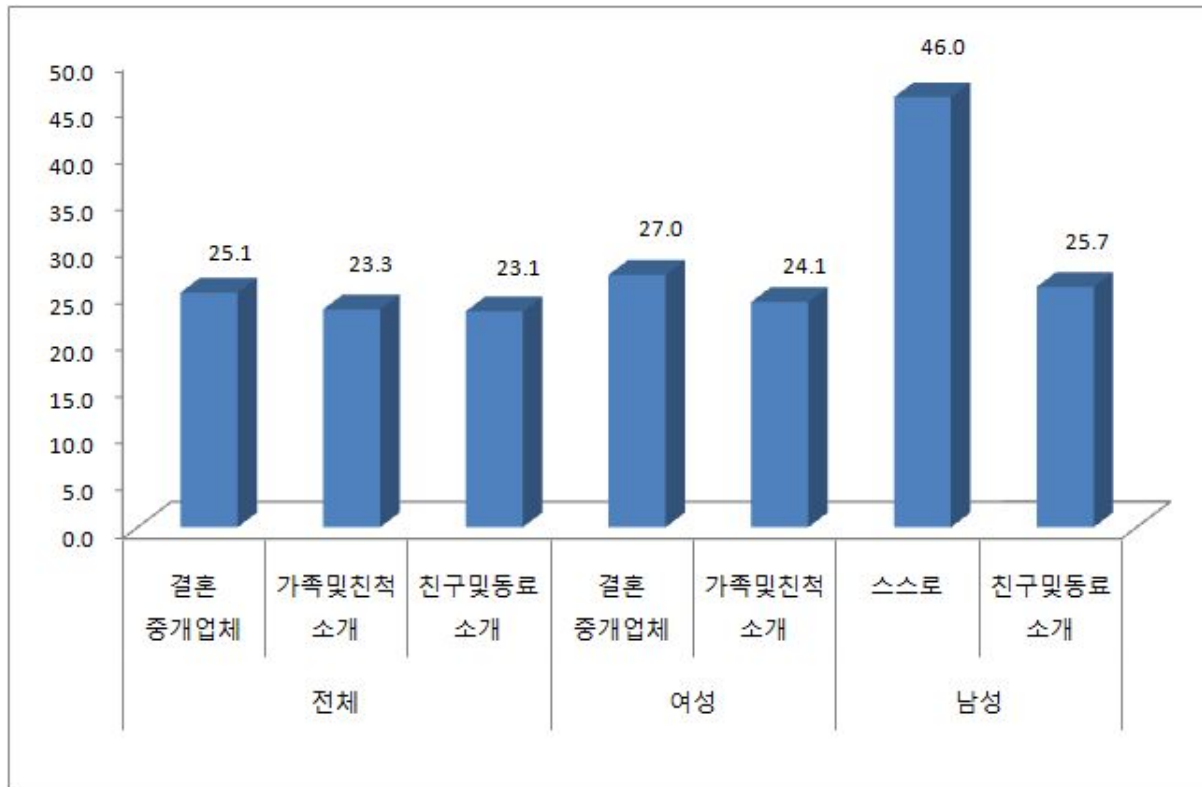
9) 이 수치는 행정안전부 통계의 결혼이민자의 자녀(‘국제결혼부부의 자녀’와 ‘외국인 배우자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수 92,690명보다 7,107명 더 많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현황 자료는 결혼이민자 1세가 아니면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파악한 반면, 행정안전부의 집계통계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설동훈·서문화·이삼식·김명아, 2009, p.15).

10) ‘외국인 부모’와 ‘외국인-한국인 부모’ 및 ‘한국인 부모’인 경우의 자녀수를 모두 합한 값이다.

11)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는 가족·친척의 소개(45.7%) > 스스로(20.0%) > 결혼중개업체 17.7% > 종교기관 14.3% 등의 순이었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한족은 친구·동료의 소개(31.5%)를 통해 배우자와 만난 경우가 가장 많다. 일본(69.5%), 필리핀(31.2%), 태국(25.0%)은 종교기관을 통해 만난 경우가, 북미·호주·서유럽 등 선진국은 본인 스스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57.5%)가 많다.

[그림 2-2-4] 결혼이민자의 유입경로(2009년)



주 : 1990년 이후 결혼한 결혼이민자만 대상으로 한 통계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 차이는 ① 여성 결혼이민자(33.3세)와 한국인 남편(43.2세) 간 평균 연령 차이는 약 10세, ② 남성 결혼이민자(41.6세)와 한국인 부인(40.3세) 간의 평균 연령 차이는 1.3세다. 출신국별로는 캄보디아(17.5세), 베트남(17.0세) 출신 결혼이민자의 연령 차이가 가장 크다.

결혼이민자의 입국 시기는 2000년대 입국자가 81.1%를 차지한다. 2005년도 이후 입국한 결혼이민자가 54.1% , 2000~2004년 입국자는 27.0%다. 결혼이민자의 국내 평균 거주기간은 5.3년이며, 여성은 5.1년, 남성은 7.1년이다. 결혼이민자 출신국별로 한국 거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중국 조선족, 필리핀, 태국,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은 5~10년 미만 거주자가 가장 많다.

결혼이민자의 현재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96.0%, 이혼이 3.2%, 사별이 0.8%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한국인 집단은 유배우 85.0%, 사별 10.7%, 이혼 4.2%다. 유배우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은 국제결혼이 2000년대 이후 급증한 것, 다시 말해 그들의 대다수가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결혼이민자의 혼인 유형은 ‘부부 모두 초혼’(65.0%), ‘부부 모두 재혼’ (18.1%), ‘부인 초혼-남편 재혼’(9.3%), ‘부인 재혼-남편 초혼’(7.6%) 등의 순이다. 결혼이민자의 ‘부부 모두 초혼’ 비율은 65.0%로 일반 한국인의 76.1%(2008년 혼인통계)보다 훨씬 낮다.

결혼이민자의 거주 형태를 가족 구성과 주택 소유 및 거주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가족 구성은 ‘부부+자녀’가 3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부만 함께 사는 경우’가 26.3%다. 결혼이민자의 주택소유형태는 본인·배우자가 소유한 경우가 33.0%, 전세·월세가 42.2%, 배우자 부모가 소유한 경우가 19.5%로 전반적으로 소유율이 낮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가 소유 비율은 55.6%이다. 거주환경은 ‘(매우)양호함’이 39.1%, ‘보통’이 42.6%, ‘(매우)열악함’이 18.3%다. 거주환경이 (매우)열악한 비율은 출신국별로 중국 조선족(21.5%), 태국(21.2%), 필리핀(19.9%), 중국 한족 등(18.6%), 캄보디아(18.1%) 순으로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27.0%), 부산(22.8%), 대전(20.7%) 등 대도시가 높다.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중학교 이하 36.1%, 고등학교 42.3%, 대학 이상 20.6%의 분포를 보이고, 남성은 중학교 이하 24.3%, 고등학교 34.5%, 대학 이상 40.1%의 분포를 보인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다소 높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소지 결혼이민자 여성 중 51.0%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부부간 교육수준 격차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다. 출신국별로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다. 북미·호주·서유럽(93.9%), 몽골(61.3%), 일본(60.5%), 필리핀(57.5%) 등은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가, 캄보디아(66.4%), 베트남(61.8%), 중국(한족 등)(36.8%), 중국 조선족(34.8%) 등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소지자가 많다.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률은 31.1%로 여성의 31.8%, 남성의 23.9%가 국적을 취득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36.1%), 중국 조선족(56.8%)이 국적 취득률이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국적 취득률이 높다.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현재 체류자격은 한국인 배우자(F-2) 자격이 92.2%, 영주(F-5) 자격이 6.0%다.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72.0%는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영주권만 취득하겠다는 경우는 13.1%였고, 국적 또는 영주권

어느 것도 취득할 예정이 없는 경우는 2.1%이다.

사. 불법체류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류미비 이주자’ 내지 ‘미등록 이주자’(undocumented migrants), ‘비밀 이주자’(clandestine migrants), 또는 ‘비합법 이주자’(irregular migrants)로 불린다. ‘불법체류 외국인’(illegal aliens)은 서류미비 이주자의 다른 이름이다. 접두사로 붙어 있는 ‘불법’이라는 가치 함축적 표현은 그들을 ‘범죄자’로 간주하도록 오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계와 국제기구에서는 불법체류자보다는 ‘서류미비 이주자’, ‘미등록 이주자’, ‘비합법 이주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미등록 이주자’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 왔으나, 그 용어는 관광·방문·유학 등 합법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 ‘체류자격외 취업’을 하는 경우를 포괄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 국제연합과 국제노동기구 등에서는 ‘비합법 이주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이주자가 입국·통과·체류·출국 등 이주의 전 단계에 걸쳐서 ‘규정’을 어긴 경우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비합법 이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체류기간 초과자, 체류자격외 활동자 및 밀입국자 등을 지칭한다. ① ‘체류기간 초과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 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자를 가리킨다. 사증에서 규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체류자격외 활동자’는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자, 또는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자를 포함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취업 또는 정치활동 등을 하여, 비합법 상태에 처한 외국인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예컨대,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단기사증을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그 기간에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 외국인 유학생이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것, 혹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 등이 ‘자격외 취업’이다. ③ ‘밀입국자’는 정식으로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또한 체류기간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 관련 사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면서도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하

는 외국인도 비합법 이주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비합법 외국인의 대부분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migrant workers), ‘비합법 이주노동자’(irregular migrant workers) 등으로 불린다. 비합법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외 취업자’와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 및 ‘밀입국 취업자’와 아울러, ‘적절한 체류자격·활동허가 없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괄한다.

<표 2-2-28>은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별 구성을 보여준다. 2007년 이후에는 90일 이하의 단기사증을 발급받아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91일 이상 사증 또는 재외동포사증을 발급받은 후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2-28> 불법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구성(2000~2010년)

| | 전체 | 등록외국인 | 단기체류외국인 | 거소신고 |
|---------|---------|---------|---------|-------|
| 2000 | 205,205 | 42,048 | 163,157 | 0 |
| 2001 | 272,626 | 67,064 | 205,562 | 0 |
| 2002 | 308,165 | 83,779 | 224,386 | 0 |
| 2003 | 154,342 | 72,500 | 81,842 | 0 |
| 2004 | 209,841 | 89,857 | 119,216 | 768 |
| 2005 | 204,254 | 107,049 | 96,373 | 832 |
| 2006 | 211,988 | 106,657 | 103,835 | 1,496 |
| 2007 | 223,464 | 107,278 | 114,295 | 1,891 |
| 2008 | 200,489 | 93,461 | 106,486 | 542 |
| 2009 | 177,955 | 83,729 | 93,613 | 613 |
| 2009. 9 | 182,804 | 86,443 | 95,769 | 592 |
| 2010. 9 | 171,358 | 79,279 | 90,836 | 1,243 |
| 증감률(%) | -6.3 | -8.3 | -5.2 | 110.0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년 9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10.

<표 2-2-29>는 2009년 12월 31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신국과 체류자격 분포를 보여준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많다. 그들의 사증 분포를 살펴보면, 단기상용·단기종합, 사증면제·관광 등 단기 사증이 많고, 91일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사증 소지자 중에서는 비전문취업과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사증 소지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표 2-2-29>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신국과 체류자격(2009년)

(단위 : 명)

| 국적 | 자격 | 총계 | 사증면제 | | 유학 (D2) | 산업 연수 (D3) | 예술 홍행 (E6) | 연수 취업 (E8) | 비전문 취업 (E9) | 방문 동거 (F1) | 국민 배우자 (F21) | 방문 취업 (H2) | 기타 |
|--------|----|---------|----------------|--------------------------|------------|------------------|------------------|------------------|-------------------|------------------|--------------------|------------------|--------|
| | | | 관광 (B1, B2) | 단기상용 단기종합 (C2, C3) | | | | | | | | | |
| 총계 | | 177,955 | 23,812 | 64,587 | 5,207 | 12,155 | 1,344 | 11,256 | 30,165 | 4,670 | 9,059 | 3,278 | 12,422 |
| 중국 | | 82,484 | 5,369 | 39,546 | 4,041 | 4,320 | 34 | 1,297 | 9,447 | 1,814 | 5,637 | 3,221 | 7,758 |
| 베트남 | | 14,664 | 221 | 2,198 | 710 | 1,547 | 0 | 3,166 | 4,185 | 109 | 2,067 | 0 | 461 |
| 타이 | | 12,383 | 8,239 | 21 | 0 | 240 | 0 | 568 | 3,113 | 25 | 148 | 0 | 29 |
| 몽골 | | 12,270 | 665 | 6,309 | 163 | 361 | 16 | 462 | 3,315 | 69 | 324 | 0 | 586 |
| 필리핀 | | 11,834 | 178 | 3,563 | 8 | 1,468 | 1,211 | 1,311 | 3,184 | 303 | 395 | 0 | 213 |
| 우즈베키스탄 | | 7,091 | 26 | 4,289 | 117 | 629 | 12 | 704 | 888 | 16 | 58 | 30 | 322 |
| 방글라데시 | | 6,345 | 2,826 | 411 | 17 | 1,345 | | 274 | 1,297 | 15 | 31 | 0 | 127 |
| 인도네시아 | | 4,955 | 136 | 351 | 2 | 1,041 | 0 | 995 | 2,061 | 22 | 11 | 0 | 336 |
| 기타 | | 25,929 | 6,152 | 7,899 | 149 | 1,204 | 69 | 2,479 | 2,675 | 2,297 | 388 | 27 | 2,590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0.

<표 2-2-30> 불법체류 외국인 중 16~60세 인구(2009~2010년)

| 구분 | | 총계 | 등록 | 단기체류 | 거소신고 |
|---------|--------|---------|--------|--------|-------|
| 2009. 9 | 전체 | 182,804 | 86,443 | 95,769 | 592 |
| | 16~60세 | 166,821 | 81,661 | 84,821 | 339 |
| 2010. 9 | 전체 | 171,358 | 79,279 | 90,836 | 1,243 |
| | 16~60세 | 154,684 | 74,001 | 79,893 | 790 |
| 증감률(전체) | | -6.3 | -8.3 | -5.2 | 110.0 |

※ 거소신고 : 체류자격 제외동포(F-4)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거소신고자.

※ 증감률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년 9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0.

불법체류 외국인 중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그들의 규모를 불법체류자 중 16~60세 인구로 추정하여 대체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해 왔다(설동훈, 1999: 128-130). <표 2-2-30>에 의하면, 2009년 9월 불법체류자 중 16~60세에 해당하는 사람 수는 166,821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91.3%였고, 2010년 10월에 그것은 각각 154,684명, 90.3%였다. 불법체류자 중 약 90%가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표 2-2-31>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보여준다. 그 수는 2002년 289,239명에 이르렀으나,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9년 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 162,098명은 전체 체류자 1,047,203명의 15.5%다. [그림 2-2-5]는 전체 불법체류자 수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

자 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2010년 9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 154,684명은 전체 체류자 1,110,661명의 13.9%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와 전체 체류자 중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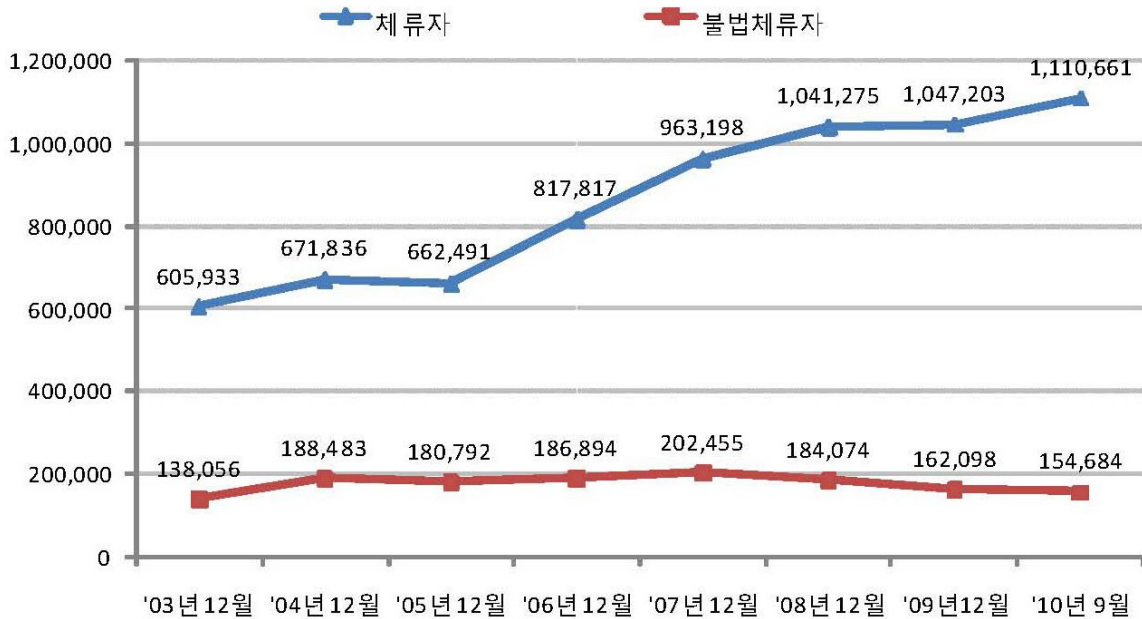
<표 2-2-31>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 1989~2009년

(단위: 명)

| | 인원 |
|------|---------|
| 1989 | 12,136 |
| 1990 | 18,402 |
| 1991 | 41,877 |
| 1992 | 30,899 |
| 1993 | 54,508 |
| 1994 | 48,231 |
| 1995 | 81,866 |
| 1996 | 129,054 |
| 1997 | 148,048 |
| 1998 | 99,537 |
| 1999 | 135,338 |
| 2000 | 188,995 |
| 2001 | 255,206 |
| 2002 | 289,239 |
| 2003 | 138,056 |
| 2004 | 188,483 |
| 2005 | 180,792 |
| 2006 | 186,894 |
| 2007 | 202,455 |
| 2008 | 184,074 |
| 2009 | 162,098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2-2-5] 16~60세 체류자 중 불법체류 외국인(2003~2010년)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년 9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0.

4. 이민자 수용이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¹²⁾

가.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의미

이민자 수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총 편익은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과 그들의 부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치의 차이로 계산되고, 총비용은 그들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가치를 비교한 값이다. ‘이민자 수용의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음의 값일 경우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민 수용은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산업 생산을 늘리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장은 이민 수용의 긍정적 효과, 특히 경제적 편익을 강조한다. 보드바슨과 반덴버그(Bodvarsson and Van den Berg, 2009: 123-179)는 이민자들이 장기 거주하는 경우, 이민

12) 이 절은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41-80)를 요약한 것이다.

자들은 노동자로서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커지므로, 이민자들이 그들 수입의 일부분을 소비한다면 노동에 대한 파생효과가 나타남을 강조한다. 또 이민자들의 낮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내국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도 있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고취시키는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다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민자 수용이 항상 긍정적 효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 수용의 효과는 각국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노동시장에서 인력부족(vacancies)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그 부분을 채워준다면 편익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실업이 만연해 있는데, 이민자들이 낮은 임금과 통제하기 쉬운 노동력을 이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기존 노동시장의 상황과 이민자의 직업 배치가 어떻게 어울리는가에 따라 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제각각이 될 것이다 (Chiswick, 2005; DeVoretz, 2004 참조).

또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시기에 이민이 유입된다면 그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크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 국가단위 사회의 지속”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늘어나는 효과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갑자기 남북통일이 되어 인구 감소의 충격이 아니라 일자리창출이 쟁점이 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이민자의 유입은 재앙에 가까운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이다.

이민의 영향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 및 실업, 주택, 취학인구, 범죄, 문화와 공동체 해체, 복지 지출, 공공서비스, 공공재정 등의 문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U.K. House of Lords, 2007a; Gott and Johnston, 2002). 이민사회학 또는 이민경제학은 노동시장의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제문제를 기반으로 사회·문화·복지 효과에 관한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부정적 효과를 통제하는 것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나라의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민자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진단하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데 정책적 관심이 집중된다.

나. 이민자 수용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

어떤 나라에 이민자가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은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를 미친다. 노동시장과 공공재정이 그 주된 영역인데, 노동시장에서는 이민자의 연령과 숙련수준에 따라서 효과가 제각각이고, 공공재정 부문은 이민자의 납세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민자로부터 발생하는 추가 공공지출로 인해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 이민자의 연령과 숙련수준뿐만 아니라 체류기간과 이주 목적 등의 기준에서 이민자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민자가 어떤 나라에 들어온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민자의 유입이, 예컨대 임금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일반화할 수 있는 명제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특정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식의 결론이 대부분이고,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임금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면 아마도 조정기간 중에는 실업이 증가하겠지만,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이민자 유입국(host country) 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고용이 증가하며, 송출국에서는 반대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생각이다. 유연성이 부족한 노동시장에서는 이민자 유입국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으며 실업이 더욱 늘고 더 오래 지속된다.

이민자의 숙련수준과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력의 규모와 숙련구성이 변화하면 평균 임금과 임금구조 역시 변화할 것이며, 그 결과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이민자의 유입이 압도적으로 단순노무직에 치우쳐 있다면,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고, 동시에 전문기술직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임금은 상승할 것이다.

이민자 유입이 유입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학 이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민자의 유입과 임금 또는 고용 사이의 경험적 증거 또는 통계적 상관성은 종종 약하며 확정짓기가 어렵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진 계량경제학적 연구들은 특정 집단을 제외하면 이민자의 유입이 자국 노동자의 소득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연구들은 외국인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민자들 자신만 제외하고는, 또는 유럽의 경우 보유 숙련이 거의 없는 일부 저숙련 이민자 집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 부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점유하는 노동시장이 겹치기 때문에, ‘정착한 이민자’와 ‘최근에 도착한 이민자’가 서로 직접 경쟁을 하지만, 후자가 기

존 이민자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이민자의 유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민자의 인적자원과 이주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민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각각이다. 경기변동에 따른 이민자의 경험도 나라마다 시기마다 제각각이다. 이민자 유입과 실업률 사이에는 명백한 관계는 없지만,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으로 자국민의 실업이 증가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거의 늘 존재해 왔다. 이러한 우려는 실업률이 높고 장기실업이 만연한 일부 유럽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렇지만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과 실업률 간에 체계적 관계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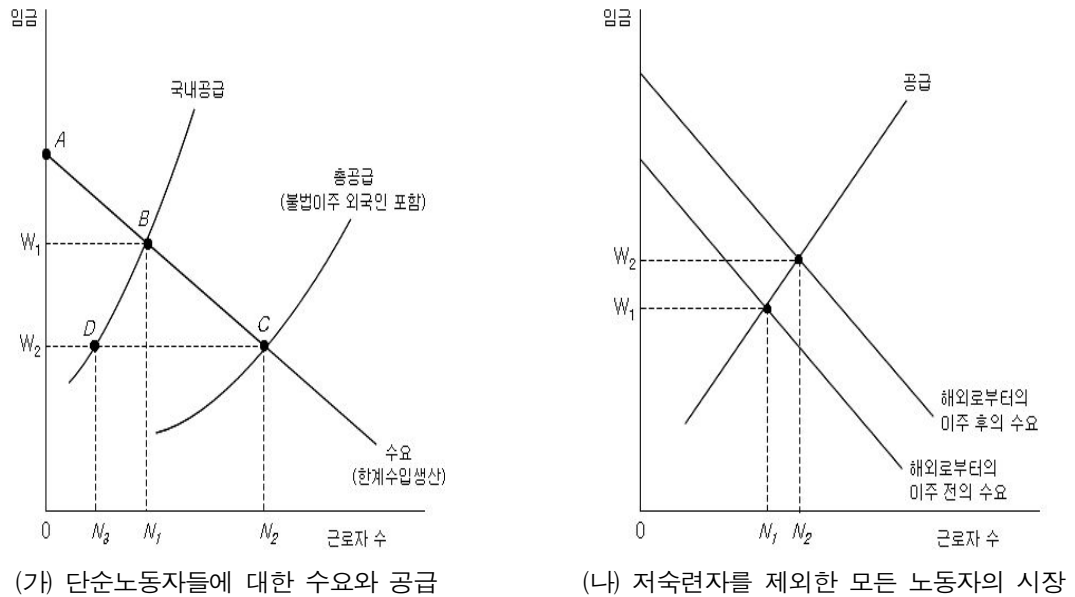
적어도 다음 사실은 확실하다. 경기팽창과 부문별 노동력부족 시기에 이민자 유입은 두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평형을 가져온다. 첫째, 팽창하는 노동력 수요를, 특히 그러한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보유 숙련이 거의 없는 이민자가 유입 되면 자국민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높아지고, 보다 역동적이고 사회에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부문으로 자국 노동력이 재배치되는 효과를 갖는다. 사회적 사다리의 밑 부분에서의 활동들은 매우 매력적이지 못하며 만성적 노동력부족을 드러내는데, 이민자들이 그 부문의 활동을 맡게 된다. 그것은 ‘노동시장 분절론’(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ies)의 핵심이기도 하다. 자국민의 지리적 또는 부문간 노동이동이 활발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이민자가 노동시장에 더 큰 유연성을 불어넣음으로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1)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이익과 손실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들에게 해가 된다는 주장은, [그림 2-2-6]의 (가)에서 제시한 ‘단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단일시장 분석에 종종 기초하고 있다.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그 주장은 그럴듯하다.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이 단순노동자의 공급을 증가시킬 때, 단순노동자로 일하는 내국인들의 임금과 고용수준은 모두 감소된다. 유입국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총임금(total wage bill)은 [그림 2-2-6] (가)의 W_10N_1B 로부터 W_20N_3D 로 하락한다. 일부 내국인들은 감소된 임금에 대응하여 시장을 떠나며, 시장에 머무르는 노동자들은 더 작게 번다.

그렇지만 비록 저숙련 이민자의 유입이 국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들 전체에게 필연적으로 해가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선부른 판단일 수 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값싼 노동력’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은 노동의

[그림 2-2-6] 이민자 수용의 경제적 효과



자료 : Ehrenberg and Smith (2006: 336, 339)

생산물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분명히 편익을 준다. 임금이 감소되고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노동력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양은 증가되고 가격은 하락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노동자의 사용자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명백히 편익을 얻는다. [그림 2-2-6]의 (가)에서 사용자의 이윤은 W_1AB 에서 W_2AC 로 증가한다. 그 이윤의 증가는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 자본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공장과 설비에 투자를 증가시키는 신호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증가된 이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되도록 유발시킬 것이다. 자본과 사용자 수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이윤율을 정상수준으로 하락시키겠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의 자본보유량은 증가되고 일부 노동자들이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형은 이민자 유입이 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2-2-6]의 (가)에서 수요곡선은 고정되어 있다. 이민자들이 자신의 근로소득 중 단순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부분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하나의 시장을 살펴볼 때는 무리한 가정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유입국에서 소비자로서 지출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추가된 수요는 [그림 2-2-6]의 (나)에 제시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용기회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저숙련 이민자와 명백한

대체관계에 있지 않은 노동자 또는 일반 시민들은 기존 경제활동인구에 이민자들이 추가되어서 나타나는 소비수요의 증가로 인해 편익을 얻는다.

한편, 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가 모두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와 대체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민자가 그 나라 경제에서 보완요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규모효과’(scale effect)가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를 압도하는 것이다. 이민자 유입으로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커지면서 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규모효과’가 매우 커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숙련과 저숙련 노동자 모두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와 대체관계에 있다면,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해 증가한다는 것을 이론적 분석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는 관찰 내용은 이론적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생산과정에서 저숙련 노동자와 보완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컨대 ‘생산감독’ 등은 저숙련 이민자의 유입에 의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순편익

지금까지는 이민자 유입이 소비자, 사용자, 그리고 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를 포함하는 여러 그룹의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칠 가능성이 있는 효과를 분석하는 경제 모형을 소개하였다. 그 모형에 따르면, 그 집단들 중 일부는 명백히 이익을 얻고 있다. 그들 중에는 사용자, 소비자,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와 보완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포함된다.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와 강한 대체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은 이민자 유입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다른 집단에 속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이익 또는 손실은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라는 잠재적으로 상쇄되는 효과들이 공존하므로, 그 방향을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나아가, 실제 효과들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여러 집단들에 미치는 예상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그렇다면, “만약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 이민자 수용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모두 존재한다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손실을 입는 사람들’을 보상하고도 여전히 그 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만약 해외로부터의 이주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총가처분소득(aggregate disposable income)을 증가시키면 “그렇다”가 될 것이다.

이민자들은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다.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그 나라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더 부유하게 만드는지 또는 더 가난하게 만드는지 여부는 ‘이민자들이 얼마만큼 소비하는가?’와 비교하여 ‘전체 생산에 얼마만큼을 추가하는가?’ 하는 상대적 크기에 좌우된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하기 위하여 어떤 나라에 이민이 허용된 중·고령 이민자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만약 그 이민자가 일을 하지 않고,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소비를 자녀 또는 내국인 납세자들에게 의존한다면, 분명히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1인당 추가처분소득은 하락한다. 그러나 만약 이민자가 도착 후 일을 한다면, 이윤 극대화라는 사용자의 행태를 설명하는 모형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한계생산성을 초과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을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만약 이민자가 자신의 소비를 자기의 근로소득에 의존한다면, 일을 하는 이민자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더욱이, 만약 이민자의 근로소득이 자신들이 이주한 나라에 추가시키는 생산물의 총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추가처분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즉 만약 노동력 공급의 변화가 이민자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면, 그러한 상황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은 하락하고 산출량은 증가할 것이며, 추가된 산출량으로부터의 이윤은 아마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사용자들이 갖게 될 것이다.

다. 이민자 수용과 영역별 ‘사회적 배제’의 극복

이민자 수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은 연구자들마다 제각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민자는 개인으로 들어오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수자 집단(minority group)을 형성한다. “인종적·민족적·언어적·종교적·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다르게 구별되고 처우 받는 사람들”(Wirth, 1945)로 정의되는 소수자 집단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된다. 소수 집단은 지배 집단으로부터 차별적 취급을 받은 결과, 그 사회의 결속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전체 사회에 비우호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한 차별적 처우 속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기회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은 경멸·미움·놀림·폭력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분리되며, 심지어는 공공정책, 즉 재산권리, 법의 보호, 투표권, 공공 서비스로부터 배제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회생활의 참여로부터의 배제는 그 차별받는 집단들 스스로 열등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또한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차별 집단의 욕구 충족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극복의 관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사회는 장기실업과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요체는 특정 사회집단의 빈곤은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하층계급이 주류사회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배제의 영역은 경제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다의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Silver, 1994).

한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경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한 예로 크로나워(Kronauer, 1998)는 하층계급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여섯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그 첫째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exclusion from the labor market)인데, 하층계급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배제로서 다른 영역의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경제적 배제’(economic exclusion)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복지 수당에 의존한 생활을 영위하는 빈곤상태를 가리킨다. 셋째, ‘문화적 배제’(cultural exclusion)로, 하층계급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가 주류문화에서 배제된 상태를 뜻한다. 넷째,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exclusion by social isolation)인데, 사회적 관계의 질과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개인적 고립과 동일한 고립에 처해 있는 동료들끼리의 차별적 교제를 의미한다. 다섯째, ‘공간적 배제’(spatial exclusion)이다. 하층계급의 거주지가 도시의 주변부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공간적 격리는 사회적 접촉에 제한을 가져온다. 여섯째, ‘제도적 배제’(institutional exclusion)로서, 개인이 교육훈련기관, 실직과 빈곤의 극복을 위한 관리기관, 공적·사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크로나워가 제시한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소수자 집단으로서 이민자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의 가장 핵심은

빈곤과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 중 일부는 일반 빈곤층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므로, 몇 가지 추가 요소를 도입하면서 불필요한 요소는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배제의 극복은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서 찾을 수 있고, 취업을 함으로써 경제적 배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민자가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은 언어구사 능력의 제한, 또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경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제기된다(United Nations, 2006: 97). 이민자가 노동시장 조건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생계비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인종·민족·출신국 등의 요인에 따른 임금차별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자의 경제적 효과는 이민자들이 어떻게 일자리에 적응하는지의 문제(언어, 공식적 교육, 직업훈련 등)와 그 자녀들의 적응 과정에 달려 있다(Borjas, 1994).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일반적 이민자와 상황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스스로 우리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통합은 부족한 노동력 자원의 충원을 통한 경제발전과 맞물리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

다문화가족은 이민자 자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크게 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한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주류사회의 문화로부터 그들이 배제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러한 문화적 배제는 이민자 수용과 통합의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민자들끼리의 자조(自助) 모임,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문화가족 스스로 한국 사회의 한 성원으로 인식하고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은 다문화가족을 한국 사회의 한 성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고취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이 적응에 실패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게토(ghetto)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게토화를 막으려는 지역사회 수준의 집합적 노력, 즉 결

<표 2-2-32> 이민자 증가에 따른 편익과 비용

| 지원 영역 | | 내용 | 편익 | 비용 |
|-------|-----------------------------|--|---|--|
| 경제 | 노동 시장 | 일자리 소득 기술혁신 산업구조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요소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 · 우수 기술을 가진 인재의 영입으로 경제성장 · 노동력 풀의 증가(여러 문화에 걸친 전문가) · 지역고용의 안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투자 소홀 · 종족별 직종격리의 심화 ·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갈등 · 복지급여 의존해서 생활해야만 하는 빈곤층의 증가 |
| | 복지 | 복지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일거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복지관련 시설의 재편 비용 발생 · 복지비용 증가 · 질병유입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
| 사회 | 세계도시, 게토화, 사회적 격리에 따른 비용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 또는 다문화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증가 · 다문화적 근거를 가진 인재집단의 등장("다문화자녀의 이중언어의 사용은 글로벌 리더의 첫 걸음이다.") · 저숙련 노동의 안정적 노동력 풀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에 따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보호 문제 발생 · 고립 극복비용 증가 · 외국인 범죄 증가 · 새로운 사회 하위계층화 또는 빈곤 문화에 체화된 하위계층화 현상 발생 · 집단 따돌림 및 왕따 · 자녀들의 성적 문제 및 학습부진 · 지원비용 증가 | |
| 문화 | 문화다양성, 문화적 배제 또는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다양한 현상 대두 · 문화적 다원 의식 증대 ·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해 · 세계적 보편성과 특수성 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 문화의 혼재에 따른 문화갈등 현상 발생 · 민족 우월감, 국수주의적 경향, 내국인의 인종차별 의식 심화 · 언어의 장벽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 |
| 정치 | 정치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민족 정당 · 출신국별 몰표 현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 조직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 이민자 집단 폭동 발생 가능 · 경쟁의 여지 증가 | |
| 연쇄이민 | 가족 이민, 이민의 장기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쇄 이주로 인해 신규 이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한국어에 능숙하고 숙련된 안정적인 인적자원 공급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교류의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이민자 선별기준이 작동하기 어려움(이민의 양과 질 수준 통제 불가능) · 정착이민자의 증가로 이주노동자 교체순환에 기반을 둔 고용허가제의 붕괴 가능성 · 정착이민자로 전환 · 혼잡비용 | |

자료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53).

혼이민자들끼리 또는 결혼이민자와 기존 한국 인간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사회적 공간으로부터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적·사적 서비스로부터 배제 극복은 다문화가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의 향상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크로나워(Kronauer, 1998)가 제시한 ‘제도적 배제’ 극복이란 취업 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공적·사적 서비스에 접근함으로써 해결되는데,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전반적 사회복지제도 적용의 차별을 해소하는 접근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것을 통해 사회 통합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정을 살펴보면, 부유한 나라들은 이민 수용을 통해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질을 고취하는 효과를 도모한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의 해결책의 하나로 이민자 수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이민 수용에 의하여 곧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이민자들의 건강관리, 다양한 주택해결책, 언어습득 프로그램, 안정 고용 등을 위한 효과적인 이민자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민자의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 이민자 수용이 인구 감소 해결로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출산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예컨대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유인체계’ 등의 정책 시행 대상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한국 사회의 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분석 결과

<표 2-2-33>은 2009년과 2020년의 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2009년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의 금액을 계산하면, 한국 사회 전체의 편익은 1,171억원이고, 비용은 1,148억원으로, 23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노동시장 영역에서의 편익은 242억원, 비용은 179억원으로 편익이 62억원만큼 발생한다. 사회복지 영역의 편익은 156억원, 비용은 231억원으로 편익이 -74억원만큼 발생한다.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영역의 편익은 169억원이고 비용은 203억원으로 편익이 -34억원만큼 발생한다. 문화 영역의 편익은 254억원이고 비용은 168억원으로 편익이 86억원만큼 발생한다. 정치 영역의 편익은 148억원이고 비용은 186억원으로 편익이 -38억원만큼 발생한다. 연쇄이민 영역의 편익은 202억원이고 비용은 181억원으로 편익이 21억원만큼 발생한다. 요컨대, 2009년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은 노동시장, 문화, 가족이민과 이민의 장기 지속의 영역에서는 순편익이 발생하고, 사회복지와 사회적 고립 및 공간적 격리 극

복, 정치 영역에서는 순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009년 물가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2009년의 다문화가족 1인당 지원비용’이 100이라고 가정하고, 2009~2020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1인당 지원비용의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증가율은 164.8로 계산되었다. ‘2009~2020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1인당 지원금액의 평균 증가율’과 ‘2009~2020년 다문화가족 인구 증가율’ 및 ‘2009년의 다문화가족 1인당 지원비용 실제금액’(1,148억 원)을 이용하여 ‘2020년 다문화가족 수용에 따른 총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2020년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는 2009년의 2.4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므로, 총비용은 4,633억 원으로 계산된다.

<표 2-2-33>은 2020년의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이 2009년 불변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다. 2020년의 전체적인 편익은 4,726억원이고, 비용은 4,633억원으로, 순편익이 93억 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된다. 세부 영역으로 보면,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편익이 975억원, 비용이 725억원으로, 251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편익이 632억원, 비용이 931억원으로, 299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한다.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영역에서는 편익이 681억원, 비용이 820억원으로, 138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한다. 문화영역에서는 편익이 1,025억원, 비용이 677억원으로, 348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정치영역에서는 편익이 598억원, 비용이 751억원으로 153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연쇄이민 영역에서는 편익이 814억원, 비용이 730억원으로, 85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요컨대, 2020년 결혼이민자 수용에 따른 총편익이 총비용에 비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노동시장, 문화, 연쇄이민 영역에서는 순편익이 발생하고, 사회복지, 사회적 고립과 공간적 격리 극복, 정치 영역에서는 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33> 결혼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2009~2020년)

(단위: 억 원(2009년 불변가격))

| | 2009 | | | 2020 | | |
|-------|-------|-------|-------|-------|-------|-------|
| | 편익 | 비용 | 편익-비용 | 편익 | 비용 | 편익-비용 |
| 전 체 | 1,171 | 1,148 | 23 | 4,726 | 4,633 | 93 |
| 노동시장 | 242 | 179 | 62 | 975 | 725 | 251 |
| 사회복지 | 156 | 231 | -74 | 632 | 931 | -299 |
| 고립·격리 | 169 | 203 | -34 | 681 | 820 | -138 |
| 문화 | 254 | 168 | 86 | 1,025 | 677 | 348 |
| 정치 | 148 | 186 | -38 | 598 | 751 | -153 |
| 연쇄이민 | 202 | 181 | 21 | 814 | 730 | 85 |

자료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77).

<표 2-2-34> 결혼이민자 지원비용 정부 예산(2009~2020년)

(단위: 억 원(2009년 불변가격), %)

| | 2009 | | 2020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전 체 | 511 | 100.0 | 2,063 | 100.0 |
| 한국어 또는 교육지원 | 318 | 62.2 | 884 | 42.9 |
| 이민자·가족지원 | 120 | 23.5 | 570 | 27.6 |
| 다문화 환경조성사업 및 기타 | 61 | 11.9 | 458 | 22.2 |
|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 | 12 | 2.3 | 151 | 7.3 |

자료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79).

<표 2-2-34>는 2009년 정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결혼이민자 지원비용의 구성 내역과 2020년 필요할 것으로 계산된 내역을 보여준다. 2009년 결혼이민자 지원비용(정부 예산)은 다문화가족 지원부처 예산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것이다. 2009년 결혼이민자 지원 총금액은 511억원이고, ‘한국어 또는 교육지원’은 318억원, ‘이민자·가족지원’은 120억원, ‘다문화 환경조성사업 및 기타’는 61억원,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은 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결혼이민자 또는 그 자녀 지원비용 금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총비용은 2,063억원이며, ‘한국어 또는 교육지원’은 884억원, ‘이민자·가족지원’은 570억원, ‘다문화 환경조성사업 및 기타’는 458억원, ‘사회통합이수제 관련 사업’은 15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제3장 외국인력 통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노동부의 사업체조사 형태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조사통계는 ①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②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 조사통계의 조사 개요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가. 조사개요¹³⁾

1) 조사 목적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충원되지 않는 빈 일자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족인력 규모를 조사하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키 위함에 목적이 있다.

2) 조사 연혁

- 1976년 7월 말 ‘고용전망조사’ 기준으로 연 1회 최초 작성
- 1977년 3월 말, 8월말 기준으로 매년 2회로 작성
- 1981년 3월 말 기준으로 매년 1회 작성
- 1994년 「고용전망조사」에서 「노동력수요동향조사」로 명칭 변경
- 1999년 조사대상 사업체 확대(상용근로자 10인 이상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및 집계단위 세분화(산업중분류·직종소분류 → 산업소분류·직종세분류)

13)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lab.go.kr/>)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보고서」(2010년 상반기)를 참조.

- 2004년 조사대상 확대(상용근로자 → 전체 근로자(상용·기타·외국인 근로자)) 및 직종분류 개편(한국표준직업분류 → 한국고용직업분류)
- 2007년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별 조사 결과 공표
- 2008년 3월 조사 명칭 변경(「노동력수요동향조사」에서「인력수요동향조사」), 조사 주기 확대(연간 → 반기) 및 공표 범위 확대(6개 권역 → 16개 시·도)
- 2009년 3월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로 조사 명칭 변경

3) 조사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A),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전 산업이 조사 범위이다. 단, 국·공립 교육기관 등 공무원 재직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4) 조사 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총화계통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사업체의 상용·기타·외국인 근로자가 조사대상이다. 2010년 상반기 조사의 경우 31,582개 사업체가 조사대상 표본사업체이다.

5) 조사 기간

- 조사기준일 : 각년도 4월 1일(상반기), 10월 1일(하반기)
- 조사기간 : 상반기(4월 1일~30일), 하반기(10월 1일~30일) 각각 약 1개월

6) 조사 방법

지방관서 통계담당 직원 및 임시조사원에 의한 면접타계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조사를 병행한다.

7) 조사 항목

7개 영역에 걸쳐 총 21개 항목을 조사하며, 7개 영역별 조사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조사 항목의 조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원은 조사 기준일 현재의 상용·기타·외국인 근

로자를 의미하며, 부족인원은 조사 기준일 현재 채용 여부나 채용 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이다. 채용 계획 인원은 조사 기준일로부터 9개월(상반기는 4월 1일 ~12월 31일, 하반기는 10월 1일~익년도 6월 30일) 이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이며, 구인인원은 조사 기준기간 중에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한 인원으로 동 기간 내에 채용 합격자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 모집공고 시에 공표한 모집인원으로 산정된다. 채용인원은 조사 기준기간 내에 구인인원 중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된 인원을 의미하며, 미충원 인원 구인인원에서 채용인원을 제한 인원을, 미충원 사유는 내국인에 대한 미충원 인원이 있는 경우 미충원 된 사유이다.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은 조사 기준일 이전 3개월(상반기는 1월 1일~3월 31일, 하반기는 7월 1일~9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 3-1-1>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의 영역별 조사항목

| 영역 | 조사 항목 |
|-------------------|--|
| 사업체 현황 | ①사업체 명칭 ②사업체 소재지 ③경영형태 ④사업형태 ⑤주요 생산품명/영업 종목 |
| 근로자 현황 | ①총근로자 수 ②내국인(상용/기타) ③외국인 |
|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 ①현원(내국인/외국인) ②부족인원(내국인/외국인) ③채용계획인원(내국인/외국인) |
|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 ①직능수준별 구인인원 ②직능수준별 채용인원 ③미충원인원(1순위/2순위) |
| 구인경로 | ①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인신청 여부 ②구인시 활용 내용 |
|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노력 | ①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노력 |

8) 표본틀 및 층화방법

표본틀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전체 사업체를 지역별·사업체규모별·산업별로 분류하여 사업체 명부를 작성하여 표본틀을 구성한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체를 16개 시·도, 사업체 규모 및 산업 중분류별로 층화하는데 사업체 규모(상용근로자 수)는 1규모(5~9인), 2규모(10~29인), 3규모(30~99인), 4규모(100~299인), 5규모(300~499인), 6규모(500인 이상)로 구분된다.

9) 층별 표본크기의 결정

16개 시·도, 사업체 규모 및 산업중분류별로 층을 구성한 다음 이를 부차모집단으로 간주하여 표본사업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목표 오차는 각 부차모집단 내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6~7%로 설정한다.

$$n = \frac{\left(\frac{CV}{O}\right)^2}{1 + \frac{1}{N}\left(\frac{CV}{O}\right)^2}$$

CV : 모집단 변이계수 추정치(전체 근로자수)

O : 목표 오차

N : 모집단 사업체 수

10) 산업별·규모별·직종별 근로자 수 추정

i 산업, j 규모 내의 특정 직종의 근로자 수는 다음 식에 의해서 추정된다.

$$\hat{p}_{ij} = M_{ij} \frac{\sum_{k=1}^{n_{ij}} w_{ijk} \cdot p_{ijk}}{\sum_{k=1}^{n_{ij}} w_{ijk} \cdot e_{ijk}}$$

w_{ijk} : i 산업, j 규모, k 사업체의 가중값

p_{ijk} : i 산업, j 규모, k 사업체에서 조사된 특정 직종의 근로자수

e_{ijk} : i 산업, j 규모, k 사업체에서 조사된 총 근로자수

n_{ij} : i 산업, j 규모의 표본 사업체수

M_{ij} : 조사기준 시점에서의 i 산업, j 규모의 기준 근로자수(benchmark employment)로서 조사가 실시된 시점에서의 산업별, 규모별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이 값은 해마다 바뀌는 값으로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결과를 이용

11) 산업별·직종별 근로자수 추정

i 산업에서의 특정 직종에 대한 종사자수는 \hat{p}_{ij} 을 i 산업 내의 모든 규모에 대해 누적시켜서 다음과 같은 추정식에 의거해 산출한다.

$$\widehat{p}_i = \sum_{j=1}^{L_i} \widehat{p}_{ij}$$

\widehat{p}_{ij} : i 산업, j 규모 내의 특정 직종에 대해 추정된 근로자수

L_i : i 산업 내의 규모 수준

12) 조사표

인력수요동향조사 layout(2008년 하반기)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1] 인력수요동향조사 Layout(2008년 하반기)

| ID | Column Name | Comments |
|----|------------------|--|
| 1 | RESEARCH_PK | Key 값 |
| 2 | KUMO | 규모 |
| 3 | LABORER_TOTAL | 총근로자 수 전체 |
| 4 | LABORER_MAN | 총근로자 수 남자 |
| 5 | LABORER_WOMAN | 총근로자 수 여자 |
| 6 | REGULAR_TOTAL | 상용근로자 전체 |
| 7 | REGULAR_MAN | 상용근로자 남자 |
| 8 | REGULAR_WOMAN | 상용근로자 여자 |
| 9 | ETC_TOTAL | 기타 전체 |
| 10 | ETC_MAN | 기타 남자 |
| 11 | ETC_WOMAN | 기타 여자 |
| 12 | FOREIGNER_TOTAL | 외국인 전체 |
| 13 | FOREIGNER_MAN | 외국인 남자 |
| 14 | FOREIGNER_WOMAN | 외국인 여자 |
| 15 | OCCUPATION_LEVEL | 수준 |
| 16 | TYPE_DUTY | A' 구인인원, 'B' 채용인원, 'C' 미충원인원, 'D' 현원, 'E' 부족인원, 'F' 채용계획인원, 'G' 채용계획인원 - 훈련, 'H' 부족인원 - 훈련 |
| 17 | TYPE_NATIONALITY | 국적 - 'D' 내국인, 'F' 외국인 |
| 18 | TYPE_WORKER | R' 상용, 'N' 기타, 'C' 훈련직종 코드 |
| 19 | NUMBER_PERSON | 인원 |
| 20 | TRAINING_CODE | 훈련직종 코드 |
| 21 | REASON_VACANCY_1 | 미충원 사유 1 |
| 22 | REASON_VACANCY_2 | 미충원 사유 2 |
| 23 | EST_WGT_F | 가중값 |
| 24 | CITY | 시도 |
| 25 | INDUSTRY | 산업분류(중분류) |
| 26 | JOB | 직종(소분류) |

13) 조사 결과의 공표

조사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 및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표한다. 조사 자료는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lab.go.kr/>)를 통해 통계 검색이 가능하며, 마이크로데이터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외국인 인력통계 현황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숙련수준별 고용인원 및 부족인원이다. 고용인원 및 부족인원은 성, 내외국인, 상용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참고로 2010년 상반기 조사 결과의 경우 외국인은 모두 175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3-1-2> 현원,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단위 : 천명, %, %p)

| | 현원 | | | | | 부족인원 | | | | | 인력부족률 | | | | |
|-----------|-------|-------|-------|-----|-----|------|-----|-----|----|-----|-------|-----|-----|-----|-----|
| | 총원 | 내국인 | | | 외국인 | 총원 | 내국인 | | | 외국인 | 전체 | 내국인 | | | 외국인 |
| | | 상용 | 기타 | | | | 상용 | 기타 | | | | 상용 | 기타 | | |
| 2010.4.1 | 8,267 | 8,098 | 7,487 | 611 | 169 | 285 | 269 | 241 | 28 | 16 | 3.3 | 3.2 | 3.1 | 4.3 | 8.7 |
| 2009.4.1p | 8,048 | 7,873 | 7,284 | 589 | 175 | 219 | 208 | 184 | 24 | 10 | 2.6 | 2.6 | 2.5 | 4.0 | 5.5 |

주: P : 확정치를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10년도 상반기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결과(이하 동일)

사업체의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은 성,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숙련수준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2010년 1분기 구인인원 613천 명, 외국인 구인인원은 16.6%인 14천 명이며, 채용인원은 9천 명이다.

<표 3-1-3>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단위 : 명, %)

| | 구인인원 | | | | | 채용인원 | | | | |
|-----------|-------------------|-------------------|-------------------|-------------------|------------------|-------------------|-------------------|-------------------|-------------------|-----------------|
| | 총원 | 내국인 | | | 외국인 | 총원 | 내국인 | | | 외국인 |
| | | 상용 | 기타 | | | | 상용 | 기타 | | |
| 2010.1/4 | 613,499 [44.4] | 599,123 [45.2] | 480,971 [40.3] | 118,152 [69.3] | 14,376 [16.6] | 503,444 [44.5] | 494,242 [45.9] | 384,112 [39.7] | 110,130 [72.4] | 9,202 [-4.1] |
| 2009.3/4 | 465,248 | 451,314 | 361,457 | 89,857 | 13,934 | 383,229 | 371,794 | 288,839 | 82,955 | 11,435 |
| 2009.1/4P | 424,897 | 412,568 | 342,774 | 69,793 | 12,330 | 348,387 | 338,796 | 274,916 | 63,880 | 9,591 |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역시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숙련수준별로 집계가능한데, 전체 미충원인원은 110천명인데 이 중 외국인 미충원인원은 5천명으로 전체 미충원인원의 4.7% 수준이다. 미충원율은 36.0%으로 내국인(17.9%)에 비해 배 이상 높다. 부족인원 해소 노력은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숙련수준별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표 3-1-4>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 명, %, %p)

| | 미충원인원 | | | | | 미충원율 | | | | |
|-----------|-------------------|-------------------|------------------|-----------------|-----------------|----------------|----------------|---------------|---------------|----------------|
| | 총원 | 내국인 | | | 외국인 | 총원 | 내국인 | | | 외국인 |
| | | 상용 | 기타 | | | | 상용 | 기타 | | |
| 2010.1/4 | 110,055 [43.8] | 104,881 [42.2] | 96,859 [42.7] | 8,022 [35.7] | 5,174 [88.9] | 17.9 (-0.1) | 17.5 (-0.4) | 20.1 (0.3) | 6.8 (-1.7) | 36.0 (13.8) |
| 2009.3/4 | 82,019 | 79,520 | 72,618 | 6,902 | 2,499 | 17.6 | 17.6 | 20.1 | 7.7 | 17.9 |
| 2009.1/4P | 76,510 | 73,772 | 67,859 | 5,913 | 2,739 | 18.0 | 17.9 | 19.8 | 8.5 | 22.2 |

<표 3-1-5> 사업체 규모별 부족인력 해소노력 실태(다중응답)

(단위 : 건, %)

| 부족인력 해소노력 | 5~9인 | | 10~29인 | | 30~99인 | | 100~299인 | | 300인 이상 | |
|-------------------|-------|--------|--------|--------|--------|--------|----------|--------|---------|--------|
|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 4,673 | [39.0] | 4,872 | [47.5] | 2,881 | [51.0] | 1,454 | [56.7] | 857 | [62.5] |
| 채용비용 또는 광고비용 증액 | 1,659 | [13.8] | 1,522 | [14.8] | 1,113 | [19.7] | 600 | [23.4] | 342 | [24.9] |
| 생산설비 자동화 | 1,920 | [16.0] | 2,254 | [22.0] | 1,368 | [24.2] | 740 | [28.9] | 443 | [32.3] |
| 채용예정자 등 직접적인 인력양성 | 2,122 | [17.7] | 2,303 | [22.4] | 1,495 | [26.5] | 699 | [27.3] | 524 | [38.2] |
| 구인방법 또는 채용경로 변경 | 5,092 | [42.5] | 4,812 | [46.9] | 2,889 | [51.2] | 1,416 | [55.2] | 716 | [52.2] |
| 외국인 인력 활용 | 754 | [6.3] | 876 | [8.5] | 521 | [9.2] | 219 | [8.5] | 54 | [3.9] |
| 임금(급여)인상 | 3,475 | [29.0] | 3,143 | [30.6] | 1,675 | [29.7] | 714 | [27.9] | 371 | [27.1] |
| 아무것도 하지 않음 | 2,732 | [22.8] | 1,662 | [16.2] | 662 | [11.7] | 219 | [8.5] | 74 | [5.4] |
| 기타 | 974 | [8.1] | 723 | [7.0] | 470 | [8.3] | 203 | [7.9] | 101 | [7.4] |

주 : 다중응답이며, []는 각 사업체 규모별 총응답사업체 대비 비율[(사업체 규모별 응답수/사업체 규모별 총응답사업체)*100].

한편, 산업대분류별 외국인력 고용실태를 보면 2005년 124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18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의 경우 169천명으로 감소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의 영향 때문이다. 산업별 외국인력 분포를 보면 2009년의 경우 제조업(74.8%)에 가장 많이 취업해있고 기타서비스업도 16.3%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3-1-6> 외국인력의 산업별 분포

(단위 : 명, %)

| | 2004 | | 2005 | | 2007 | | 2008 | | 2009 | |
|---------|---------|------|---------|------|---------|------|---------|------|---------|------|
| | 인 원 | 비 중 | 인 원 | 비 중 | 인 원 | 비 중 | 인 원 | 비 중 | 인 원 | 비 중 |
| 광 업 | 22 | 0.0 | 34 | 0.0 | 59 | 0.0 | 141 | 0.1 | 90 | 0.0 |
| 제조업 | 113,646 | 81.4 | 99,147 | 79.6 | 125,705 | 76.6 | 129,052 | 67.6 | 138,108 | 74.8 |
| 건설업 | 2,923 | 2.1 | 4,794 | 3.8 | 6,516 | 4.0 | 11,780 | 6.2 | 4,955 | 2.7 |
| 전기, 가스업 | 10 | 0.0 | 15 | 0.0 | 154 | 0.1 | 19 | 0.0 | 12 | 0.0 |
| 도소매업 | 3,239 | 2.3 | 2,388 | 1.9 | 3,432 | 2.1 | 2,337 | 1.2 | 3,318 | 1.8 |
| 음식숙박업 | 2,775 | 2.0 | 1,896 | 1.5 | 3,918 | 2.4 | 9,562 | 5.0 | 8,039 | 4.4 |
| 기타서비스업 | 16,933 | 12.1 | 16,246 | 13.0 | 24,348 | 14.8 | 38,045 | 19.9 | 30,105 | 16.3 |
| 전 체 | 139,547 | 100 | 124,520 | 100 | 164,131 | 100 | 190,936 | 100 | 184,627 | 100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조사」, 각호.

하지만 이 수치는 법무부 자료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취업비자 취득자는 모두 55만명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 저숙련 인력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취업해 있지만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표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둘째, 방문취업자 중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비중이 상당수이고 나머지 비자의 경우도 일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취업상태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비자 체류자가 모두 경제활동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외국인력의 직종별 분포는 <표 3-1-7>과 같다. 환경 인쇄 목재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재료관련직, 기계관련직 그리고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 직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표 3-1-7> 자격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2009년말 현재)

(단위: 명)

| | | 총체류자 | 합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16~60세) | '불법체류자 (전 체) | |
|------------|------------|---------------|---------|-------------------|-----------------|--------|
| 전문인력 | 전체 | 551,858 | 503,829 | 45,683 | 48,029 | |
| | 소계 | 40,698 | 38,497 | 2,180 | 2,201 | |
| | 교수(E-1) | 2,056 | 2,051 | 3 | 5 | |
| | 회화지도(E-2) | 22,642 | 22,547 | 93 | 95 | |
| | 연구(E-3) | 2,066 | 2,056 | 9 | 10 | |
| | 기술지도(E-4) | 197 | 192 | 5 | 5 | |
| | 전문직업(E-5) | 536 | 518 | 13 | 18 | |
| | 예술홍행(E-6) | 4,305 | 2,961 | 1,341 | 1,344 | |
| | 특정활동(E-7) | 8,896 | 8,172 | 716 | 724 | |
| 단순 기능인력 | 전체 | 511,160 | 465,332 | 43,503 | 45,828 | |
| | 비전문 취업 | 소 계 | 188,363 | 158,198 | 28,550 | 30,165 |
| | | 합법화(E-9-1) | 17,806 | 12 | 16,222 | 17,794 |
| | | 고용허가(E-9-2~7) | 169,849 | 158,183 | 11,666 | 11,666 |
| | | 고용특례(E-9-A~K) | 708 | 3 | 662 | 705 |
| | 연수취업(E-8) | 11,307 | 51 | 11,256 | 11,256 | |
| | 선원취업(E-10) | 5,207 | 4,078 | 1,129 | 1,129 | |
| | 방문취업(H-2) | 306,283 | 303,005 | 2,568 | 3,278 | |
| 단기취업(C-4) | 715 | 423 | 283 | 292 | | |
| 산업연수(D-3) | 13,325 | 1,170 | 12,134 | 12,155 | | |

자료 : 법무부(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60502.jsp)

<표 3-1-8> 외국인력의 직종별 분포

(단위: 명, %)

| | 2004 | | 2005 | | 2007 | | 2008 | | 2009 | |
|-----------------------|---------|------|---------|------|---------|------|---------|------|---------|------|
|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 | 인원 | 비중 |
| 관리직 | 1,508 | 1.1 | 1,611 | 1.3 | 2,099 | 1.3 | 1,429 | 0.7 | 1,688 | 0.9 |
|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 2,468 | 1.8 | 2,198 | 1.8 | 2,549 | 1.6 | 3,854 | 2.0 | 3,727 | 2.0 |
| 금융·보험관련직 | 883 | 0.6 | 286 | 0.2 | 353 | 0.2 | 742 | 0.4 | 484 | 0.3 |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7,236 | 5.2 | 8,499 | 6.8 | 13,016 | 7.9 | 19,304 | 10.1 | 17,458 | 9.5 |
| 법률 경찰 소방·교통관련직 | 149 | 0.1 | 157 | 0.1 | 106 | 0.1 | 169 | 0.1 | 194 | 0.1 |
| 보건 의료관련직 | 98 | 0.1 | 177 | 0.1 | 226 | 0.1 | 227 | 0.1 | 240 | 0.1 |
|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 168 | 0.1 | 91 | 0.1 | 263 | 0.2 | 356 | 0.2 | 179 | 0.1 |
| 문화 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 | 3,351 | 2.4 | 2,833 | 2.3 | 3,408 | 2.1 | 5,486 | 2.9 | 768 | 0.4 |
| 운전 및 운송관련직 | 1,922 | 1.4 | 962 | 0.8 | 3,362 | 2.0 | 4,493 | 2.4 | 3,672 | 2.0 |
| 영업 및 판매관련직 | 385 | 0.3 | 1,333 | 1.1 | 1,767 | 1.1 | 1,622 | 0.8 | 1,547 | 0.8 |
| 경비 및 청소관련직 | 682 | 0.5 | 516 | 0.4 | 1,453 | 0.9 | 1,480 | 0.8 | 2,210 | 1.2 |
|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관련직 | 373 | 0.3 | 310 | 0.2 | 168 | 0.1 | 83 | 0.0 | 266 | 0.1 |
| 음식서비스관련직 | 2,735 | 2.0 | 1,776 | 1.4 | 3,759 | 2.3 | 9,642 | 5.1 | 8,068 | 4.4 |
| 건설관련직 | 2,788 | 2.0 | 5,565 | 4.5 | 6,185 | 3.8 | 12,425 | 6.5 | 6,610 | 3.6 |
| 기계관련직 | 12,843 | 9.2 | 12,869 | 10.3 | 24,661 | 15.0 | 27,840 | 14.6 | 29,284 | 15.9 |
| 재료관련직(금속 유리 접토 시멘트) | 17,915 | 12.8 | 19,203 | 15.4 | 29,594 | 18.0 | 25,903 | 13.6 | 32,009 | 17.3 |
| 화학관련직 | 13,137 | 9.4 | 13,293 | 10.7 | 17,737 | 10.8 | 15,100 | 7.9 | 16,414 | 8.9 |
| 섬유 및 의복관련직 | 16,240 | 11.6 | 10,158 | 8.2 | 8,080 | 4.9 | 7,802 | 4.1 | 5,748 | 3.1 |
| 전기전자관련직 | 12,551 | 9.0 | 8,282 | 6.7 | 12,738 | 7.8 | 12,371 | 6.5 | 10,092 | 5.5 |
| 정보통신관련직 | 789 | 0.6 | 613 | 0.5 | 529 | 0.3 | 641 | 0.3 | 657 | 0.4 |
| 식품가공관련직 | 3,224 | 2.3 | 2,379 | 1.9 | 3,832 | 2.3 | 5,089 | 2.6 | 4,688 | 2.5 |
| 환경 인쇄 목재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38,089 | 27.3 | 31,412 | 25.2 | 28,240 | 17.2 | 34,638 | 18.1 | 38,437 | 20.8 |
| 농림어업관련직 | 40 | 0.0 | 0 | 0.0 | 10 | 0.0 | 289 | 0.2 | 177 | 0.1 |
| 전 체 | 139,548 | 100 | 124,520 | 100 | 164,131 | 100 | 190,936 | 100 | 184,627 | 100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조사」, 각호.

제2절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

1. 마이크로데이터 개요¹⁴⁾

가.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나 인력수요에의 탄력적 대응이 부족하고 외국인력의 편법 활용, 송출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과 사업장 이탈,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의 제도적 모순과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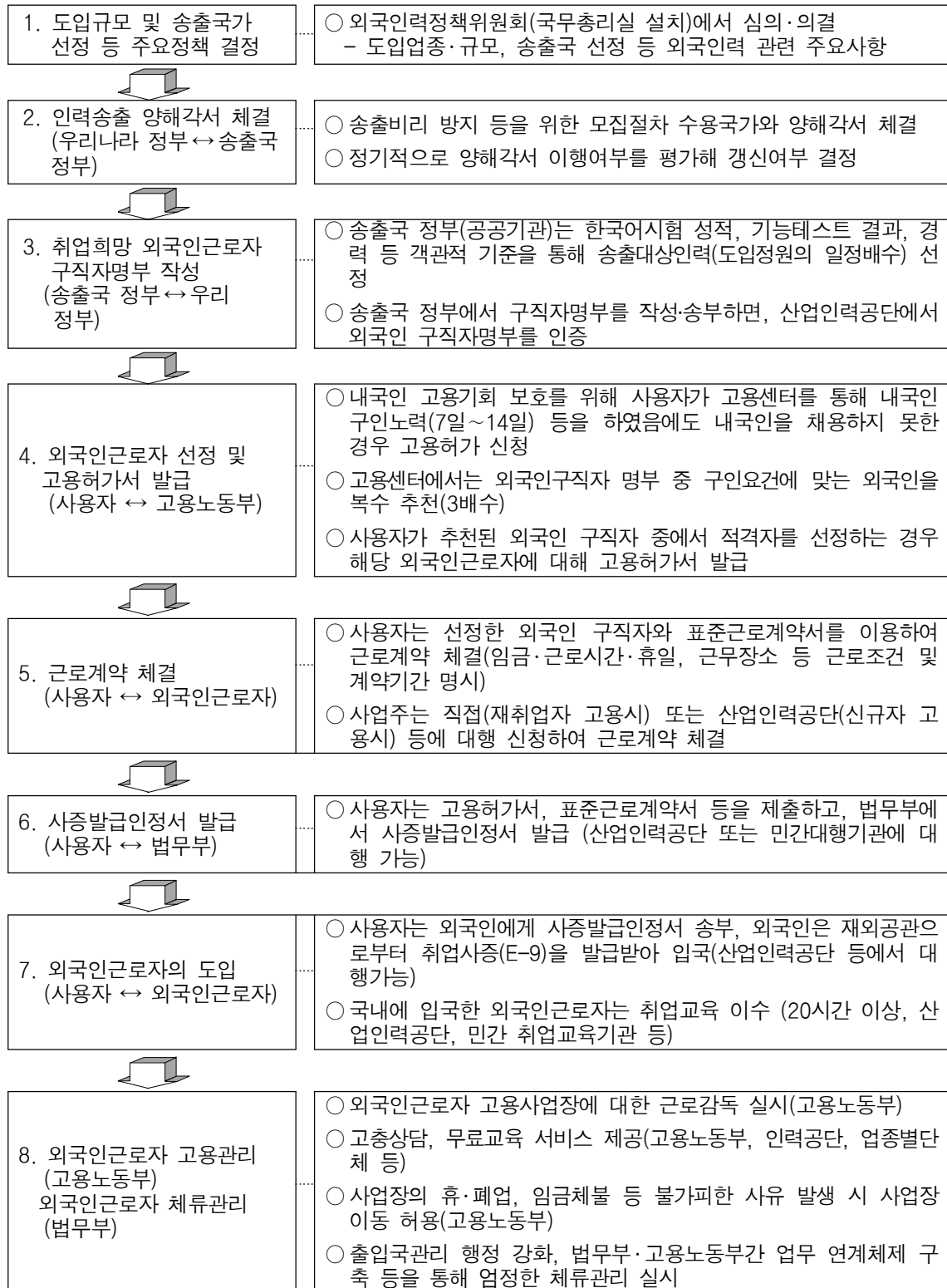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이며, 2010년 현재 15개 송출국가(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와 양허각서(MOU)를 체결하고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나.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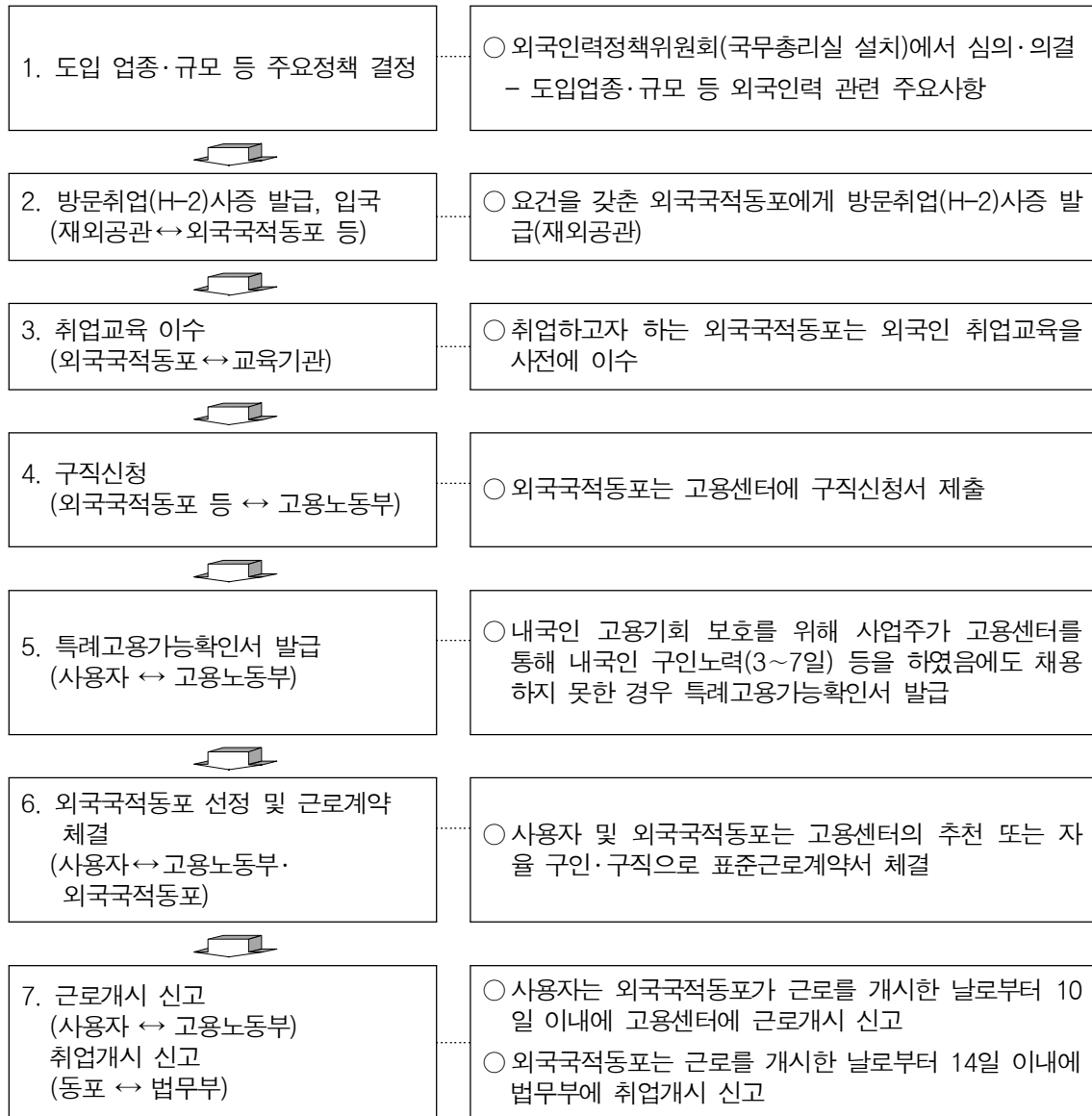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와 외국국적동포(H-2)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관련 정보가 누적되는 체계이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특례자(국적동포)의 업무 프로세스는 아래의 [그림 3-2-1] 및 [그림 3-2-2]와 같다.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는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국적동포) 개인별로 DB가 구축되고 알선 및 고용 여부는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DB를 연결해 확인할 수 있다.

14) 고용허가제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2008. 7)을 참조

[그림 3-2-1]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선정 · 도입 절차



[그림 3-2-2] 외국국적동포(H-2) 선정·도입



다.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의 주요 항목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 별로 DB가 생성되고 있다. 사업장 관련 자료는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는 고용허가서 발급관련 자료와 구인신청 후 알선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정보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구직신청시 제출하는 외국인 근로자 개인정보와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업종, 직종, 지역, 임금 등)를 확인할 수

있다. 구인·구직신청 및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마스터별 주된 변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표 3-2-1>은 외국인 기본정보로 이 정보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한 자가 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한국의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성되는 정보이다. 이들 정보는 구직신청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추출되며 주요 정보는 개별 근로자의 인적 특성(성, 연령, 국적, 학력 등)과 한국어시험,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능력 정도 등이다.

<표 3-2-1> 외국인 기본정보 마스터의 주요 변수

| COLUMN | COLUMN_COMMENT | COLUMN | COLUMN_COMMENT |
|---------------------|----------------|--------------------|----------------|
| EMPL_PERM_ACQ_DT | 고용허가취득일자 | LEAVE_DT | 출국일 |
| EMPL_PERM_LOST_DT | 고용허가상실일자 | VISIT_CAPACITY_CD | 체류자격코드 |
| COMP_MNG_NO | 사업장관리번호 | FORE_REG_NO | 외국인등록번호 |
| FORE_NAME | 영문이름 | PASSPORT_NO | 여권번호 |
| FORE_NATIONALITY_CD | 국가코드 | PASSPORT_END_DT | 여권만료일 |
| FORE_BIRTH | 생년월일 | CAPACITY_CNTR_CD1 | 자격면허부여국가1 |
| FORE_SEX | 성별 | CAPACITY_PART1 | 자격면허계열1 |
| FORE_AGES | 연령 | CAPACITY_NM1 | 자격면허명칭1 |
| FORE_MARITAL_CD | 혼인여부 | CAPACITY_CNTR_CD2 | 자격면허부여국가2 |
| FORE_SOCIAL_NO | 신분증번호 | CAPACITY_PART2 | 자격면허계열2 |
| FORE_HEIGHT | 신장 | CAPACITY_NM2 | 자격면허명칭2 |
| FORE_WEIGHT | 몸무게 | CAPACITY_CNTR_CD3 | 자격면허부여국가3 |
| FORE_EYE_L | 시력_좌 | CAPACITY_PART3 | 자격면허계열3 |
| FORE_EYE_R | 시력_우 | CAPACITY_NM3 | 자격면허명칭3 |
| FORE_COLOR_BLIND | 색맹여부 | LANG_LEVEL_KOR | 언어능력_한국어 |
| FORE_HADDR_NM | 본국주소 | LANG_LEVEL_ENG | 언어능력_영어 |
| FORE_HPHONE | 본국전화번호 | LANG_LEVEL_ETC_CD | 언어능력_기타언어 |
| FORE_ADDR_ZIP_CD | 국내우편번호 | LANG_LEVEL_ETC | 언어능력_기타 |
| FORE_ADDR_NM | 국내주소 | KOR_LANG_KIND | 한국어시험종류 |
| FORE_ADDR_ETC_NM | 국내기타주소 | KOR_LANG_MARKS | 한국어시험점수 |
| FORE_PHONE | 국내전화번호 | EMPL_PERM_NO | 고용허가서번호 |
| FORE_HAND_PHONE | 휴대폰번호 | SELF_LEAVE_YN | 자진출국자여부 |
| SCHOL_CNTR_CD | 학력국가 | KOR_EDUC_ORG | 한국어교육기관 |
| LAST_COURSE_CD | 학력종류 | KOR_EDUC_DT_START | 한국어교육_시작 |
| SCHOL_NM | 학교명 | KOR_EDUC_DT_END | 한국어교육_종료 |
| MAJOR_CNTR_CD | 전공국가 | BUILD_CAPACITY_YN | 건설업자격증유무 |
| MAJOR_KIND | 전공계열 | KOR_TEST_READING | 한국어능력시험읽기점수 |
| MAJOR_NM | 전공명 | KOR_TEST_LISTENING | 한국어능력시험듣기점수 |
| FORE_GUBUN | 외국인구분 | KOR_TEST_TOTAL | 한국어능력시험총점수 |
| VISA_LEAV_NO | 사증발급인정서발급번호 | KOR_TEST_AVERAGE | 한국어능력시험평균점수 |
| VISA_LEAV_DT | 사증발급인정서발급일 | KOR_TEST_CENTER | 한국어능력시험기관 |
| ENTRY_DT | 입국일 | KOR_TEST_DT | 한국어능력시험날짜 |

<표 3-2-2> 사업장 기본정보 마스터의 주요 변수

| COLUMN | COLUMN_COMMENT | COLUMN | COLUMN_COMMENT |
|-------------------|----------------|---------------------|----------------|
| COMP_MNG_NO | 사업장관리번호 | EMPL_INSUR_JOIN_YN | 고용보험가입유무 |
| COMP_GUBUN | 사업자구분 | INDUS_INSUR_JOIN_YN | 산재보험가입유무 |
| COMP_REG_NO | 사업자등록번호 | HEAL_INSUR_JOIN_YN | 건강보험가입유무 |
| COMP_NM | 사업장명 | MAIN_COMP_GUBUN | 주된사업장구분 |
| ZIP_CD | 우편번호 | MAIN_COMP_MNG_NO | 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ADDR_NM | 주소 | MAIN_COMP_REG_NO | 주된사업장_사업자등록번호 |
| PHONE | 전화번호 | TOT_COMP_CNT | 총사업장수 |
| FAX_NO | 팩스번호 | TOT_NATL_LABR_CNT | 총상시내국인근로자수 |
| EMAIL | 이메일 | TOT_FORE_LABR_CNT | 총상시외국인근로자수 |
| EMPL_INSUR_IND_CD | 고용보험_업종 | INDUSTRYM_CD | 세부업종 |
| INDUSTRY_CD | 업종 | QUOTA_INDUSTRY_CD | 쿼터업종 |
| TOT_LABR_CNT | 상시근로자수 | SUM_TOT_LABR_CNT | 총상시근로자수 |
| NATL_LABR_CNT | 상시내국인근로자수 | INSERT_MODE | 등록방법 |
| FORE_LABR_CNT | 상시외국인근로자수 | SJ_BKIND_CD | 산재보험_업종 |
| NATL_MONTH_AMT | 내국인월임금 | SJ_BKIND_NM | 산재보험_업종명 |
| FORE_MONTH_AMT | 외국인월임금 | PENS_INSUR_JOIN_YN | 국민연금 가입여부 |
| WORK_CONTENTS | 사업내용 | EMPL_INSUR_NO | 고용보험 관리번호 |

다음으로 사업장 기본정보 마스터(표 3-2-2 참조)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쳤음에도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하고 적격한 경우 발급되는 고용허가서와 구인신청서를 기초로 형성된다. 사업장 기본정보에는 사업장 특성을 알 수 있는 업종, 상시근로자 수, 임금수준, 4대 사회보험 제공 여부 등의 기본정보가 있다.

<표 3-2-3>의 구직신청은 구직신청을 한 외국인으로 구직자로 선발된 자의 정보로 한국에서의 취업 희망업종, 직종, 임금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3> 구직신청 및 사업장 변경신청

| COLUMN | COLUMN_COMMENT | COLUMN | COLUMN_COMMENT |
|----------------|----------------|-------------------|----------------|
| JOB_PERM_NO | 구직인증번호 | HAMT_PAY_TY | 희망임금_보수형태 |
| REQ_GUBUN | 신청구분 | HAMT_PAY_AMT | 희망임금_보수금액 |
| FORE_GUBUN | 외국인구분 | MONTH_AVG_AMT | 월평균임금 |
| REG_ORG_CD | 접수기관 | EMPL_EDUC_ORG_CD | 취업교육기관 |
| REG_YYYY | 접수년도 | EMPL_EDUC_FR_DT | 취업교육일자_시작일 |
| REG_SEQ_NO | 접수일련번호 | EMPL_EDUC_TO_DT | 취업교육일자_종료일 |
| INDUSTRY_CD1 | 희망업종1 | REQUEST_DT | 신청일 |
| INDUSTRY_CD2 | 희망업종2 | PROGRESS_GUBUN | 처리구분 |
| INDUSTRY_CD3 | 희망업종3 | MEDIAT_CNT | 알선횟수 |
| OCCUP_CD1 | 희망직종1 | BEF_COMP_MNG_NO | 전사업장관리번호 |
| OCCUP_CD2 | 희망직종2 | BEF_COMP_LOSS_DT | 전사업장상실일 |
| OCCUP_CD3 | 희망직종3 | BEF_COMP_LOSS_RSN | 전사업장상실사유 |
| DUTY_CONTENTS1 | 희망직무내용1 | REREGL_YN | 재등록여부 |
| DUTY_CONTENTS2 | 희망직무내용2 | REREGL_RSN | 재등록사유 |
| DUTY_CONTENTS3 | 희망직무내용3 | PROCESS_GUBUN | 처리구분 |

<표 3-2-4>의 구인신청 마스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고용지원 센터에 제출하는 구인신청서를 기준으로 형성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고용하고자 하는 구인자의 성, 학력수준, 연령, 근무시간, 근무지, 휴일, 임금, 상여금, 숙박제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를 통해 사업주들이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형과 이들의 근로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2-4> 구인신청 마스터의 주요 변수

| COLUMN | COLUMN_COMMENT | COLUMN | COLUMN_COMMENT |
|-------------------|----------------|-------------------|----------------|
| OFFER_PERM_NO | 구인인증번호 | DUTY_TO_TIME | 근무시간_종료시간 |
| COMP_MNG_NO | 사업장관리번호 | DUTY_SHIFT_CD | 근무교대 |
| COMP_REG_NO | 사업자등록번호 | DUTY_SHIFT_ETC | 근무교대_기타 |
| INVITE_CNT | 모집인원 | PAY_TY | 임금지급형태 |
| INDUSTRY_CD | 업종 | PAY_AMT | 임금액 |
| COURSE_RANGE_CD | 학력범위 | BONUS_AMT | 상여금 |
| FORE_SEX | 성별 | MONTH_AVG_AMT | 월평균임금 |
| LOW_AGES | 최소연령 | PAY_RECV_WAY_CD | 임금지급방법 |
| HIGH_AGES | 최고연령 | BOARD_OFFFEER_CD | 숙식제공여부 |
| DUTY_PLAN_LOCAL | 근무예정지 | REQUEST_DT | 신청일 |
| NATIONALITY_CD1 | 희망국적1 | FINISH_DT | 마감일 |
| NATIONALITY_CD2 | 희망국적2 | LACK_MANS_CNT | 인력부족인원 |
| LICENSE_CD1 | 자격면허1 | ADOP_CNT | 채용인원 |
| LICENSE_CD2 | 자격면허2 | EMPL_PERM_CNT | 고용허가발급인원 |
| MAJOR_KIND1 | 전공1 | MEDIAT_MENS_CNT | 알선인원 |
| MAJOR_KIND2 | 전공2 | LACK_CONFIRM_NO | 인력부족확인서번호 |
| LANG_LEVEL_KOR | 언어능력_한국어 | INDUSTRYM_CD | 업종 |
| LANG_LEVEL_ENG | 언어능력_영어 | QUOTA_INDUSTRY_CD | 쿼터업종 |
| LANG_LEVEL_ETC_CD | 언어능력_기타언어 | MEDIAT_RATE | 알선배수 |
| LANG_LEVEL_ETC | 언어능력_기타 | DAY_ADD_TIME | 일평균시간외근로시간 |
| LABR_TERM_FR_DT | 근로계약기간_시작일 | ROOM_YN | 기숙사제공여부 |
| LABR_TERM_TO_DT | 근로계약기간_종료일 | BOARD_YN | 식사제공 |
| DUTY_FR_TIME | 근무시간_시작시간 | APPRENTICE_YN | 수습기간_활용 유무 |

마지막으로 <표 3-2-5>의 근로계약서 마스터는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에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정보로 해당 마스터에 입력된 정보는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고용허가서 내용과 동일하다. 즉 근로계약기간, 취업 장소, 업무 내용,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기간, 휴일에 관한 사항, 임금, 임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 그 밖에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호간에 정하고자 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예방과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2-5> 근로계약서 마스터의 주요 변수

| COLUMN | COLUMN_COMMENT | COLUMN | COLUMN_COMMENT |
|-------------------|----------------|-------------------|----------------|
| EMPL_PERM_NO | 고용허가서번호 | COMP_REG_NO | 사업자등록번호 |
| EMPL_PERM_REQ_DT | 고용허가신청일 | DUTY_SHIFT_CD | 근무교대 |
| COMP_MNG_NO | 사업장관리번호 | DUTY_SHIFT_ETC | 근무교대_기타 |
| LABR_TERM_FR_DT | 근로계약기간_시작일 | HOLIDAY_SUNDAY_YN | 휴일종류_일요일 |
| LABR_TERM_TO_DT | 근로계약기간_종료일 | HOLIDAY_LEGAL_YN | 휴일종류_공휴일 |
| EMPL_ENG_PLACE | 취업의장소(영문) | HOLIDAY_EWEEK_YN | 휴일종류_매주토요일 |
| FORE_DUTY_FR_TIME | 근무개시시간 | HOLIDAY_SWEEK_YN | 휴일종류_격주토요일 |
| FORE_DUTY_TO_TIME | 근무종료시간 | HOLIDAY_ETC_NM | 휴일종류_기타 |
| FORE_REST_FR_TIME | 휴게개시시간 | BONUS_AMT | 상여금 |
| FORE_REST_TO_TIME | 휴게종료시간 | PAY_RECV_WAY_CD | 임금지급방법 |
| FORE_CONSERV_TY | 보수액_구분 | BOARD_OFFEER_CD | 숙식제공여부 |
| FORE_CONSERV_AMT | 보수액_금액 | LEAV_DT | 발급일 |
| AMT_RECV_DT | 임금지급일 | BONUS_GUBUN | 상여금_구분 |
| MONTH_AVG_AMT | 월평균임금 | ROOM_YN | 기숙사제공여부 |
| LABR_CONTR_DT | 체결일 | BOARD_YN | 식사제공 |
| LABR_CONTR_YN | 체결여부 | APPRENTICE_YN | 수습기간_활용_유무 |
| LABR_NCONTR_RSN | 미체결사유 | APPRENTICE_CD | 수습기간_코드 |
| FORE_SOCIAL_NO | 신분증번호 | APPRENTICE_AMT | 수습기간_통상임금 |

라.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의 관리 및 정보제공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는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지원센터가 담당하며, 해당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분석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즉 한국어능력 시험에서부터 구직신청서 작성 후 구직자 명부 관리까지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며,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에서 외국인 근로자 알선과 관련된 업무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mployment Permit System)에 누적·관리되고 있는데, 구축된 DB는 행정처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추가·수정되는 체계이다. 이처럼 관련 업무 담당기관과 자료관리 담당기관이 상이한데 업무효 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업무이관 혹은 자료간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www.eps.go.kr>)을 관리하며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의 고용노동행정통계(<http://laborstat.molab.go.kr/>)를 통해 월 단위로 공표되고 있다. 이 자료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상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허가제에 의한 월별·업종별·국가별 취업인원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노동행정통계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월별 외국인 근로자(일반, 동포), 업종 및 국적별 고용동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특성 및 고용사업장 특성,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는 행정 DB인 관계로 학술·정책분석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2. 고용허가제 원 자료를 통한 분석 가능수준

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특성(성, 연령, 국적, 혼인 여부, 학력별 분포)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성, 출생연월, 국적, 혼인 여부, 학력수준 등)가 입력되어 있는 관계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구학적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2-6>은 일반외국인 근로자와 국적동포인 특례자를 각각 구분하여 인적 특성을 비교한 표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용허가제 일반은 남성 비율이 높고 특례자는 여성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일반은 평균 연령이 29.7세에 불과하지만 특례자는 45.0세인데 이는 고용허가제 제도 설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 중심의 젊은이를 도입하기 때문이며, 특례자는 국적동포에게 취업이 허용된 업종이 주로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이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6개국인데 우리나라와 송출국가 정부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국가가 15개국이지만 데이터 제공 시점에서 인력이 수입되고 있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특례자는 중국이 전체 특례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일반의 경우 고졸 이상이 80.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 선발시 학력을 주요 요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특례자의 경우는 고졸이 45.5%에 이르는 등 중등교육 수료자가 85% 수준으로 고용허가제 일반과 특례자 간 학력격차가 큰 편이다.

<표 3-2-6> 고용허가제 일반과 특례자의 인적 특성

(단위: 명, %)

| | | 일반 외국인 | | 특례자 |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성 | 남자 | 64,168 | 87.9 | 55,654 | 62.4 |
| | 여자 | 8,868 | 12.1 | 33,502 | 37.6 |
| 연령 | 25세 미만 | 21,161 | 29.0 | 20 | 0.0 |
| | 25~29세 | 20,772 | 28.4 | 4,951 | 5.6 |
| | 30~34세 | 18,015 | 24.7 | 8,809 | 9.9 |
| | 35~9세 | 11,013 | 15.1 | 14,173 | 15.9 |
| | 40~49세 | 2,017 | 2.8 | 34,924 | 39.2 |
| | 50~59세 | 58 | 0.1 | 24,013 | 26.9 |
| | 60세 이상 | - | - | 2,266 | 2.5 |
| | 평균 연령 | 29.7 | | 45.0 | |
| 혼인상태 | 미혼 | 48,040 | 65.8 | 5,062 | 5.7 |
| | 기혼 | 24,996 | 34.2 | 84,094 | 94.3 |
| 국적 | 스리랑카 | 5,919 | 8.1 | - | - |
| | 인도네시아 | 6,849 | 9.4 | - | - |
| | 몽골 | 10,712 | 14.7 | - | - |
| | 필리핀 | 16,705 | 22.9 | - | - |
| | 태국 | 14,530 | 19.9 | - | - |
| | 베트남 | 18,321 | 25.1 | - | - |
| | 한국계 중국 | - | - | 89,002 | 99.8 |
| | 한국계 러시아 | - | - | 24 | 0.0 |
| | 기타 | - | - | 130 | 0.1 |
| 학력 | 초졸 | 5,011 | 6.9 | 8,484 | 9.5 |
| | 중졸 | 9,612 | 13.2 | 35,017 | 39.3 |
| | 고졸 | 43,142 | 59.1 | 40,600 | 45.5 |
| | 전문대졸 | 7,719 | 10.6 | 1,687 | 1.9 |
| | 대졸 이상 | 7,552 | 10.3 | 3,368 | 3.8 |
| | 전 체 | 73,036 | 100.0 | 89,156 | 100.0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2007년 5월 30일 현재).

<표 3-2-7> 외국인력 스스로 평가한 한국어 및 영어 능력수준

(단위: %, 명)

| | | 한국어 능력 | | | 영어 능력 | | | | 전체 |
|----------------|--------|--------|------|------|-------|------|------|------|--------|
| |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무응답 | |
| 일반 고용 허가 | 스리랑카 | 0.8 | 92.4 | 6.8 | 1.3 | 93.2 | 2.4 | 3.2 | 5,919 |
| | 인도네시아 | 4.0 | 90.5 | 5.5 | 1.7 | 43.1 | 13.1 | 42.0 | 6,849 |
| | 몽골 | 1.2 | 93.0 | 5.7 | 0.2 | 9.0 | 11.7 | 79.0 | 10,712 |
| | 필리핀 | 0.1 | 94.9 | 5.1 | 0.9 | 98.3 | 0.8 | 0.0 | 16,705 |
| | 태국 | 1.1 | 6.8 | 92.2 | 0.2 | 7.4 | 53.6 | 38.8 | 14,530 |
| | 베트남 | 1.6 | 93.1 | 5.2 | 0.0 | 2.0 | 7.1 | 90.9 | 18,321 |
| | 소계 | 1.3 | 76.0 | 22.7 | 0.6 | 37.4 | 15.7 | 46.3 | 73,036 |
| 특례 고용 허가 | 한국계중국 | 40.0 | 56.8 | 3.3 | 0.1 | 0.7 | 99.2 | - | 89,002 |
| | 한국계러시아 | 33.3 | 54.2 | 12.5 | 8.3 | 4.2 | 87.5 | - | 24 |
| | 기타 | 25.4 | 52.3 | 22.3 | 1.5 | 3.8 | 94.6 | - | 130 |
| | 소계 | 40.0 | 56.8 | 3.3 | 0.1 | 0.7 | 99.2 | - | 89,156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2007년 5월 30일 현재).

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및 영어 능력수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연령(18~40세), 한국어 능력수준, 건강상태, 출입국 결격사유가 없을 것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능력수준은 송출비리 방지와 외국인 구직자 선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05년 8월 17일 이후에 선발되는 자는 한국어능력시험 통과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은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근로활동에도 필수요건일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평가한 외국어 능력 정도를 보면 고용허가제일반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상급수준이라고 응답한 자는 1.3%에 불과하고, 중급이라고 응답한 자는 76.0%에 이르고 있다. 특례자는 국적동포인 관계로 한국어 수준이 상급이라고 응답한 자가 40.0%, 중급자가 56.8%로 나타나는 등 중급 이상이 96.8%이다. 그러나 영어능력 수준은 무응답자가 많고 특례자의 경우 저학력자 비중이 높은 관계로 영어 능력 정도가 외국인 일반에 비해 훨씬 낮다.

다. 일반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취업희망 업종 및 지역, 희망 임금수준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직신청서에는 개인 인적사항(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신장, 몸무게, 시력 등)

외에 희망취업조건(업종, 임금, 지역, 숙식제공 등), 이력 및 경력 사항을 기입하는데, 구직 신청서를 통해 외국인들의 희망 근로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취업 희망 업종과 희망 지역을 제시한 것으로 희망 업종은 고용허가제-일반의 경우 제조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97.5%로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특례자는 건설업(46.4%)과 서비스업(38.5%)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는데,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의 81.9%가 서비스업을 희망한 반면, 남성은 93.2%가 건설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희망 업종이 상이하였다. 취업 희망 지역을 보면 고용허가제 일반의 경우 희망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자가 89.5%에 이르고, 다음으로 서울과 수도권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특례자의 경우에는 서울·수도권 지역을 희망하는 자가 66.3%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 사업체 취업을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희망임금을 보면 <표 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일반은 평균 75만 원 수준이고, 국적별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83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몽골과 베트남은 72만~73만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희망 임금수준이 낮다. 고용허가제-특례자는 124만 원으로 고용허가제-일반취업자의 희망임금과 약 5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표 3-2-8> 일반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희망 업종 및 지역

(단위: 명, %)

| | | 일반 고용허가 | | 특례 고용허가 |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희망 업종 | 농축산업 | 1,527 | 2.1 | 720 | 0.8 |
| | 연근해어업 | 21 | 0.0 | 14 | 0.0 |
| | 제조업 | 71,223 | 97.5 | 12,680 | 14.2 |
| | 건설업 | 166 | 0.2 | 41,378 | 46.4 |
| | 서비스업 | 99 | 0.1 | 34,356 | 38.5 |
| | 양식어업 | | | 8 | 0.0 |
| 희망 지역 | 서울 | 3,654 | 5.0 | 35,644 | 40.0 |
| | 수도권 | 1,468 | 2.0 | 23,421 | 26.3 |
| | 충청 | 346 | 0.5 | 3,014 | 3.4 |
| | 호남 | 119 | 0.2 | 1,185 | 1.3 |
| | 영남 | 1,948 | 2.7 | 5,330 | 6.0 |
| | 기타 | 122 | 0.2 | 705 | 0.8 |
| | 지역 무관 | 65,379 | 89.5 | 19,857 | 22.3 |
| 전 체 | | 73,036 | 100.0 | 89,156 | 100.0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2007년 5월 30일 현재).

<표 3-2-9>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희망임금 수준

(단위: 천원, 명)

| | | 2004 | | 2005 | | 2006 | | 2007 | | 전 체 | |
|----------------|---------|--------|------|--------|--------|--------|--------|--------|-------|---------|--------|
| | | 임금 | 인원 | 임금 | 인원 | 임금 | 인원 | 임금 | 인원 | 임금 | 인원 |
| 일반 고용 허가 | 스리랑카 | 687 | 214 | 687 | 2974 | 657 | 2166 | 656 | 565 | 671.6 | 5919 |
| | 인도네시아 | 824 | 359 | 8176 | 4361 | 8527 | 1215 | 9237 | 914 | 8887 | 6849 |
| | 몽골 | 661 | 500 | 7252 | 4433 | 7315 | 4708 | 7330 | 1076 | 7280 | 10712 |
| | 필리핀 | 852 | 82 | 8536 | 5308 | 8502 | 8484 | 8500 | 2131 | 8515 | 16705 |
| | 태국 | 6405 | 58 | 6544 | 5964 | 7211 | 6746 | 7081 | 1282 | 6891 | 14530 |
| | 베트남 | 7360 | 704 | 7103 | 8619 | 7323 | 5712 | 7891 | 3286 | 7323 | 18321 |
| | 소 계 | 7478 | 3167 | 7368 | 31,659 | 7639 | 28,976 | 7948 | 9,234 | 7554 | 73,036 |
| 특례 고용 허가 | 한국계 중국 | 1,3084 | 3677 | 1,3050 | 28202 | 1,2221 | 50,988 | 1,1184 | 6185 | 1,2445 | 89,002 |
| | 한국계 러시아 | 9667 | 3 | 1,0857 | 7 | 1,0111 | 9 | 1,2000 | 5 | 1,0646 | 24 |
| | 기타 | 1,0667 | 3 | 1,2893 | 28 | 1,1160 | 78 | 9881 | 21 | 1,131.6 | 130 |
| | 소 계 | 1,3029 | 3683 | 1,3049 | 28,237 | 1,2219 | 51,025 | 1,1181 | 6211 | 1,244.3 | 89,136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2007년 5월 30일 현재).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희망임금을 비교해 보면 2004년 입국자의 경우 희망임금이 747천 원이었으나 입국 시기가 늦어질수록 희망임금 또한 소폭 증가하였다. 2007년 입국자의 경우 794천 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4년과 비교해 보면 그 증가폭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다. 국적별로 희망임금을 살펴보면 필리핀과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도 입국 시점과 무관하게 희망임금이 비교적 동일한 수준이다.

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 지역별 분포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특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신청서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의 구인신청서의 연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인신청서에는 구인기업의 특성(업종, 지역, 사업장 규모)과 구인자의 특성(제시임금, 학력수준, 연령, 직종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3-2-10>과 같다. 먼저 업종은 취업자의 희망 업종과 분포가 비슷하다. 일반의 경우 제조업 희망자가 97.5%였는데 실제 채용사업체를 보면 제조업이 97.2%이다. 특례자 역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46.4%, 38.5%였는데 실제 취업한 업종도 46.5%, 38.5%로 동일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는 외국인 근로자가 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 희망 업종을 기입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용자에게 구직 외국인을 복수 추천할 때 구직자의 임금 및 희망 업종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취업사업체 규모는 대부분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이다. 일반의 경우 10~29인 사업체에 취업한 자가 34.3%에 이르는 등 전체 취업자의 78.6%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취업하였다. 반면, 특례자는 업종 특성상 5인 미만 사업체 취업 비율이 62.7%이고 30인 미만 사업체 취업 비율이 91.0%에 이르고 있다. 취업 사업체 지역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례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업종이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이기 때문이다. 일반은 수도권이 6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남 13.7%, 충청 9.0% 순이다. 특례자는 82.9%가 수도권과 서울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3-2-10> 고용허가제 취업자의 취업사업체 분포

| | | 일반 고용허가 | | 특례 고용허가 | |
|-----|----------|---------|-------|---------|-------|
| | | 인원 | 빈도 | 인원 | 빈도 |
| 업종 | 농축어업 | 1,807 | 2.5 | 735 | 1.1 |
| | 제조업 | 70,988 | 97.2 | 12,579 | 18.7 |
| | 건설업 | 141 | 0.2 | 19,538 | 29.1 |
| | 서비스업 | 100 | 0.1 | 34,347 | 51.1 |
| 규모 | 5인 미만 | 18,422 | 25.2 | 42,151 | 62.7 |
| | 5-9인 | 13,982 | 19.1 | 7,764 | 11.6 |
| | 10-29인 | 25,045 | 34.3 | 11,247 | 16.7 |
| | 30-99인 | 12,197 | 16.7 | 4,925 | 7.3 |
| | 100-299인 | 3,144 | 4.3 | 969 | 1.4 |
| | 300-499인 | 246 | 0.3 | 97 | 0.1 |
| | 500인 이상 | - | - | 46 | 0.1 |
| 지역 | 서울 | 1,286 | 1.8 | 30,199 | 44.9 |
| | 수도권 | 48,398 | 66.3 | 25,561 | 38.0 |
| | 충청 | 6,566 | 9.0 | 3,627 | 5.4 |
| | 호남 | 6,382 | 8.7 | 3,295 | 4.9 |
| | 영남 | 10,013 | 13.7 | 3,809 | 5.7 |
| | 기타 | 391 | 0.5 | 708 | 1.1 |
| 전 체 | | 73,036 | 100.0 | 67,199 | 100.0 |

자료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2007년 5월 30일 현재).

마.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통상임금, 급여 유형(월급, 일급, 시급 등), 임금지급 방법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월 통상임금 기준)을 보면 2004년의 697천원에서 2007년에는 770천원으로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지급 유형은 대부분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외국인 일반의 75.1%가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주급과 시간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월급 유형이 많고, 반대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시간급 비중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임금지급 방법을 보면 직접 지급받는 비율이 43.4%이고, 56.6%는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농축어업에 취업한 자는 급여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비율이 높고, 서비스업은 직접 수령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장 임금 비율이 높다

<표 3-2-11>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연도별 월평균 통상임금 및 임금지급 방법

(단위: 천원, %)

| | | 월평균 통상임금 | | | | 급여 유형 | | | 임금지급 방법 | |
|-----|----------|----------|-------|-------|-------|-------|------|------|---------|------|
| | | 2004 | 2005 | 2006 | 2007 | 월급 | 일급 | 시간급 | 통장임금 | 직접지급 |
| 업종 | 농축어업 | 735.5 | 751.8 | 779.2 | 779.7 | 92.5 | 1.8 | 5.7 | 69.3 | 30.7 |
| | 제조업 | 696.0 | 685.7 | 712.8 | 769.2 | 74.6 | 6.2 | 19.2 | 56.2 | 43.8 |
| | 건설업 | - | 713.1 | 700.6 | 800.0 | 72.3 | 0.0 | 27.7 | 100.0 | 0.0 |
| | 서비스업 | - | 701.7 | 716.4 | 833.8 | 94.0 | 0.0 | 6.0 | 43.0 | 57.0 |
| 규모 | 5인 미만 | 692.4 | 686.5 | 713.7 | 770.7 | 88.3 | 2.4 | 9.2 | 45.7 | 54.3 |
| | 5~9인 | 697.3 | 686.3 | 718.6 | 768.6 | 82.4 | 4.3 | 13.3 | 47.6 | 52.4 |
| | 10~29인 | 707.8 | 687.7 | 713.5 | 771.9 | 74.6 | 6.1 | 19.4 | 57.2 | 42.8 |
| | 30~99인 | 686.4 | 685.7 | 712.4 | 774.6 | 56.3 | 10.4 | 33.4 | 73.6 | 26.4 |
| | 100~299인 | 658.3 | 685.9 | 717.9 | 757.0 | 45.5 | 17.2 | 37.2 | 86.4 | 13.6 |
| | 300~499인 | - | 675.1 | 692.9 | 704.0 | 35.4 | 21.1 | 43.5 | 97.6 | 2.4 |
| 전 체 | | 696.5 | 686.7 | 714.4 | 770.0 | 75.1 | 6.1 | 18.8 | 56.6 | 43.4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2007년 5월 30일 현재).

<표 3-2-12>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 및 기숙사/식사제공 비율

(단위: 시간, 명)

| | | 평균 근로시간 | | | 기숙사 및 식사제공 | | |
|----|----------|-----------|-----------|----------------|------------|-------|--------|
| | | 정상 (A) | 초과 (B) | 1일 평균 (A+B) | 기숙사 | 식사 | 소계 |
| 업종 | 농축어업 | 9.53 | 0.77 | 10.30 | 99.7 | 65.1 | 1,807 |
| | 제조업 | 9.00 | 1.79 | 10.79 | 97.5 | 90.1 | 70,988 |
| | 건설업 | 9.00 | 0.78 | 9.78 | 100.0 | 100.0 | 141 |
| | 서비스업 | 9.00 | 1.01 | 10.01 | 100.0 | 90.0 | 100 |
| 규모 | 5인 미만 | 9.05 | 1.74 | 10.79 | 98.4 | 82.6 | 18,422 |
| | 5-9인 | 9.00 | 1.79 | 10.80 | 97.9 | 88.1 | 13,982 |
| | 10-29인 | 9.00 | 1.75 | 10.75 | 97.5 | 91.1 | 25,045 |
| | 30-99인 | 9.00 | 1.76 | 10.77 | 96.0 | 95.8 | 12,197 |
| | 100-299인 | 9.00 | 1.70 | 10.70 | 97.2 | 97.7 | 3,144 |
| | 300-499인 | 9.00 | 2.20 | 11.20 | 100.0 | 100.0 | 246 |
| | 500인 이상 | - | - | - | - | - | - |
| 전체 | | 9.01 | 1.76 | 10.77 | 97.6 | 89.5 | 73,036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2007년 5월 30일 현재).

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기숙사 및 식사제공 비율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10.8시간이며, 정상근로시간은 9.01시간, 초과근로시간 1.76시간으로 나타났다. 정상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초과근로시간은 취업중인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제조업 취업자의 초과근로시간이 1.79시간으로 가장 긴 편이고, 농축어업과 건설업은 0.78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이들 업종은 자연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기숙사 및 식사제공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숙사 및 식사제공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력 고용시 관례적으로 기숙사와 식사를 무상 혹은 실비만 받고 제공하는 관행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월평균 휴일, 4대 사회보험제공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2-13> 국적별 평균연령 및 체류자 및 출국자의 평균 체류기간

(단위: 세, 개월)

| | | 평균 연령 | | 체류자의 평균 체류기간 | | 출국자의 평균 체류기간 | |
|----|--------|-------|--------|--------------|--------|--------------|-------|
| | | 체류기간 | 사업체 수 | 체류기간 | 사업체 수 | 체류기간 | 사업체 수 |
| 일반 | 스리랑카 | 27.3 | 5,919 | 16.9 | 5,836 | 14.5 | 83 |
| | 인도네시아 | 28.7 | 6,849 | 18.7 | 6,732 | 19.6 | 117 |
| | 몽골 | 27.9 | 10,712 | 16.1 | 10,508 | 12.7 | 204 |
| | 필리핀 | 30.3 | 16,705 | 15.2 | 16,434 | 12.0 | 271 |
| | 태국 | 30.1 | 14,530 | 16.0 | 14,255 | 12.6 | 275 |
| | 베트남 | 23.8 | 18,321 | 15.4 | 18,264 | 15.7 | 57 |
| | 소 계 | 27.9 | 73,036 | 16.0 | 72,029 | 13.6 | 1,007 |
| 특례 | 한국계중국 | 45.0 | 89,002 | 21.0 | 88,056 | 27.6 | 946 |
| | 한국계러시아 | 44.9 | 24 | 24.7 | 24 | - | - |
| | 기타 | 43.7 | 130 | 19.7 | 129 | 5.5 | 1 |
| | 소 계 | 45.0 | 89,156 | 21.0 | 88,209 | 27.6 | 947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2007년 5월 30일 현재).

사.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체류기간 및 취업사업장 근속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연월과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균 체류기간과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연령은 외국인 일반은 필리핀과 태국이 30.3세와 30.1세로 연령이 비교적 높고, 베트남은 23.8세로 가장 젊다. 그러나 특례자는 평균 연령이 45.0세에 이르고 국적별 연령 편차도 거의 없다. 2007년 5월말 시점 현재 체류자들의 평균 체류기간을 보면 일반 외국인은 16.0개월, 특례자는 21.0개월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였다가 2007년 5월말 이전에 출국한 출국자들의 체류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일반 외국인은 13.6개월, 특례자는 27.6개월로 집계되었다.

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구조 변화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에는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므로 고용보험 DB와 연결해 시계열 자료를 구축할 경우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DB에 상당수의 임시·일용직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총고용량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한계가 존재하지

만 상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의 총고용량과 고용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표 3-2-14>는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추이이다. 업종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제조업이 80%를 상회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어서 서비스업, 건설업 순이다. 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의 경우 81.5%가 30인 미만이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규모 또한 4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업종, 규모 및 소재지 특성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즉 외국인 근로자는 수도권에 소재한 소규모 영세제조업 사업장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표 3-2-14>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 추이

(단위: 개소, %)

| |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
| |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 업종 | 건설업 | 1,634 | 4.1 | 1,740 | 3.6 | 1,761 | 3.2 | 1,748 | 3.0 |
| | 농축산업 | 276 | 0.7 | 372 | 0.8 | 461 | 0.8 | 502 | 0.9 |
| | 어업 | 72 | 0.2 | 96 | 0.2 | 115 | 0.2 | 115 | 0.2 |
| | 제조업 | 30,532 | 76.4 | 37,791 | 78.7 | 45,043 | 81.5 | 47,079 | 81.5 |
| | 서비스업 | 7,468 | 18.7 | 8,045 | 16.7 | 7,914 | 14.3 | 8,310 | 14.4 |
| 규모 | 5인미만 | 8,015 | 20.0 | 10,120 | 21.1 | 10,688 | 19.3 | 14,203 | 24.6 |
| | 5~9인 | 8,323 | 20.8 | 9,940 | 20.7 | 10,950 | 19.8 | 13,179 | 22.8 |
| | 10~29인 | 13,485 | 33.7 | 15,878 | 33.0 | 19,466 | 35.2 | 19,707 | 34.1 |
| | 30~99인 | 8,109 | 20.3 | 9,780 | 20.4 | 11,567 | 20.9 | 8,887 | 15.4 |
| | 100~299인 | 1,825 | 4.6 | 2,070 | 4.3 | 2,320 | 4.2 | 1,635 | 2.8 |
| | 300인이상 | 225 | 0.6 | 256 | 0.5 | 303 | 0.5 | 143 | 0.2 |
| 전 체 | | 39,982 | 100.0 | 48,044 | 100.0 | 55,294 | 100.0 | 57,754 | 100.0 |

자료: 외국인 근로자 DB-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 DB 연결패널.

또한 사업장별 인접 연도간 총고용인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의 일자리창출·소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표 3-2-15 참조). 아래의 표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총고용인원 변동 추이만 제시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은 비고용업체와 비교를 통해 어느 집단에서 고용 변동이 큰지를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로도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고용구조는 특정 시점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들의 인적 특성(성, 연령, 학력, 직종, 근속 등)을 기초로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비고용사업장간 고용구조 변화 및 이직 추이도 확인이 가능하다.

<표 3-2-15> 외국인 유형별 외국인 고용 여부별 사업장 창출·소멸 추이

(단위: 개소, %)

| | | 산업연수생 | | 일반외국인 | | 특례자 | | 전체 | |
|---------|-------|--------|-------|--------|-------|--------|-------|--------|-------|
| | | 업체 | 비율 | 업체 | 비율 | 업체 | 비율 | 업체 | 비율 |
| 2007~08 | 사업장유지 | 9,304 | 94.1 | 15,108 | 90.6 | 8,341 | 84.1 | 32,753 | 89.8 |
| | 소멸 | 418 | 4.2 | 1,223 | 7.3 | 1,269 | 12.8 | 2,910 | 8.0 |
| | 창출 | 165 | 1.7 | 341 | 2.0 | 304 | 3.1 | 810 | 2.2 |
| | 전체 | 9,887 | 100.0 | 16,672 | 100.0 | 9,914 | 100.0 | 36,473 | 100.0 |
| 2008~09 | 사업장유지 | 9,862 | 93.9 | 17,694 | 91.1 | 9,712 | 87.9 | 37,268 | 90.9 |
| | 소멸 | 577 | 5.5 | 1,387 | 7.1 | 1,119 | 10.1 | 3,083 | 7.5 |
| | 창출 | 69 | 0.7 | 348 | 1.8 | 220 | 2.0 | 637 | 1.6 |
| | 전체 | 10,508 | 100.0 | 19,429 | 100.0 | 11,051 | 100.0 | 40,988 | 100.0 |

자료: 외국인 근로자 DB-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 DB 연결패널.

<표 3-2-16> 외국인고용사업장의 고용구조

(단위: 명, %)

| | | 재직자 | 남자 | 고졸 | 전문대 이상 | 관리/전문가 | 사무직 | 생산직 | 30~40대 | 3년미만 | 10년 이상 |
|------|-------|---------|-------|---------|--------|--------|------|------|--------|------|--------|
| | | 2004 | 산업연수생 | 281,158 | 73.3 | 52.0 | 21.7 | 13.0 | 22.4 | 63.0 | 58.9 |
| | 일반외국인 | 267,687 | 71.6 | 60.9 | 18.8 | 13.5 | 20.1 | 64.1 | 61.4 | 34.6 | 13.9 |
| | 특례자 | 134,471 | 64.9 | 59.6 | 21.6 | 14.9 | 20.6 | 52.6 | 56.5 | 38.6 | 11.3 |
| | 전체 | 683,316 | 71.0 | 57.0 | 20.5 | 13.6 | 21.1 | 61.4 | 59.4 | 33.3 | 15.7 |
| 2007 | 산업연수생 | 335,100 | 73.1 | 54.9 | 26.4 | 19.6 | 15.1 | 53.2 | 57.5 | 40.1 | 13.4 |
| | 일반외국인 | 360,340 | 71.2 | 63.3 | 22.4 | 19.3 | 11.9 | 54.2 | 60.1 | 48.0 | 8.4 |
| | 특례자 | 190,632 | 64.7 | 59.3 | 25.4 | 21.6 | 19.4 | 43.8 | 54.5 | 52.8 | 6.5 |
| | 전체 | 886,072 | 70.5 | 59.3 | 24.5 | 19.9 | 14.7 | 51.6 | 57.9 | 46.0 | 9.9 |
| 2009 | 산업연수생 | 320,211 | 74.5 | 54.6 | 29.3 | 25.2 | 11.0 | 47.5 | 56.7 | 53.4 | 11.4 |
| | 일반외국인 | 374,355 | 72.5 | 63.3 | 24.9 | 24.4 | 7.8 | 48.5 | 58.7 | 63.8 | 6.6 |
| | 특례자 | 212,806 | 64.2 | 59.0 | 26.9 | 26.6 | 16.6 | 40.0 | 53.8 | 69.6 | 4.7 |
| | 전체 | 907,372 | 71.3 | 59.2 | 27.0 | 25.2 | 11.0 | 46.1 | 56.8 | 61.5 | 7.9 |

자료: 외국인 근로자 DB-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자 DB 연결패널.

제3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가. 조사 목적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조사 연혁

- 2000년 : 「계약직 등 비정형근로자근로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통계 작성 승인
- 2002년 :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비정규근로자근로실태조사」를 최초 실시
- 2003년 : 조사 대상 확대(정규직 및 비정규직), 「사업체근로실태조사」로 명칭 변경
- 2004년 : 조사 항목이 유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의 통합조사표를 개발
- 2006년 :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사업체근로실태조사」로 통합
- 2007년 :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변경 승인(2007.7.10.)
- 2008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조사 통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명칭 변경, 조사 직종분류 변경 : 한국표준직업분류 → 한국고용직업분류 공표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 유지

다. 조사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37,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라. 조사 항목

- 사업체조사표(13개항목)

<표 3-3-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조사항목(사업체 조사)

| 영역 | 조사항목 | |
|------------------|---------------------------|------------------------------------|
| A. 사업체 전반에 관한 사항 | 1. 사업체 명칭 | 7. 노동조합 유무 |
| | 2. 사업체 소재지 | 8. 6월 급여계산 기간 |
| | 3. 주요 생산품명 또는 사업 내용 | 9. 산재보험 가입 여부 |
| | 4. 사업체 형태 | 10. 주당 정상조업·영업일수 |
| | 5. 경영형태 | 11.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 |
| | 6. 전체 근로자수 | 12. 전년(2008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
| | 6-1. 장애인 근로자수 | |
| | 6-2. 외국인 근로자수 | |
| | B. 사업체 인력 현황 | |
| | 13.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수 및 추출근로자수 | |

<표 3-3-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조사 개인조사표(21개항목)

| 영역 | 조사항목 | |
|------------------|------------------|--------------------------------|
| C. 개별 근로자에 관한 사항 | 1. 일련번호 | 15. 임금산정기준 |
| | 2. 고용형태 | 16. 임금기준 |
| | 3. 사번(또는 성명) | 17. 2009년 6월 급여 |
| | 4. 성별 | (1) 정액급여 |
| | 5. 학력 | 1) 기본급 |
| | 6. 출생 연월 | 2) 통상적 수당 |
| | 7. 입사 연월 | 3) 기타수당 |
| | 8. 경력 연수 | (2) 초과급여 |
| | 9. 근무형태 | 18. 전년(2008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총액 |
| | 10. 고용계약기간 | 19. 사회보험 가입 여부 |
| | 11. 직종 | (1) 고용보험 |
| | (1) 업무 내용 | (2) 건강보험 |
| | (2) 직업분류 코드 | (3) 국민연금 |
| | 12. 근로일수 | (4) 산재보험 |
| | (1) 소정실근로일수 | 20. 부가급부 적용 여부 |
| | (2) 휴일실근로일수 | (1) 상여금 |
| | 13. 전년도 연월차 휴가일수 | (2) 퇴직급여 |
| | 14. 근로시간 | 21. 노동조합 가입 여부 |
| | (1) 소정실근로시간 | |
| | (2) 초과실근로시간 | |

- 조사 기준 및 조사 기간
 - 조사기준 : 2009년 6월 급여계산 기간
 - 조사기간 : 2009. 7. 10 ~ 10. 9
 - 주기 : 매년

- 조사 방법
 - 타계식 조사와 자계식(Fax, E-mail) 조사 병행

- 표본설계
 - 표본틀
 -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근로자(상용, 임시·일용, 무급종사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체를 지방고용노동관서별·사업체규모별·산업중분류별로 분류하여 사업체 명부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표본틀(Sampling Frame)이 구성된다.
 - 층화방법
 -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체를 산업대분류(19), 고용규모(8), 사업체 내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무급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층화하여 모두 30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층별 표본크기 결정
 - 표본오차 관리와 표본크기 결정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하였다. 또한 산업대분류별·사업체 규모별 오차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표오차는 산업대분류, 사업체 규모에 따라 119개 부차모집단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월평균 임금총액에 대한 상대표준오차가 전체적으로 4~7%(소규모는 3.5%)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 부차모집단 내 비정규직 근로자수에 따라 2개 층으로 구분하고, 규모 1(상용근로자 1~4인)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차모집단에서 층별 표본배정은 네이만 배정법을 이용하였으며 각 부차모집단의 표본사업체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n = \frac{\left(\frac{CV}{O}\right)^2}{1 + \frac{1}{N}\left(\frac{CV}{O}\right)^2}$$

CV : 상대표준오차

O : 목표오차

N : 사업체수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개인별 자료(individual data)가 아닌 사업체별 집계자료 (aggregate data)로서 사업체 조사표에서 외국인 근로자수, 총근로시간 및 임금총액을 조사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분석 결과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2009년 10월 1일 현재 5인 이상 민간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184천 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3-3-3> 사업체 규모별 현원 및 부족인원

(단위 : 천명)

| | 현원 | | | | | 부족인원 | | | | |
|---------|-------|-------|-------|-----|-----|------|-----|-----|----|----|
| | 총원 | 내국인 | | 외국인 | 총원 | 내국인 | | 외국인 | | |
| | | 상용 | 기타 | | | 상용 | 기타 | | | |
| 5인 이상 | 8,129 | 7,944 | 7,308 | 636 | 184 | 230 | 218 | 194 | 23 | 12 |
| 300인 미만 | 6,571 | 6,397 | 5,826 | 570 | 175 | 210 | 198 | 176 | 23 | 12 |
| 300인 이상 | 1,557 | 1,548 | 1,481 | 66 | 9 | 20 | 19 | 19 | 1 | 0 |

자료: 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9년 6월 급여계산 기간 현재 민간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5인 이상 사업체 185천 명, 5인 미만 사업체 23천 명으로 전체 208천 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3-3-4> 산업대분류별 내외국인 분포

(단위 : 천명)

| | 5인 미만 | | 5인 이상 | | 전체 | |
|-----|-------|-------|-------|-------|-----|--------|
| | 외국인 | 전체 | 외국인 | 전체 | 외국인 | 전체 |
| 전 체 | 23 | 2,001 | 185 | 9,300 | 208 | 11,302 |
| 제조업 | 7 | 250 | 130 | 2,687 | 138 | 2,937 |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제4절 출입국통계 자료

1. 자료 개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출입국통계 월보, 분기보,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사증발급, 출입국심사, 체류민원처리, 조사사범 보호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축적되는 각 통계자료 및 해당 부서의 자료를 기초로 집계·제공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통해 외국인 관련 통계를 게재하고 있다.

2. 제공정보

제공되는 통계정보는 아래의 <표 3-4-1>와 같다. 연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 외국국적동포, 난민불법체류자별로 구분되어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체류외국인은 전체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유학생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체류외국인의 인적 속성(국적, 체류자격, 성, 연령) 및 거주지역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통계에는 연도별·국적별·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정보를 담고 있다. 국적 통계는 귀화 및 국적회복자, 혼인귀화자,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자별로 구분하여 정보가 제공된다. 외국국적동포 통계는 체류자격 및 국적별 그리고 거소지역별 통계가 제공되며, 난민 통계는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국적, 사유, 성, 연령, 지역, 체류기간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경우도 국적, 사유, 성, 연령, 지

<표 3-4-1> 통계 제공 체계 및 제공정보

| | 제공 통계 |
|----------|--|
| 출입국통계월보 | 출입국 현황, 외국인체류관리 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국적 및 난민업무 처리 현황, 외국적동포 현황 |
| 출입국통계분기보 | 출입국자 현황, 체류외국인 현황, 외국인 근로자 현황, 유학생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국적 및 난민 현황, 출입국항별 현황, 기타 현황 |
| 출입국통계연보 | 출입국자 통계, 체류외국인 통계, 결혼이민자 통계, 국적 통계, 외국국적동포 통계, 난민 통계, 불법체류통계출입국사범 통계 |

역, 체류기간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 통계는 국적 및 체류자격, 체류기간별 정보가 제공된다.

3. 체류외국인 관련 정보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는 법무부가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집행을 목적으로 집계한 자료이므로 외국인의 국적, 비자 유형, 성, 연령 등 가장 기초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연도별 stock만 확인할 수 있고 시계열 분석은 불가능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관리하는 원시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증발급신청서 및 인증서에 기입된 정보는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증발급신청서와 인증서상 주요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 국적, 출생지, 혼인 여부, 직장 및 직업과 같은 개인 인적 정보와 입국과 관련된 정보(체류자격, 입국 목적, 체류예정기간, 체류지), 과거 한국체류 경험 여부, 동반가족, 국내 보증인 연락처(성명, 생년월일, 성, 국적, 직장 및 직위) 관련 사항이다. 참고로 사증발급신청서 견본은 [그림 3-4-1]과 같다.

한편, 사증발급신청서 제출시 비자 유형별로 첨부서류가 있는데 해당 서류의 주요 항목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거나 보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4-1] 사증발급인정서 견본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5.7.8>

| | | | |
|---|---|---|--------------|
| 寫眞 P H O T O 35×45mm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 | |
| 인정번호(CERTIFICATE No.) 호 | | | |
| 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 | | |
| ○피초청자 INVITEE | | | |
| 성명 NAME IN FULL | | 한자성명 漢字姓名 | |
| 성별 SEX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국적 NATIONALITY | |
| 직장 및 직위 PLACE & POSITION OF EMPLOYMENT | | | |
| ○초청자 INVITER | | | |
| 성명 NAME IN FULL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성별 SEX | 국적 NATIONALITY | 직장 및 직위 OCCUPATION | |
| ○사증발급 인정사항 ITEMS OF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 | | |
|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 |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 사증종류 VISA |
| 근무처 WORK AT | | 비고 REMARKS | |
|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초청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인정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VITEE IS CONFIRMED TO BE ISSUED A VISA,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9 OF THE IMMIGRATION LAW. | | | |
| 발급일 DATE OF ISSUE | | |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CHIEF OF SEOUL IMMIGRATION OFFICE | | | |
| 주의(NOTICE) | | | |
| 1. 이 인정서는 발급일부터 3월 내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THIS CERTIFICATE WILL BE INVALID IF THE INVITEE FAILS TO APPLY FOR A VISA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 | | |
| 2. 이 인정서는 사증발급을 신청한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SUBMITTED TO THE KOREAN OVERSEAS MISSION IN CASE OF APPLICATION FOR A VISA.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m²)

<표 3-4-2>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 개정 2010.6.10)

| 체류자격(기호) | 첨 부 서 류 |
|-----------|--|
| 외 교(A-1)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 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의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외교업무 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
| 공 무(A-2)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
| 협 정(A-3)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
| 일시취재(C-1) | ○소속 회사의 파견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
| 단기상용(C-2) | ○상용 목적으로 입국함을 입증하는 서류 |
| 단기종합(C-3) | ○없 음 |
| 단기취업(C-4) |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문화예술(D-1) | ○초청장 ○문화예술 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기능보유자 등을 말함 |
| 유 학(D-2) |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
| 산업연수(D-3) | ○연수산업체가 작성한 연수계획서 ○입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외국인 산업연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

(표 3-4-2 계속)

| 체류자격(기호) | 첨 부 서 류 |
|-----------|--|
| 일반연수(D-4) |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 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서류(미화 3천불 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정입증 관련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천불 이상)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취 재(D-5)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내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지사의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
| 종 교(D-6) | ○파송명령서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 |
| 주 재(D-7) | 1.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 ○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또는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 해외송금확인 입증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 기업투자(D-8) | 1.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2.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표 3-4-2 계속)

| 채류자격(기호) | 첨 부 서 류 |
|-----------|--|
| 무역경영(D-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연간 납세증명서 |
| 구직(D-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교 수(E-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 회화지도(E-2)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초청장 또는 시·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2.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자국 및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 서식)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신원보증서 ○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 |
| 연 구(E-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기관 설립 관련 서류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
| 기술지도(E-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 공·사기관 설립 관련 서류 |
| 전문직업(E-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

(표 3-4-2 계속)

| 체류자격(기호) | 첨 부 서 류 |
|------------|--|
| 예술홍행(E-6) | 1. 공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신원보증서 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음성확인서 ○신원보증서 3. 그 밖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항체반응음성확인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제 1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신원보증서 |
| 특정활동(E-7)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사기관 설립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
| 연수취업(E-8) | 삭제 <2007.6.1> |
| 비전문취업(E-9)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 또는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선원취업(E-10) | ○선원근로계약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근해어업허가증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신원보증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표 3-4-2 계속)

| 체류자격(기호) | 첨 부 서 류 |
|---------------|--|
| 방문동거 (F-1)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신원보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입학허가서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 서류 3. 외교(A-1) 또는 공무(A-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5.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신원보증서 6. 그 밖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12조에 따른 방문동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
| 거주 (F-2)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란의 라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신원보증서 3.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술·기능자격증이나 임금 관련서류 ○ 국내 자산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표 3-4-2 계속)

| 체류자격(기호) | 첨 부 서 류 |
|-----------|--|
| 동 반(F-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 제외동포(F-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영주(F-5)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다목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2.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목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증 및 해당 분야 자격증 ○소득 관련 입증서류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입증서류 ○그 밖에 과학·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은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기 타(G-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 관광취업(H-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복항공권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표 3-4-2 계속)

| 체류자격(기호) | 첨 부 서 류 |
|-----------|---|
| 방문취업(H-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 일자 또는 국적국에서의 출생 일자 및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중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친족의 초청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족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초청사유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다만, 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유학(D-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증명서(학술연구기관에서 특정 연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 및 재학증명서 ·유학 중인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국내에 친족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한국말 시험 성적증명서 등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4. 출입국통계 자료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출입국통계 마이크로데이터는 학술과 정책분석 차원에서만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전문기술외국인력 활용실태분석」을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초로 분석가능한 수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법무부가 제공한 전문기술인력 원 자료의 변수 리스트는 아래의 <표 3-4-3>과 같다. 전문인력의 기본적인 인적 특성과 사업장 그리고 입국 및 체류 만료일 정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4-3> 전문기술인력 마이크로데이터 변수

| 성 | 생년월일 | 국적 코드 | 국적 | 자격 | 만료일 | 체류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전화번호 | 회사전화번호 | 입국일 | 등록일자 | |

<표 3-4-4> 전문인력 비자 유형별 인적 특성

(단위: 명, %)

| | | E-3(연구) | | E-7(특정활동) | |
|--------|--------|---------|-------|-----------|-------|
| | | 명 | % | 명 | % |
| 성 | 여자 | 345 | 15.2 | 1,569 | 24.3 |
| | 남자 | 1,926 | 84.8 | 4,886 | 75.7 |
| 연령 | 20대 미만 | 2 | 0.1 | 1 | 0.0 |
| | 20대 | 453 | 19.9 | 1,763 | 27.3 |
| | 30대 | 1,192 | 52.5 | 2,888 | 44.7 |
| | 40대 | 344 | 15.1 | 997 | 15.4 |
| | 50대 | 186 | 8.2 | 509 | 7.9 |
| | 60세 이상 | 94 | 4.1 | 297 | 4.6 |
| 불체자 여부 | 불법 | 54 | 2.4 | 252 | 3.9 |
| | 합법 | 2,217 | 97.6 | 6,203 | 96.1 |
| 전 체 | | 2,271 | 100.0 | 6,455 | 100.0 |

자료: 이규용 외(2008), 『해외우수기술인력 유치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이하 동일).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전문인력의 비자 유형별 인적 특성(성, 연령, 국적, 합·불법 여부)이다. 전문인력의 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성, 출생연월, 국적에 불과하다. <표 3-4-4>는 성, 연령 및 합·불법 여부별 분포이다. 여기서 합·불법 여부는 불법체류자로 등록된 자와 체류기간이 자격만료일을 상회한 자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이다. 표를 보면 E-3과 E-7은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비자 특성상 남성이며 젊은층의 비

율이 높기 때문이다. 합·불법 여부를 보면 대부분 합법체류자이며 불법체류자는 E-3 2.4%, E-7 3.9%에 불과하다. 추후에는 학력이나 모국에서의 직장경험 등 전문인력의 인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입력 혹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비자 유형별 평균 연령 및 평균 체류기간은 생년월일과 입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전문인력의 평균 체류기간은 29.0개월이고, 비자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E-5가 48.5개월로 평균 체류기간이 가장 긴편이다. 다른 비자는 큰 차이가 없다. 전문인력 전체 평균연령은 37.6세이지만 E-4와 E-5는 평균연령이 50세에 이르고 있다. E-4와 E-5는 비교적 장기간의 숙련을 요구하는 분야이거나 풍부한 경험을 통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5> 전문인력 비자 유형별 평균 연령 및 평균 체류기간

| | | 평균연령 | | | | | 평균 체류기간(월) | | | | |
|----------|--------|-------|-------|-------|-------|-------|------------|--------|--------|--------|--------|
| | | E-3 | E-4 | E-5 | E-6 | E-7 | E-3 | E-4 | E-5 | E-6 | E-7 |
| 성 | 여자 | 32.81 | 41.33 | 33.17 | 28.30 | 33.86 | 26.19 | 12.30 | 35.64 | 36.22 | 20.35 |
| | 남자 | 37.48 | 48.79 | 51.89 | 33.20 | 37.38 | 25.68 | 27.73 | 51.81 | 18.34 | 23.11 |
| 입국년 | 2000이전 | 46.72 | 55.38 | 52.74 | 36.20 | 50.08 | 121.61 | 146.19 | 125.17 | 115.02 | 125.86 |
| | 2000 | 43.78 | 57.00 | 53.87 | 33.94 | 42.77 | 87.12 | 84.83 | 86.00 | 86.66 | 86.05 |
| | 2001 | 39.57 | 47.20 | 52.32 | 34.94 | 41.05 | 75.15 | 75.08 | 74.22 | 74.00 | 74.84 |
| | 2002 | 41.98 | 38.33 | 52.55 | 30.80 | 41.84 | 62.79 | 62.15 | 66.55 | 62.70 | 62.73 |
| | 2003 | 38.66 | | 52.75 | 31.34 | 40.34 | 50.59 | | 53.72 | 51.26 | 50.80 |
| | 2004 | 37.38 | 51.00 | 46.40 | 29.13 | 38.53 | 38.57 | 41.47 | 39.39 | 40.92 | 38.51 |
| | 2005 | 35.22 | 48.91 | 51.91 | 27.27 | 36.42 | 26.78 | 27.39 | 25.64 | 24.78 | 25.65 |
| | 2006 | 35.61 | 50.45 | 51.36 | 26.76 | 35.55 | 13.62 | 15.60 | 14.49 | 12.95 | 14.32 |
| 불법 여부 | 불법 | 39.09 | 46.80 | 52.92 | 31.77 | 37.21 | 29.77 | 42.99 | 59.48 | 60.86 | 42.11 |
| | 합법 | 36.71 | 48.77 | 51.51 | 28.04 | 36.49 | 25.66 | 26.42 | 50.99 | 6.51 | 21.64 |
| 전 체 | | 36.77 | 48.65 | 51.60 | 29.72 | 36.52 | 25.75 | 27.45 | 51.56 | 31.01 | 22.44 |

전문인력 고용사업장 특성별(업종, 규모, 지역) 분포는 외국인력 리스트 DB와 고용보험 사업장 DB를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아래의 <표 3-4-6>과 같은데 전체 분포를 보면 전체 전문인력의 21.7%가 음식숙박업에 고용되어 있고 사회서비스업 15.7%, 제조업 14.1%, 교육서비스업 12.4% 순으로 이들 4개 업종이 전체 전문인력의 63.9%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업종은 그 비중이 미미한

<표 3-4-6> 전문인력 고용사업장의 업종 및 지역별 분포(불체자 제외)

| | E-3(연구) | | E-4(기술지도) | | E-5(전문직업) | | E-6(예술행) | | E-7(특정활동) | | 전 체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농림어업 | 13 | 0.6 | 0 | 0.0 | 0 | 0.0 | 0 | 0.0 | 7 | 0.1 | 20 | 0.2 |
| 광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1 | 0.0 | 1 | 0.0 |
| 제조업 | 414 | 19.8 | 41 | 38.3 | 0 | 0.0 | 4 | 1.2 | 711 | 13.2 | 1,170 | 14.1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2 | 0.1 | 2 | 1.9 | 0 | 0.0 | 0 | 0.0 | 2 | 0.0 | 6 | 0.1 |
| 건설업 | 481 | 23.0 | 27 | 25.2 | 130 | 36.5 | 5 | 1.6 | 765 | 14.2 | 1,408 | 17.0 |
| 도매 및 소매업 | 20 | 1.0 | 2 | 1.9 | 0 | 0.0 | 1 | 0.3 | 316 | 5.9 | 339 | 4.1 |
| 음식 및 숙박업 | 3 | 0.1 | 0 | 0.0 | 0 | 0.0 | 92 | 28.6 | 1,698 | 31.5 | 1,793 | 21.7 |
| 운수통신업 | 1 | 0.0 | 0 | 0.0 | 219 | 61.5 | 16 | 5.0 | 182 | 3.4 | 418 | 5.1 |
| 금융 및 보험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155 | 2.9 | 155 | 1.9 |
| 부동산 및 임대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32 | 0.6 | 32 | 0.4 |
| 사업서비스업 | 556 | 26.6 | 26 | 24.3 | 0 | 0.0 | 73 | 22.7 | 647 | 12.0 | 1,302 | 15.7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124 | 5.9 | 4 | 3.7 | 1 | 0.3 | 0 | 0.0 | 35 | 0.6 | 164 | 2.0 |
| 교육서비스업 | 323 | 15.4 | 0 | 0.0 | 0 | 0.0 | 0 | 0.0 | 707 | 13.1 | 1,030 | 12.4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0 | 0.5 | 0 | 0.0 | 6 | 1.7 | 0 | 0.0 | 8 | 0.1 | 24 | 0.3 |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29 | 1.4 | 0 | 0.0 | 0 | 0.0 | 131 | 40.7 | 77 | 1.4 | 237 | 2.9 |
|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 115 | 5.5 | 5 | 4.7 | 0 | 0.0 | 0 | 0.0 | 51 | 0.9 | 171 | 2.1 |
| 국제 및 외국기관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4 | 0.1 | 4 | 0.0 |
| 전 체 | 2,091 | 100.0 | 107 | 100.0 | 356 | 100.0 | 322 | 100.0 | 5,398 | 100.0 | 8,274 | 100.0 |

수준이다. 비자 유형별 취업업종을 비교해 보면 E-3는 사업서비스업이 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건설업(23.0%), 제조업(19.8%), 교육서비스업(15.4%) 순이다. E-3 비자의 경우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임에도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E-4는 제조업(38.3%)과 건설업(25.2%), 사업서비스업(24.3%) 비중이 87.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E-5는 61.5%가 운수업체 취업 중인데 E-5 비자 취득자는 항공사 조종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E-6는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이 40.7%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음식숙박업(28.6%), 사업서비스업(22.7%)이다. E-7은 음식숙박업이 31.5%로 가장 많고 건설업(14.2%), 제조업(13.2%), 교육서비스업(13.1%), 사업서비스업(12.0%) 순이다.

마지막으로 <표 3-4-7>은 E-3와 E-7업종만을 대상으로 산업중분류별로 취업자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E-3의 경우 전문직별공사업(21.7%), 연구 및 개발업(19.7%), 교육서비스업(15.5%),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2.7%)순이다. E-7은 음식숙박업이 31.8%로 가장 많고, 교육서비스업(12.9%), 종합건설업(9.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법무부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사업장 DB와 연결할 경우 전문외국인력

고용사업장의 특성(업종, 규모, 지역)과 국내 기업의 전문기술인력 활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4-7> 전문인력의 취업업종 분포

| | E-3(연구) | | E-7(특정활동) | | | E-3(연구) | | E-7(특정활동)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농업,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 5 | 0.2 | 2 | 0.0 |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 0 | 0.0 | 6 | 0.1 |
| 임업벌목관련서비스업 | 8 | 0.4 | 3 | 0.1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19 | 0.9 | 272 | 4.9 |
| 어업및관련서비스업 | 0 | 0.0 | 2 | 0.0 | 소매/소비용품수선업 | 1 | 0.0 | 63 | 1.1 |
| 석탄광업 | 0 | 0.0 | 1 | 0.0 | 숙박 및 음식점업 | 4 | 0.2 | 1780 | 31.8 |
| 음식료품제조업 | 24 | 1.1 | 16 | 0.3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0 | 0.0 | 1 | 0.0 |
| 섬유제품제조업 | 0 | 0.0 | 13 | 0.2 | 수상운송업 | 0 | 0.0 | 41 | 0.7 |
| 의복/모피제품제조업 | 7 | 0.3 | 9 | 0.2 | 항공운송업 | 0 | 0.0 | 6 | 0.1 |
|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 0 | 0.0 | 1 | 0.0 |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1 | 0.0 | 119 | 2.1 |
| 목재/나무제품제조업 | 0 | 0.0 | 4 | 0.1 | 통신업 | 0 | 0.0 | 30 | 0.5 |
| 펄프종이제조업 | 2 | 0.1 | 10 | 0.2 | 금융업 | 0 | 0.0 | 60 | 1.1 |
| 출판인쇄복제업 | 0 | 0.0 | 69 | 1.2 | 보험 및 연금업 | 0 | 0.0 | 33 | 0.6 |
|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 1 | 0.0 | 3 | 0.1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0 | 0.0 | 66 | 1.2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42 | 2.0 | 43 | 0.8 | 부동산업 | 0 | 0.0 | 28 | 0.5 |
| 고무/플라스틱제품제조업 | 0 | 0.0 | 12 | 0.2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0 | 0.0 | 4 | 0.1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3 | 0.1 | 14 | 0.2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 31 | 1.4 | 244 | 4.4 |
| 1차 금속산업 | 2 | 0.1 | 121 | 2.2 | 연구 및 개발업 | 422 | 19.7 | 49 | 0.9 |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0 | 0.0 | 26 | 0.5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81 | 3.8 | 324 | 5.8 |
| 기계 및 장비제조업 | 46 | 2.1 | 66 | 1.2 | 사업지원 서비스업 | 40 | 1.9 | 56 | 1.0 |
| 사무용기기제조업 | 2 | 0.1 | 3 | 0.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131 | 6.1 | 37 | 0.7 |
|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제조업 | 1 | 0.0 | 21 | 0.4 | 교육서비스업 | 331 | 15.5 | 722 | 12.9 |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271 | 12.7 | 196 | 3.5 | 보건업 | 7 | 0.3 | 5 | 0.1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16 | 0.7 | 44 | 0.8 | 사회복지사업 | 3 | 0.1 | 3 | 0.1 |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4 | 0.2 | 39 | 0.7 |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 0 | 0.0 | 31 | 0.6 |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 0 | 0.0 | 12 | 0.2 |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 29 | 1.4 | 48 | 0.9 |
| 가구 및 기타제조업 | 0 | 0.0 | 9 | 0.2 | 하수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3 | 0.1 | 0 | 0.0 |
|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 0 | 0.0 | 1 | 0.0 | 회원단체 | 111 | 5.2 | 23 | 0.4 |
| 전기가스 및 증기업 | 2 | 0.1 | 2 | 0.0 | 수리업 | 0 | 0.0 | 3 | 0.1 |
| 종합건설업 | 19 | 0.9 | 522 | 9.3 | 기타 서비스업 | 6 | 0.3 | 27 | 0.5 |
| 전문직별공사업 | 465 | 21.7 | 252 | 4.5 | 국제기타 외국기관 | 0 | 0.0 | 4 | 0.1 |
| | | | | | 전 체 | 2140 | 100.0 | 5601 | 100.0 |

제5절 유학생 통계

1. 통계작성개요에 대한 소개

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유학생 통계는 크게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교과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사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 사이언스 카드’ 통계가 공시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통계는 ‘대학 알리미 통계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별·과정별·전공별·국적별 외국 유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다.

교과부의 유학생 기준은 현재 재학중인 모든 외국인 유학생 전체를 유학생으로 간주하여 집계하며, 이에 외국 외교관 자녀 등을 유학생으로 포함하여 집계함으로써, 비자기준의 법무부 통계와 차이가 난다.

‘외국인 과학기술자 사이언스 카드’ 통계는 사이언스 카드제도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이언스 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며 연도별 발급실적 및 발급기관별 실적을 알 수 있다.

나. 법무부 통계

법무부의 유학생 통계는 법무부가 집계하여 발표하는 출입국자 현황, 체류외국인 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법무부와 교과부 간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 통계는 집계 시점 및 집계 기준 차이가 존재하며 양자간 유사·중복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의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집계 기준을 D-2(유학) 비자, D-4(어학연수)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기준으로 집계하나, 교과부는 현재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유학생(예: 외국 외교관 자녀 등)으로 간주하고 집계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 외 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리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보시스템’(<http://fims.hikorea.go.kr/isi/index.html>, 법무부, 2008. 8~)이 존재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하여 외국인 정보를 통합·관리하나, 관련 통계는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다.

2. 외국인 인력 통계의 현황

가. 교과부 통계

교과부의 외국인 유학생 통계는 대학 알리미를 통해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되며 2005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서 집계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표 3-5-1), (표 3-5-2)
-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표 3-5-3)
- 출신 지역별 유학생 수
-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
- 국내 대학별 유학생 수 및 중도탈락 수(표 3-5-4)

<표 3-5-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1(2009. 4. 1 기준 집계)

(단위: 명)

| 연 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유학생수 | 12,314 | 16,832 | 22,526 | 32,557 | 49,270 | 63,952 | 75,850 |

<표 3-5-2>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

(단위: 명)

| 연도 | 외국인 학생 | | | | | | 어학 연수생 | 기타연수생 | | | 전체 |
|------|--------|-----------------|----------------|----------|------------|----------|-----------|----------|----------|-----------------|-------|
| | 소계 | 인문· 사회 계열 | 자연 과학 계열 | 공학 계열 | 예·체능 계열 | 의학 계열 | | 교환 학생 | 방문 학생 | 그외 기타 연수생 | |
| 2009 | 236 | 93 | 54 | 61 | 20 | 8 | 525 | 120 | 8 | 0 | 889 |
| 2010 | 673 | 334 | 143 | 125 | 37 | 34 | 518 | 190 | 34 | 0 | 1,415 |

현재 외국인 유학생 노동시장 참여 현황 및 졸업생의 취업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여 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 통계에 외국인 유학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기 중 주 2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방학 중은 제한 없음)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이들 활동을 신고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 또한 관리되고 있지 않다.

<표 3-5-3> 유학 형태별 유학생 수

(단위: 명)

| 유학 형태 | 2008 | 2009 | 증감 |
|-----------|--------|--------|--------|
| 자비유학생 | 54,934 | 64,271 | 9,337 |
| 정부초청장학생 | 837 | 1,629 | 792 |
| 대학초청장학생 | 5,010 | 6,634 | 1,624 |
| 자국정부과견장학생 | 587 | 503 | -84 |
| 기타 | 2,584 | 2,813 | 229 |
| 전체 | 63,952 | 75,850 | 11,898 |

<표 3-5-4> 국내 대학별 유학생 수 및 중도탈락 수

(단위: 명)

| 학교명 | 외국인 재적학생 | | | | 중도탈락 학생 | | | | 전체 외국인 학생 중도탈락률 (%) (C/A)*100 | 외국인학생 중도탈락률 (%) (D/B)*100 |
|-----|----------|------------|--------|--------|---------|------------|--------|--------|-------------------------------|---------------------------|
| | 소계 (A) | 외국인 학생 (B) | 어학 연수생 | 기타 연수생 | 소계 (C) | 외국인 학생 (D) | 어학 연수생 | 기타 연수생 | | |
| A대학 | 25 | 25 | 0 | 0 | 1 | 1 | 0 | 0 | 4.0 | 4.0 |
| B대학 | 239 | 232 | 7 | 0 | 18 | 18 | 0 | 0 | 7.5 | 7.8 |
| C대학 | 1 | 1 | 0 | 0 | 0 | 0 | 0 | 0 | 0.0 | 0.0 |
| D대학 | 152 | 50 | 79 | 23 | 15 | 2 | 13 | 0 | 9.9 | 4.0 |

유학생 시간제 취업은 이전은 고용확인서와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이 의무사항이었으나 2009년 5월 규제가 완화되어 고용 사항을 포함한 지도교수 추천서만 제출하면 된다[그림 3-5-1]. 하지만, 이들 데이터의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혼이민자 및 불법체류자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와 함께 유학생 노동시장 참여 실태도 아직까지 공신력 있는 별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고용정책 수립에 애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림 3-5-1] 시간제 취업 지도교수 추천서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도교수 추천서

| | | | | |
|--|---------------|-----------|----------|-----------|
| 대상자 | 성명 | | 외국인 등록번호 | |
| | 학과(전공) | | 이수학기 | |
| | 전화번호 | | e-mail | |
| 취업예정 근무처 | 업체명 | | 업종 | |
| | 주소 | | | |
| | 고용주 | (인 또는 서명) | 전화번호 | |
| | 취업기간 | | 급여(시급) | |
| | 근무시간 | 평일 : | | 토·일요일 : |
| 위 유학생은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도 학업(또는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20 . . . | | | | |
| 지도교수 | 소속 및 직위 | | | |
|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연락처 | |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 | | |
| 유학생 담당자 확인란 | 소속 및 직위 (연락처) |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외국인 과학기술자 사이언스 카드’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은 교수(E-1)와 연구(E-3) 인력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관리는 교과부의 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들 전문인력에 대한 허가 신청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기관이 이들의 인적 사항 등 제반서류들을 교과부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교과부에서는 이들 인력에 대한 여권번호, 생년월일, 학력 등을 데이터로 수집하며, 고용계약서나 이력서 등의 내용은 따로 데이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즉 인별 정보에 대한 행정 데이터가 따로 축적되고 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발급 실적 및 발급 기관별 실적을 사이언스 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며 내용은 <표 3-5-5>와 같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 활용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 전문 인력에 대한 전문인력 풀(pool)을 따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외국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애로점을 야기하고 있어, 이들 인력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수집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표 3-5-5> 사이언스 카드 연도별 발급 실적 및 발급 기관별 실적

(단위: 건)

| | | | | | | | | | |
|----------------------------|------|---------|------|---------|------|---------|------|------|------------|
| 연도별 발급 실적(2001~2010.09.10)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09.10 |
| | 89 | 107 | 105 | 136 | 164 | 180 | 179 | 295 | 114 |
| 발급기관별 실적(2001~2010.09.10) | 대학 | 정부출연(연) | | 국·공립(연) | | 기업부설(연) | | 기타 | 전체 |
| | 757 | 246 | | 43 | | 303 | | 0 | 1370 |

나. 법무부 통계

법무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유학생 체류자 통계는 비자별로 범주를 구분하여 집계되며, 이들 통계에서 주는 정보의 예는 <표 3-5-6>, <표 3-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체류관리를 위한 ‘비자 범주별(D-2, D-4)×국적별 유학생출입국·체류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학위과정별 유학생 통계와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황 등을 법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표 3-5-8>, <표 3-5-9>과 같은 형태이다.

<표 3-5-6> 유학생 통계: 법무부

(단위 : 명)

| | | | | | | | | | |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인원 | 5,265 | 7,288 | 9,705 | 14,407 | 20,683 | 30,101 | 41,780 | 52,631 | 62,451 |

<표 3-5-7> 연도별 유학생 증감 추이

(단위: 명)

| | | | | | | | | |
|--------------|-------|-------|--------|--------|--------|--------|--------|-----------|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12. |
| 전체 | 7,288 | 9,705 | 17,023 | 24,797 | 38,649 | 56,006 | 71,531 | 80,985 |
| 유학(D-2) | 7,288 | 9,705 | 14,407 | 20,683 | 30,101 | 41,780 | 52,631 | 62,451 |
| 어학연수(D-4) | - | - | 2,616 | 4,114 | 8,548 | 14,226 | 18,900 | 18,534 |
| 증감률(전년대비, %) | - | 33.2 | 75.4 | 45.7 | 55.9 | 44.9 | 27.7 | 13.2 |

※ 서울출입국 관할 유학생 : 24,476명 (2009.12.31 현재).

<표 3-5-8> 학위과정별 유학생 현황(2009.12.31 현재)

(단위 : 명)

| | 전체 | 학사/ 전문학사 (D-2-A/ D-2-B) | 석사 (D-2-C) | 박사 (D-2-D) | 연구 (D-2-E) |
|----------|--------|----------------------------|---------------|---------------|---------------|
| 합법유학생 수 | 57,116 | 41,692 | 11,804 | 3,545 | 75 |
| 구성비(%) | 100% | 73.0% | 20.6% | 6.2% | 0.2% |
| 총 유학생 수 | 62,112 | 46,494 | 11,983 | 3,557 | 78 |
| 불법유학생 수 | 4,996 | 4,802 | 179 | 12 | 3 |
| 불법체류율(%) | 8.0% | 10.3% | 1.5% | 0.3% | 3.8% |

※ 불법체류율은 학위과정별 체류유학생에 대한 불법체류자 비율임.

<표 3-5-9> 외국인유학생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황(2009.1.1~2009.12.31)

(단위 : 건)

| | 전체 | 제25조 (기간연장) | 제17조 (활동범위위반) | 제18조 (불법취업) | 제24조 (체류자격변경) | 기타 |
|---------------|-------|----------------|------------------|----------------|------------------|-------|
| 전체 | 4,519 | 1,327 | 1,208 | 714 | 266 | 1,004 |
| D-2 (유학) | 2,369 | 735 | 575 | 362 | 122 | 575 |
| D-4 (어학연수) | 2,150 | 592 | 633 | 352 | 144 | 429 |
| 비율(%) | 100 | 29.4 | 26.7 | 15.8 | 5.9 | 22.2 |

한편, 법무부에서는 2009년 5월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일회성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집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으로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국적취득자, 이중국적자, 재외동포(F-4)가 그 대상이다. 이들 조사대상에 외국인 유학생은 1,009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와 외국어 구사가 능숙한 면접원을 활용한 개별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학 동기 및 전공: 유학동기, 모국내 최종학력, 모국내 전공과정, 모국 출신교에서의 장학금 수령 경험 유무 및 국내 대학에서의 수령 여부 등
- 유학생 생활실태: 학교수업 만족도, 학업 의지, 여가시간 활동, 아르바이트 종류, 아르

바이트 신고규정 인지 여부 및 신고 여부, 학비나 생활비 조달 통로 및 쓰임새, 학교 유학생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여부, 출입국절차 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부 및 불참 이유, 유학생 변동사항 발생시 출입국사무소 신고규정 인지 여부 등

- 대학졸업 후 진로
- 출입국 서비스 관련 의견
-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경험 장소, 한국어 능력 정도, 한국어 능력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 한국 이미지 및 한국생활 만족도

3. 현행 통계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법무부와 교과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유학생 통계의 경우 두 부처간 유학생 관련 통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집계 발표 시점이나 홈페이지 또한 일정하지 않아 이들 통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 유학생은 고급 인력으로서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학생은 인력고용부에 중요한 인력 풀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들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이들 유학생 행정 통계들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공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학생의 노동시장 내 활동이 높게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노동시장 참여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함께 한국 내 대학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애로점, 생활실태, 소비실태 등에 대한 조사 또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로, 법무부가 2009년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 생활실태조사」는 유학생의 생활 및 애로점 등을 파악한 거의 유일한 조사로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유학생 통계에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평가 정보 등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대학 및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2004년 이후 유학생이 급증하고 학업 수행 및 적응이 극히 어려운 학부 재학 외국인 유학생이 대부분이어서 학교 이탈, 불법취업, 혐한(嫌韓)의식 확대 등의 문제점이 급증하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정보로서도 이들 정보의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 평가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평가 정보와 유학생 실태를 알기 위한 조사방법은 일단 16개 광역지자체별 학교 명단과 각 대학별×과정별 유학생 분포를 감안한 유의추출을 통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통계청은 매 3~5년마다 노동시장 참여실태(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노동시장 참여의 계절성 정도, 보수 등), 생활실태, 소비실태, 체류비용(학비, 생활비) 등을 조사 발표함으로써 이들 정보의 통합을 통해, 유학생들의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의 유학생 급증 추세에 비추어볼 때 교과부는 통계청 조사와 별도로 매 1~2년마다 국내 대학의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 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 현황,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애로점 등을 조사 발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차원에서 유학생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학생 출신 취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를 작성하고 직종 등에 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도입되는 단순인력 외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유학생의 활용을 위한 정책 모색을 위한 통계가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계 작성상 접근성과 비용적 측면에서 법무부의 취업비자 소지자 정보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유학생의 취업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향후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이수 후 일정기간 연수 혹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되는 시점이나, FTA로 아시아 주변국간 연수생 이동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학생 출신 취업자와 연계하여 사이언스 카드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전문인력 풀을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를 살펴볼 수 있게끔 통계 관리 항목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는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 통계를 지자체 단위에서 바라볼 때 학교별 정보를 통해 지역별 정보를 생산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정책 및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 정형화된 체류 유학생 마이크로데이터 셋을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지자체 단위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 노력을 보조하기 위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6절 경제활동인구조사

1. 통계작성 개요에 대한 소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 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적사항

- 가구원 관리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 정도, 혼인상태, 활동상태

- 취업자 관련 항목

- 취업 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부업 여부, 취업시간,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 여부, 추가 취업 또는 전직가능성 및 시기, 추가 취업 탐색 여부, 산업, 직업·종사자 규모, 종사상의 지위, 취업 시기, 고용계약 설정 여부

- 실업자 관련항목

- 취업 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 구직 여부, 4주간 구직 여부,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활동기간, 희망 고용형태, 전 직장 유무 및 이직 시기, 이직 사유, 전 직장의 산업, 전 직장의 직업·종사자 규모, 전 직장의 종사상 지위

- 비경제활동인구 관련항목

- 취업 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 구직 여부, 4주간 구직 여부, 취업희망 여부, 취업가능성 여부, 비구직 사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및 최근의 구직 시기, 전 직장 유무 및 이직 시기, 이직 사유, 전 직장의 산업, 전 직장의 직업·종사자 규모, 전 직장의 종사상 지위

경찰에서 조사되는 취업자 총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조사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사업체조사가 농림어업, 공공행정기관 등을 제외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력 접근방법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므로 유업자 접근방법에 의한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대상은 매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이며, 이 중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된다.

경찰조사의 조사 단위는 표본가구로 표본조사구역 내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된다.

조사구 선정은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26,505개 조사구와 총조사 실시 이후부터 표본 개편시까지 신축아파트의 10% 506개 조사구를 추가하여 27,011개 조사구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표본 수에 따라 계통추출 실시하며, 이에 따라 1,629조사구(동부: 1,233, 읍·면부: 396)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본조사구역 선정은 표본조사구를 평균 5가구씩 묶어서 구역으로 분할한 후, 임의추출된 구역을 기준으로 인접된 구역 4개 추출하여 표본조사 구역으로 선정한다.

조사대상 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으로 2010년 일정은 다음 <표 3-6-1>와 같다.

<표 3-6-1> 2010년 조사대상 기간

| 2010 | 준비 기간 |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보도 일정 |
|------------------|--------------|---------------|---------------|-----------|
| 1월 | 1. 3~1. 9 | 1. 10~1. 16 | 1. 17~1. 23 | 2.10.(수) |
| 2월 | 2. 7~2. 13 | 2. 14~2. 20 | 2. 21~2. 27 | 3.17.(수) |
| 3월 | 3. 7~3. 13 | 3. 14~3. 20 | 3. 21~3. 27 | 4.14.(수) |
| 4월 | 4. 4~4. 10 | 4. 11~4. 17 | 4. 18~4. 24 | 5.12.(수) |
| 5월 | 5. 2~5. 8 | 5. 9~5. 19 | 5. 16~5. 22 | 6. 9.(수) |
| 6월 | 6. 6~6. 12 | 6. 13~6. 19 | 6. 20~6. 26 | 7.14.(수) |
| 7월 | 7. 4~7. 10 | 7. 11~7. 17 | 7. 18~7. 24 | 8.11.(수) |
| 8월 | 8. 8~8. 14 | 8. 15~8. 21 | 8. 22~8. 28 | 9.15.(수) |
| 9월 ¹⁾ | 9. 5~9. 11 | 9. 12~9. 18 | 9. 26~10. 1 | 10.20.(수) |
| 10월 | 10. 3~10. 9 | 10. 10~10. 16 | 10. 17~10. 23 | 11.10.(수) |
| 11월 | 11. 7~11. 13 | 11. 14~11. 20 | 11. 21~11. 27 | 12.15.(수) |
| 12월 | 12. 5~12. 11 | 12. 12~12. 18 | 12. 19~12. 25 | 12.31.(금) |

주 : 1) 9월 추석연휴로 조사 기간 1주일 순연.

<표 3-6-2> 2010년 6월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 2009. 6 | | 2010. 5 | | 2010. 6 | | |
|-------------------------------|---------------------|--------------|---------------------|------------|---------------------|----------------|------------|
| | | 증감률 | | 증감률 | | 증 감 | 증감률 |
| ● 15세이상인구 | 40,078 | 1.3 | 40,533 | 1.3 | 40,572 | 495 | 1.2 |
| ■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 24,927 (62.2) | 0.8 | 25,099 (61.9) | 1.8 | 25,158 (62.0) | 231 (-0.2p) | 0.9 |
| ◆ 남 자 (참가율) | 14,578 (74.4) | 1.6 | 14,635 (73.8) | 1.2 | 14,636 73.8 | 58 (-0.6p) | 0.4 |
| ◆ 여 자 (참가율) | 10,349 (50.5) | -0.3 | 10,464 (50.5) | 2.6 | 10,522 50.7 | 173 (0.2p) | 1.7 |
| ○ 취 업 자 | 23,967 | 0.0 | 24,306 | 2.5 | 24,280 | 314 | 1.3 |
| 고 용 률 | 59.8 | | 60.0 | | 59.8 | 0.0p | |
| ◆ 농림어업 | 1,858 | -1.3 | 1,750 | -4.7 | 1,820 | -39 | -2.1 |
| ◆ 광공업 · 제조업 | 3,858 3,836 | -3.9 -3.9 | 4,057 4,036 | 4.9 4.9 | 4,038 4,017 | 181 181 | 4.7 4.7 |
|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 건설업 | 18,251 1,776 | 1.0 -4.7 | 18,499 1,814 | 2.7 2.6 | 18,422 1,843 | 172 67 | 0.9 3.8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5,551 | -2.2 | 5,526 | 0.1 | 5,421 | -129 | -2.3 |
| · 전기·운수·통신·금융 | 2,779 | -0.9 | 2,832 | 2.1 | 2,822 | 43 | 1.5 |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 8,145 | 5.4 | 8,327 | 4.7 | 8,336 | 191 | 2.3 |
| ◆ 상용근로자 | 9,340 | 3.3 | 10,078 | 8.2 | 10,089 | 750 | 8.0 |
| ◆ 임시근로자 | 5,281 | 2.9 | 5,223 | 2.9 | 5,165 | -116 | -2.2 |
| ◆ 일용근로자 | 2,115 | -4.5 | 1,953 | -6.6 | 1,938 | -177 | -8.4 |
| ◆ 자영업자 | 5,806 | -4.7 | 5,709 | -1.4 | 5,720 | -85 | -1.5 |
| ◆ 무급가족종사자 | 1,425 | -4.0 | 1,342 | -7.1 | 1,367 | -58 | -4.1 |
| ○ 실 업 자 | 960 | 25.6 | 793 | -15.4 | 878 | -83 | -8.6 |
| 실 업 률 (계절조정) | 3.9 (3.9) | | 3.2 (3.2) | | 3.5 (3.5) | -0.4p | |
| ◆ 남 자 실업률 (계절조정) | 617 4.2 (4.3) | 29.1 | 519 3.5 (3.6) | -14.5 | 566 3.9 (3.9) | -51 -0.3p | -8.2 |
| ◆ 여 자 실업률 (계절조정) | 344 3.3 (3.3) | 19.9 | 274 2.6 (2.6) | -17.2 | 312 3.0 (2.9) | -32 -0.3p | -9.3 |
| ◆ 중졸이하 (실업률) | 142 (2.6) | 13.6 | 125 (2.3) | -17.5 | 137 (2.6) | -5 (0.0p) | -3.3 |
| ◆ 고 졸 (실업률) | 495 (4.9) | 27.9 | 343 (3.4) | -22.0 | 406 (4.0) | -90 (-0.9p) | -18.1 |
| ◆ 대졸이상 (실업률) | 324 (3.5) | 28.1 | 325 (3.4) | -6.2 | 335 (3.5) | 12 (0.0p) | 3.6 |
| ■ 비경제활동인구 | 15,151 | 2.0 | 15,434 | 0.4 | 15,415 | 264 | 1.7 |

경찰인구조사는 12개 지방사무소 조사담당 직원이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조사대상 주간 동안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며, 조사원이 PDA를 휴대하여 대상가구를 방문, 면접하여 조사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타계식 조사방법에 의하여 매월 조사된다. 결과는 매월 전국 및 16개 시·도의 고용동향을 분석하여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인구 월보’로 발표하며 매년 5월 중에 월별·분기별 및 연간 동향을 수록한 「경제활동인구 연보」를 발간한다. 보도 자료는 조사대상 주간(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이후 네 번째 주 수요일에 인터넷 게재는 조사대상 주간(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이후 네 번째 주 수요일에 이루어진다. 공표 정보는 <표 3-6-2>와 같은 형태이다.

조사 지역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섬 조사구(섬 지역에 설정된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기숙사, 양로원, 고아원 등과 같은 기숙시설에 설정된 조사구)를 제외한 26,505조사구와 총조사 실시 이후부터 표본 개편 시까지의 신축아파트 506개 조사구를 기본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총 27,011조사구)하여 지역별 표본수에 따라 크기에 비례한 확률추출법(PPS)을 이용 1,629개 조사구(동부: 1,233, 읍·면부: 396)를 표본조사구로 선정한다. 이들 조사구에서는 한 조사 구역이 평균 5가구가 되도록 구역을 분할하여 임의의 표본조사 구역을 포함한 인접 조사구역 4개를 추출하여, 이 구역 내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를 조사하게 된다.

2. 외국인 인력 통계의 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외국인 여부를 따로 조사하거나 층화변수로 고려는 하지 않지만, 15세 이상 인구라는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직근 반기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증감을 15세 이상 인구에 반영하고 있다. 즉 적법·불법 외국인 모두 15세 이상 인구에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또한 조사 표본에 들어오므로, 이들의 조사와 집계를 위해 표본가구 내 외국인은 외국어 조사표(11종)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있다.

* (11개 어권) 힌디어, 러시아어, 몽골어, 벵골어, 베트남어, 영어, 인니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주요 지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작성하며 조사표 자체에는 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정보가 없으나 명부 보완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내·외국인을 구분하고 있다.

외국인의 표집이 완벽하다는 가정 하에 내/외국인 구분으로 외국인들의 경제활동, 즉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 파악이 가능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 정도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현행 통계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외국인 조사의 경우 추출상 대표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으로 인해 샘플링 1단계에서 외국인 층화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 추출 정보가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의 과소 표집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분포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 층화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것은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가구조사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 공장, 병원 등 기숙사와 특수사회시설과 같은 집단시설가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특정 특성을 가진 외국인 집단이 조사가구에서 포착되지 않아 편의(bias)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외국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센서스 조사에 외국인을 포함한 만큼 향후 부가조사 형식을 통한 설문조사를 강화하여, 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지역 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지역노동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외국인 통계에서는 물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이를 제공해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개인 식별 ID를 공개하는 것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가조사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패널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인 ID를 개인에 관한 비밀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의하여 공개하거나 주기적으로 패널화된 자료를 생성하여 공급해야 자료 활용성 또한 증진될 수 있다.

조사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의 관리 및 공개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계분석자가 설문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사자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조사하였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조사지침서를 일반인이 얻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2009년도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 노동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위한 기초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또한 상이한 기관에서 발표되는 통계의 자료 오류 시정도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7절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1. 조사 개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계주민의 생활안정, 지역사회 정착 등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외국계주민에 대한 유형별·국적별·성별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행정자치부 주민자치과에서 외국인주민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5월 1일 0시 기준)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1월 1일 0시 기준)으로 조사 명칭을 변경하였다.¹⁵⁾

행정안전부에서는 전 부처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로 한다. 조사의 주된 이용자는 정부 부처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주된 이용자다. 학계와 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들은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서 자료를 사용한다.

조사기준 시점은 2006~2009년은 5월 1일 0시였으나, 2010년부터는 다른 통계와의 호환성을 위해 1월 1일 0시로 바꿨다.¹⁶⁾ 통계 작성을 위한 기간은 2010년의 경우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4개월간이다. 조사방법은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정보/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등 3개 전산망을 통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

15) 행정자치부, 『2006년 국내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2006; 행정자치부, 『2007년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2007; 행정안전부, 『2008년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2008;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09;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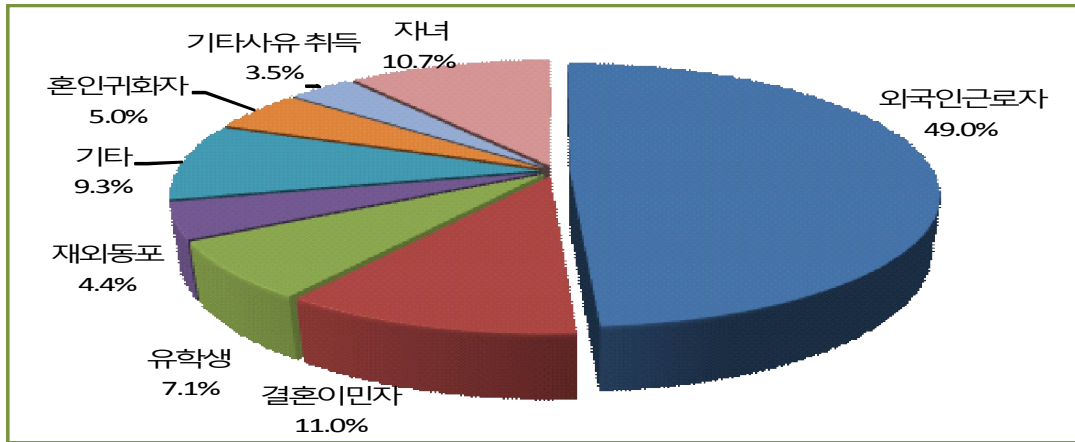
16) 2006~2009년은 시계열 자료의 연속성이 있다. 단순히 사람 수를 세어 기록한 것이지만, 집계 결과 통계표 간의 논리적 일관성은 관찰된다. 통계 결과 해석이 거의 없어서, 경제·사회 현상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지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장조사 직원을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모든 상세 지침(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 작성자를 위한 간단한 기초 교육을 실시한다.

이 조사대상은 외국계주민이다. 외국계주민은 ①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등록을 하는 90일 이상 체류자)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외국인. 단,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자에 한함, ② 한국국적 취득자 -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귀화자 등, ③ 외국계주민 자녀 등이다. 자녀 통계는 결혼이민자,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를 국적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 유형(외국인 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에 따라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그림 3-7-1 참조).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과 같은 통계 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들은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것으로, 엄밀한 정의가 이루어져 있다.

문서화 및 자료 제공의 측면으로,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매뉴얼)되어 있다. 간행물 수록 자료에 대한 오류 점검이 필요 없는 통계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해 작성한 표를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발표하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그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곤란하다. 간행물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자료가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 국가통계 승인시 포함된 모든 항목의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또 그 자료를 국가통계 DB에 등록한다. 매년,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조사 결과의 공표일을 명시하여, 그 날짜를 사전에 예고한다. 사전에 예고한 공표일을 준수한다. 보고서의 인쇄물과 파일만 제공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결과 자료 제공에는 미흡하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거한 자료만 작성한다. 마이크로데이터는 없다.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 자료와 비교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제결혼건수의 누적치와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수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

[그림 3-7-1] 외국계주민의 구성 비율(2010년)



2. 최근 조사 결과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계주민 수는 1,139,28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49,773,145명)의 2.3%에 해당되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던 2009년(1,106,884명; 5월 1일 기준)보다 32,399명(2.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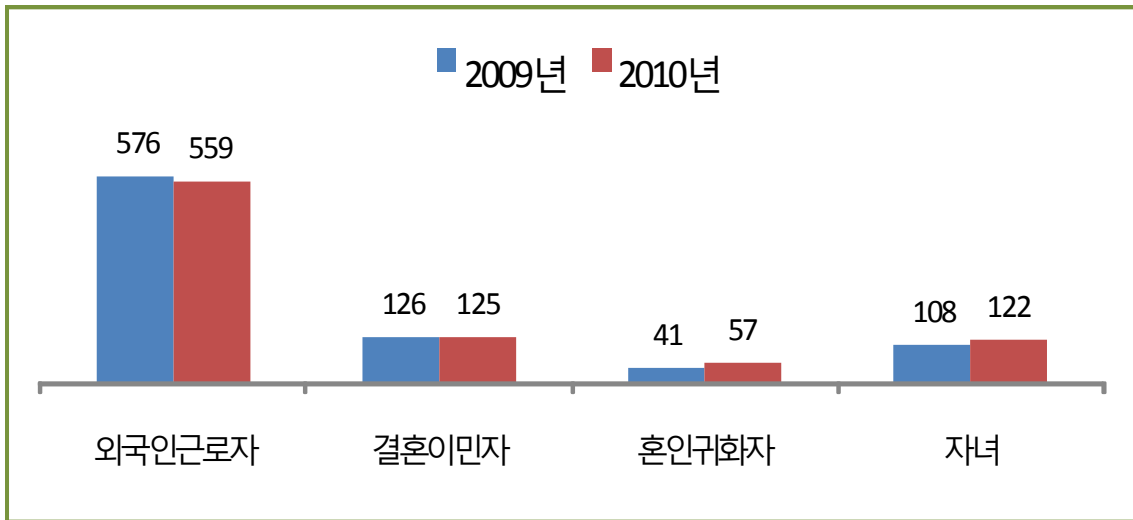
이번 현황조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난 2006년 첫 조사 이후, 매년 20% 이상 증가해 오던 증가율이 2010년에는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2006년 536천 명 → 2007년 722천 명(+34.7%) → 2008년 891천 명(+23.3%) → 2009년 1,106천 명(+24.2%) → 2010년 1,139천 명(+2.9%).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은 가장 많은 비율(49.0%)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감소(2009년 대비 3.0% 감소)한 것과 결혼이민자가 소폭 감소(2009년 대비 0.5%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3-7-2 참조). 경기침체가 국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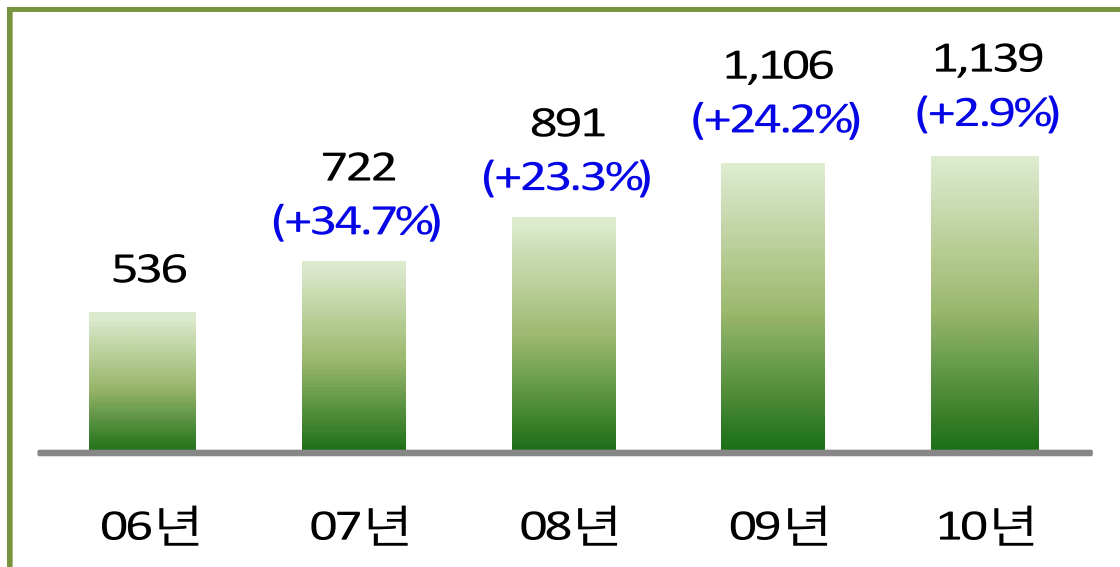
[그림 3-7-2]와 [그림 3-7-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은 국내 외국계주민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17) 조사기준 시점의 변동에 따른 요인도 찾을 수 있으나, 그 변동 폭이 매우 크므로 경기침체 요인의 설명력이 훨씬 큰 것으로 본다.

[그림 3-7-2] 외국계주민의 규모 변동(2009~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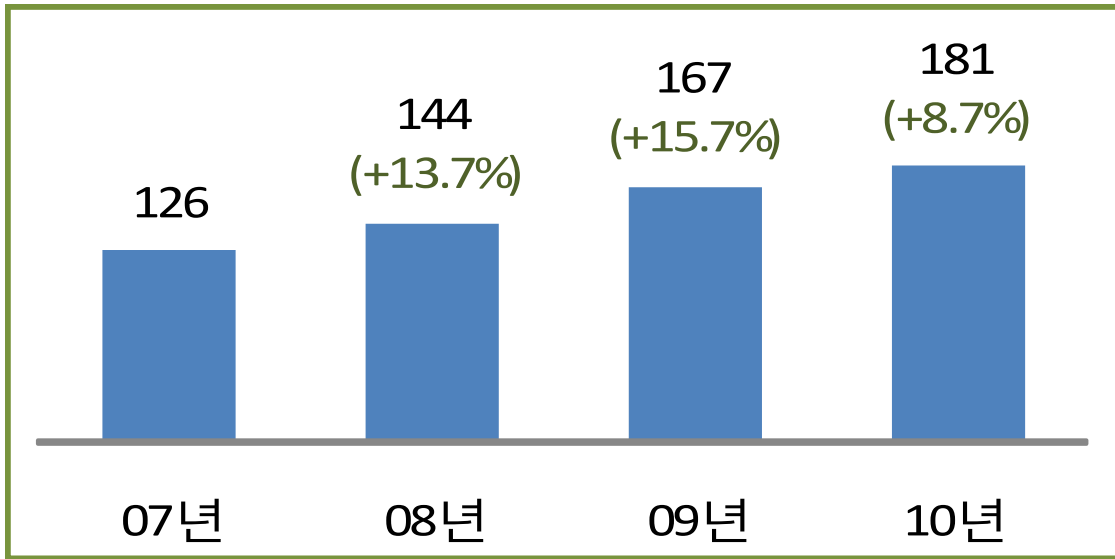


[그림 3-7-3] 외국계 주민 수, 2006-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통계’를 통해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도 있다. <표 3-7-1>은 2008년과 2010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근로자 수를 보여주고, [그림 3-7-5]는 2008년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근로자 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 3-7-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년간 시도별 외국인 근로자 구성 비율은 별로 변한 것이 없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분포 역시 [그림 3-7-5]와 같은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7-4]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수(2007~2010년)



<표 3-7-1>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수(2008~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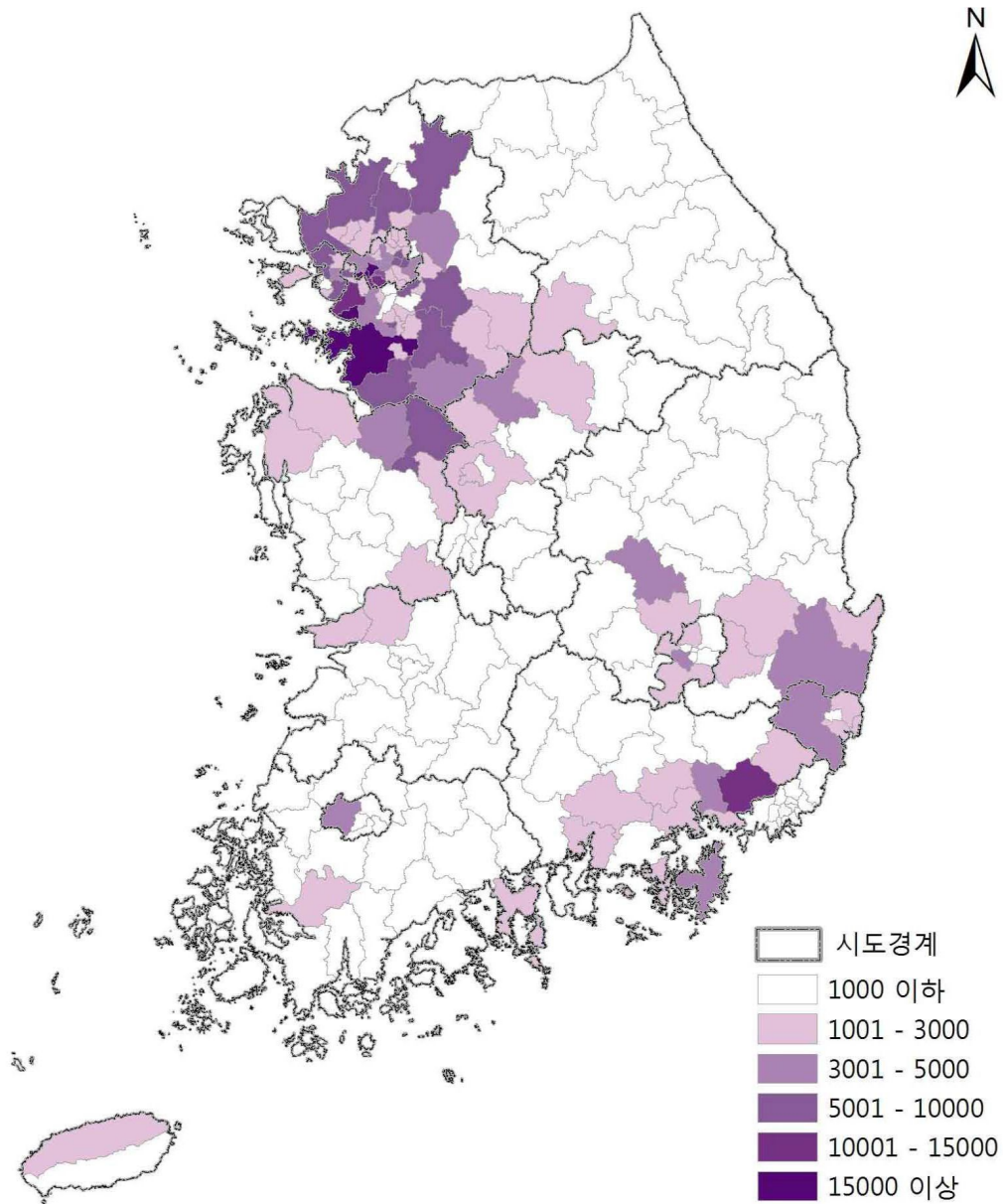
| | 2010 | | 2008 |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전 체 | 558,538 | 100.0 | 437,727 | 100.0 |
| 서울특별시 | 158,589 | 28.4 | 108,140 | 24.7 |
| 부산광역시 | 14,365 | 2.6 | 10,613 | 2.4 |
| 대구광역시 | 9,717 | 1.7 | 8,955 | 2.0 |
| 인천광역시 | 31,799 | 5.7 | 30,407 | 6.9 |
| 광주광역시 | 5,313 | 1.0 | 3,557 | 0.8 |
| 대전광역시 | 4,092 | 0.7 | 3,044 | 0.7 |
| 울산광역시 | 9,873 | 1.8 | 8,996 | 2.1 |
| 경기도 | 203,387 | 36.4 | 173,230 | 39.6 |
| 강원도 | 5,248 | 0.9 | 4,461 | 1.0 |
| 충청북도 | 13,805 | 2.5 | 11,023 | 2.5 |
| 충청남도 | 23,015 | 4.1 | 20,135 | 4.6 |
| 전라북도 | 7,585 | 1.4 | 4,392 | 1.0 |
| 전라남도 | 11,153 | 2.0 | 5,468 | 1.2 |
| 경상북도 | 20,338 | 3.6 | 17,445 | 4.0 |
| 경상남도 | 37,696 | 6.7 | 26,151 | 6.0 |
| 제주도 | 2,563 | 0.5 | 1,710 | 0.4 |

주: 2010년 1월 1일과 2008년 5월 1일 기준 통계. 90일 미만의 단기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2010.

행정안전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그림 3-7-5]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근로자 수(2008년 5월 기준)



자료: 박세훈·정소양(2009: 5).

3. 외국인력 통계로서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조사 목적이 지방자치단체별·출신국별 외국계주민의 수 파악에 그치고 있으므로, 외국인력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러나 외국계 주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 중의 하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표 3-7-2> 지역별 외국계 주민 수(2010년)

(단위 : 명, %)

| | 주민등록 인구 | 인구 대비 (%) | 외국계 주민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 | | | | 한국국적 취득자 | | | 외국계 주민 자녀 | | | | 외국계 주민 세대수 |
|----|------------|-----------------|------------|----------------|------------|-----------|--------|----------|---------|----------|----------|----------|-----------|-----------|-------------|-----------|------------------|
| | | | | 전체 | 외국인 근로자 | 결혼 이민자 | 유학생 | 재외 동포 | 기타 | 전체 | 혼인 귀화 | 기타 사유 | 전체 | 외국인 부모 | 외-한국인 부모 | 한국인 부모 | |
| 전체 | 49,773,145 | 2.3 | 1,139,283 | 920,887 | 558,538 | 125,087 | 80,646 | 50,251 | 106,365 | 96,461 | 56,584 | 39,877 | 121,935 | 6,971 | 98,531 | 16,433 | 217,094 |
| 서울 | 10,208,302 | 3.3 | 336,221 | 283,298 | 158,589 | 29,455 | 22,944 | 27,549 | 44,761 | 33,909 | 11,668 | 22,241 | 19,014 | 2,812 | 13,789 | 2,413 | 60,535 |
| 부산 | 3,543,030 | 1.2 | 41,365 | 32,809 | 14,365 | 5,456 | 6,144 | 1,531 | 5,313 | 2,858 | 2,419 | 439 | 5,698 | 96 | 4,808 | 794 | 8,218 |
| 대구 | 2,489,781 | 1.0 | 26,002 | 20,273 | 9,717 | 3,774 | 3,189 | 866 | 2,727 | 1,825 | 1,547 | 278 | 3,904 | 59 | 3,389 | 456 | 5,573 |
| 인천 | 2,710,579 | 2.3 | 63,575 | 49,707 | 31,799 | 7,172 | 1,954 | 1,854 | 6,928 | 6,063 | 4,172 | 1,891 | 7,805 | 576 | 5,883 | 1,346 | 13,227 |
| 광주 | 1,433,640 | 1.2 | 16,632 | 12,673 | 5,313 | 2,498 | 3,159 | 488 | 1,215 | 1,207 | 1,040 | 167 | 2,752 | 43 | 2,300 | 409 | 3,721 |
| 대전 | 1,484,180 | 1.3 | 19,699 | 15,554 | 4,092 | 2,853 | 5,272 | 1,078 | 2,259 | 1,264 | 1,047 | 217 | 2,881 | 45 | 2,353 | 483 | 4,105 |
| 울산 | 1,114,866 | 1.7 | 19,354 | 15,136 | 9,873 | 2,335 | 352 | 178 | 2,398 | 1,420 | 1,081 | 339 | 2,798 | 43 | 2,253 | 502 | 3,710 |
| 경기 | 11,460,610 | 2.9 | 337,821 | 278,997 | 203,387 | 32,576 | 7,887 | 12,191 | 22,956 | 28,871 | 17,279 | 11,592 | 29,953 | 2,796 | 22,505 | 4,652 | 60,595 |
| 강원 | 1,512,870 | 1.3 | 19,041 | 13,366 | 5,248 | 3,034 | 2,707 | 689 | 1,688 | 1,775 | 1,470 | 305 | 3,900 | 80 | 3,392 | 428 | 4,635 |
| 충북 | 1,527,478 | 2.0 | 30,138 | 23,203 | 13,805 | 3,798 | 3,355 | 552 | 1,693 | 2,225 | 1,866 | 359 | 4,710 | 63 | 4,164 | 483 | 5,923 |
| 충남 | 2,037,582 | 2.4 | 48,874 | 38,410 | 23,015 | 6,033 | 6,147 | 707 | 2,508 | 3,511 | 2,748 | 763 | 6,953 | 135 | 6,031 | 787 | 9,501 |
| 전북 | 1,854,508 | 1.5 | 28,450 | 20,530 | 7,585 | 5,126 | 4,980 | 610 | 2,229 | 2,071 | 1,925 | 146 | 5,849 | 37 | 5,189 | 623 | 7,034 |
| 전남 | 1,913,004 | 1.6 | 31,305 | 21,470 | 11,153 | 5,760 | 2,722 | 317 | 1,518 | 2,382 | 2,185 | 197 | 7,453 | 59 | 6,662 | 732 | 8,118 |
| 경북 | 2,669,876 | 1.7 | 46,658 | 36,035 | 20,338 | 6,324 | 6,572 | 693 | 2,108 | 2,908 | 2,582 | 326 | 7,715 | 18 | 6,827 | 870 | 9,201 |
| 경남 | 3,250,176 | 2.1 | 66,800 | 53,919 | 37,696 | 7,724 | 2,405 | 696 | 5,398 | 3,621 | 3,110 | 511 | 9,260 | 99 | 7,866 | 1,295 | 11,283 |
| 제주 | 562,663 | 1.3 | 7,348 | 5,507 | 2,563 | 1,169 | 857 | 252 | 666 | 551 | 445 | 106 | 1,290 | 10 | 1,120 | 160 | 1,715 |

외국인력 통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출신국별·거주지별·성별 외국인 근로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통계에는 91일 이상 체류 가능한 사증을 소지한 불법취업자도 포함되나,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불법체류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UN의 국제인구이동 통계, ILO의 외국인 노동자 통계와는 호환될 수 없는 기준이다. 외국인 근로자 수만 있을 뿐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이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력 통계로 미흡하다.

한편,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는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력 통계의 주요 구성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취업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외국인력 통계로는 미흡하다.

사람 수만 세어서 문서에 수치를 적어 넣는 방식으로는 오류를 점검·제거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 변수를 고려한 복합적 분석도 불가능하므로, 중간 단계로 마이크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8절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1. 조사 개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 및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일반특성 및 취업, 경제수준,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등을 조사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교육·지원 등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여 다문화가족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전국 단위 1,000명 정도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오다가 2009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조사 실시). 2005년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보건복지부), 2006년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09년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 통계 제11779호;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부).

이 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표 3-8-1>과 같다.

① 일반적 사항: 결혼이민자의 국적, 성, 출생연도, 배우자의 출생연도, 교육수준(학년수),

배우자의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 입국연도, 거주기간, 국적 취득연도, 체류자격, 국적 및 영주권 취득 계획 등을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적 및 체류자격, 한국어 수준, 지역, 연령 및 시·도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② 취업과 노동시장: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 실태를 본인의 직종, 과거 본국에서의 직종, 배우자의 직종, 본국과 한국 직종의 연관성, 배우자와 본인 직종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취업경로, 노동시간, 임금 등 취업실태를 파악하고 임금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미취업 결혼이민자의 취업관련 태도를 취업하지 않은 이유, 향후 취업 희망, 지원정책 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③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다문화가족의 결혼과 가족생활을 가족형성과정, 가족구성, 가족관계, 가족해체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가족형성과정은 배우자를 만난 경로, 결혼 시점과 결혼 기간, 결혼 유형 및 현재 혼인상태를 살펴보고, 가족 구성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원의 세대별 구성 및 가족 구성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한다. 다문화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하여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를 분석하며, 일반 한국인 가족의 가족관계와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배우자와 비동거 결혼이민자의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고, 가족 해체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모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권유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국제결혼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평가를 알아본다.

④ 자녀양육: 자녀 유무 및 규모, 자녀순위별 출생연월, 성별, 취학 여부 등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 현황을 파악한다. 미취학자녀의 양육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 및 기관에 보내는지 여부 및 안 보내는 이유, 자녀를 돌보는 사람 등을 분석한다. 초등학교 자녀의 양육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방과 후에 돌보는 사람 또는 기관, 교육시 가장 어려운 점, 가장 필요한 지원 등을 파악한다. 결혼이민자의 출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임신 여부,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 규모 등을 분석한다.

⑤ 건강 및 보건의료: 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보건의료 이용으로 아플 때 주로 이용하는 기관, 이용시 가장 힘든 점, 질병 또는 사고로 아팠는지 여부, 그 일수와 외상 일수 등을 분석한다.

<표 3-8-1>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 부문 | 내용 |
|---------------------------|---|
| 일반적 사항 (15개 문항) | ① 결혼 전 국적 ② 성 ③ 출생년도 ④ 배우자의 출생년도 ⑤ 교육수준 ⑥ 수학년수 ⑦ 배우자의 교육수준 ⑧ 한국어 능력 정도 ⑨ 한국의 입국 년도 ⑩ 한국의 입국 목적 ⑪ 한국 거주기간 ⑫ 한국 국적 취득 시기 ⑬ 체류자격 ⑭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 계획 ⑮ 삶의 만족도 |
| 취업 (19개항목) | ① 배우자의 취업 ② 배우자의 직종 ③ 배우자의 고용형태 ④ 한국으로 오기 전 취업여부 ⑤ 직종 ⑥ 한국에서의 현재 취업 여부 ⑦ 직종 ⑧ 고용형태 ⑨ 구직경로 ⑩ 평균 근무시간 ⑪ 평균 임금 ⑫ 직업상의 가장 큰 어려움 ⑬ 노동조합 가입여부 ⑭ 일을 하지 않는 이유 ⑮ 취업의향 ⑯ 취업하는 데 가장 필요한 도움 ⑰ 직업훈련의 참여 경험 ⑱ 직업훈련 의향 ⑲ 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교육 |
|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22개항목) | ① 혼인상태 ②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지 여부 ③ 비동거 이유 ④ 결혼년도 ⑤ 결혼횟수 ⑥ 배우자의 결혼횟수 ⑦ 배우자 만난 경로 ⑧ 이혼·별거·사별년도 ⑨ 이혼 또는 별거 이유 ⑩ 모 및 형제자매의 초청 여부 ⑪ 초청하는 데 어려움 ⑫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척 ⑬ 지난 1년간 연락빈도 ⑭ 배우자 부모님의 생존여부 ⑮ 동거 가족 ⑯ 배우자관계 만족도 ⑰ 자녀관계 만족도 ⑱ 배우자부모 관계 만족도 ⑲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 만족도 ⑳ 모국의 가족 및 친척과 한국인 결혼에 대한 견해 ㉑ 가족 중 등록장애인 유무 ㉒ 장애인과의 관계 |
| 자녀양육 (14개항목) | ① 자녀유무 ② 자녀수 ③ 자녀 출생년월 ④ 자녀의 성 ⑤ 자녀의 취학여부 ⑥ 미취학자녀의 시설 또는 기관 이용 여부 ⑦ 이용하는 시설 또는 기관 유형 ⑧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⑨ 미취학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⑩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 후 양육형태 ⑪ 초등학교 자녀 교육상 가장 어려운 점 ⑫ 초등학교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⑬ 배우자의 현 임신여부 ⑭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 및 자녀수 |
| 건강 및 보건의료 (6개항목) | ① 전반적인 건강상태 ② 이플 때 이용하는 기관 ③ 기관을 이용하면서 힘든 점 ④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유병 여부 ⑤ 유병일수 ⑥ 외병일수 |
| 사회생활 (19개항목) | ① 한국에서 가장 힘든 점 ② 개인 또는 집안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③ 여가 또는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사람 ④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에 참석하는 사람 ⑤ 나의 가족·친척모임 빈도 ⑥ 배우자 가족·친척모임빈도 ⑦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빈도 ⑧ 모국인 친구 모임 빈도 ⑨ 지역주민 모임 빈도 ⑩ 한국에서 투표경험 유무 ⑪ 한국에서 특정 정당 회원 가입 경험 유무 ⑫ 한국에서 시민단체 회원 가입경험 여부 ⑬ 차별대우 경험 유무 ⑭ 거리·동네에서 차별정도 ⑮ 상점·음식점·은행에서 차별정도 ⑯ 공공기관 차별정도 ⑰ 집주인·부동산중개업소 차별정도 ⑱ 직장일터 차별정도 ⑲ 차별 시정 요구 정도 |
| 복지욕구 (24개항목) | ① 집의 소유주 ② 월평균 가구소득 ③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험 ④ 전기·수도가 끊긴 경험 ⑤ 돈을 빌린 경험 ⑥ 병원에 가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⑦ 한국가족을 기준으로 귀하 가족의 경제수준 ⑧ 한국과 모국의 경제수준 비교 ⑨ 한국어교육 받은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⑩ 한국사회 적응교육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⑪ 가족상담 및 교육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⑫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여부 및 도움정도 ⑬ 자녀양육 학습지원 여부 및 도움정도 ⑭ 인터넷 사용여부 ⑮ 인터넷 활용도 ⑯ 사회보험가입유형 ⑰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유형 ⑱ 한국어교육 필요도 ⑲ 한국사회적응교육 필요도 ⑳ 가족상담 및 교육필요도 ㉑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필요도 ㉒ 자녀양육·학습지원 필요도 ㉓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도 ㉔ 외국 출신 주민으로서 의견제시 참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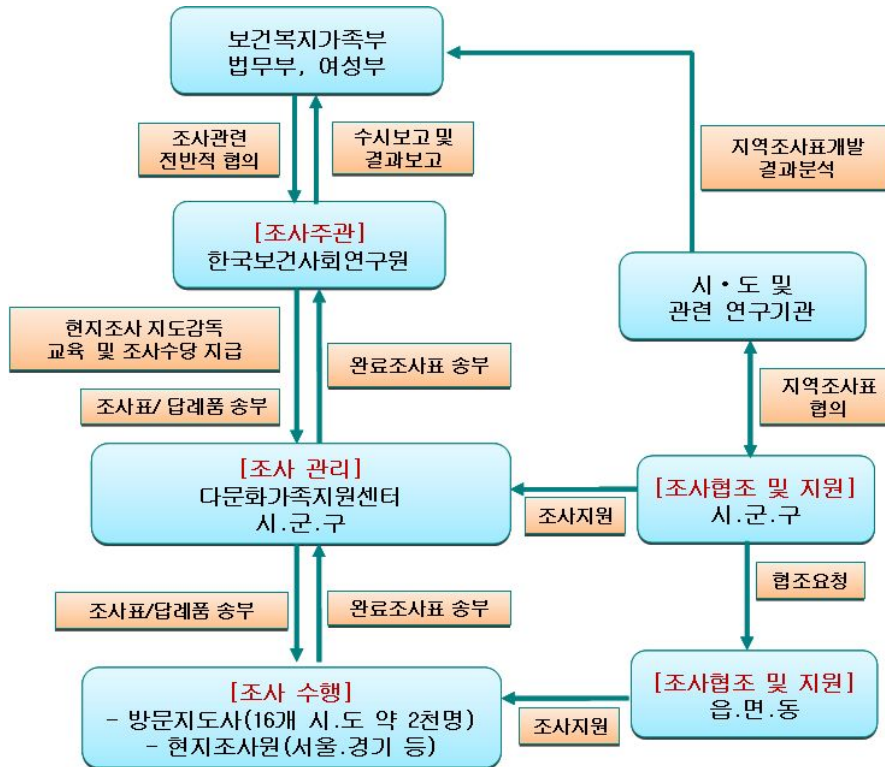
⑥ 사회생활: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사람,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에 참석하는 사람의 유형, 지난 1년간 모임 및 활동의 참여빈도(가족/친척모임, 배우자의 가족/친척 모임, 자녀학교의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모임, 지역주민 모임) 등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층을 파악한다. 한국에서 실시한 선거에서의 투표 경험, 한국에서 특정 정당 회원으로의 가입 경험, 한국에서 시민단체 회원으로의 가입 경험을 분석하여 한국 정치 및 사회에의 참여정도를 파악한다. 한국에서 차별 경험 유무, 장소별 차별받은 정도(거리/동네, 상점/음식점/경찰서, 집주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소, 직장/일터), 차별시정 요구 여부를 통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차별 정도를 영역별로 측정한다.

⑦ 복지욕구: 결혼이민자의 주택소유자, 월평균 가구소득, 경제생활 경험 여부(사회보험료 납부 경험, 전기·수도 등이 끊긴 경험, 돈을 빌린 경험, 지난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 등을 파악하여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수준을 분석한다. 다문화가족과 한국의 일반가족의 경제수준 비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모국의 경제수준을 비교한다. 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사용 여부 및 활용 용도를 분석하고 한국에서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보장권을 분석한다. 결혼이민자의 교육 또는 지원(한국어교육, 한국 사회적응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자녀양육/학습지원)을 받은 경험, 도움 정도 및 필요도를 파악하여 정책효과를 진단한다. 사회활동(지역사회 봉사활동, 외국출신 주민으로서 의견 제시)의 참여도를 파악하여 사회생활의 적응력을 진단한다.

이 조사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이다.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전수인 154,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집방식은 16개 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현황조사시 작성한 다문화가족 기초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 조사는 2009년 7월 20일~9월 2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부진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21일~10월 31일까지 11일간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응답자의 자기기재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원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지도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60명을 활용하였다. 조사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통반장 등 현지조사원 약 3,000명을 활용하였다. 실태조사와 관련한 조사 수행체계는 [그림 3-8-1]과 같다.

[그림 3-8-1]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수행체계



2.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참가 관련 조사결과

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취업 여부

취업률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큰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다. 남성 가장이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전통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 조사대상 결혼이민자의 40.2%가 현재 취업 중이고, 21.8%는 현재는 취업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한국에서 취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표 3-8-2 참조). 그 두 범주를 합하면 62.0%에 달하는 결혼이민자가 취업한 적이 있다. 질문 문항에서 조금이라도 일한 적이 있으면 일한 것으로 밝히려고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취업 여부는 공식 통계와 다르다. 어쨌든 결혼이민자의 62%가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 결혼이민자는 현재 취업 74.3%, 과거 취업

<표 3-8-2> 결혼이민자의 취업 여부(2009년)

(단위: %, 명)

| | 현재 일하고 있다 | 현재는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 |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 전체(수) |
|----------|-----------|--------------------------------|-----------------|----------------|
| 전체 | 40.2 | 21.8 | 38.0 | 100.0(129,117) |
| 성 | | | | |
| 여성 | 36.9 | 22.2 | 40.9 | 100.0(117,825) |
| 남성 | 74.3 | 17.6 | 8.2 | 100.0(11,292) |
| 지역 | | | | |
| 동부 | 43.0 | 23.1 | 33.9 | 100.0(93,030) |
| 읍면부 | 33.0 | 18.2 | 48.8 | 100.0(36,088) |
| 연령 | | | | |
| 24세 이하 | 17.6 | 13.2 | 69.2 | 100.0(25,102) |
| 25~29세 | 26.0 | 21.7 | 52.3 | 100.0(24,824) |
| 30~34세 | 38.6 | 25.1 | 36.3 | 100.0(22,735) |
| 35~39세 | 50.6 | 25.4 | 24.0 | 100.0(22,044) |
| 40~49세 | 62.5 | 22.5 | 15.0 | 100.0(24,753) |
| 50세 이상 | 58.2 | 26.4 | 15.4 | 100.0(9,660) |
| 교육수준 | | | | |
| 초등학교 이하 | 31.1 | 18.7 | 50.2 | 100.0(10,436) |
| 중학교 | 37.4 | 20.9 | 41.7 | 100.0(34,791) |
| 고등학교 | 41.1 | 22.7 | 36.1 | 100.0(53,844) |
| 대학교 이상 | 45.4 | 22.2 | 32.5 | 100.0(28,841) |
| 혼인상태 | | | | |
| 유배우 | 38.8 | 21.6 | 39.6 | 100.0(122,187) |
| 이혼 | 70.7 | 24.2 | 5.0 | 100.0(4,728) |
| 사별 | 52.7 | 25.6 | 21.7 | 100.0(1,380) |
| 체류기간 | | | | |
| 1년 미만 | 19.1 | 9.4 | 71.5 | 100.0(11,342) |
| 1~2년 미만 | 24.9 | 15.4 | 59.7 | 100.0(16,205) |
| 2~5년 미만 | 37.7 | 20.9 | 41.4 | 100.0(42,075) |
| 5~10년 미만 | 50.0 | 27.5 | 22.5 | 100.0(30,064) |
| 10년 이상 | 50.3 | 25.5 | 24.2 | 100.0(29,432) |
| 국적취득 여부 | | | | |
| 외국인 | 36.4 | 19.3 | 44.2 | 100.0(89,755) |
| 국적취득 | 48.8 | 27.3 | 23.9 | 100.0(39,362) |

17.6%이고, 여성 결혼이민자는 현재 취업 36.9%, 과거 취업 40.9%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취업하고 있다.

“현재 취업하고 있다”는 비율을 세분하여 보면, 국적취득자는 48.8%, 외국국적 소지자는 36.4%로, 국적취득자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것은 국적취득자가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또 한국 사회에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근거로 파악할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의 취업률이 농촌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

인데, 40대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다. 체류기간별로는 국내체류 기간이 길수록 취업률이 높다. 출신국별로는 북미, 유럽 등 남성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와, 중국(조선족) 등 체류기간이 길고 연령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응답자의 75.3%가 한국에 오기 전에 취업한 적이 있는데, 남성은 82.2%, 여성은 74.7%였다. 여성은 본국에서 취업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다고 밝힌 비율보다 더 높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민의 결과 본국에서 취득한 학위나 자격증 등이 한국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출산·육아·가사 등에 종사하느라 일자리를 구하러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둘이 복합된 경우도 있다.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취업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83.1%가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 대상별 취업률에서 배우자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이민자들이 ‘숙련의 이전 장벽’에 부딪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의 취업률은 85.6%이고, 남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의 취업률은 57.0%이다.

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직종

‘한국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의 직종을 조사하였다(표 3-8-3).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직종과 업종 제한을 받는 데 반해, 결혼이민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어느 직종이나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의 직종은 제도에 의하여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인적자본’의 효과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13.6%, 임직원 및 관리자가 0.5%, 도합 14.1%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원 저숙련 직종이다.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여성은 12.8%, 남성은 22.6%다. 저숙련직 종사자의 비율을 계산하면, 여성은 87.2%, 남성은 77.4%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민자 노동시장의 특성이 중간 직종이 거의 없고, 전문직과 저숙련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 전 직종을 살펴보면,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14.2%인데, 여성은 13.4%, 남성은 21.5%다. 현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직종과 비교해 보면, 남성은 본국에서 전문직 종사 비율이 오히려 낮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출신

남성들이 본국에서는 비전문직종에 종사하였으나 한국에 와서 영어학원 강사나 영어를 활용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여성의 경우 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했던 비율이 현재 국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보다 약간 높다. 그 이유는 전문직의 경우 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에서 의사로 일하던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는 주부로 생활하거나 단순사무직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숙련의 이전 장벽’이 그러한 사례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부분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했던 인원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결혼이민자 중 저숙련직 종사자는 거의 대부분 본국에서도 그러한 일에 종사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신랑-신부의 사회계층이 반영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의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계층내혼’(階層內婚)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중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7.6%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한국인 남성) 중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6.7%이고, ‘남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한국인 여성) 중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22.29%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중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다. 국제결혼이 사회계층적으로 양극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성의 6.7%는 전문직 종사자, 93.3%는 저숙련직 종사자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중 전문직 종사자 비율 21.1%는 신랑-신부가 같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중에는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는 경우도 많다.

<표 3-8-3>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직종(2009년)

(단위: %, 명)

| | 전체 결혼이민자 | 여성 결혼이민자 | 남성 결혼이민자 |
|-------------------|---------------|---------------|---------------|
| 현재 본인 직종 | | | |
| 서비스 | 29.4 | 32.5 | 10.1 |
| 판매 | 5.8 | 5.9 | 5.0 |
| 농림어업 | 3.2 | 3.5 | 1.2 |
| 기능 | 6.5 | 5.7 | 11.7 |
| 기계조작 및 조립 | 5.5 | 5.2 | 7.4 |
| 가사관련 단순노무자 | 4.2 | 4.6 | 1.2 |
| 기타 단순노무자 | 18.6 | 17.0 | 29.1 |
| 사무 | 3.4 | 3.5 | 3.1 |
| 전문가 | 13.6 | 12.4 | 21.2 |
| 임직원 및 관리자 | 0.5 | 0.4 | 1.4 |
| 기타 | 9.3 | 9.5 | 8.7 |
| 전체(수) | 100.0(66,191) | 100.0(57,194) | 100.0(8,997) |
| 한국 입국 전 직종 | | | |
| 서비스 | 19.7 | 20.7 | 11.1 |
| 판매 | 14.8 | 15.4 | 9.3 |
| 농림어업 | 6.0 | 5.4 | 11.3 |
| 기능 | 9.0 | 8.7 | 11.2 |
| 기계조작 및 조립 | 2.8 | 2.6 | 4.8 |
| 가사관련 단순노무자 | 2.4 | 2.6 | .7 |
| 기타 단순노무자 | 9.4 | 9.4 | 9.6 |
| 사무 | 12.0 | 12.3 | 8.6 |
| 전문가 | 12.5 | 11.9 | 17.7 |
| 임직원 및 관리자 | 1.7 | 1.5 | 3.8 |
| 기타 | 9.7 | 9.4 | 11.8 |
| 전체(수) | 100.0(79,320) | 100.0(71,520) | 100.0(7,800) |
| 현재 배우자 직종 | | | |
| 서비스 | 9.4 | 8.3 | 25.8 |
| 판매 | 7.3 | 7.3 | 7.4 |
| 농림어업 | 9.9 | 10.5 | .9 |
| 기능 | 17.2 | 17.9 | 5.7 |
| 기계조작 및 조립 | 8.0 | 8.2 | 4.4 |
| 가사관련 단순노무자 | 1.1 | .9 | 4.5 |
| 기타 단순노무자 | 16.9 | 17.3 | 10.9 |
| 사무 | 6.7 | 6.7 | 6.6 |
| 전문가 | 5.8 | 4.8 | 21.1 |
| 임직원 및 관리자 | 1.8 | 1.9 | 1.1 |
| 기타 | 15.9 | 16.2 | 11.6 |
| 전체(수) | 100.0(89,119) | 100.0(83,547) | 100.0(5,572) |

다. 결혼이민자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결혼이민자는 주당 평균 43.21시간 일한다. 주당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40시간 이상’ 68.4%, ‘30~39시간’ 6.2%, ‘20~29시간’ 5.4%, ‘19시간 이하’가 20.0%의 분포를 보인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2.81시간, 남성은 45.84시간으로 남성이

<표 3-8-4> 결혼이민자의 근로소득, 2009년

| (단위: %, 명) | | | | | | | | | | |
|------------|-----|---------|-------------|--------------|--------------|--------------|--------------|----------|--------------|--------|
| 구분 | 없다 | 50만원 미만 | 50-100만원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200-300만원 미만 | 300-400만원 미만 | 400-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계(수) | 평균 |
| 전체 | 3.0 | 12.2 | 45.7 | 31.6 | 4.3 | 1.5 | .7 | .9 | 100.0(73893) | 108.92 |
| 성 | | | | | | | | | | |
| 여성 | 3.3 | 13.7 | 49.7 | 29.1 | 2.4 | 0.8 | 0.4 | 0.6 | 100.0(64098) | 98.68 |
| 남성 | 1.2 | 2.8 | 20.1 | 48.1 | 16.7 | 6.3 | 2.4 | 2.4 | 100.0(9796) | 175.89 |
| 국적취득 여부 | | | | | | | | | | |
| 외국인 | 3.3 | 11.6 | 44.1 | 32.4 | 5.0 | 1.8 | 0.7 | 1.0 | 100.0(46372) | 112.25 |
| 국적취득 | 2.4 | 13.2 | 48.5 | 30.3 | 3.1 | 1.1 | 0.6 | 0.7 | 100.0(27522) | 103.30 |
| 지역 | | | | | | | | | | |
| 동부 | 2.1 | 10.9 | 44.4 | 34.5 | 4.8 | 1.8 | 0.7 | 0.9 | 100.0(57396) | 113.88 |
| 읍면부 | 6.1 | 16.7 | 50.6 | 21.8 | 2.6 | .8 | 0.5 | 1.0 | 100.0(16497) | 91.66 |
| 연령 | | | | | | | | | | |
| 24세 이하 | 7.6 | 19.2 | 54.1 | 16.0 | 1.3 | .5 | 0.3 | 1.0 | 100.0(6699) | 81.29 |
| 25-29세 | 3.7 | 14.1 | 47.6 | 27.3 | 4.2 | 1.1 | 0.6 | 1.3 | 100.0(10913) | 104.63 |
| 30-34세 | 2.6 | 13.1 | 44.0 | 30.8 | 6.0 | 2.1 | 0.6 | 0.9 | 100.0(13436) | 112.17 |
| 35-39세 | 2.3 | 10.6 | 45.2 | 33.5 | 5.0 | 1.9 | 1.0 | 0.7 | 100.0(15636) | 113.84 |
| 40-49세 | 2.3 | 10.3 | 43.3 | 36.8 | 4.3 | 1.6 | 0.6 | 0.8 | 100.0(19696) | 113.81 |
| 50세 이상 | 1.7 | 10.4 | 46.1 | 36.0 | 3.0 | 1.4 | 0.7 | 0.7 | 100.0(7514) | 110.86 |
| 교육수준 | | | | | | | | | | |
| 초등학교 이하 | 4.4 | 18.3 | 51.0 | 24.1 | 1.1 | 0.7 | 0.3 | 0.3 | 100.0(4642) | 86.67 |
| 중학교 | 3.2 | 11.8 | 51.0 | 31.4 | 1.6 | 0.5 | 0.2 | 0.4 | 100.0(18584) | 96.88 |
| 고등학교 | 2.8 | 11.6 | 47.7 | 34.1 | 2.5 | 0.6 | 0.3 | 0.4 | 100.0(31930) | 101.66 |
| 대학교 이상 | 2.8 | 12.1 | 35.4 | 29.6 | 11.2 | 4.6 | 1.9 | 2.3 | 100.0(18200) | 139.77 |
| 혼인상태 | | | | | | | | | | |
| 유배우 | 3.1 | 12.6 | 46.0 | 30.6 | 4.4 | 1.6 | 0.7 | 0.9 | 100.0(68214) | 108.58 |
| 이혼 | 0.8 | 7.1 | 41.6 | 46.2 | 3.2 | 0.5 | 0.3 | 0.3 | 100.0(4216) | 115.01 |
| 사별 | 2.0 | 12.8 | 51.4 | 29.9 | 2.7 | 0.6 | 0.3 | 0.3 | 100.0(996) | 98.35 |
| 체류기간 | | | | | | | | | | |
| 1년 미만 | 5.5 | 11.9 | 49.6 | 28.2 | 2.9 | 0.7 | 0.6 | 0.6 | 100.0(2888) | 98.29 |
| 1-2년 미만 | 4.3 | 11.5 | 50.3 | 29.5 | 2.7 | 0.7 | 0.2 | 0.8 | 100.0(6018) | 99.31 |
| 2-5년 미만 | 3.0 | 11.7 | 47.1 | 32.6 | 3.3 | 1.1 | 0.5 | 0.7 | 100.0(23079) | 105.52 |
| 5-10년 미만 | 2.4 | 12.0 | 43.7 | 33.5 | 5.1 | 1.8 | 0.6 | 1.0 | 100.0(21809) | 113.28 |
| 10년 이상 | 2.9 | 13.3 | 44.6 | 29.7 | 5.3 | 2.2 | 1.0 | 1.0 | 100.0(20100) | 112.48 |

여성보다 더 오래 일한다. 외국국적자가 44.05시간, 국적취득자가 41.81시간 일하고, 도시 거주자가 44.25시간으로 농촌 거주자의 39.54시간보다 더 오래 일한다. 학력별로는 대학 이상 고학력자보다 고졸 이하 저학력자들이 더 오랜 시간 일한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보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일한다. 출신국별로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26.03시간으로 특히 짧고,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시·도별로는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데, 그것은 그 지역에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것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조업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형태가 다른 업종보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08.92만원이다(표 3-8-4). 소득구간별로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45.7%로 가장 많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1.6%로 그 다음이다.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98.68만원이고, 남성은 175.89만원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소득이 많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보다 더 소득이 많다. 연령별로는 20대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이 늘어나지만, 30대 이후에는 별로 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종사하는 직종이 주로 저숙련직이라는 것 때문이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더 많다. 체류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높다. 체류기간은 한국어가 능숙해지는 등 '일반적 숙련' 수준의 향상을 동반하므로,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출신국별로는 유럽, 북미 등 선진국 출신의 소득수준이 특히 높다. 출신국 변수가 임금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보다는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외국인력 통계로서의 장단점과 개선방향

먼저, 자료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여야 한다. 전수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조사 시행 결과 원래 목표의 55.9%밖에 조사를 못했을 뿐 아니라 체계적 누락자가 발생하였다. 13만 1천 여명 중 7만3천여 가구에 대해 설문지 조사를 완료(55.9%)하였고, 국내에서 거주하여 타 지역에 살고 있거나, 해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락되었다. 그리고 전수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집단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문제가 발생한다. <표 3-8-5>는 행정안전부 조사의 모집단의 특성과 본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맞춘 표본모집단의 특성 값을 보여준다. 가중치 부여가 반드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응답기피자 또는 무응답자층의 특성이 응답자들과 다를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본 조사 자료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녀수를 계산할 경우, <표 3-8-5>에 제시한 것처럼, 표본모집단의 자녀수가 행정안전부 모집단이 수보다 더 많아지는 문제를 드러낸다. 가중치 부여 자체가 무리라고 파악하기보다는, 조사의 불완전성을 고려한 바탕 위에서 조사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외국인력 통계로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장점은 전수조사를 시도하였으므로, 마이크로 데이터셋을 분석하여 인력통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시·도별 통계가 작성 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변수들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할 수도 있다.

단점으로는 ‘종사상의 지위’ 항목이 문항에 포함되지 않는 등 본래 조사 목적이 외국인력 통계 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빚어진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기존 표본조사 결과와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

<표 3-8-5> 자녀수 추계를 통해 본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특성(2009년)

| | 모집단 | 표본조사 결과 | (단위: 명) |
|------------|---------|---------|----------------------|
| | | | 표본모집단 (가중치 부여 이후) |
| 결혼이민자수 | 167,090 | 73,669 | 131,702 |
| 자녀수(전연령) | 96,116 | 60,650 | 101,579 |
| 19세 미만 자녀수 | 88,485 | 58,876 | 97,837 |
| 기대값 | - | 39,013 | 69,745 |
| 편차 | - | 19,863 | 28,092 |

주: 이 표에 제시한 자녀수는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에 국한됨. 즉 그것은 ‘결혼이민자의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한국인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포함하지 않음. 한편, 행정안전부(2009) 자료에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수만 제시되어 있음. 그래서 전체 연령 자료는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14)에 제시된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기초현황자료’에서 구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09.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 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혜경·설동훈·김명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도 측정』, 법무부, 2009.

제4장 외국의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 사례

제1절 국제적 기준 및 통계 현황

1.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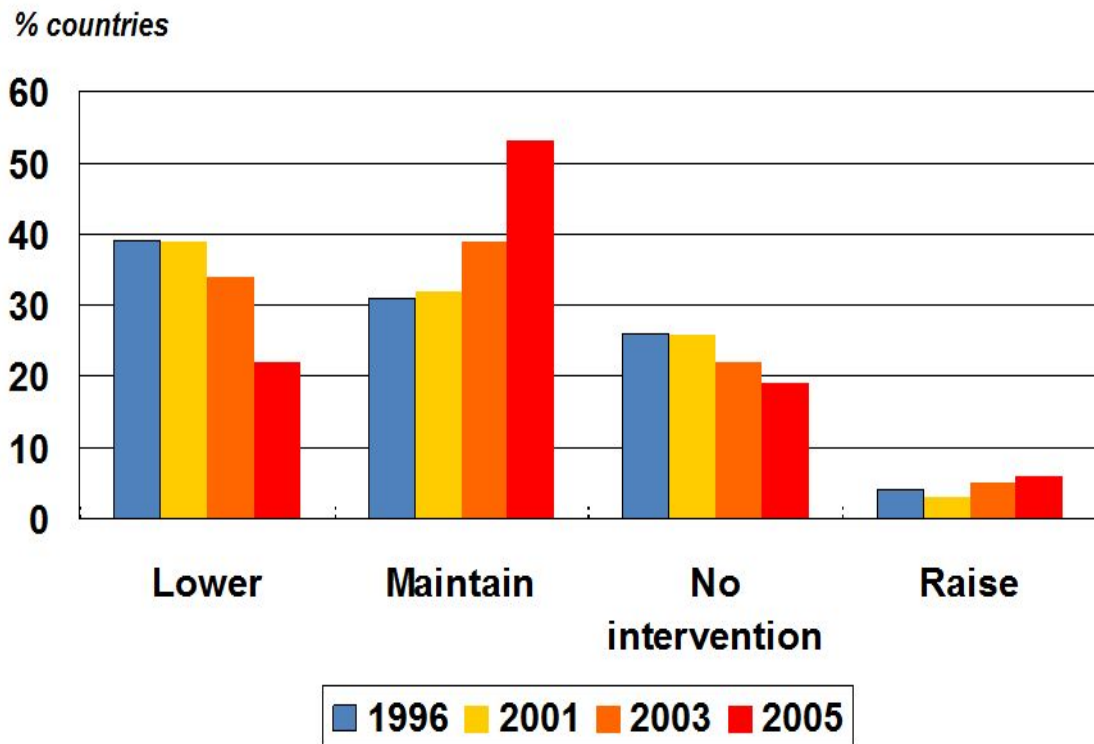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을 국제 인구이동 또는 해외이동(overseas migration)이라 한다. 이는 일상적으로 ‘이민(移民)’이라고 부른다. 이민은 때로는 국제이동을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국제인구이동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민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을 가리켜 移入(immigration), ‘나가는 이민’을 移出(emigration)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인구이동을 정의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다. 범제상의 이민에 대한 정의는 나라에 따라 다르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그 결과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나라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제인구이동을 집계할 경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국제인구이동의 개념을 통일하여 동질적 데이터를 집계하려는 노력이 192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국제인구이동을 판별하는 주요 기준은 국적(또는 시민권), 거주지, 거주기간, 체류 목적, 출생지 등이다(United Nations, 2002: 10~11).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거주지이다. 일상 용어에서는 흔히 이입자(immigrants)를 국내에 영주하기 위해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출자(emigrants)를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출국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나라마다 거주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르다. 나라마다 이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국내 거주 또는 해외 거주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민자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적 또는 법적 시민권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자국내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지만, 국경을 넘어 이주할 때는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자국민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의 국내 진입이 국제인구이동에 해당한다.

2. 국제연합 전 세계 이주 데이터베이스

최근에는 인구이동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1998)에서는 1년 이상 일상적 거주지를 국경을 넘어 옮기는 것을 ‘장기이동’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옮기는 것을 ‘단기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산출하는 나라는 몇 나라에 불과하다. 보통은 이 둘을 아울러 적어도 3개월 이상 삶의 근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국제인구이동으로 파악한다. 국제연합의 정의에 따르면, 통근자나 3개월 미만의 계절이동자·폼팔이·여행객 등은 이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거처를 외국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인구이동을 식별하는 최소 거주기간 요건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림 4-1-1] 세계 각국의 이민수용정책, 1996~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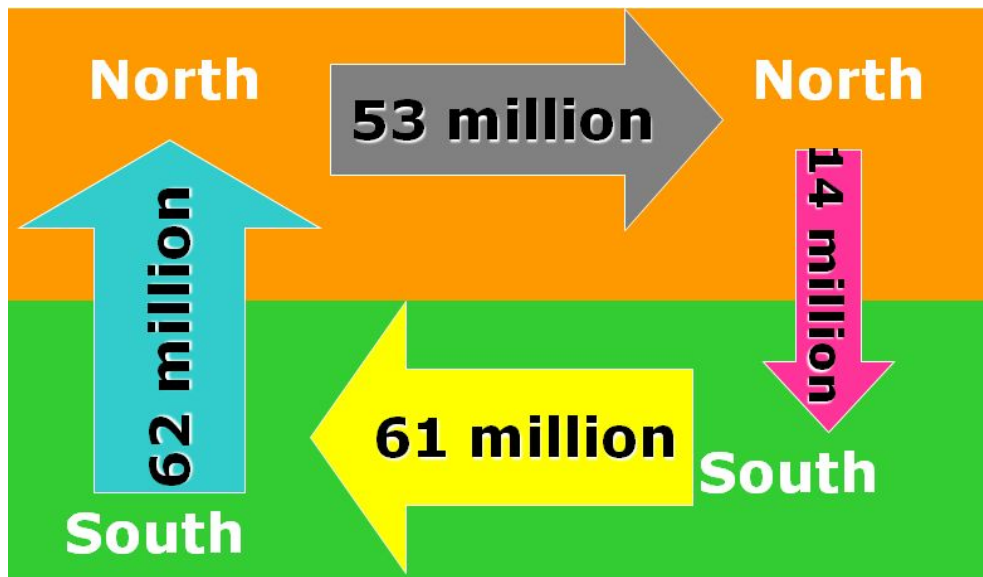


자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Each Year).

국제인구이동은 각국의 이민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4-1-1]은 세계 각국 정부의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의 전반적 기초(overall level immigration policy) 추이를 보여준

다. 2001년 세계 선진국 정부들 중 44%는 이주민 규모를 ‘줄이는’(lowering policy) 정책을 채택하였다(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02). 1970년대 초 독일·프랑스·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은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 신규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귀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 결정적 계기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4배 폭등하면서 초래된 제1차 석유위기였다. 서유럽 국가들은 석유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노동력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이민 유입억제’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렇지만 1976년 이주민 유입억제 정책을 채택한 선진국의 비율은 전체 선진국의 6%에 정도에 불과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민 유입억제 정책을 채택한 선진국의 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인신매매와 밀입국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합법 이주(irregular migration)’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4-1-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다수 유형은 ‘현상유지(maintain)’이고, 그 다음은 ‘규모 감축(lower)’, ‘불개입(no intervention)’, ‘규모 증대(raising policy)’의 순이다. 한국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규모 증대’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때, 매우 예외적 사례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2] 국제인구이동의 흐름



자료: Hovy(2009a: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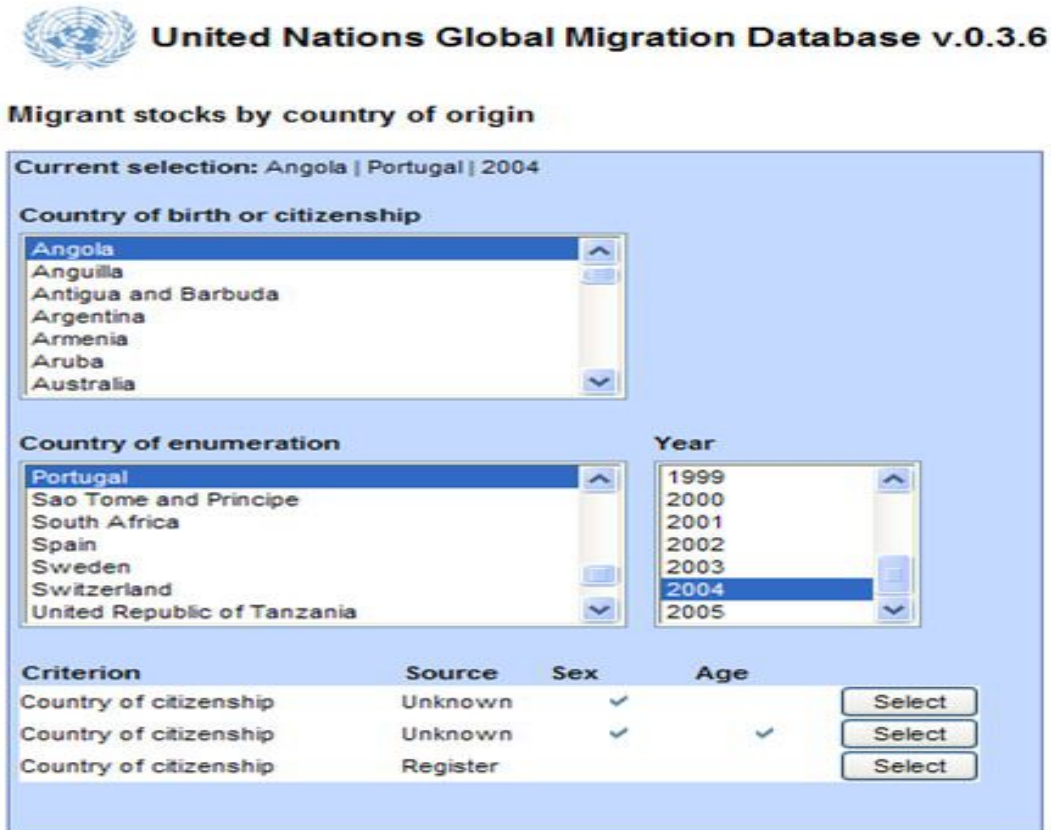
한편, 국제인구이동의 방향을 선진공업국 중심의 북부와 후발개발도상국 중심의 남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1-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북부에 거주하고(61%), 주로 남부 출신이 많다(65%). 형태별로는 남부에서 북부로의 이주가 가장 많지만, 남부 내부, 북부 내부의 규모도 매우 크며, 상대적으로 수는 적지만 북부에서 남부로의 이주도 이루어진다(설동훈 2000).

일상 용어에서 이민자는 ‘일시적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인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와는 구분한다. 흔히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이주자, 이민자를 영구 이주자로 간주한다. 특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정부는 ‘영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에게 별개의 사증을 발급함으로써 그 구분을 명확히 하려 한다. 그러나 실체는 그 나라 정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1960년대 유럽 각국의 이주노동자는 한시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유입되었지만, 그 중 상당수는 그곳에 영주하게 되었다. 일제 시대에 국내에 유입된 중국 산둥성(山東省) 출신 쿨리(coolie, 苦力)도 화교(華僑)로 자리잡았다. 그 경우 이주노동자와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s)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Castles & Kosack, 1985). 여하튼 국제연합의 국제인구이동 정의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해외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는 이민자로 파악된다.

국제연합 인구부(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에서는 2006년 ‘유엔 전세계 이주 데이터베이스’(United Nations Global Migration Database v.0.3.6)를 구축하였다.¹⁸⁾ 이 데이터베이스는 200개 이상의 나라 또는 지역에서 행해진 인구센서스, 인구등록, 전국표본조사, 기타 공공통계 자료에서 파악한 태어난 나라, 국적, 성, 연령별 국제이주자 수(stock)에 관한 포괄적인 경험 자료를 수집한다(그림 4-1-3 참조). 이 데이터베이스는 핵심 정책 질문을 강조한다. 국제이주자의 출신국은 무엇인가? 국제이주자의 성과 연령 분포는 어떠한가? 특정 출신국 또는 연령 집단의 국제이주자 규모(stock)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집단들, 예컨대 이주여성, 이주아동, 무국적자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다. 유엔 인구연감(Demographic Yearbook, produced by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유엔 인구부 작성 각종 표, 도서관,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찾아서 채워넣는다.

18) <http://esa.un.org/unmigration/index.aspx>

[그림 4-1-3] 유엔 전 세계 이주 데이터베이스(2010년)



자료 : <http://esa.un.org/unmigration/index.aspx>

3.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력이동 데이터베이스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력이동 데이터베이스(ILO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Database)는 광범위하게 가용한 국제노동력이동 통계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유럽공동체 통계청(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 유엔 통계부(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UNSD),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 COE) 등에서 사용하는 공통 질문지에 토대를 두고 만들었다. 다른 회원국의 경우, 출신국별로 국제노동기구가 1998년부터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획득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국제노동력이동 데이터베이스는 국제노동기구 통계국(ILO Bureau of Statistics)에서 운영하는 국제노동기구 노동통계 데이터베이스(ILO Database on Labour Statistics: LABORSTA)에 통합되었

다. LABORSTA의 초기 화면에서 왼쪽 메뉴의 통계(statistics)를 눌러, 주제별 옵션(by topic option)을 선택하고, 기타 지표들(other indicators) 중에서 국제노동력이동 통계(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Statistics)를 선택하면 된다(그림 4-1-4).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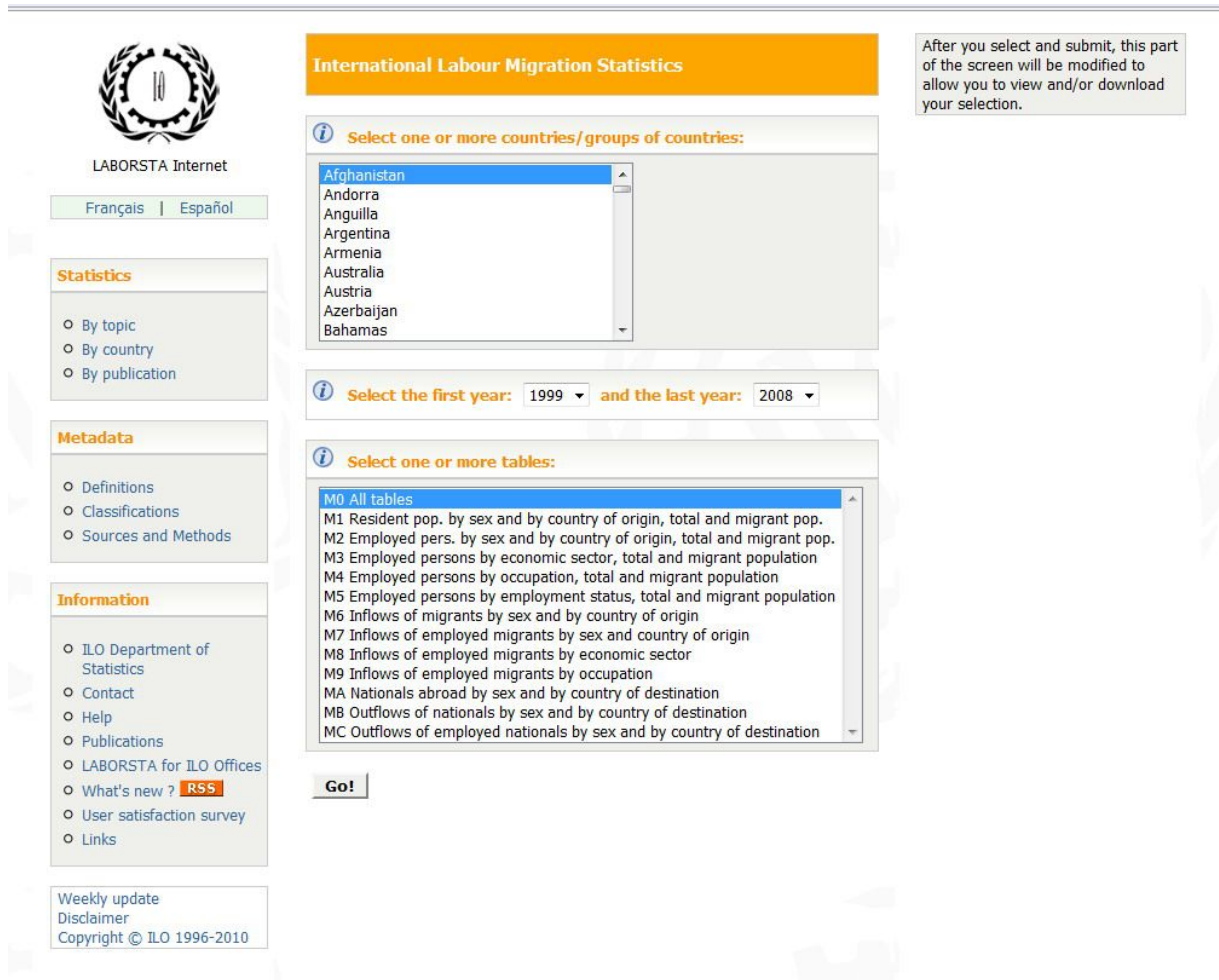
[그림 4-1-4] ILO 노동통계 데이터베이스(2010년)

The screenshot shows the LABORSTA Internet homepage. At the top left is the ILO logo and the text 'LABORSTA Internet'. Below it are language options for 'Français' and 'Español'. The main navigation menu on the left includes 'Statistics' (with sub-options: By topic, By country, By publication, Short term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Metadata' (with sub-options: Definitions, Classifications, Sources and Methods), and 'Information' (with sub-options: ILO Department of Statistics, Contact, Help, Publications, LABORSTA for ILO Offices, What's new? **RSS**, User satisfaction survey, Links). A 'Weekly update Disclaimer Copyright © ILO 1996-2010' box is at the bottom left. The main content area has an orange header 'Welcome to LABORSTA Internet!' and a sub-header 'View and download data and metadata for over 200 countries or territories from LABORSTA, an International Labour Office database on labour statistics operated by the ILO Department of Statistics'. Below this is a 'What's new?' section with a world map and three bullet points: 'Short term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Direct access to all country profiles (PDF XLS)', and 'Direct access to all selected series by country (PDF XLS)'. The 'Statistics by topic' section is divided into two columns: 'By country' and 'By publication'. The 'By country' column lists: Total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Hours of Work, Wages, and Labour Cost. The 'By publication' column lists: Consumer Price Indices, Occupational Injuries, Strikes and Lockout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and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At the bottom, there is a 'Metadata' section with sub-options: Definitions, Classifications (description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used), and Sources and Methods, Labour Statistics (methodological descriptions of national statistics by source). Finally, there is a 'LABORSTA Internet for ILO Offices' section with a sub-option: Specific data and metadata accesses by Regional and Sub-Regional ILO Offices.

자료: <http://laborsta.ilo.org>.

19) http://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migrant/info/ilm_dbase.htm

[그림 4-1-5] ILO 국제노동력이동 데이터베이스(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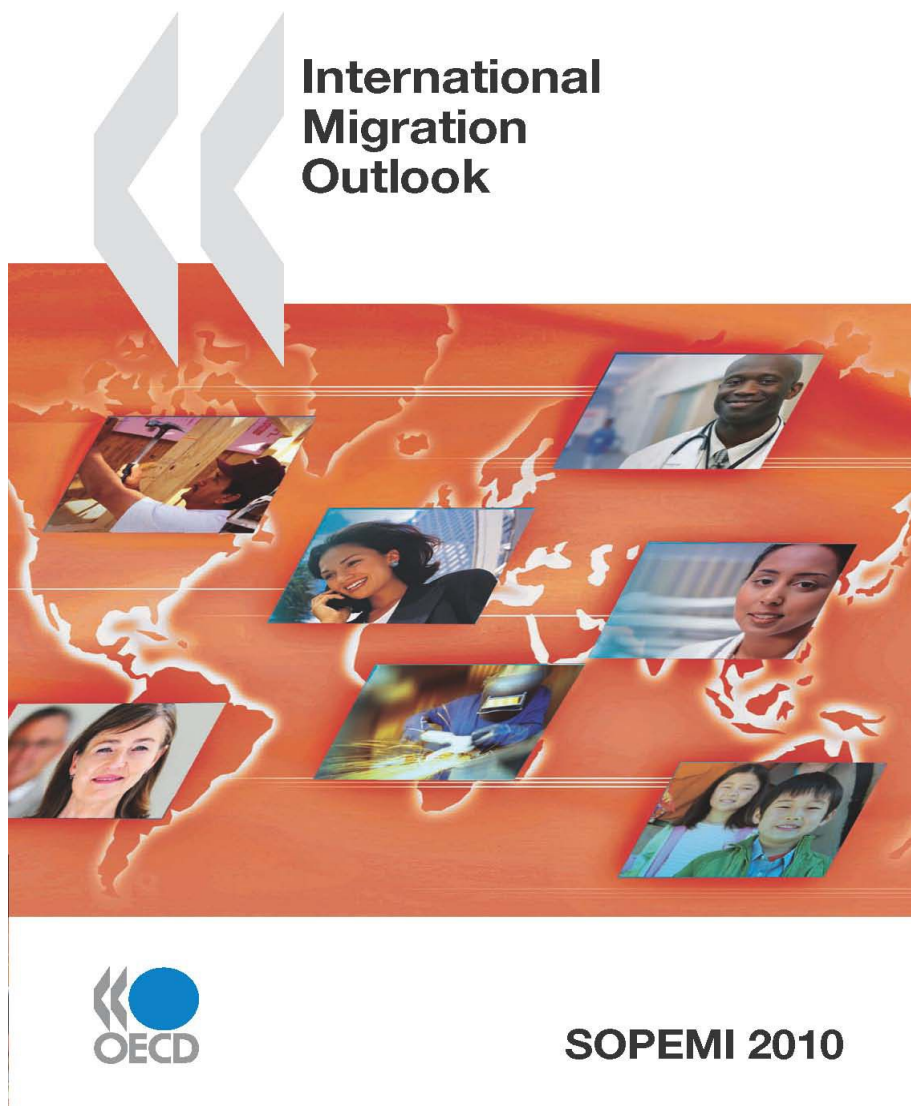
[그림 4-1-5]는 ILO 국제노동력이동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준다. 출신국과 연도별로 12개 유형의 통계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주 노동력에 특화된 자료라는 점에서 노동력 활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인구이동 데이터베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고용·노동·사회업무부(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에서는 ‘국제인구이동 영구관찰 시스템’(System d’Observation Permanente de Migration Internationale: SOPEMI)을 구축하고 있다. 그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사무국과

회원국 대표들 간의 조직을 뜻한다. SOPEMI에 바탕을 두고 취업자의 직업, 업종, 종사상 지위와 더불어 학업 성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6]은 2010년판 보고서 표지다. 2010년 국제이주 전망(The 2010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은 OECD 회원국의 이민자 이동과 정책에서의 최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다루면서 동시에 기초적인 외국인력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그림 4-1-6] 국제이주 전망(2010년)



제2절 외국의 외국인 인력 통계작성 사례

1. 일본

일본은 외국인과 관련한 통계를 통계국, 후생노동성, 법무성에서 작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사통계는 통계국에서 작성하는 「국세조사」가 유일하다.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이 작성하는 통계는 행정통계로서 주로 사업주의 신고에 따라 생성된다. 이때 법무성이 작성하는 2종의 행정통계란 ‘출입국관리통계조사’와 ‘등록외국인통계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가. 국세조사

국세조사는 외국인 통계와 직접 관련되는 통계라기보다는 일본의 인구와 세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 목적으로 조사되는 통계이다. 일본의 경우에 국세조사는 1920년에 처음 실시되어 2010년 10월 1일에 19회 조사가 실시되었다. 국세조사의 국세는 ‘국가의 정세’를 뜻하는 것으로서 「통계법」 제5조 제2항(“총무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전수조사(이하 ‘국세조사’라 한다)를 10년마다 실시하여 국세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세조사를 실시한 해로부터 5년째에 해당하는 해에는 간이 방법에 의한 국세조사를 행하여 국세통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에 따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0으로 끝이 나는 해에는 대규모의 국세조사를 실시하고, 5로 끝나는 해에는 간이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조사의 조사대상은 일본에 상주(常住)하는 모든 사람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주요한 조사 항목으로서는 성, 생년월일, 5년 전의 주거 소재지, 취업상태, 종업지(從業地)·통학지, 주거 종류 등이다. 조사의 흐름은 총무성-도도부현(都道府縣)-시정촌-지도원-조사원-세대이다.

국세조사의 조사 항목 가운데 ‘국적’이 세대원 각각에 대하여 파악이 되므로 국세조사를 통하여 국세조사가 실시되는 해에 일본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파악된다.

2010년 10월 1일에 조사가 실시된 19회 국세조사는 2011년 2월에 속보치가 공표될 예정이므로 18회 조사인 2005년의 국세조사 결과를 통하여 외국인 통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의 외국인수는 1,555천 명이며, 이 가운데 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수가 1,069천 명으로 외국인 전체의 68.7%에 이른다.

<표 4-2-1> 일본의 외국인수(2005년 국세조사 결과)

(단위 : 명)

| 국적(186개 집단) | 전 체 | 남자 | 여자 |
|----------------------|-----------|---------|---------|
| Total | 1,555,505 | 726,644 | 828,861 |
| Asia | 1,068,964 | 443,357 | 625,607 |
| Azerbaijan | 23 | 12 | 11 |
| Afghanistan | 285 | 183 | 102 |
| United Arab Emirates | 31 | 17 | 14 |
| Armenia | 18 | 4 | 14 |
| Yemen | 18 | 10 | 8 |
| Israel | 403 | 281 | 122 |
| Iraq | 67 | 37 | 30 |
| Iran | 3,794 | 3,304 | 490 |
| India | 8,119 | 5,553 | 2,566 |
| Indonesia | 18,379 | 12,342 | 6,037 |
| Uzbekistan | 233 | 142 | 91 |
| Oman | 21 | 16 | 5 |
| Kazakhstan | 92 | 40 | 52 |
| Qatar | 5 | 2 | 3 |
| Korea | 472,711 | 215,598 | 257,113 |
| Cambodia | 1,805 | 978 | 827 |
| Cyprus | 12 | 7 | 5 |
| Kyrgyz | 65 | 20 | 45 |
| Kuwait | 10 | 7 | 3 |
| Georgia | 18 | 12 | 6 |
| Saudi Arabia | 117 | 76 | 41 |
| Syria | 111 | 88 | 23 |
| Singapore | 1,299 | 434 | 865 |
| Sri Lanka | 4,813 | 3,531 | 1,282 |
| Thailand | 27,129 | 6,574 | 20,555 |
| Tajikistan | 11 | 9 | 2 |
| China | 353,437 | 140,916 | 212,521 |
| Turkmenistan | 1 | 1 | - |
| Turkey | 1,493 | 1,239 | 254 |
| Nepal | 3,783 | 2,614 | 1,169 |
| Bahrain | 10 | 8 | 2 |
| Pakistan | 4,613 | 3,960 | 653 |
| Bangladesh | 5,731 | 4,246 | 1,485 |
| Timor-Leste | 7 | 6 | 1 |
| Philippines | 126,486 | 23,775 | 102,711 |
| Bhutan | 32 | 21 | 11 |
| Brunei | 19 | 12 | 7 |
| Viet Nam | 20,901 | 10,585 | 10,316 |
| Malaysia | 5,480 | 2,912 | 2,568 |
| Myanmar | 2,931 | 1,599 | 1,332 |

(표 4-2-1)의 계속

| | | | |
|---------------------|---------|---------|---------|
| Maldives | 25 | 21 | 4 |
| Mongolia | 2,458 | 1,135 | 1,323 |
| Jordan | 90 | 68 | 22 |
| Laos | 1,832 | 932 | 900 |
| Lebanon | 46 | 30 | 16 |
| America, North | 48,637 | 31,022 | 17,615 |
| U.S.A. | 38,581 | 24,694 | 13,887 |
| Antigua and Barbuda | 1 | 1 | - |
| El Salvador | 77 | 31 | 46 |
| Canada | 7,692 | 5,107 | 2,585 |
| Cuba | 113 | 75 | 38 |
| Guatemala | 58 | 31 | 27 |
| Grenada | 2 | 2 | - |
| Costa Rica | 107 | 48 | 59 |
| Jamaica | 146 | 87 | 59 |
| Saint Vincent | 4 | 4 | - |
| Saint Lucia | 5 | 4 | 1 |
| Dominica | 77 | 45 | 32 |
| Dominican Republic | 203 | 110 | 93 |
| Trinidad and Tobago | 36 | 22 | 14 |
| Nicaragua | 51 | 24 | 27 |
| Haiti | 10 | 8 | 2 |
| Panama | 48 | 26 | 22 |
| Bahamas | 12 | 7 | 5 |
| Barbados | 5 | 4 | 1 |
| Belize | 2 | 1 | 1 |
| Honduras | 120 | 38 | 82 |
| Mexico | 1,287 | 653 | 634 |
| America, South | 267,007 | 145,356 | 121,651 |
| Argentina | 2,755 | 1,505 | 1,250 |
| Uruguay | 85 | 45 | 40 |
| Ecuador | 144 | 62 | 82 |
| Guyana | 7 | - | 7 |
| Colombia | 1,830 | 705 | 1,125 |
| Suriname | 3 | 1 | 2 |
| Chile | 531 | 256 | 275 |
| Paraguay | 1,631 | 842 | 789 |
| Brazil | 215,487 | 118,339 | 97,148 |
| Venezuela | 224 | 116 | 108 |
| Peru | 40,444 | 21,407 | 19,037 |
| Bolivia | 3,866 | 2,078 | 1,788 |
| Europe | 35,006 | 19,915 | 15,091 |

(표 4-2-1)의 계속

| | | | |
|------------------------|--------|-------|-------|
| Iceland | 22 | 19 | 3 |
| Ireland | 631 | 458 | 173 |
| Albania | 33 | 22 | 11 |
| U.K. | 10,183 | 7,239 | 2,944 |
| Italy | 1,378 | 918 | 460 |
| Ukraine | 907 | 113 | 794 |
| Estonia | 54 | 17 | 37 |
| Austria | 326 | 206 | 120 |
| Netherlands | 688 | 475 | 213 |
| Greece | 168 | 112 | 56 |
| Croatia | 50 | 26 | 24 |
| San Marino | 1 | - | 1 |
| Switzerland | 666 | 444 | 222 |
| Sweden | 687 | 463 | 224 |
| Spain | 1,353 | 787 | 566 |
| Slovakia | 141 | 52 | 89 |
| Slovenia | 26 | 16 | 10 |
| Serbia and Montenegro | 70 | 39 | 31 |
| Czech Republic | 173 | 105 | 68 |
| Denmark | 315 | 202 | 113 |
| Germany | 3,654 | 2,259 | 1,395 |
| Norway | 250 | 155 | 95 |
| Vatican City | 1 | 1 | - |
| Hungary | 283 | 152 | 131 |
| Finland | 377 | 194 | 183 |
| France | 4,446 | 2,898 | 1,548 |
| Bulgaria | 278 | 136 | 142 |
| Belarus | 143 | 29 | 114 |
| Belgium | 451 | 291 | 160 |
| Poland | 603 | 254 | 349 |
| Bosnia and Herzegovina | 19 | 8 | 11 |
| Portugal | 462 | 260 | 202 |
| Macedonia | 17 | 12 | 5 |
| Malta | 13 | 8 | 5 |
| Monaco | 1 | 1 | - |
| Moldova | 81 | 18 | 63 |
| Latvia | 27 | 8 | 19 |
| Lithuania | 95 | 31 | 64 |
| Liechtenstein | 7 | 2 | 5 |
| Romania | 1,777 | 251 | 1,526 |
| Luxembourg | 10 | 8 | 2 |
| Russia | 4,139 | 1,226 | 2,913 |

(표 4-2-1)의 계속

| | | | |
|----------------------------------|-------|-------|-------|
| Africa | 6,630 | 5,051 | 1,579 |
| Algeria | 101 | 68 | 33 |
| Angola | 4 | 3 | 1 |
| Uganda | 226 | 182 | 44 |
| Egypt | 910 | 545 | 365 |
| Ethiopia | 148 | 95 | 53 |
| Eritrea | 9 | 6 | 3 |
| Ghana | 1,118 | 944 | 174 |
| Cape Verde | 1 | 1 | - |
| Gabon | 17 | 12 | 5 |
| Cameroon | 92 | 64 | 28 |
| Gambia | 16 | 13 | 3 |
| Guinea | 126 | 110 | 16 |
| Kenya | 342 | 205 | 137 |
| Cote d'Ivoire | 79 | 65 | 14 |
| Congo | 51 | 39 | 12 |
|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153 | 121 | 32 |
| Sao Tome and Principe | 1 | 1 | - |
| Zambia | 57 | 34 | 23 |
| Sierra Leone | 16 | 16 | - |
| Djibouti | 7 | 5 | 2 |
| Zimbabwe | 68 | 46 | 22 |
| Sudan | 131 | 87 | 44 |
| Swaziland | 3 | 3 | - |
| Seychelles | 2 | 1 | 1 |
| Equatorial Guinea | 2 | 2 | - |
| Senegal | 163 | 136 | 27 |
| Somalia | 3 | 2 | 1 |
| Tanzania | 186 | 120 | 66 |
| Chad | 1 | 1 | - |
| Central African Republic | 5 | 5 | - |
| Tunisia | 168 | 125 | 43 |
| Togo | 12 | 9 | 3 |
| Nigeria | 1,464 | 1,359 | 105 |
| Namibia | 3 | 2 | 1 |
| Niger | 11 | 10 | 1 |
| Burkina Faso | 19 | 14 | 5 |
| Burundi | 5 | 1 | 4 |
| Benin | 18 | 16 | 2 |
| Botswana | 9 | 4 | 5 |

(표 4-2-1)의 계속

| | | | |
|--------------------------------|---------|--------|--------|
| Madagascar | 35 | 21 | 14 |
| Malawi | 29 | 21 | 8 |
| Mali | 57 | 51 | 6 |
| South Africa | 404 | 220 | 184 |
| Mauritius | 35 | 32 | 3 |
| Mauritania | 9 | 8 | 1 |
| Mozambique | 11 | 7 | 4 |
| Morocco | 241 | 180 | 61 |
| Libya | 29 | 20 | 9 |
| Liberia | 9 | 6 | 3 |
| Rwanda | 20 | 9 | 11 |
| Lesotho | 4 | 4 | - |
| Oceania | 9,981 | 6,451 | 3,530 |
| Australia | 6,985 | 4,480 | 2,505 |
| Kiribati | 7 | 5 | 2 |
| Samoa | 45 | 21 | 24 |
| Solomon Islands | 11 | 7 | 4 |
| Tonga | 81 | 60 | 21 |
| Nauru | 2 | 1 | 1 |
| New Zealand | 2,595 | 1,717 | 878 |
| Vanuatu | 2 | 2 | - |
| Papua New Guinea | 85 | 53 | 32 |
| Palau | 24 | 12 | 12 |
| Fiji | 118 | 77 | 41 |
| Marshall Islands | 4 | 1 | 3 |
|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 22 | 15 | 7 |
| Stateless or not reported | 119,280 | 75,492 | 43,788 |

주 : Korea에는 조선(朝鮮)적 포함.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

(<http://www.e-stat.go.jp/estat/html/NewList/000001007251/NewList-000001007251.html>).

15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사 항목에 취업상태가 있으므로 경제활동상태도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국세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외국인 수는 1,409천 명으로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가 837천 명, 비경제활동인구가 417천 명이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는 취업자가 772천 명, 완전실업자가 65천 명이다.

<표 4-2-2> 일본의 연령별·경제활동상태별 외국인 수(15세 이상, 2005년 국세조사 결과)

(단위 : 명)

| | 전 체 | 경제활동인구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 취업자 | 완전실업자 | | |
| 전체 | 1,408,700 | 837,327 | 772,375 | 64,952 | 416,632 |
| 15 ~ 19 | 68,620 | 21,947 | 18,582 | 3,365 | 40,869 |
| 20 ~ 24 | 187,404 | 112,833 | 104,498 | 8,335 | 52,591 |
| 25 ~ 29 | 215,474 | 135,985 | 126,788 | 9,197 | 54,925 |
| 30 ~ 34 | 201,858 | 127,416 | 118,334 | 9,082 | 53,096 |
| 35 ~ 39 | 178,326 | 115,099 | 106,659 | 8,440 | 47,302 |
| 40 ~ 44 | 143,393 | 97,449 | 90,362 | 7,087 | 33,952 |
| 45 ~ 49 | 103,828 | 72,280 | 66,734 | 5,546 | 22,552 |
| 50 ~ 54 | 84,051 | 57,938 | 53,203 | 4,735 | 17,420 |
| 55 ~ 59 | 69,361 | 44,873 | 40,800 | 4,073 | 15,211 |
| 60 ~ 64 | 50,288 | 27,153 | 24,302 | 2,851 | 16,116 |
| 65 ~ 69 | 37,230 | 13,801 | 12,366 | 1,435 | 17,641 |
| 70 ~ 74 | 26,227 | 5,815 | 5,342 | 473 | 15,379 |
| 75 ~ 79 | 19,284 | 2,883 | 2,676 | 207 | 12,442 |
| 80 ~ 84 | 14,081 | 1,315 | 1,239 | 76 | 10,177 |
| 85세 이상 | 9,275 | 540 | 490 | 50 | 6,959 |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

(<http://www.e-stat.go.jp/estat/html/NewList/000001007251/NewList-000001007251.html>).

종사상 지위별로도 국세조사에서는 외국인 취업자 수(15세 이상)가 구분된다. 2005년 국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는 647천 명으로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467천 명, 임시근로자가 180천 명이다. 임원은 41천 명, 고용주가 26천 명, 자영자는 36천 명이며, 가족종사자는 23천 명이다.

<표 4-2-3> 일본의 산업별·종사상지위별 외국인 취업자 수(15세 이상; 2005년 국세조사 결과)

(단위 : 명)

| | 전체 | 근로자 | 상용 | | 임원 | 고용주 | 자영자 | 가족 종사자 |
|-----------------------|---------|---------|---------|---------|--------|--------|--------|-----------|
| | | | 상용 | 임시 | | | | |
| 전체 | 772,375 | 647,004 | 466,935 | 180,069 | 40,613 | 25,521 | 36,310 | 22,815 |
| 농업 | 9,501 | 7,509 | 4,494 | 3,015 | 50 | 51 | 271 | 1,617 |
| 임업 | 71 | 44 | 32 | 12 | 3 | 7 | 12 | 5 |
| 어업 | 1,160 | 1,055 | 694 | 361 | 4 | 2 | 24 | 75 |
| 광업 | 246 | 175 | 162 | 13 | 55 | 8 | 4 | 4 |
| 건설업 | 44,421 | 30,469 | 23,786 | 6,683 | 4,832 | 3,335 | 3,926 | 1,854 |
| 제조업 | 279,274 | 263,886 | 196,774 | 67,112 | 5,350 | 2,359 | 4,701 | 2,975 |
| 전기·가스·열공급· 수도업 | 153 | 151 | 131 | 20 | 2 | - | - | - |
| 정보통신업 | 18,156 | 14,980 | 13,229 | 1,751 | 2,405 | 158 | 544 | 68 |
| 운수업 | 19,521 | 16,494 | 12,963 | 3,531 | 1,086 | 313 | 1,389 | 237 |
| 도매·소매업 | 77,763 | 56,417 | 39,318 | 17,099 | 8,443 | 3,444 | 6,002 | 3,451 |
| 금융·보험업 | 9,169 | 7,618 | 7,093 | 525 | 705 | 250 | 473 | 123 |
| 부동산업 | 8,042 | 3,396 | 2,980 | 416 | 2,501 | 585 | 1,177 | 381 |
| 음식점, 숙박업 | 87,797 | 59,878 | 31,850 | 28,028 | 3,595 | 9,450 | 6,547 | 8,319 |
| 의료복지 | 18,148 | 14,875 | 11,391 | 3,484 | 634 | 1,288 | 718 | 631 |
| 교육, 학습지원업 | 43,724 | 38,857 | 28,088 | 10,769 | 850 | 755 | 2,846 | 408 |
| 복합서비스사업 | 677 | 647 | 392 | 255 | 17 | - | 10 | 3 |
| 서비스업(달리 분류되지 않는 것) | 117,879 | 97,717 | 70,111 | 27,606 | 8,905 | 2,879 | 6,205 | 2,162 |
| 공무(달리 분류되지 않는 것) | 1,797 | 1,797 | 1,005 | 792 | - | - | - | - |
| 분류불능산업 | 34,876 | 31,039 | 22,442 | 8,597 | 1,176 | 637 | 1,461 | 502 |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

(<http://www.e-stat.go.jp/estat/html/NewList/000001007251/NewList-000001007251.html>).

이 밖에 국세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외국인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4-2-4> 외국인에 관한 특별집계(2005년 국세조사 결과)

| |
|--|
| 국적 |
| 1 국적(186구분), 남녀별 외국인 수 - 전국 |
| 2 국적(34구분), 연령(5세 계급), 남녀별 외국인 수 - 전국 |
| 3 국적(11구분), 배우관계(4구분), 연령(5세 계급), 남녀별 15세 이상 외국인 수 - 전국, 도도부현 |
| 외국인이 있는 세대의 가족유형 |
| 4 외국인이 있는 세대의 가족 유형(4구분), 세대 가족 유형(5구분), 세대주 국적(12구분)별 외국인이 있는 일반세대 수, 일반세대 인원, 외국인 인원 및 외국인 친족인원 - 전국 |
| 경제활동인구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
| 5 국적(11구분), 경제활동인구상태(6구분), 연령(5세 계급), 남녀별 15세 이상 외국인 수 - 전국 |
| 6 국적(11구분), 산업(11구분), 종사상지위(3구분), 남녀별 15세 이상 외국인 취업자 수 - 전국 |
| 7 국적(11구분), 직업(9구분), 종사상지위(3구분), 남녀별 15세 이상 외국인 취업자 수 - 전국 |

자료 : 정부통계 종합창구 홈페이지(<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bid=000001012922&cycode=0>).

나. 출입국관리통계조사

1) 개요

이 조사는 법무성 입국관리국 총무과 출입국정보관리실에서 주관한다. 통계의 목적은 일본인과 외국인의 출입(귀)국 상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출입국관리행정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있다.

이 통계는 종전에 패전 직후에 미국이 출입국관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1949년 11월부터 이 업무가 일본 정부로 이관되었으며, 이 업무와 대한 월간·연간 통계조사가 실시되었다. 출입국에 대해서는 1964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하여 1971년부터 출입국 기록에 기초한 조사로 개정되었다. 집계 결과는 1961년분부터 제1회 「출입국관리통계연보」로 간행되었다. 현재는 매년 7월에 「출입국관리통계연보」로 발간되며, 매월 「법무통계월보」에도 수록된다. 발간 주체는 법무대신 관방사법법제조사부 조사통계과(法務大臣 官房司法法制調査部 調査統計課)이다.

조사는 첫째 출입국관리통계보고표, 둘째, 일계표(日計表), 셋째 출입국 기록으로 구성된다.

2) 출입국관리통계보고표

이 표의 조사대상은 지역으로서는 전국이며, 단위로서는 행정기관이다. 주로 지방입국관리국, 지방입국관리국 지국, 지방입국관리국 출장소가 해당된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이며, 2010년 현재 객체수(客體數)는 87개소이다. 배포와 수집은 우송과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자계기입식이다.

과약 시점은 매월 말 현재와 월간(月間)이다. 따라서 월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계통(系統)은 법무성 → 보고자이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건건수
- ② 처리 상황
- ③ 미처리건수
- ④ 재류자격취소통지서 교부상황
- ⑤ 취소처분 후 상황
- ⑥ 지정서교부 후 상황
- ⑦ 재류자격취소 수속과 관련한 건수 등

3) 일계표(日計表)

조사대상은 지역으로서 전국이며, 단위로서는 행정기관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입국관리국, 지방입국관리국 지국, 지방입국관리국 출장소가 해당한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이며, 2010년 현재 객체수(客體數)는 86개소이다. 배포와 수집은 우송과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자계기입식이다.

과약 시점은 발생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주기는 부정기적이다. 계통(系統)은 법무성 → 보고자이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해항(海港)일정표
- ② 항공일정표
- ③ 심사대상자가 없는 외항일본선(기)(外航日本船(機)) 입항수(入港數)

4) 출입국기록

조사대상은 지역으로서 전국이며, 단위로서는 행정기관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입국관리국, 지방입국관리국 지국, 지방입국관리국 출장소가 해당한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이며, 2010년 현재 객체수(客體數)는 86개소이다. 배포와 수집은 우송과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자계기입식이다.

파악 시점은 발생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주기는 부정기적이다. 계통(系統)은 법무성 → 보고자이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국인입국기록
- ② 외국인출국기록
- ③ 재입국입국기록
- ④ 재입국출국기록

<표 4-2-5> 연도별 출입국통계

(단위 : 명)

| | 총 수 | 입국자 | | | | 출국자 | | | |
|------|------------|------------|------------|-----------|---------|------------|------------|-----------|---------|
| | | 전체 | 일본인 | 외국인 | 협정해당자 | 전체 | 일본인 | 외국인 | 협정해당자 |
| 2000 | 46,131,092 | 23,045,833 | 17,655,946 | 5,272,095 | 117,792 | 23,085,259 | 17,818,590 | 5,146,726 | 119,943 |
| 2001 | 43,176,983 | 21,665,748 | 16,265,593 | 5,286,310 | 113,845 | 21,511,235 | 16,215,657 | 5,183,036 | 112,542 |
| 2002 | 44,651,272 | 22,311,491 | 16,407,343 | 5,771,975 | 132,173 | 22,339,781 | 16,522,804 | 5,684,540 | 132,437 |
| 2003 | 38,205,567 | 19,152,101 | 13,295,311 | 5,727,240 | 129,550 | 19,053,466 | 13,296,330 | 5,623,310 | 133,826 |
| 2004 | 47,348,469 | 23,704,023 | 16,812,090 | 6,756,830 | 135,103 | 23,644,446 | 16,831,112 | 6,674,439 | 138,895 |
| 2005 | 49,803,437 | 24,907,608 | 17,326,149 | 7,450,103 | 131,356 | 24,895,829 | 17,403,565 | 7,355,565 | 136,699 |
| 2006 | 51,380,493 | 25,702,342 | 17,457,286 | 8,107,963 | 137,093 | 25,678,151 | 17,534,565 | 8,004,498 | 139,088 |
| 2007 | 52,965,394 | 26,491,437 | 17,199,310 | 9,152,186 | 139,941 | 26,473,957 | 17,294,935 | 9,041,375 | 137,647 |
| 2008 | 50,407,129 | 25,195,995 | 15,905,433 | 9,146,108 | 144,454 | 25,211,134 | 15,987,250 | 9,089,053 | 134,831 |
| 2009 | 46,340,290 | 23,162,169 | 15,432,549 | 7,581,330 | 148,290 | 23,178,121 | 15,445,684 | 7,588,836 | 143,601 |

자료 :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nyukan.html).

이 밖에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4-2-6> 일본 출입국관리통계 일람

| | |
|-----------|--|
| 입국심사 수속 | |
| 09-00-20 | 항별·특례상륙허가 및 불허가인원 |
| 09-00-21 | 지방입국관리국·지국 및 항(港)별 상륙 구두(口頭)심리 수리 및 처리인원 |
| 09-00-22 | 상륙에 관한 이의신청사건 수리 및 처리인원 |
| 09-00-23 |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 사증사전심사 수리 및 처리인원 |
| 09-00-24 |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수리 및 처리인원 |
| 재류자격심사등수속 | |
| 09-00-25 |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 재류자격 취득 등 수리 및 처리인원 |
| 09-00-26 |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 영주허가인원 |
| 09-00-27 |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 특별영주허가인원 |
| 09-00-28 |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 재류자격관계원제출 처리인원 |
| 09-00-29 |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 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 처리인원 |
| 09-00-30 | 지방입국관리국별 난민인정 수리 및 처리인원 |
| 퇴거강제수속 | |
| 09-00-31 | 지방입국관리국관내별 퇴거강제수속 수리 및 처리인원 |
| 09-00-32 | 지방입국관리국·지국·출장소·수용소 및 수용사유별 신규가(假)방면인원 |
| 09-00-33 | 지방입국관리국·지국·출장소·수용소 및 수용사유별 연말현재가방면인원 |
| 09-00-34 | 지방입국관리국·지국·출장소·수용소별 수용자 입출소 및 연간수용연인원 |
| 09-00-35 | 수용소별·수용사유별 입소인원 |
| 09-00-36 | 국적별·수용령서가 발부된 인원 |
| 09-00-37 | 국적별·퇴거강제령서가 발부된 인원 |
| 09-00-38 | 국적별·출국명령서가 발부된 인원 |
| 09-00-39 | 국적별·퇴거강제령서에 따라 송환된 인원 |
| 기타 | |
| 09-00-A1 | 항별 입항외항선박, 항공기수 |
| 09-00-A2 | 도도부현·국적별 연말현재 외국인등록인원 |

자료 : 정부통계 종합창구 홈페이지(<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64588>).

다. 등록외국인통계조사

1) 개요

이 조사는 법무성 입국관리국 총무과 출입국정보관리실이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 목적은 외국인등록법에 기초하여 등록된 외국인의 재류상황(在留狀況)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류외국인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제도는 1947년 5월부터 실시되었다. 이 이후에 외국인국적별인원조사표(월보)에 따라 등록외국인 수를 조사하였으며, 범위반응의자고발건수 통계조사에 따라

법위반건수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외국인등록국적별인원조사표에 대해서는 1977년 4월부터 4반기(四半期)별 기보(期報)로 바뀌었으며, 1986년 6월부터 연 2회(6월 말과 12월 말)로 다시 바뀌었다. 그리고 1998년 10월부터는 연 1회(12월 말)로 바뀌어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법위반응의자 고발건수 통계조사는 1998년부터 중지되었다.

2) 외국인등록국적별인원조사표

이 조사는 중앙에서 집계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국적별 외국인등록인원’(매년 6월경)과 ‘재류외국인통계’(매년 7월)로 공표된다.

조사대상은 지역으로서 전국이며, 단위로서 지방공공단체이다. 따라서 시·구·정·촌(市區町村)이 조사대상이라 할 수 있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이며, 따라서 객체수(客體數)는 3,000개소이다. 우송방식으로 배포·수집이 이루어지며, 자계기입식이다. 파악 시점은 12월 말 현재로, 계통은 법무성 → 도도부현 → 보고자이다.

조사 주기는 연(年)이며, 매년 1월에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등록외국인 도도부현별·국적별 등록인원이다.

<표 4-2-7> 성별 등록외국인 통계(2009년)

(단위 : 명)

| | 국 적 | 전 체 | 성 별 | |
|-----|---------|-----------|-----------|-----------|
| | | | 남 | 여 |
| | 전 체 | 2,186,121 | 1,005,479 | 1,180,642 |
| 아시아 | 소 계 | 1,688,865 | 721,551 | 967,314 |
| | 아프가니스탄 | 1021 | 788 | 233 |
| | 아랍수장국연방 | 60 | 54 | 6 |
| | 미얀마 | 8,366 | 4,675 | 3,691 |
| | 바레인 | 20 | 13 | 7 |
| | 부탄 | 68 | 44 | 24 |
| | 방글라데시 | 11,162 | 8,338 | 2,824 |
| | 브루나이 | 31 | 18 | 13 |
| | 캄보디아 | 2,651 | 1,427 | 1,224 |
| | 스리랑카 | 8,973 | 6,634 | 2,339 |

(표 4-2-7)의 계속

| | | | |
|---------|---------|---------|---------|
| 중국 | 680,518 | 285,548 | 394,970 |
| 키프로스 | 30 | 25 | 5 |
| 동티모르 | 12 | 6 | 6 |
| 인도 | 22,858 | 15,952 | 6,906 |
| 인도네시아 | 25,546 | 16,987 | 8,559 |
| 이란 | 5,018 | 4,260 | 758 |
| 이라크 | 87 | 58 | 29 |
| 이스라엘 | 713 | 497 | 216 |
| 요르단 | 191 | 139 | 52 |
| 한국/조선 | 578,495 | 264,296 | 314,199 |
| 쿠웨이트 | 34 | 25 | 9 |
| 라오스 | 2,681 | 1,422 | 1,259 |
| 레바논 | 103 | 74 | 29 |
| 말레이시아 | 8,344 | 4,448 | 3,896 |
| 몽골 | 4,917 | 2,141 | 2,776 |
| 어민 | 21 | 14 | 7 |
| 몰디브 | 42 | 38 | 4 |
| 네팔 | 15,255 | 10,779 | 4,476 |
| 파키스탄 | 10,295 | 8,406 | 1,889 |
| 필리핀 | 211,716 | 47,204 | 164,512 |
| 카다르 | 14 | 11 | 3 |
| 사우디아라비아 | 643 | 468 | 175 |
| 시리아 | 177 | 136 | 41 |
| 싱가폴 | 2,560 | 949 | 1,611 |
| 타이 | 42,686 | 11,192 | 31,494 |
| 터키 | 2,452 | 1,977 | 475 |
| 베트남 | 41,000 | 22,439 | 18,561 |
| 예멘 | 50 | 35 | 15 |
| 팔레스티나 | 55 | 34 | 21 |

(표 4-2-7)의 계속

| 유럽 | 소계 | 61,721 | 36,489 | 25,232 |
|---------|----|--------|--------|--------|
| 알바니아 | | 65 | 45 | 20 |
| 오스트리아 | | 560 | 360 | 200 |
| 벨기에 | | 685 | 496 | 189 |
| 불가리아 | | 440 | 231 | 209 |
| 벨라루시 | | 295 | 68 | 227 |
| 크로아티아 | | 107 | 58 | 49 |
| 체코 | | 243 | 147 | 96 |
| 덴마크 | | 557 | 384 | 173 |
| 에스토니아 | | 84 | 24 | 60 |
| 핀란드 | | 616 | 301 | 315 |
| 프랑스 | | 9,193 | 6,340 | 2,853 |
| 독일 | | 6,006 | 3,799 | 2,207 |
| 그리스 | | 285 | 219 | 66 |
| 헝가리 | | 443 | 247 | 196 |
| 아이슬란드 | | 50 | 35 | 15 |
| 아일랜드 | | 1,059 | 844 | 215 |
| 이탈리아 | | 2,668 | 1,884 | 784 |
| 키르기스스탄 | | 206 | 79 | 127 |
| 카자흐스탄 | | 196 | 81 | 115 |
| 리히텐슈타인 | | 8 | 5 | 3 |
| 룩셈부르크 | | 26 | 19 | 7 |
| 라트비아 | | 69 | 24 | 45 |
| 리투아니아 | | 178 | 63 | 115 |
| 말타 | | 32 | 24 | 8 |
| 모르드바 | | 142 | 20 | 122 |
| 마케도니아 | | 29 | 21 | 8 |
| 네덜란드 | | 1,128 | 832 | 296 |
| 노르웨이 | | 410 | 269 | 141 |
| 폴란드 | | 990 | 394 | 596 |
| 포르투갈 | | 446 | 263 | 183 |
| 루마니아 | | 2,470 | 405 | 2,065 |
| 러시아 | | 7,814 | 2,368 | 5,446 |
| 산마리노 | | 1 | - | 1 |
| 스페인 | | 1,892 | 1,198 | 694 |
| 스웨덴 | | 1,600 | 1,102 | 498 |
| 스위스 | | 1,100 | 764 | 336 |
| 투르크메니스탄 | | 22 | 12 | 10 |
| 타지키스탄 | | 45 | 29 | 16 |

(표 4-2-7)의 계속

| | | | | |
|------|------------|--------|--------|-------|
| | 영국 | 16,597 | 12,019 | 4,578 |
| | 우크라이나 | 1,590 | 275 | 1,315 |
| | 우즈베키스탄 | 727 | 424 | 303 |
| | 유고슬라비아 | 16 | 9 | 7 |
| | 아르메니아 | 31 | 14 | 17 |
| | 아제르바이잔 | 52 | 31 | 21 |
| | 안도라 | 1 | 1 | - |
| | 크루지아 | 55 | 34 | 21 |
| | 슬로베니아 | 56 | 31 | 25 |
| | 슬로바키아 | 240 | 90 | 150 |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30 | 15 | 15 |
|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95 | 53 | 42 |
| | 세르비아공화국 | 62 | 32 | 30 |
| | 몬테네그로공화국 | 9 | 7 | 2 |
| 아프리카 | 소계 | 12,226 | 9,302 | 2,924 |
| | 알제리아 | 149 | 108 | 41 |
| | 브린지 | 15 | 8 | 7 |
| | 보츠와나 | 16 | 8 | 8 |
| | 카메룬 | 319 | 255 | 64 |
| | 중앙아프리카 | 10 | 7 | 3 |
| | 차드 | 5 | 3 | 2 |
| | 콩고공화국 | 30 | 26 | 4 |
| | 콩고민주공화국 | 305 | 235 | 70 |
| | 카보베르나 | 1 | 1 | - |
| | 코모로 | 1 | 1 | - |
| | 페낭 | 34 | 31 | 3 |
| | 지프티 | 7 | 3 | 4 |
| | 에디오피아 | 350 | 210 | 140 |
| | 에리트리아 | 11 | 6 | 5 |
| | 가봉 | 28 | 19 | 9 |
| | 가나 | 1,936 | 1,610 | 326 |
| | 기니아 | 268 | 231 | 37 |
| | 감비아 | 23 | 20 | 3 |
| | 기니아비사우 | 3 | 3 | - |
| | 코트디부와르 | 96 | 79 | 17 |
| | 케냐 | 549 | 327 | 222 |
| | 리베리아 | 25 | 23 | 2 |
| | 리비아 | 50 | 34 | 16 |
| | 레소토 | 50 | 45 | 5 |

(표 4-2-7)의 계속

| | | | | |
|----|----------|--------|--------|--------|
| | 마다가스카르 | 78 | 39 | 39 |
| | 말리 | 128 | 115 | 13 |
| | 모리타니아 | 13 | 11 | 2 |
| | 모로코 | 378 | 295 | 83 |
| | 말라위 | 44 | 29 | 15 |
| | 모리샤스 | 87 | 83 | 4 |
| | 모잠빅 | 15 | 14 | 1 |
| | 니제르 | 12 | 11 | 1 |
| | 나이지리아 | 2,676 | 2,434 | 242 |
| | 나미비아 | 6 | 5 | 1 |
| | 르완다 | 21 | 12 | 9 |
| | 세네갈 | 304 | 273 | 31 |
| | 시에라리오네 | 47 | 40 | 7 |
| | 소말리아 | 3 | 1 | 2 |
| | 수단 | 212 | 154 | 58 |
| | 세셸 | 8 | 5 | 3 |
| | 탄자니아 | 387 | 264 | 123 |
| | 토고 | 22 | 20 | 2 |
| | 튀니지아 | 344 | 247 | 97 |
| | 우간다 | 486 | 377 | 109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602 | 348 | 254 |
| | 이집트 | 1,850 | 1,076 | 774 |
| | 부르키나파소 | 21 | 19 | 2 |
| | 잠비아 | 84 | 55 | 29 |
| | 짐바브웨 | 96 | 66 | 30 |
| | 앙골라 | 21 | 16 | 5 |
| 북미 | 소계 | 66,876 | 44,091 | 22,785 |
| | 발바도스 | 64 | 52 | 12 |
| | 바하마 | 97 | 77 | 20 |
| | 베리즈 | 9 | 5 | 4 |
| | 캐나다 | 10,652 | 7,439 | 3,213 |
| | 코스타리카 | 177 | 78 | 99 |
| | 쿠바 | 215 | 148 | 67 |
| | 도미니카공화국 | 477 | 282 | 195 |
| | 도미니카 | 44 | 30 | 14 |
| | 엘살바도르 | 125 | 52 | 73 |
| | 과테말라 | 107 | 54 | 53 |
| | 아이티 | 21 | 16 | 5 |
| | 온두라스 | 177 | 71 | 106 |
| | 자메이카 | 316 | 157 | 159 |

(표 4-2-7)의 계속

| | | | | |
|-------|-------------|---------|---------|---------|
| | 멕시코 | 1,995 | 1,085 | 910 |
| | 니카라과 | 75 | 37 | 38 |
| | 파나마 | 64 | 30 | 34 |
| | 세인트루시아 | 13 | 9 | 4 |
| | 세인트빈센트 | 7 | 6 | 1 |
| |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즈 | 1 | - | 1 |
| | 트리니다드 토바코 | 80 | 43 | 37 |
| | 미국 | 52,149 | 34,415 | 17,734 |
| | 그레나다 | 1 | 1 | - |
| | 안티구아 바부다 | 10 | 4 | 6 |
| 남미 | 소계 | 340,857 | 183,692 | 157,165 |
| | 아르헨티나 | 3,484 | 1,919 | 1,565 |
| | 볼리비아 | 6,094 | 3,309 | 2,785 |
| | 브라질 | 267,456 | 145,292 | 122,164 |
| | 칠레 | 710 | 339 | 371 |
| | 콜롬비아 | 2,705 | 932 | 1,773 |
| | 에쿠아도르 | 229 | 116 | 113 |
| | 가이아나 | 10 | 3 | 7 |
| | 파라과이 | 2,240 | 1,190 | 1,050 |
| | 페루 | 57,464 | 30,336 | 27,128 |
| | 수리남 | 15 | 10 | 5 |
| | 우루과이 | 127 | 66 | 61 |
| | 베네주엘라 | 323 | 180 | 143 |
| 오세아니아 | 소계 | 14,179 | 9,660 | 4,519 |
| | 호주 | 10,265 | 6,958 | 3,307 |
| | 피지 | 204 | 132 | 72 |
| | 키리바스 | 6 | 2 | 4 |
| | 마셜 | 7 | 3 | 4 |
| | 미크로네시아 | 32 | 25 | 7 |
| | 뉴질랜드 | 3,360 | 2,349 | 1,011 |
| | 나우루 | 4 | 4 | - |
| | 파푸아뉴기니 | 61 | 36 | 25 |
| | 파라오 | 27 | 18 | 9 |
| | 솔로몬 | 29 | 15 | 14 |
| | 통가 | 116 | 87 | 29 |
| | 투발 | 2 | 1 | 1 |
| | 파누아츠 | 5 | 2 | 3 |
| | 사모아 | 61 | 28 | 33 |
| 무국적 | | 1,397 | 694 | 703 |

자료 :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이 밖에 등록외국인 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가능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4-2-8> 등록외국인 수 통계 현황 일람

| | |
|-----------------|-----------------------------------|
| 09-99-01 | 국적(출신지)별·재류자격(재류목적)별 외국인등록자 |
| 09-99-02 | 국적(출신지)별·연령·남녀별 외국인등록자 |
| 09-99-03 | 도도부현별·국적(출신지)별 외국인등록자 |
| 09-99-04-0 | 도도부현별·재류자격(재류목적)별 외국인등록자(총수) |
| 09-99-04-1 | 도도부현별·재류자격(재류목적)별 외국인등록자(1 중국) |
| 09-99-04-2 | 도도부현별·재류자격(재류목적)별 외국인등록자(2 한국·조선) |
| 09-99-04-3 | 도도부현별·재류자격(재류목적)별 외국인등록자(3 브라질) |
| 09-99-05-0 | 도도부현별·연령·남녀별 외국인등록자(총수) |
| 09-99-05-1 | 도도부현별·연령·남녀별 외국인등록자(1 중국) |
| 09-99-05-2 | 도도부현별·연령·남녀별 외국인등록자(2 한국·조선) |
| 09-99-05-3 | 도도부현별·연령·남녀별 외국인등록자(3 브라질) |
| 09-99-06 | 도도부현별·국적(출신지)별·세대주관계별 외국인등록자 |
| 09-99-07-1 | 도도부현별·본적지별 외국인등록자(1 중국) |
| 09-99-07-2 | 도도부현별·본적지별 외국인등록자(2 한국·조선) |
| 09-99-08 | 국적(출신지)별 시·구별 외국인등록자 |
| 09-99-08-A (별표) | 외국인등록자수 총수 상위 100 자치체 |

자료 : 정부통계 종합창구 홈페이지(<http://www.e-stat.go.jp/SGL/estat/List.do?lid=000001065021>).

라. 외국인 고용상황

일본은 고용대책법에 기초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과 재취직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특별영주자 및 재류자격이 ‘외교’, ‘공용’인 자는 제외)를 고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할 때에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성명,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후생노동대신(헬로워크(한국의 고용센터에 해당))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 제도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9년 10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95,294개소이고, 외국인 근로자수는 562,818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홍콩 등을 포함)이 외국인근로자 수 전체의 44.3%를 차지하였으며, 브라질이 18.5%, 필리핀이 8.7%이다.

<표 4-2-9> 산업별 외국인 고용사업체 수 · 외국인 근로자 수(2009년 10월 현재)

(단위 : 명)

| | | 사업체수 | | 구성비 | | 외국인근로자수 | | 구성비 | |
|-----------------------|------------------------|-------------------|--------|--------|---------|-------------------|--------|--------|------|
| | | 파견 · 청부사업체(비율) | | | | 파견 · 청부근로자(비율) | | | |
| 전 체 | 95,294 | 16,300 | (17.1) | 100.0 | 562,818 | 162,525 | (28.9) | 100.0 | |
| A 농업, 임업 | 3,810 | 306 | (8.0) | 4.0 | 9,099 | 1,136 | (12.5) | 1.6 | |
| B 어업 | 168 | 4 | (2.4) | 0.2 | 512 | 14 | (2.7) | 0.1 | |
| C 광업, 채석업, 사리채취업 | 34 | 3 | (8.8) | 0.0 | 84 | 7 | (8.3) | 0.0 | |
| D 건설업 | 4,126 | 792 | (19.2) | 4.3 | 11,507 | 2,328 | (20.2) | 2.0 | |
| E 제조업 | 31,466 | 5,270 | (16.7) | 33.0 | 218,900 | 58,621 | (26.8) | 38.9 | |
| | 식료품제조업 | 4,203 | 476 | (11.3) | 4.4 | 40,003 | 5,480 | (13.7) | 7.1 |
| | 섬유공업 | 5,147 | 366 | (7.1) | 5.4 | 27,960 | 2,053 | (7.3) | 5.0 |
| | 금속제품제조업 | 3,389 | 495 | (14.6) | 3.6 | 15,613 | 3,135 | (20.1) | 2.8 |
| | 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 | 2,82 | 471 | (16.7) | 3.0 | 14,242 | 4,101 | (28.8) | 2.5 |
| |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1,997 | 436 | (21.8) | 2.1 | 19,850 | 9,294 | (46.8) | 3.5 |
|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4,022 | 1,240 | (30.8) | 4.2 | 45,847 | 19,148 | (41.8) | 8.1 |
| F 전기 · 가스 · 열공급 · 수도업 | 37 | 9 | (24.3) | 0.0 | 110 | 26 | (23.6) | 0.0 | |
| G 정보통신업 | 4,609 | 1,220 | (26.5) | 4.8 | 22,077 | 7,332 | (33.2) | 3.9 | |
| H 운수업, 우편업 | 2,412 | 513 | (21.3) | 2.5 | 13,544 | 5,566 | (41.1) | 2.4 | |
| I 도매업, 소매업 | 14,162 | 1,446 | (10.2) | 14.9 | 54,923 | 5,880 | (10.7) | 9.8 | |
| J 금융업, 보험업 | 725 | 96 | (13.2) | 0.8 | 7,276 | 1,469 | (20.2) | 1.3 | |
| K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 730 | 109 | (14.9) | 0.8 | 3,616 | 1,564 | (43.3) | 0.6 | |
| L 학술연구, 전문 · 기술서비스업 | 3,301 | 808 | (24.5) | 3.5 | 18,158 | 7,501 | (41.3) | 3.2 | |
| M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 11,724 | 696 | (5.9) | 12.3 | 63,755 | 6,149 | (9.6) | 11.3 | |
| N 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 1,613 | 251 | (15.6) | 1.7 | 6,946 | 1,178 | (17.0) | 1.2 | |
| O 교육, 학습지원업 | 3,911 | 317 | (8.1) | 4.1 | 42,001 | 4,100 | (9.8) | 7.5 | |
| P 의료, 복지 | 2,524 | 391 | (15.5) | 2.6 | 4,910 | 797 | (16.2) | 0.9 | |
| | 의료업 | 1,058 | 157 | (14.8) | 1.1 | 2,133 | 259 | (12.1) | 0.4 |
| | 사회보험 · 사회복지 · 간병 사업 | 1,442 | 231 | (16.0) | 1.5 | 2,651 | 534 | (20.1) | 0.5 |
| Q 복합서비스사업 | 505 | 71 | (14.1) | 0.5 | 1,811 | 500 | (27.6) | 0.3 | |
| R 서비스업(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 | 7,167 | 3,762 | (52.5) | 7.5 | 74,080 | 56,713 | (76.6) | 13.2 | |
| | 직업소개 · 근로자파견업 | 244 | 213 | (87.3) | 0.3 | 2,929 | 5,883 | (98.4) | 0.5 |
| | 기타 사업서비스업 | 5,360 | 3,231 | (60.3) | 5.6 | 60,768 | 47,807 | (78.7) | 10.8 |
| S 공무(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 | 1,561 | 121 | (7.8) | 1.6 | 6,579 | 440 | (6.7) | 1.2 | |
| T 분류불능산업 | 709 | 115 | (16.2) | 0.7 | 2,930 | 1,204 | (41.1) | 0.5 | |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상황(2009년 10월말 현재)에 대하여』.

이 밖에 외국인 고용상황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4-2-10> 외국인 고용상황 조사 결과

| | |
|---|--------------------------|
| 1 | 국적별·채류자격별 외국인근로자수 |
| 2 | 도도부현별 외국인고용사업체수·외국인근로자수 |
| 3 | 도도부현별·채류자격별 외국인근로자수 |
| 4 | 도도부현별·산업별 외국인근로자수 |
| 5 | 채류자격별·산업별 외국인근로자수 |
| 6 | 국적별·산업별 외국인근로자수 |
| 7 | 사업체규모별 외국인고용사업체수·외국인근로자수 |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외국인고용상황 신고상황(2009년 10월말 현재)에 대하여』.

마. 외국인유학생 재적상황 조사

이 조사는 일본의 대학(대학원 포함),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전문과정), 그리고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교육과정을 설치한 교육시설에 재적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재적상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유학생 대책에 관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조사는 2003년까지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였으나 2004년 4월에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설립됨에 따라 이 기구가 2004년 조사부터 맡게 되었다.

2009년 5월 1일 현재 유학생 수는 132,720명으로 과거 최고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표 4-2-11> 재학 단계별 외국인유학생 수(2009년 5월 1일 현재)

(단위 : 명)

| 재학 단계 | 인원(전년대비증가인원(비율)) |
|----------------------|-----------------------|
| 대학원 | 35,405(2,739명(8.4%)증) |
| 대학(학부)·단대(短大)·고전(高専) | 67,108(3,933명(6.2%)증) |
| 전수학교(전문과정) | 27,914(2,161명(8.4%)증) |
| 준비교육과정 | 2,293(58명(2.6%)증) |

자료 :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http://www.jasso.go.jp/ryugaku/index.html>).

외국인유학생 재적상황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기타 외국인유학생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4-2-12> 외국인유학생 관련 통계(외국인유학생 재적상황 조사)

| |
|--------------------|
| 1 출신지역별 유학생수 |
| 2 출신국(지역)별 유학생수 |
| 3 남녀별 유학생수 |
| 4 재학단계별·국공사립별 유학생수 |
| 5 전공분야별 유학생수 |
| 6 지역별·도도부현별 유학생수 |

자료 :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http://www.jasso.go.jp/ryugaku/index.html>).

참고로 독립행정법인인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는 외국인유학생 진로상황 조사와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상황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2. 대만

가. 대만 거주 외국인 통계²⁰⁾

1) 개관

2009년 말 현재 대만 내 외국인(중국교포 제외)은 약 553,000명에 달한다. 그 중 거류비자를 받고 거류하는 인원은 461,000명이고, 단기 체류 혹은 기타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92,000여명 정도이다. 2008년과 비교하면 대만 내 외국인은 대략 7,000명 정도가 감소했다. 그 중 외국인 노동자가 14,000명(3.8%) 감소했는데, 이는 산업부문의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는 4,000명(8.0%)이 감소했는데, 이는 외국인 배우자 중에서 대만 국적 취득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동 시기 대만에 거류하는 외국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351,000여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의 63.5%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인원은 외국인 배우자(대만 국적 미취득자에 한함)로 52,000여명이며 전체의 9.4%에 달한다. 이 두 분야의 합산 수치는 400,000여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분포 지역별로는 타오위안현(桃園縣)과 타이베이현(台北縣), 그리고 타이베이시(台北市)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39.7%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노동자가 22.2%, 필리핀 노동자가 20.5%를 차지한다. 2008년 말과 비교해 보면, 태국 국적의 노동자가 14,000여명 감소

20) 내정부(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에 해당) 통계처에서 집계한 『내정부 통계보고』에서 발췌 요약.

했으며, 필리핀 노동자가 9,000여명 감소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12,000여명이 증가하여 비교적 높은 변동 수치를 보였다. 외국인 배우자로는 베트남인이 52.7%로 가장 많고, 태국인은 11.7%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말과 비교하면, 베트남인이 4,000여명 감소하여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다. 2009년 말 대만 내 단기체류 외국인은 85,000여명으로, 주로 사업상의 출장과 관광 목적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일본인이 21.7%로 가장 많고, 미국인이 21.4%를 점하고 있다.

대만 내 외국인의 거류 및 단기체류 등에 대한 통계의 근거는 ‘입출국 및 이민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데, ‘단기체류’라 함은 대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지칭하며, ‘거류’라 함은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지칭한다.

2009년 말 현재 대만 내 외국인(모든 비자 소지자를 포함하되, 중국 교포를 제외)은 552,79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8년 동 기간 대비 전체 6,508명(1.16%)이 감소했다. 그 중 외국인 노동자가 14,044명(3.85%) 감소했고, 외국인 배우자는 4,485명(7.97%) 감소했다. 산업 분야(제조업 및 건설업 등)의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외국인 배우자의 감소는 외국인 배우자의 대만 국적 취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 유형별 분류

비자 유형별로 보면 거류비자 소지자가 460,945명(전체의 83.38%)에 달하고,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가 84,619명으로 전체의 15.31%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비자 소지자는 1.31%에 그쳤다. 2008년 동 기간 대비 거류비자 소지자는 10,383명(2.20%)이 감소했으며,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3,784명으로 4.68%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인도네시아인이 154,159명으로 전체의 27.8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인이 125,418명으로 22.69%, 필리핀인은 75,086명(13.5%), 태국인은 7,0781명(12.80%)이다. 한편, 미국인은 29,117명, 일본인은 28,388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8년 대비 태국인은 10,947명 감소했고, 인도네시아인은 10,254명 증가했다.

신분별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351,016명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중국, 홍콩, 마카오 출신의 배우자 제외)가 51,758명으로 9.36%를 차지했다. 이 두 부문이 대만 내 전체 외국인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동남아인이 97.86%를 점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분포는 인도네시아가 39.71%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22.25%, 필리핀이 20.53%, 태국이 17.5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인 배우자의 경우, 베트남이 52.67%로 가장 많고, 태국이 11.71%, 인도네시아가 10.34%, 필리핀이 5.70%이다. 외국인 배우자의 남녀간 비율은 1:5.13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1:1.73보다 높다.

현(縣), 시(市) 등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타오위안현(桃園縣)이 전체의 18.01%인 63,20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타이베이현(台北縣)이 49,469명(14.09%), 타이베이시(台北市)가 38,026명(10.83%)이다. 외국인 배우자의 분포는 타이베이현이 10,118명(19.55%), 타오위안현이 6,882명(13.30%), 타이베이시가 5,028명(9.71%)이다.

한편, 2009년 말 현재 거류증을 소지한 합법거류(외교, 예우 비자 및 거류증 미신청자 제외) 외국인(중국교포 제외)은 403,700명으로 거류비자 소지자의 87.58%를 점하고 있다. 그 중에서 남성이 152,242명으로 37.71%, 여성이 251,458명으로 62.29%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 분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노동위원회의 허가로 유효거류증을 소지한 자)가 306,408명으로 가장 많고, 교사가 6,106명, 개인 사업자가 3,665명, 엔지니어가 1,920명, 선교사가 1,613명이다. 거류증 소지자로서 거류기간 초과 혹은 거류비자 소지자이나 거류증 미신청자가 57,245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거류기간 초과자가 17,7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말, 국내 거주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84,61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일본인이 18,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미국인이 18,091명(21.3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중 합법적 거류자가 66,708명으로 78.83%를 차지했으며, 거류기간 초과자가 17,911명으로 21.17%에 달한다.

나. 대만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관리의 역사 및 배경

대만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빠른 성장을 보였다. 반면에, 교육수준의 상승,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인구증가율의 둔화 등으로 인해 대만의 노동시장은 1980년대 말부터 기층노동력의 부족현상을 겪게 된다. 대만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89년에 대만 전체 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은 8.44%에 달했고, 그 중 제조업 부문에서의 노동력 부족률은 10.33%에 달했다. 노동력 부족의 영향으로, 1989년도 대만 내 제조업 부문의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11.1%에 달했다. 당시, 대만은 「국가건설 6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층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노동임금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대만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대만정부는 1989년에 우선적으로 65,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요 공공건설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연이어 1991년 10월 12일, 대만정부는 6개 부문 15개 업종에 한하여 민간의 개인 사업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당시 허가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원은 17,000명에 불과했지만, 민간사업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문이 개방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92년 5월 8일, 정식으로 「취업복무법(就業服務法)」이 통과하여 실시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2008년 말에는 그 인원이 365,060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 인원은 대만 국내 노동력의 3.3%를 차지하는 것이며, 대만 국내 기층노동력(생산, 제조, 기계설비조작,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력을 뜻함)의 측면에서는 11.2%를 점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기층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국내 각 부문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중요한 국가 공공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 외에, 개인 가정의 측면에서는 가사를 분담하고,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병인을 제공해 주는 복지개선 효과가 있었다.

대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통계조사는 1993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제조업자나 건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조사를 실시했다. 1994년과 1996년에는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한 가정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대만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1998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 그들의 일과 생활 면에서의 실태도 조사내용에 포함시켰다. 대만 가정의 간병인 혹은 간호인 수요가 부단히 증가하면서 외국 간병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과 2002년, 그리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외국 간병인을 고용한 가정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고, 한편으로 그 가정들의 외국 간병인의 고용 경로와 관리, 그리고 노동조건에 대한 상황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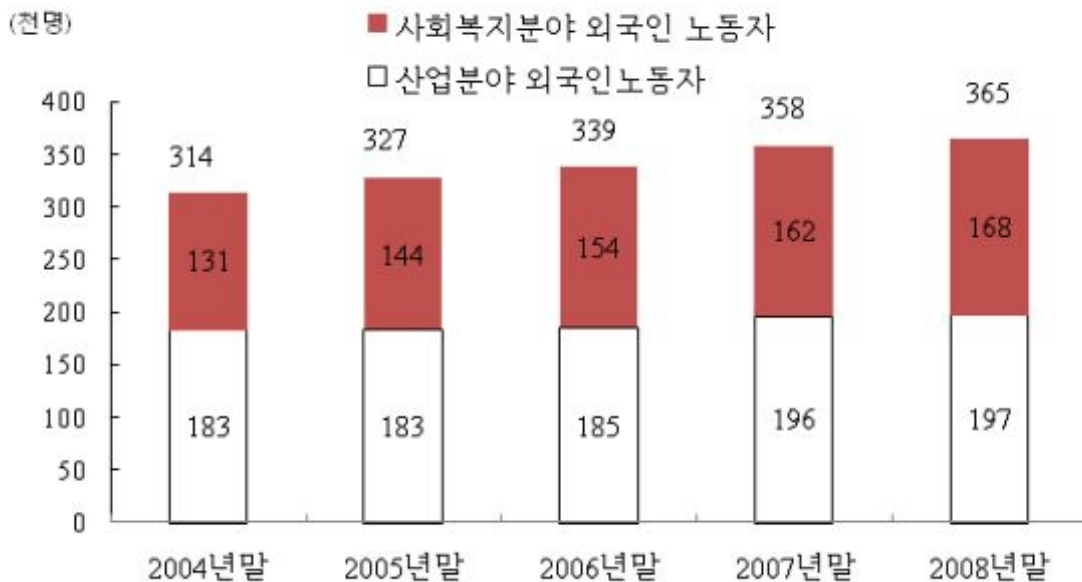
다. 대만의 외국인 인력통계

최근 몇 년간 대만은 국내 산업 분야에서의 기층노동력 부족 현상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거주하는 상주 간병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08년 말 대만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365,060명으로, 2004년 말과 비교하여 51,026명이 늘어남으로써 16.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대비(2007년 말)로는 7,123명이 늘어남으로써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분야별(산업분야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복지분야 외국인 노동자)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산업분야의 경우 3D업종과 3교대 근무 업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제한을 풀고 그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 수가 196,633명(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53.9%)에 달하고,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국내 인구의 노령화와 장기간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그 수가 168,427명(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46.1%)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2008년 말 제조업 종사자수는 185,62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전체의 50.8%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2,295명(1.3%)

[그림 4-2-1] 대만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별 통계



출처: 행정원 노동위원회(行政院勞工委員會) 직업훈련국(Bureau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에서 발간한 『2008년 외국인노동자 운용 및 관리조사』 보고서.

이 증가했다. 외국인 간병인은 165,898명으로, 제조업 다음으로 그 인원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6,196명(3.9%)이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는 6,144명으로 전년 대비 2,450명이 감소했는데, 그 감소 폭이 28.5%에 달한다.

<표 4-2-13> 대만내 외국인노동자 인력통계(업종별 구분)

(단위: 명; %)

| | 전체 | 산업부문 | | | 사회복지부문 | | | |
|--------------|---------|---------|---------|----------|------------|------------|---------|-------|
| | | 제조업 | 건설업 | 외국 선원 | 외국인 간병인 | 외국인 가정부 | | |
| 2004 | 314,034 | 182,967 | 167,694 | 12,184 | 3,089 | 131,067 | 128,223 | 2,844 |
| 2005 | 327,396 | 183,381 | 166,928 | 13,306 | 3,147 | 144,015 | 141,752 | 2,263 |
| 2006 | 338,755 | 184,970 | 169,903 | 11,745 | 3,322 | 153,785 | 151,391 | 2,394 |
| 2007 | 357,937 | 195,709 | 183,329 | 8,594 | 3,786 | 162,228 | 159,702 | 2,526 |
| 2008 | 365,060 | 196,633 | 185,624 | 6,144 | 4,865 | 168,427 | 165,898 | 2,529 |
| 전년대비 증감인원 | 7,123 | 924 | 2,295 | -2,450 | 1,079 | 6,199 | 6,196 | 3 |
| 증감비율 | 2.0 | 0.5 | 1.3 | -28.5 | 28.5 | 3.8 | 3.9 | 0.1 |

주 : 연도말 기준.

2008년 말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수는 185,624명이다. 만약,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상위 다섯 개 제조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인원을 분석해 보면, 전자부품업종의 외국인 노동자가 27,152명으로 가장 많은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금속 제조업이 25,643명으로 13.8%이다. 그 다음으로는 방직업이 20,736명(11.2%), 컴퓨터 및 통신전자 부문의 제조업이 18,519명(10.0%),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 제조업이 12,754명(6.9%)이다.

<표 4-2-14> 대만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인력통계

(단위: 명; %)

| | 전체 | 전자 부품 제조 | 금속 제조 | 방직 | 컴퓨터 및 통신 전자 | 플라스틱 등 화학 제품 | 기타 |
|------------------|---------|-------------|----------|--------|-------------------|--------------------|--------|
| 2004 | 167,694 | 30,123 | 17,658 | 25,925 | 14,117 | 10,195 | 69,676 |
| 2005 | 166,928 | 33,635 | 17,895 | 23,995 | 12,935 | 10,052 | 68,416 |
| 2006 | 169,903 | 37,031 | 19,533 | 22,454 | 11,264 | 10,255 | 69,366 |
| 2007 | 183,329 | 36,001 | 22,909 | 22,816 | 13,213 | 11,856 | 76,534 |
| 2008 | 185,624 | 27,152 | 25,643 | 20,736 | 18,519 | 12,754 | 80,820 |
| 2007년 대비 증감수 | 2,295 | -8,849 | 2,734 | -2,080 | 5,306 | 898 | 4,286 |
| 2007년 대비 증감비율 | 1.3 | -24.6 | 11.9 | -9.1 | 40.2 | 7.6 | 5.6 |

주 : 연도말 기준.

2008년 말 국적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분석하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는 127,764명으로 35.0%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노동자는 81,060명으로 22.2%, 필리핀 노동자는 80,636명으로 22.1%이다. 2007년과 대비하면,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12,274명, 베트남 노동자가 12,017명 증가했으며, 다른 국적의 노동자는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태국 국적의 노동자로 11,364명이 감소했고, 필리핀 노동자는 5,787명이 감소했다.

<표 4-2-15> 국적별 외국인 인력 현황

(단위: 명; %)

| | 전체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 몽고 |
|-------------------|---------|---------|-------|--------|---------|--------|-------|
| 2004 | 314,034 | 27,281 | 22 | 91,150 | 105,281 | 90,241 | 59 |
| 2005 | 327,396 | 49,094 | 13 | 95,703 | 98,322 | 84,185 | 79 |
| 2006 | 338,755 | 85,223 | 12 | 90,054 | 92,894 | 70,536 | 36 |
| 2007 | 357,937 | 115,490 | 11 | 86,423 | 86,948 | 69,043 | 22 |
| 2008 | 365,060 | 127,764 | 11 | 80,636 | 75,584 | 81,060 | 5 |
| 2007년 대비 증감 인원 | 7,123 | 12,274 | - | -5,787 | -11,364 | 12,017 | -17 |
| 2007년 대비 증감율 | 2.0 | 10.6 | - | -6.7 | -13.1 | 17.4 | -77.3 |

주 : 연도말 기준.

2008년 말 외국인 노동자의 행방불명자는 11,105명이다. 국적별로 행불자들을 분류하면,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5,506명으로 가장 많다. 베트남 노동자가 4,275명, 태국 노동자가 680명이다. 2008년 말 현재 행불된 외국인 노동자 중 수색 및 체포가 이뤄지지 않은 인원은 25,821명에 달한다.

<표 4-2-16> 외국인 인력 중 행불자(불법체류자) 수

(단위: 명; %)

| | 전체 | | 인도네시아 | | 필리핀 | | 태국 | | 베트남 | | 몽고 | | 2008년말 현재 체포되지 않은 인원 |
|------|--------|-----|-------|-----|-------|-----|-------|-----|-------|------|----|------|----------------------------------|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 2004 | 12,062 | 4.0 | 1,978 | 4.9 | 1,177 | 1.4 | 1,369 | 1.3 | 7,536 | 10.2 | 2 | 3.7 | 16,593 |
| 2005 | 12,938 | 4.2 | 1,973 | 6.7 | 1,543 | 1.7 | 2,040 | 2.1 | 7,363 | 8.2 | 19 | 24.1 | 21,679 |
| 2006 | 10,918 | 3.3 | 4,232 | 6.1 | 1,023 | 1.1 | 1,239 | 1.3 | 4,422 | 5.8 | 2 | 3.9 | 21,051 |
| 2007 | 11,226 | 3.2 | 4,870 | 4.7 | 867 | 1.0 | 959 | 1.1 | 4,529 | 6.5 | 1 | 3.5 | 22,372 |
| 2008 | 11,105 | 3.0 | 5,506 | 4.4 | 643 | 0.8 | 680 | 0.8 | 4,275 | 5.6 | 1 | 9.3 | 25,821 |

주 : 행방불명 비율=행방불명 인원/대만내 외국인노동자 인원의 평균수*100%.

한편, 2000년 9월 말 현재까지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전문직노동자(white-color worker) 유효 숫자는 모두 25,922명에 달하고 있다(지난 달 대비 0.28% 감소). 그 중 24,254명이 노동국의 허가를 거쳤는데, 과학단지 관리국의 위탁으로 허가를 받은 인원은 1,348명이며, 가공수출구역관리처의 위탁으로 허가를 받은 인원은 320명으로 집계되었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전문기술직이 전체의 52.41%인 13,586명으로 최대 인원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보습학원의 외국어 교사직이 전체 21.68%인 5,62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또한 학교 교사직은 2,298명(8.87%)으로 세 번째를 많았다. 국적별로는 '일본'이 전체의 27.05%인 7,013명을 차지해서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1,008명으로 전체 인원의 81.04%를 차지했고, 학력별로는 '대졸' 노동자가 18,008명으로 69.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라. 대만의 외국인 인력통계 조사방법²¹⁾

1) 조사 목적

개별 사업체나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 상황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삼는다.

2) 법적 근거

통계법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행정원 노동위원회 조직조례(行政院勞工委員會組織條例)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조사범위

- ① 지역 범위: 대만 및 민남 지역(금문도, 마조도 등의 도서 지역을 뜻함)
- ② 업종 범위: 제조업,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체와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가정.
- ③ 조사 대상: 행정원노동위원회 노동국(勞工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체 및 가정

4) 조사단체: 사업체 혹은 가정의 고용주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5) 조사항목

개인 사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설문조사표

- ①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 조사 : 고용 경로, 행방불명 실태, 고용 및 관리상의 문제점, 사업체에서의 노동인력 부족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 등.
- ②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 측면의 조사 : 제조업 분야의 3D 업종과 3교대 근무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개방에 대한 정책, 관련 업체 중 C급의 3D 업종 및 3교대 근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허가 배당의 비중, 외국인 노

21) 행정원 노동위원회(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함) 산하 직업훈련국에서 2008년 12월에 발간한 『2008년 외국인 노동자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사(民國97年外籍勞工運用及管理調查)』에서 발췌 인용함.

동자 중개업체의 주요 서비스 대상에 대한 의견 등.

- ③ 고용노동자에 대한 기본 자료 : 고용 인원, 외국인 노동자 인원 및 해당 직종별 인원을 조사.
- ④ 급여, 근무시간 및 관련 복지 : 외국인 노동자의 월별 평균 급여와 근무시간, 급여 지급방식 및 노동자의 모국어로 발행된 급여명세서의 첨부 여부, 외국인 노동자의 보험가입 제공 여부, 숙식제공 여부, 생활지도 대책, 의사소통 방법 및 수습교육에 대한 조사.
- ⑤ 만족도 조사 : 노사관계, 근면성, 작업효율, 의생 습관, 본국 노동자와의 협력 상황 및 전반적 근무태도의 조사.

□ 개인 가정의 외국 간병인 고용 설문조사표

- ①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 조사 : 공요 경로, 행방불명 실태, 외국 간병인 고용상의 문제점과 그 원인,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와 적합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주 교체에 대한 동의 여부, 외국 간병인을 고용하기 전의 주 간병인에 대한 조사, 외국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체방안, 고용주 가정의 경제상황 등의 조사.
- ② 외국 간병인에 대한 기본자료 조사 : 성별, 연령, 학력, 국적 등의 자료 및 간호 훈련 상황 등의 조사.
- ③ 급여 및 근무시간, 관련 복지 실태조사: 외국 간병인의 급여, 근무시간, 급여 지급방식 및 급여명세서 첨부 여부, 교대 간병 여부, 휴일 제공 여부 및 외국 간병인에 대한 보험가입 제공 여부 등의 조사.
- ④ 만족도 조사 : 외국 간병인의 간호 기술, 근무태도, 근무시의 정서 및 근무효율, 고용주와의 관계, 위생 습관 및 전반적 근무태도 등의 조사.
- ⑤ 정책적 측면에서의 조사 : 외국 간병인 모집 전에 우선적으로 본국 간병인을 고용할지에 대한 동의 여부, 기초급여를 외국 간병인의 급여로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합리성 여부 조사, 외국 간병인에 대해 노동기본법을 적용할 경우 고용희망 여부, 1997년 말 이후로 행정원 노동위원회의 노동국에서 직접 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도 조사, 직접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조사, 향후 노동국이 직접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고용의 방식으로 외국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희

망하는 서비스의 제안 등.

6) 자료의 시기

정태 자료는 매년 6월 30일을 조사표준일로 하며, 동태 자료는 매년 6월 전체를 조사표준 기간으로 하되, 설문조사표는 별도 규정에 따라 만든다.

7) 조사 기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8) 조사 방법

우편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설문조사표를 각 사업체나 고용주에게 보내는 것 외에, 조사표의 작성과 회신을 독촉하는 엽서를 보낸다.

9) 표본추출 및 추산 방법

모집단

- ① 사업체 : 제조업, 건설업체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단위의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전체 조사 방식을 채택한다.
- ② 고용가정 : 외국 간병인의 고용주가 제출한 설문자료를 현(縣)과 시(市) 단위로 무작위 추출한다.

표본추출 방법

- ① 사업체 : 전체 조사방식을 채택하는데, 2008년의 경우 6,983개 업체에서 회신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 설문조사표 회수율은 47.8%에 이룸.
- ② 가정 : 현(縣), 시(市), 국적(國籍)별로 표본추출. 7,235 가정에서 회수하여 회수율은 32.5%.

추산 방법

외국 간병인 고용 가정에 대한 추산 :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진행하며, 현(縣), 시(市), 국적(國籍)별로 비례추산법을 채택하여 추산한다.

① i번째 현이나 시에서 h번째 국적 모집단 계수에 대한 추산

㉞ i번째 현이나 시에서 h번째 국적 모집단 총수 추산 :

$$\hat{X}_{ih} = N_{ih} \times \hat{\mu}_{ih} = \frac{N_{ih}}{n_{ih}} \sum_{j=1}^{n_{ih}} X_{ihj}$$

$$i = 1, 2, \dots, 24$$

$$h = 1, 2, \dots, 6$$

$$j = 1, 2, \dots, n_{ih}$$

공식 중 \hat{X}_{ih} : i번째 현, 시의 h번째 국적 모집단 총수 추산치

$\hat{\mu}_{ih}$: i번째 현, 시의 h번째 국적 모집단 평균수 추산치

X_{ihj} : i번째 현, 시의 h번째 국적, j번째 표본 관찰치

N_{ih} : i번째 현, 시의 h번째 국적 모집단 수

n_{ih} : i번째 현, 시의 h번째 국적 표본 수

㉟ i번째 현이나 시에서 h번째 국적 모집단 평균 추산 :

$$\hat{\mu}_{ih} = \frac{1}{n_{ih}} \sum_{j=1}^{n_{ih}} X_{ihj}$$

$$i = 1, 2, \dots, 24$$

$$h = 1, 2, \dots, 6$$

$$j = 1, 2, \dots, n_{ih}$$

공식 중 $\hat{\mu}_{ih}$: i번째 현, 시의 h번째 국적 모집단 평균 추산치

X_{ihj} : i번째 현, 시의 h번째 국적, j번째 표본 관찰치

n_{ih} : i번째 현, 시의 h번째 국적 표본 수

② h번째 국적 모집단 계수에 대한 추산

㉞ h번째 국적 모집단 총계수치에 대한 추산 :

$$\hat{X}_h = \sum_{i=1}^{24} \hat{X}_{ih}$$

공식 중 \hat{X}_h : h번째 국적 모집단 총계 추산치

\hat{X}_{ih} : i번째 현, 시의 h번째 국적 모집단 총계 추산치

㉞ h번째 국적 모집단 평균수치에 대한 추산 :

$$\hat{\mu}_h = \sum \hat{\mu}_{ih} \times P_{ih} = \hat{X}_h / N_h$$

공식 중 $\hat{\mu}_h$: h번째 국적 모집단 평균 추산치

$\hat{\mu}_{ih}$: i번째 현, 시의 h번째 국적 모집단 평균 추산치

P_{ih} : i번째 현, 시의 h번째 국적 모집단 수가 h개 국적 총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hat{X}_h : h번째 국적 모집단 총수 추산치

N_h : h번째 국적 모집단 인원 수

③ 총모집단 계수에 대한 추산

㉟ 총모집단 수의 추산 :

$$\hat{X} = \sum_{h=1}^6 \hat{X}_h$$

공식 중 \hat{X} : 총 모집단 수의 추산치

\hat{X}_h : h번째 국적 모집단 수의 추산치

㊱ 총모집단 평균 수치의 추산 :

$$\hat{\mu} = \sum \hat{\mu}_h \times P_h = \hat{X} / N$$

공식 중 $\hat{\mu}$: 모집단 평균수 추산치

$\hat{\mu}_h$: h번째 국적 모집단 평균수 추산치

P_h : h번째 국적 모집단 평균수가 총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N : 총모집단 수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단위의 추산

전체 조사방식으로 진행하며, 미응답(non-response)된 설문조사표의 경우, 위의 방식으로 설정 추산한다.

<표 4-2-17> 산업별 및 사회복지부문 외국인노동자 인력통계(업종별)

(단위: 명)

| 업종별 | 2010년 8월말 | 2010년 9월말 | 전월대비 비교(%) |
|------------------------|-----------|-----------|------------|
| 전체 | 372146 | 372785 | 0.17 |
| 산업분야 외국인노동자 | 188573 | 189550 | 0.52 |
| 농·임·어·목업(국내외 선원 포함) | 7234 | 7229 | -0.07 |
| 제조업 | 178112 | 178963 | 0.48 |
| 식품제조업 | 8227 | 8243 | 0.19 |
| 음료제조업 | 82 | 83 | 1.22 |
| 방직업 | 18477 | 18386 | -0.49 |
| 의복 및 복장 제조업 | 1664 | 1683 | 1.14 |
| 피혁 및 모피 제조업 | 1341 | 1330 | -0.82 |
| 목재 및 죽제품 제조업 | 829 | 830 | 0.12 |
| 제지업 | 3497 | 3471 | -0.74 |
| 인쇄 및 자료복사업 | 1540 | 1580 | 2.6 |
| 석유 및 석탄 제조업 | 34 | 34 | 0 |
| 화학재료 제조업 | 1671 | 1658 | -0.78 |
| 화학제품 제조업 | 1824 | 1799 | -1.37 |
| 약품 제조업 | 84 | 82 | -2.38 |
| 고무 제조업 | 4634 | 4700 | 1.42 |
| 화학고무 제조업 | 12413 | 12435 | 0.18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6704 | 6641 | -0.94 |
| 기본금속제조업 | 7908 | 7837 | -0.9 |
| 금속제품제조업 | 27246 | 27608 | 1.33 |
| 전자부품제조업 | 35863 | 36167 | 0.85 |
|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업 | 8542 | 8537 | -0.06 |
| 전력설비제조업 | 5328 | 5289 | -0.73 |
| 기계설비제조업 | 14744 | 14979 | 1.59 |
| 자동차 및 관련부품제조업 | 4940 | 4852 | -1.78 |
| 운송기기 제조업 | 5926 | 6089 | 2.75 |
| 가구제조업 | 1211 | 1243 | 2.64 |
| 기타 | 3383 | 3407 | 0.71 |
| 건설업 | 3227 | 3358 | 4.06 |
| 사회복지부문 외국인노동자 | 183573 | 183235 | -0.18 |
| 의료보건 및 복지 관련(간병인 업무 등) | 183573 | 183235 | -0.18 |
| 서비스업 | | | |

주 : 1) 업종 구분은 2010년 1월부터 2006년 《중화민국업종표준분류(제8차수정안)》에 근거하여 분류함.

2) 상기의 제조업에서의 기타 부분은 체육 및 오락용품 제조업, 의료기자재 제조업, 자원회수업, 그리고 미분류 기타 제조업을 의미함.

자료 : 행정원 산하 노동위원회 직업훈련국(Bureau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에서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관련 통계. 웹사이트: http://www.evta.gov.tw/content/list.asp?mfunc_id=14&func_id=57

제5장 외국인 인력통계 개선방안

제1절 외국인 인력 통계작성 기본 방향

2007년 3월에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8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었으며 2010년에는 12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인력의 유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인력의 경제활동상태, 즉 취업 여부, 취업자 현황 및 근로조건(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 임금, 근로일수 및 시간 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외국인 인력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외국인 인력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현황은 전문인력이나 고용허가제 등 주로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행정통계를 통해서 파악하여 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전국 단위의 가구조사나 고용동향 특별조사와 같은 사업체 조사에서 외국인 인력을 포함하여 조사하였지만 외국인 인력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독립적인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들 조사는 외국인 인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에는 표본 규모가 너무 작고, 조사대상에 대한 포괄범위도 떨어져 독립적인 통계 작성이 불가능하였다.

현행 외국인 인력에 대한 통계 수요는 활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체 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동안 외국인 인력 관련 통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력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경제활동상태란 외국인 인력의 인적 특성 현황(성, 연령, 국적, 비자 유형 등), 취업상태, 취업분야(산업, 직종, 규모), 근속기간 등에 관한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 둘째, 취업 외국인의 노동시장 특성, 즉 임금, 고용구조 및 기타 근로실태 등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특성 및 이와 관련된 내국인 노동시장과의 비교분석에 관한 정보들이다. 이러한 두 가지 통계정

보는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력 통계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법은 다음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된다. 먼저,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으로 이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가능인력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표본추출틀의 마련이 중요하며, 모집단에 대한 완벽한 추출틀 마련이 곤란하다면 전체 체류외국인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추정과정에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활동 특성별 외국인 인력의 규모를 추정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외국인의 취업실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외국인 특성별로 행정통계나 조사통계를 활용하거나 혹은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외국인 취업실태 및 외국인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안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 생성을 목적으로 외국인 통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외국인 경제활동실태 분석을 위한 통계작성 방안

본 절에서는 외국인(국내 체류하고 있는 취업가능 외국인 인력)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작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을 위해서 가구조사를 통한 통계 작성 방안, 외국인 등록 자료를 이용한 조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아울러 두 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종합하는 방안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외국인 현황 통계를 추정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 모집단과 표본추출틀

가. 목표모집단

본 연구에서 다루는 외국인 인력통계의 목표 모집단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취업가능한 외국인 인력이다. 외국인 인력통계는 넓은 의미의 외국인력 또는 외국인 취업가능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여 외국인 인력통계를 생산하고자 한다. 외국인 인력통계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인력의 인적

특성 현황(성, 연령 등), 취업상태, 취업분야(산업, 직종, 규모), 근속기간 등의 기본적인 특성 외에 추가적인 노동시장 정보(임금, 근로조건 등), 비자 유형, 국적, 체류 연한 등이다.

<표 5-2-1>은 이 조사의 목표모집단 현황이다.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을 위한 목표모집단은 전체 1,016,20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합법체류자는 833,745명으로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전체 비자 유형 중에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가능한 26개 비자 유형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26개 비자 유형에는 속하지

<표 5-2-1> 목표모집단 현황

| 비자 유형 | 합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 총체류자 |
|--------------------|-----------|------------|------------|
| 단기취업(C-4) 사증 | 423 | 292 | 715 |
| 교 수(E-1) 사증 | 2,051 | 5 | 2,056 |
| 회화지도(E-2) 사증 | 22,547 | 95 | 22,642 |
| 연 구(E-3) 사증 | 2,056 | 10 | 2,066 |
| 기술지도(E-4) 사증 | 192 | 5 | 197 |
| 전문직업(E-5) 사증 | 518 | 18 | 536 |
| 예술홍행(E-6) 사증 | 2,961 | 1,344 | 4,305 |
| 특정활동(E-7) 사증 | 8,172 | 724 | 8,896 |
| 비전문취업(E-9)사증 | 158,198 | 30,165 | 188,363 |
| 선원취업(E-10) 사증 | 4,078 | 1,129 | 5,207 |
| 관광취업(H-1) 사증 | 341 | 2 | 343 |
| 방문취업(H-2) 사증 | 303,005 | 3,278 | 306,283 |
| 문화예술(D-1) | 84 | 11 | 95 |
| 유 학(D-2) 사증 | 57,244 | 5,207 | 62,451 |
| 산업연수(D-3) | 1,170 | 12,155 | 13,325 |
| 일반연수(D-4) | 15,381 | 4,509 | 19,890 |
| 언 론 인(D-5) 사증 | 87 | 1 | 88 |
| 종 교 인(D-6) 사증 | 1,598 | 53 | 1,651 |
| 상사주재(D-7) 사증 | 1,461 | 31 | 1,492 |
| 기업투자(D-8) 사증 | 7,234 | 673 | 7,907 |
| 무역경영(D-9) 사증 | 3,265 | 17 | 3,282 |
| 구직연수(D-10) 사증 | 1 | 0 | 1 |
| 방문동거(F-1) | 39268 | 5017 | 44285 |
| 국민의배우자(F-2) 사증 | 115,735 | 9,352 | 125,087 |
| 재외동포(F-4) 사증 | 50,039 | 625 | 50,664 |
| 영주권자(F-5) 사증 | 22,446 | 0 | 22,446 |
| 등록외국인의 배우자(F-3) 사증 | 14,274 | 378 | 14,652 |
| 전체 | 833,745 | 75,085 | 908,830(a) |
| 기타 불법체류자 | | 107,379(b) | |
| 모집단 현황(a+b) | 1,016,209 | | |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09년.

않지만 불법체류하고 있는 기타 불법체류자(다른 용어로 비합법 이주자)의 경우도 대부분 취업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모집단에 포함시켰다. 한편 목표모집단인 26개 비자유형 소지자의 대부분이 만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목표모집단을 정의하면서 만 15세 이상으로 국한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대상은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추후 비자 유형에 대해서 연령별 분포를 분석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만 1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나. 조사가능 모집단

일반적으로 조사가능 모집단은 현실적으로 조사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추출틀에 포함되어 조사할 수 있는 조사단위 전체로 정의된다. 조사가능 모집단은 이 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 추출틀)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인 인력에 대한 통계 작성을 위한 표본추출틀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이용하는 경우와 외국인 등록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구조사를, 외국인 등록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개별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추출틀로 이용하는 경우에 전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능 모집단은 목표모집단과 동일하다. 하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 외국인 인력이 상당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체 등의 기숙사와 집단시설가구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추출틀의 과소포함(undercoverag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학교, 공장, 병원 등의 기숙사와 특수사회시설과 같은 집단시설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표본추출틀이 과소포함의 문제는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 외국인 등록정보를 추출틀로 활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력의 경우에도 외국인 등록을 마쳤다면 조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자 유형에 따라 외국인 등록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표본추출틀의 과소포함 문제가 발생하고, 과소포함의 심각성은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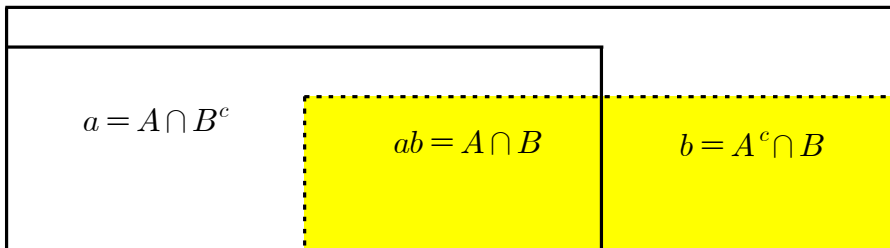
이와 같이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표본추출틀은 전체 조사대상

을 포괄하기에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조사구 리스트와 외국인 등록정보를 표본추출틀로 함께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가구조사를 통한 조사 결과와 외국인 등록정보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외국인 인력통계를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표본추출틀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을 위해서 표본추출틀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와 외국인 등록자료를 고려한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표본추출틀을 A, 외국인 등록자료를 B라고 하면 모집단 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와 외국인 등록자료를 이용한 추출틀 중에서 어느 것이 목표모집단에 대한 포괄범위 측면에서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림 5-2-1]에서는 편의상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표본추출틀 A를 외국인 등록자료를 이용한 표본추출틀 B보다 크게 표현하였다.

[그림 5-2-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의 포괄 범위



[그림 5-2-1]에서 $a = A \cap B^c$ 는 외국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가구조사를 통해서 조사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주택 조사구나 아파트 조사구에 속한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가구조사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b = A^c \cap B$ 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가구조사를 통해서는 파악될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나 집단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력이 이에 해당한다. 가구조사과 외국인 등록정보를 통한 조사에서 모두 파악될 수 있는 경우를 $ab = A \cap B$ 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가구조사를 파악되

는 일반 조사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조사의 목표모집단인 전체 외국인 인력을 U 라고 할 때, $U - A \cup B$ 는 가구조사나 외국인 등록정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외국인 인력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집단거주시설에 체류하고 있거나 가구조사를 통해서 접촉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가 이에 해당한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하는 경우와 외국인 등록정보 자료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하는 경우에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취업가능한 외국인 인력의 전체를 포괄한다. 하지만 실제 가구조사 과정에서 기숙사와 집단시설가구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자 유형에 따라 표본추출틀의 과소포함(undercoverag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자료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의 소재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비자 유형에 따라 외국인 등록률에 차이가 있지만 2009년 체류 외국인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의 약 74%가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등록정보를 통해서 외국인의 소재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외국인 인력통계의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외국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자 유형인 C-4(단기 취업), D-6(종교인), F-1(방문동거), F-3(등록 외국인의 배우자) 등과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가 부정확하여 추적할 수 없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소포함(undercoverag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한 표본추출틀 A와 외국인 등록 자료를 이용한 표본추출틀 B는 각각 모집단의 포괄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의 표본추출틀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두 종류의 표본추출틀을 함께 이용하는 이중추출틀 조사(dual frame survey)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종류의 표본추출틀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조사구 리스트 또는 외국인 등록정보만을 이용하여 외국인 인력통계를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표본추출틀의 과소포함 문제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구 리스트를 이용한 가구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누락되는 $b = A^c \cap B$ 가 외국인 등록자료를 이용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과소포함에 따른 추정량의 편의(bias)

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외국인 등록자료만을 이용할 경우에 조사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a = A \cap B^c$ 부분이 가구조사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외국인 대상의 실제 조사에서 불법체류자로부터 응답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체류자 중 등록 외국인(표 5-2-1 a의 상당수)의 거주지 파악은 원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등록된 거주지 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적인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표 5-2-1의 b)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가구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응답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표본조사를 통한 직접 조사로 불법체류자의 규모와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자 유형별 특성 구분

<표 5-2-2>는 각 비자 유형별 분류 범주 및 체류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분류 범주 구분은 합법체류자를 기준으로 각 비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비자 유형끼리 묶어서 구성한 것이다. 각 분류 범주에 대한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 등록외국인(소재지 파악 가능)이며 이들을 고용한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사업장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A-1 : 등록외국인(소재지 파악 가능)이며 고용 관련 정보(산업분류 및 직종 등)를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독립 단독가구를 형성하며 조사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B : 경제활동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고, 가구를 형성하고 있어 가구조사의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C : 경제활동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며 가구조사의 접근성도 낮지만, 유학생 비자의 경우 이메일(e-mail)이나 전화번호를 통한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또는 등록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2-2> 각 비자유형별 분류범주 및 체류자 현황

| 분류 범주 | 비자 유형 | 합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 총 체류자 |
|-------|--------------------|-----------|------------|---------|
| C | 단기취업(C-4) 사증 | 423 | 292 | 715 |
| A | 교 수(E-1) 사증 | 2,051 | 5 | 2,056 |
| A | 회화지도(E-2) 사증 | 22,547 | 95 | 22,642 |
| A | 연 구(E-3) 사증 | 2,056 | 10 | 2,066 |
| A | 기술지도(E-4) 사증 | 192 | 5 | 197 |
| A | 전문직업(E-5) 사증 | 518 | 18 | 536 |
| A-1 | 예술홍행(E-6) 사증 | 2,961 | 1,344 | 4,305 |
| A | 특정활동(E-7) 사증 | 8,172 | 724 | 8,896 |
| A | 비전문취업(E-9)사증 | 158,198 | 30,165 | 188,363 |
| A | 선원취업(E-10) 사증 | 4,078 | 1,129 | 5,207 |
| A-1 | 관광취업(H-1) 사증 | 341 | 2 | 343 |
| A & B | 방문취업(H-2) 사증 | 303,005 | 3,278 | 306,283 |
| C | 문화예술(D-1) 사증 | 84 | 11 | 95 |
| C | 유 학(D-2) 사증 | 57,244 | 5,207 | 62,451 |
| A | 산업연수(D-3) | 1,170 | 12,155 | 13,325 |
| C | 일반연수(D-4) | 15,381 | 4,509 | 19,890 |
| A-1 | 언 론 인(D-5) 사증 | 87 | 1 | 88 |
| A-1 | 종 교 인(D-6) 사증 | 1,598 | 53 | 1,651 |
| A-1 | 상사주재(D-7) 사증 | 1,461 | 31 | 1,492 |
| A-1 | 기업투자(D-8) 사증 | 7,234 | 673 | 7,907 |
| A-1 | 무역경영(D-9) 사증 | 3,265 | 17 | 3,282 |
| C | 구직연수(D-10) 사증 | 1 | 0 | 1 |
| B | 방문동거(F-1) | 39268 | 5017 | 44285 |
| B | 국민의 배우자(F-2) 사증 | 115,735 | 9,352 | 125,087 |
| B | 등록외국인의 배우자(F-3) 사증 | 14,274 | 378 | 14,652 |
| B | 재외동포(F-4) 사증 | 50,039 | 625 | 50,664 |
| B | 영주권자(F-5) 사증 | 22,446 | 0 | 22,446 |
| | 전체 | 833,745 | 75,085(a) | 908,830 |
| | 기타 불법체류자 | | 107,379(b) | |
| | 모집단 현황 | 1,016,209 | | |

<표 5-2-3>에서 세부 분류는 가구조사와 등록 자료를 통한 조사대상자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비자 유형끼리 묶어서 구성한 것으로서 외국인 등록 자료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하는 표본 설계에서 층화 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2-3> 각 분류 범주별 체류자 현황 및 조사 가능성

| 분류 범주 | 세부 분류 | 합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 총 체류자 | 가구조사를 통한 접근성 | 등록 자료를 통한 접근성 |
|-------------|--------------------------|-----------|---------|---------|--------------|---------------|
| A | 비전문취업(E-9), 산업연수(D-3) | 159,368 | 42,320 | 201,688 | 낮음 | 높음 |
| | 방문취업(H-2) | 303,005 | 3,278 | 306,283 | 중간 | 중간 |
| | 나머지 | 39,614 | 1,986 | 41,600 | 중간 | 높음 |
| A-1 | | 16,947 | 2,121 | 19,068 | 높음 | 높음 |
| B | | 241,762 | 15,372 | 257,134 | 높음 | 낮음 |
| C | 유학 (D-2) | 57,244 | 5,207 | 62,451 | 낮음 | 높음 |
| | 기타 | 15,805 | 4,801 | 20,606 | 낮음 | 낮음 |
| 전체 | | 833,745 | 75,085 | 908,830 | | |
| 기타 불법체류자 | | | 107,379 | | | |
| 전체 (모집단 현황) | | 1,016,209 | | | | |

3.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 방안

가. 외국인 등록정보 활용한 표본조사 방안

전통적인 표본조사 이론은 완벽한 표본추출틀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표본추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외국인 인력에 대한 표본조사를 수행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표본추출틀은 외국인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등록정보가 정확하다면 외국인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조사에 비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등록정보를 추출틀로 활용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쳤다면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력도 표본으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도 밝혔듯이 외국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자 유형(C-4(단기 취업), D-6(종교인), F-1(방문동거), F-3(등록 외국인의 배우자) 등)이 있고,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가 부정확하여 추적할 수 없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소포함(undercoverage)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정보만을 표본추출틀로 이용하는 표본조사는 전체 외국인 인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이후 제시하는 외국

인 등록정보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한 조사방법은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하는 가구조사 결과와 함께 추정에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각 비자 유형별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 가능성은 앞선 <표 5-2-3>과 <표 5-2-4>에 정리하였는데, <표 5-2-4>의 인적 정보, 사업장 정보, 고용 정보 등은 다음과 같다.

- 인적 정보: 성, 생년월일, 국적, 학력(자료 미비 가능성이 있음), 비자발급일, 비자만료일, 입국일 등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소재지 등
- 고용 관련 정보 : 직종, 근로계약 기간 등

우선 외국인 인력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표본 크기는 소요 예산과 추정 결과의 목표정도(目標精度)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시험 조사를 통해 현행 외국인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실제 조사의 접근 가능성을 살펴서 세부적인 조사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 외국인 등록 자료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비자 유형별 특성과 조사대상자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층화한다. 모집단의 층화방법은 앞서 제시한 <표 5-2-3>의 세부 분류를 1차 층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세부 층화 방안으로 출신 국적, 성, 연령 등의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각 층에 대한 표본배분법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표본배분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비례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층에서 추출된 외국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에 제시된 정보(전화번호, 주소지, 이메일 등)를 이용하여 개별 접촉하여 조사한다. 전화번호, 주소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조사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접촉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를 조사하도록 한다. 비자 유형에 따라서는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사업체의 인사담당자가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대신 응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방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등록자료를 표본추출틀로 하는 조사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등록정보가 부정확하여 추적조사를 할 수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이 조사대상에서 누락됨에 따라 이 조사 결과만을 이용한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은 현실적으로 과소추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구조사를 통한 외국인 인력 관련 조사 결과와 외국인 등록

정보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외국인 인력통계를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5-2-4> 비자 유형별 이용가능한 정보

| 비자 유형 | 인적정보 | 사업장 정보 | 고용 정보 | 비고 | 2009 합법체류자 비율(%) |
|--------------|------|--------|-------|--------------------------|------------------|
| 단기취업(C-4) | ○ | ○ | ○ | | 59.2 |
| 교 수(E-1) | ○ | ○ | ○ | | 99.8 |
| 회화지도(E-2) | ○ | ○ | ○ | | 99.6 |
| 연 구(E-3) | ○ | ○ | ○ | | 99.5 |
| 기술지도(E-4) | ○ | ○ | | | 97.5 |
| 전문직업(E-5) | ○ | | ○ | | 96.6 |
| 예술홍행(E-6) | ○ | | | | 68.8 |
| 특정활동(E-7) | ○ | | ○ | | 91.9 |
| 비전문취업(E-9) | ○ | ○ | ○ | | 84.0 |
| 선원취업(E-10) | ○ | ○ | ○ | | 78.3 |
| 관광취업(H-1) | ○ | | | | 99.4 |
| 방문취업(H-2) | ○ | | ○ | 첫 직장 신고 자료만 가능(80% 수준) | 98.9 |
| 언 론 인(D-5) | ○ | | | | 98.9 |
| 종 교 인(D-6) | ○ | | | | 96.8 |
| 상사주재(D-7) | ○ | | | | 97.9 |
| 기업투자(D-8) | ○ | ○ | | | 91.5 |
| 무역경영(D-9) | ○ | | | | 99.5 |
| 유 학(D-2) | ○ | | △ | 취업 신고 자료가 있으나 활용 가능성이 낮음 | 91.7 |
| 구직연수(D-10) | ○ | | | | 100.0 |
| 국민의 배우자(F-2) | ○ | | | | 92.5 |
| 재외동포(F-4) | ○ | | | | 98.8 |
| 영주권자(F-5) | ○ | | | | 100.0 |
| 외국인 배우자(F-3) | ○ | | | | 97.4 |

나.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방안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목표모집단은 매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이다. 단,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표본가구 내 외국인은 외국어 조사표(11종)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서 이용되는 11개 외국어는 힌디어, 러시아어, 몽골어, 벵골어, 베트남어, 영어, 인니어, 일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이다. 경제활동인구 조사표에 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 조사 항목은 없으며, 표본 명부 보완 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내·외국인을 구분하고 있다. 주요 고용 관련 지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작성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하지 않고,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의 증감을 만 15세 이상 전체 인구에 반영하여 추정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즉 적법 또는 불법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을 만 15세 이상 인구에 포함하여 추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외국인 응답자는 약 400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대략 250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취업업종은 주로 'C. 제조업'과 'I.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인력통계 생산을 위한 신규 조사 없이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외국인 대상의 조사 결과만을 이용하여 외국인 인력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면 대단히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외국인 조사 사례는 전체적으로 너무 적고, 가구조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외국인도 비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사 결과만을 이용한 정확한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외국인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등록정보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하는 신규 조사를 보완하는 이중추출틀조사(dual frame survey) 형태로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 질문지에 추가로 비자 유형, 국적, 출신국, 외국인 등록 여부 등의 조사 항목을 추가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한 조사 사례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조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매월 조사하는 형식이 아닌 부가조사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표본 크기와 표본 추출방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되는 외국인은 앞서 밝혔듯이 약 400명 정도로 예상되고, 후술하는 이중추출틀 조사를 활용한다고 해도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 관련 통계로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인력의 통계 작성을 위해서 조사 항목을 늘리거나 표본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외국인 인력통계 생산에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지역별 고용조사」 활용 방안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는 각 시군구 단위의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시군구에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각 표본조사구에서 2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한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조사대상, 1차추출단위, 2차추출단위 등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하고, 전체적인 표본추출방법이나 가중치 작성 과정, 추정 방법 등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하다.

2009년도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약 8,8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전국적으로 175,000가구를 조사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표본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약 5.3배에 해당한다.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되는 외국인 사례 수를 기준하여 추정된 외국인 사례수는 약 2,100명이고, 이 중 취업자는 약 1,300명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표본크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외국인의 조사사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조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외국인 인력통계의 표본오차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조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외국인도 상당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만을 이용하여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부여된 최종 가중치를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여 직접 추정하는 방법은 상당한 과소추정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할 것이다.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만을 이용한 직접 추정방법의 과소포함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와 모집단 정보(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여 추정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외국인 조사 결과에 대한 표본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설계 가중치에 대하여 단위무응답을 조정하여 얻은 후 이를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

한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층화나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통해 조정하여 얻은 최종 가중치를 추정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외국인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이중추출틀조사(dual frame survey)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현행 「지역별 고용조사」 질문지에 추가로 비자 유형, 국적, 출신국, 외국인 등록 여부 등의 조사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이중추출틀을 활용하는 경우의 자세한 추정방법은 후술한다.

라. 이중추출틀(dual frame)을 이용한 외국인 통계 작성 방안

1) 개 요

전통적인 표본조사 이론은 완벽한 표본추출틀이 있어 이를 표본추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그러나 실제 표본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일부 추출단위의 누락(omissions), 중복, 부정확한 기록 등은 거의 모든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발생하게 마련이다.

외국인 인력 대상의 표본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구를 이용한 가구조사나 외국인 등록 자료를 이용한 개인조사의 경우는 모두 표본추출틀의 과소포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전체 외국인 인력 모집단에 대한 추출틀의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 정도 추출틀(리스트)과 조사구 추출틀을 함께 이용하여 표본추출하고, 이를 추정에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비자 유형에 해당하는 외국인 인력의 상당수는 사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나 기타 집단시설가구에 거주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지역별 고용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을 외국인 등록자료를 이용하는 표본추출틀로부터 조사하여 추정에 활용할 수 있다면 개별 표본추출틀로부터 표본추출하여 조사할 때 나타나는 모집단에 대한 누락을 줄여서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중추출틀 조사(dual frame survey)는 표본추출틀이 완벽하지 않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표본추출틀을 활용하여 표본추출하고 추정함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조사방법이다.

2) 표본추출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력 대상의 조사를 시행한다고 할 때 완벽한 표본추출틀은 현재 없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인력 대상의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표본추출틀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정보와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 자료 등이 있다. 이 중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정보는 지역 추출틀(area sample frame)이고, 외국인 등록 자료는 리스트 추출틀(list frame)로 볼 수 있다. 두 가지 추출틀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5-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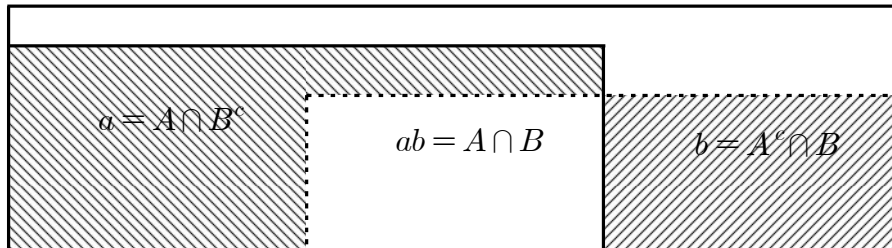
이중추출틀조사는 조사대상자가 희귀하여 일반적인 조사를 통해서는 포착하기 어렵거나 접촉하기 어려운 모집단에 대한 조사에 유용하다.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에서 활용되는 표본추출틀로는 앞서 밝혔듯이 우선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정보와 외국인 등록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표본추출틀을 A, 외국인 등록자료 표본추출틀을 B로 정의하자(외국인 등록자료 표본추출틀을 A,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표본추출틀을 B로 정의해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두 표본추출틀 A, B 중 어느 것이 모집단에 대한 포괄 범위 측면에서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알 수 없음). 여기서

<표 5-2-5> 각 표본추출틀의 특징 비교

| 구분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 외국인 등록정보 |
|---------------------|--|--|
| 조사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구를 1차추출단위로 하고, 가구를 2차추출단위로 하는 표본추출 방법을 적용함 -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에 활용하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등록정보를 이용해서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등록정보를 이용하여 추적 조사하는 방법 - 경우에 따라 소속 사업체나 학교를 통해서 조사하게 됨 |
| 포함 범위 (coverage) 측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와 집단시설가구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자유형에 따라 포함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외국인 등록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에서 누락됨 - 불법체류자는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 - 외국인 등록정보에 기초한 추적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음 |
| 조사비용 측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고용조사』의 설문지에 일부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부가조사를 실시하면 신규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조사 수행으로 추가로 상당한 조사비용이 예상됨 |
| 조사 사례수 측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사례 수가 적음 - 조사 사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표본조사가 요구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조사 사례를 크게 늘릴 수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는 조사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지역별 고용조사」가 될 수 있고, 외국인 등록자료를 이용한 조사는 신규 조사로 앞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물론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을 위한 새로운 가구조사를 신설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예산과 조사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림 5-2-2]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의 포괄 범위



[그림 5-2-2]는 앞서 제시한 [그림 5-2-1]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시 제시하여 설명한다. [그림 5-2-2]에서 $a = A \cap B^c$ 는 추출틀 A에는 속해 있지만 추출틀 B에는 없는 모집단 영역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외국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가구조사를 통해서 조사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이 이에 해당한다. $b = A^c \cap B$ 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가구조사를 통해서는 파악될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숙소나 집단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이에 속한다. 가구조사과 외국인 등록정보를 통한 조사에서 모두 파악될 수 있는 경우를 $ab = A \cap B$ 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력으로 가구조사를 파악될 수 있는 일반 조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에 해당한다.

추출틀 A와 B로 포괄되는 모집단 영역은 $A \cup B$ 로 나타낼 수 있고, $A \cup B = a \cup b \cup ab$ 로 표현된다. 모집단의 부차 영역(집합)인 a, b, ab 에 대한 모집단의 총계를 Y_a, Y_b, Y_{ab} 라고 하면 전체 모집단의 총계는 $Y = Y_a + Y_b + Y_{ab}$ 로 정의할 수 있다.

3) 추정방법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총수 또는 모집단 총계의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집단 총계 Y_a, Y_b, Y_{ab} 를 두 조사를 통해서 얻은 조사 결과와 해당 조사에서 무응답 조정된 가중치를 계산하여 구한 총계 추정값을 각각 $\hat{Y}_a, \hat{Y}_b, \hat{Y}_{ab}$ 라고 정의하자. 전체 모집단의 총계 추

정량은 다음과 같다.

$$\hat{Y}_{comp} = \hat{Y}_a + \hat{Y}_b + \hat{Y}_\lambda,$$

여기서, $\hat{Y}_\lambda = \lambda \hat{Y}'_{ab} + (1-\lambda) \hat{Y}''_{ab}$, $0 < \lambda < 1$, \hat{Y}'_{ab} 와 \hat{Y}''_{ab} 는 각각 추출틀 A와 B에 공통적으로 속한 조사대상자의 응답 결과에 대해서 무응답 조정을 통해 구한 총계 추정 결과이다. \hat{Y}'_{ab} 는 추출틀 A를 이용한 조사 결과 중에서 $ab = A \cap B$ 에 속한 결과만을 이용하여 구한 Y_{ab} 의 추정량이고, \hat{Y}''_{ab} 는 추출틀 B를 이용한 조사 결과 중에서 $ab = A \cap B$ 에 속한 결과만을 이용하여 구한 Y_{ab} 의 추정량이다.

$\hat{Y}_{comp} = \hat{Y}_a + \hat{Y}_b + \hat{Y}_\lambda$ 이 $A \cup B$ 에 대한 모총계의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이기 위해서는 \hat{Y}_a , \hat{Y}_b , \hat{Y}_λ 가 각각 Y_a , Y_b , Y_{ab} 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이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ab = A \cap B$ 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구대상 조사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 여부를 묻고, 외국인 등록 자료에서 추출되어 조사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지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인지 아니면 집단거주시설인지를 추가로 질문하는 항목을 조사표에 추가해야 한다. 기존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외국인 인력통계의 생산 주기를 결정하고, 해당 월에 부가조사 형식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추정식에서 단순히 $\lambda = 1/2$ 로 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단순복합가중치 (simple composite weight)라고 한다. 이 방법은 추정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실제 문제에서 널리 사용된다.

4) 가중치 접근법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앞서 설명한 추정과정은 가중치 접근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중치 접근법은 이중추출틀 조사를 통해서 얻은 조사 결과를 마치 단일추출틀 조사에서 얻어진 것처럼 자료 형태와 가중치를 산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Bankier(1986), Kalton and Anderson(1986), Skinner(1991) 등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먼저 가중치 작성을 위한 첫 단계로 설계가중치는 기본적으로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되는데 표본추출틀 A를 이용한 조사와 표본추출틀 B를 이용한 조사에 대하여 각각 계산될 수 있다.

표본추출틀 A로부터 얻은 표본을 S_A 라고 하고, 조사단위 i 가 표본 S_A 에 포함될 포함확률을 $\pi_i^A = \{i \in S_A\}$ 로 정의하자. 마찬가지로 표본추출틀 B로부터 얻은 표본을 S_B , 조사단위 i 가 표본 S_B 에 포함될 포함확률을 $\pi_i^B = \{i \in S_B\}$ 로 정의하자. $a = A \cap B^c$ 에서 추출된 조사단위에 대한 추출확률은 $\pi_i^A = \{i \in S_A\}$ 이므로 이들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w_i = 1/\pi_i^A$ 로 구한다. 또한 $b = A^c \cap B$ 에서 추출된 조사단위에 대한 추출확률은 $\pi_i^B = \{i \in S_B\}$ 이므로 이들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w_i = 1/\pi_i^B$ 로 구할 수 있다. 두 추출틀 A, B로부터 모두 추출될 수 있는 $ab = A \cap B$ 에서 추출된 조사단위에 대한 추출확률은 $\pi_i^{ab} = (\pi_i^A + \pi_i^B - \pi_i^A \cdot \pi_i^B)$ 이므로 설계가중치는 $w_i = 1/\pi_i^{ab}$ 로 구할 수 있다. 결국 Kalton (2009)가 제시한 것처럼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조사단위 i 에 대한 추출확률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pi_i = (\pi_i^A + \pi_i^B - \pi_i^A \cdot \pi_i^B) = [1 - (1 - \pi_i^A)(1 - \pi_i^B)]$$

이중추출틀 조사에서 추출률이 낮아 유한모집단 수정항(finite population correction)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Kalton and Anderson(1986)와 Skinner(1991) 등이 제시한 간단한 설계가중치 산정 방안을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외국인 인력통계 생산을 위한 표본조사의 추출률은 1/100 이하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식에 따라 설계가중치를 근사적으로 구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w_i = 1/\pi_i^A, i \in S_A \cap a$
- $w_i = 1/\pi_i^B, i \in S_B \cap b$
- $w_i = (\pi_i^A + \pi_i^B)^{-1}, i \in (S_A \cup S_B) \cap ab$

여기서 추출틀 A에서 추출된 조사대상자가 조사할 수 없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추출틀인 B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추출틀 B에 포함 여부를 판정하여 설계가중치를 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Kalton(2009)를 참고할 수 있다.

추출틀 A, B로부터 얻은 응답자에 대한 무응답 조정은 일반적으로 무응답층(weighting class) 내에서 해당 조사 단위의 응답률이 몇 개의 추출틀에 속하는지에 따라 무관하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무응답층의 구성과 무응답 보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실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외국인 등록 자료를 이용한 표본설계에서 표본크기를 결정할 때는 전체 조사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구조사에서의 추출률과 비슷하도록 한다면 전체 가중치 작성 과정이 간단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모집단에 대한 외부 정보(예를 들어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보정 과정이 필요하다.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보정 과정은 표본추출에 사용된 표본추출틀이 모집단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거나 표본추출틀상의 정보가 부정확하여 그 일부가 조사대상에서 누락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의 편향(bias)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등록 자료를 이용한 개별 외국인 대상 조사나 가구조사인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서 얻은 조사 결과를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현황(모집단 정보)에 벤치마킹함으로써 외국인 인력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모집단의 정보를 이용한 보정 과정은 앞선 과정에서 얻어진 무응답 조정을 마친 가중치에 대해서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나 사후층화 조정(post-stratification adjustment)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외국인 인력통계 조사를 위한 모집단 정보로는 해당 조사 시점의 법무부 체류외국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레이킹 비 방법이나 사후층화 조정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활용할 수 있는 모집단의 정보와 조사 데이터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결정될 사항이다. 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레이킹 비 방법이나 사후층화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는 비자 유형(전문기술인력, 비전문기술인력 및 단기취업 등,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국적(예를 들면 중국, 동남아, 기타), 성, 연령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적 속성별 구분에 따른 체류외국인의 모집단 분포를 구하여 레이킹 비 방법이나 사후층화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외국인 인력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응답 조정된 가중치에 대해서 레이킹 비 방법이나 사후층화 조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불법체류자의 비자 유형 구분을 입국 당시의 비자 유형으로 구분하되, 입국 당시의 비자 유형이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등인 경우에 대해서는 비전문기술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 불법체류자를 독립된 사후층으로 간주하여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보정의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실

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표본추출틀의 마련과 실사 과정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같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존 조사를 조사 항목과 조사 기준 시점을 통일하여 시행함으로써 이 결과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얻어진 정보와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 결과와 모집단 정보 등을 종합하여 외국인 관련 경제활동상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방법은 일종의 여러 개의 추출틀을 이용한 추정법에 해당한다. 다만, 조사 주체가 달라지면 응답자의 응답에도 영향을 주어 추정 결과에 편향(bias)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응답 조정된 가중치에 대해서 레이킹 비 방법을 적용한 경우의 모집단 총계 추정량에 대한 분산 추정법은 Skinner(1991)과 Lohr and Rao(2000)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다.

5) 한계점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학교, 공장, 병원 등의 기숙사와 특수사회시설과 같은 집단시설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외국인 등록정보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비자 유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가 부정확하여 추적할 수 없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소포함(undercoverag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고려한 두 종류의 표본추출틀을 단일추출틀로 외국인 인력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누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동일한 비자 유형, 국적, 성, 연령대 구분 내에서 등록정보가 정확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 인력 간의 특성 차이가 크지 않거나 또는 집단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력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 인력 간의 특성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단 정보를 레이킹 비 방법이나 사후층화 단계에서 활용함으로써 상당히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이중추출틀을 이용한 추정방법은 단일추출틀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과소포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나 미등록 외국인으로 집단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

사대상의 모집단 누락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류외국인 정보(모집단 정보)를 레이킹 비 방법이나 사후층화 단계에서 활용하여 가중치를 보정하여 활용함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이러한 이중추출틀 조사의 한계점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외국인 취업자 임금·근로실태 및 외국인력 수요통계 개선방안

제2절에서는 외국인 경제활동 실태분석을 위한 통계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외국인 취업자의 노동시장 실태 및 외국인력 수요조사와 관련된 통계 생산을 위하여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행정통계 개선방안

외국인 취업자의 임금 및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가능한 통계자료는 행정통계자료이다. 외국인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현행 행정통계로서 대표적인 것이 출입국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 그리고 방문취업제 동포들의 근로개시신고 정보이다. 이들 세 자료를 이용할 경우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력의 인적 특성별 정보와 노동시장 정보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월별 자료의 구축도 가능하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통계의 연계 그리고 고용보험 DB와의 결합을 통한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통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이를 종합한 통계자료의 공포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출입국통계 마이크로데이터의 개선방안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출입국 자료 마이크로데이터에는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특히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 이 시스템에서는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 외국국적동포, 난

민불법체류자별로 구분되어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체류외국인은 전체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유학생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체류외국인의 인적 속성(국적, 체류자격, 성, 연령) 및 거주지역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통계에는 연도별·국적별·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정보를 담고 있다. 국적 통계는 귀화 및 국적회복자, 혼인귀화자,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자별로 구분하여 정보가 제공된다. 외국국적동포 통계는 체류자격 및 국적별 그리고 거주지역별 통계가 제공되며, 난민 통계는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국적, 사유, 성, 연령, 지역, 체류기간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경우도 국적, 사유, 성, 연령, 지역, 체류기간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통계는 국적 및 체류자격, 체류기간별 정보가 제공된다.

그런데 출입국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이 원활해야 하며, 자료간 연계를 위한 키(key) 변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법무부가 관리하는 항목만으로는 외국인력 현황 분석이 충분치 않으므로 관련 DB간 연계를 통한 통계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 데이터간 공통되는 연결코드가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별도로 취업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키 변수만 관리되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사업장 DB를 통해 고용사업장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외국인의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키 변수(예를 들어 외국인관리번호나 성, 국적, 생년월일을 기초로 인별 seq number 생성)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데 인별 키 변수가 제공될 경우 외국인의 비자력을 구축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취업비자 취득자의 경우 국내에서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하므로 이들의 경우는 취업사업장 특성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취업비자 신청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를 기본 서류로 제출하므로 해당 정보 중 가장 기본적인 정보(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장 규모, 사업장 주소, 고용계약기간, 직종, 임금 등)는 추가로 입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업종과 직종은 통계청의 표준코드를 이용해 출입국통계 DB 자체만으로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 및 방문취업제 마이크로데이터 개선방안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E-9)와 외국국적동포(H-2)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관련 정보가 누적되는 체계로서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국적동포) 개인별로 DB가 구축된다. 그리고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DB를 연결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들의 알선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별로 DB가 생성되고 있으며, 사업장 관련 자료는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는 고용허가서 발급 관련 자료와 구인신청 후 알선받은 외국인근로자와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는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지원센터가 담당하며, 해당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분석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생성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mployment Permit System)에 누적·관리되고 있는데, 구축된 DB는 행정처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추가·수정되는 체계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www.eps.go.kr>)을 관리하며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의 고용노동행정통계(<http://laborstat.molab.go.kr/>)를 통해 월 단위로 공표되고 있다. 이 자료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상의 원시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허가제에 의한 월별·업종별 국가별 취업인원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노동행정통계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월별 외국인근로자(일반, 동포), 업종 및 국적별 고용동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특성 및 고용사업장 특성,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는 행정 DB인 관계로 학술·정책분석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성, 출생연월, 국적, 혼인 여부, 학력수준 등)가 입력되어 있는 관계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구학적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연령(18~40세), 한국어 능력 수준, 건강상태, 출입국 결격사유가 없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의 확인도 가능하다.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취업희망 외국인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 구직신청서에는 개인 인적사항(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신장, 몸무게, 시력 등)외에 희망 취업조건(업종, 임금, 지역, 숙식제공 등), 이력 및 경력 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구직신청서를 통해 외국인들의 희망 근로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특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신청서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의 구인신청서의 연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인신청서에는 구인기업의 특성(업종, 지역, 사업장규모)과 구인자의 특성(제시임금, 학력수준, 연령, 직종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월 통상 임금 기준), 급여지급 유형, 임금지급 방법, 근로시간, 기숙사 및 식사제공 여부,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체류기간 및 취업사업장 근속기간(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연월과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 가능) 등의 파악도 가능하다.

같은 관점에서 법무부가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방문취업자 입국자의 고용사업장에 관한 정보의 경우 인적 특성별로 고용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고용실태에 대한 정보는 대략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체 동포인력의 80% 정도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방문취업제 입국자의 경우 건설업 일용직이나 가사서비스업, 음식업 등의 종사자가 많아 고용보험 DB와 연계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각각의 행정자료가 가진 풍부한 정보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통계정보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막대하다. 하지만, 문제점은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는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지원센터가 담당하고, 해당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분석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사이에 연계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 각 기관에서 생성된 정보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통계의 생산이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없으면 상술한 시너지 효과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 간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행정자료에 기초한 외국인 임금·근로실태에 대한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다.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력의 행정통계 작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두 가지 제도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 법무부 출입국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그리고 방문취업자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저숙련 외국인력의 취업실태에 대한 행정정

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행정통계에 연결 키를 만들고 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를 적용하여 자료의 호환성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력 통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핵심적인 수요는 외국인력의 고용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정통계의 체계적인 구축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입국 마이크로데이터 중 특히 전문외국인력이나 혹은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학교를 마친 후 국내에 취업하는 인력 등에 관한 정보들은 그 동안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외국인력의 고용구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등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어 왔으나 이들 전문외국인력의 경우 해당 마이크로데이터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하여 분석한 연구보고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다. 특히 전문외국인력의 활용실태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구조 등에 관한 수요는 보다 증가할 전망이어서 행정정보를 활용한 노동시장 실태에 관한 자료의 생성 및 공표를 통해 이에 관한 보다 다양한 정책적 논의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의 접근성의 개선이다. 앞에서 언급한 자료들은 모두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자료의 접근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료의 구축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시장 파악을 위한 필요정보를 각 부처에서 제공하고 이를 종합하여 행정통계 DB를 구축한 후 마이크로데이터로서 관리를 하며 이를 통해 정기간행물로 발표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기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계관리 주체, 정기적인 통계자료의 내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상세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정보의 생성 기능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협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두 기관 내에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이들 자료 중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정보를 국가통계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통계로는 국적, 성별, 연령별 외국인 통계를 기초로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산업, 규모, 지역, 그리고 직종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고 이를 월별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더 나아가 해당 사업장 정보와 소속 근로자의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패널자료로서 활용가치를 갖는 만큼 외국

인 인력의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초기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발하나 장기적으로는 관련 정보가 통계 작성 기관에 실시간으로 혹은 실시간에 가깝게 축적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해당 자료의 생산부처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가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심을 가지고, 가칭 외국인 취업자 통계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사통계 개선방안

가. 사업체 조사통계 개선방안

부처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조사통계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통계와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의 포괄성 문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통계 생산의 미흡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다. 이하에서는 조사통계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외국인 인력통계를 생성하는 사업체 조사로는 사업체 고용동향특별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있다.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는 국내 기업들의 인력부족률 추이를 살펴보고 인력부족률 해소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외국인력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동 실태조사는 조사 단위가 사업체인 관계로 국내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숙련수준, 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수요 존재 여부, 외국인 근로자 채용률(구인인원 대비 채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전문인력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 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조사표본인 관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유형별(전문인력, 비전문인력, 국적동포) 인적 특성(성, 연령, 학력, 국적 등)이나 고용구조(임금, 직무, 근속 등)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조사 목적에서 차이가 있지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앞의 제3장에서 보듯이 포괄성 문제를 담보해 주지 못한다. 이는 외국인 인력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가사간병, 농수산업 등인데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이들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이에 대하여 각각 동일한 조사 항목으로 조사하되 조사 결과는 별도의 통계로 작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금대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1차 구분하고, 할당된 표본수를 조사하되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에 맞추어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표본을 각각 추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근로자 전체, 내국인 근로자 전체, 외국인 근로자 전체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서는 현행 조사들 내에서 단기적으로는 조사통계의 포괄성이 높은 업종(예; 제조업)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체조사표를 통한 집계자료 조사 및 중단된 개인조사표를 복원하여 외국인 근로자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내국인 및 외국인 임금근로자를 보다 포함하고 있는 모집단 확보와 이에 기반한 표본추출과 별도의 조사통계를 마련하여 근로자수 및 임금·근로시간 등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항목들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제조업을 포함하여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저숙련 외국인 취업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가 주로 고용구조와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책수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외국인 조사를 위해 조사표본을 개편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별도의 조사를 신설하여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차적으로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이나 유학생, 결혼이민자에 대한 조사를 포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동포에 대한 조사를 사업체 조사를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동포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동포 취업 허용업종은 36개 업종에 걸쳐 있고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동포 근로자가 보다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

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간헐적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여 동포 고용사업체 정보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체조사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만의 조사를 참고할 수 있는데, 즉 현행 외국인 인력을 고용허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조사에 응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내용들, 가령 외국인력의 고용 현황, 임금 및 근로조건, 외국인 정책에 대한 평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 등 정책을 위한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조사는 표본조사로 수행하되 1년에 1회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에 한 번씩 특별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사의 경우 외국인 관련 각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협의하여 공통 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조사 또한 부처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표본 설계, 조사 항목의 개발, 조사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자의 고용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근로자 연계조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문외국인력의 취업실태가 간헐적으로 연구기관 등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도 요청된다. 향후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가 조사통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전문외국인력 고용사업체에 대한 정보는 법무부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파악이 가능한 만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외국인력 수요조사 개선방안

그 동안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어 왔던 점은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결정 논리를 보면 노동통계로 산출한 중

소기업의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 경제성장 등을 감안해 일부 조정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2010년의 경우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 산출방법을 보면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 = ①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의 인력부족률 근거로 업종별 외국인력 추가 수요 + ② 출국 및 불법체류 단속에 따른 외국인력 대체수요(행정통계 활용)를 이용하여 결정하여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부족률 특히 외국인력 부족률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포괄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 더구나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의 표본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특성(업종, 규모별 비중 등)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농축산업 및 어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외국인 수요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절반 가량이 5인 미만 사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적정 외국인력 도입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지만 그동안 이의 근거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제약 요인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기존의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별도의 조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에서 누락된 농축산업·어업 및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표본들을 구성하되 동 조사의 목적이 인력부족 및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에 초점이 있는 만큼 비자 유형이나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인력부족 및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조사표는 간략히 구성하되, 고용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사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로 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파악을 위한 행정정보로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정보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정보를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로 파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전히 앞에서 언급한 실태조사 자료와 마찬가지로 적정 외국인 인력규모 추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이에 대한 자료의 정비도 필요하다.

다. 기타 외국인 통계 개선방안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실태 및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관련 통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학생 통계

해외 우수인력 유치·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갖는 가치는 매우 크다. 선진국들 역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외국 유학생 유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중인데, 외국 유학생은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2009)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보면 귀국을 하겠다는 응답이 53.4%로 가장 높고, 상급학교 진학(23.1%), 한국내 취업(14.7%) 순으로 나타나 유학생 중 일부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상당수가 한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우리나라 역시 인구고령화 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외국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점에서 보면 현행 유학생 유치와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활용 측면에서 유학생 관련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법무부와 교과부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관련 DB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DB상으로는 유학생의 인적 특성과 유학중인 학교의 특성만 파악할 수 있는데 법무부 출입국통계 자료와 유학생정보 시스템,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졸업후 취업자격 취득자의 취득자격 및 취업사업장 특성을 연결해 우리나라의 유학생 유치정책이 우수인력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유학생이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유학생들이 국내법을 준수토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도교수 추천서와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업체명 외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코드(표준산업코드), 우편번호, 직종 등을 기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학생의 노동시장 내 활동이 높게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장 참여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함께 한국 내 대학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애로점, 생활실태, 소비실태 등에 대한 조사 또한 이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로, 법무부가 2009년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 생활실태조사」와 같은 조사는 유학생의 생활 및 애로점 등을 파악한 거의 유일한 조사로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유학생 통계에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평가정보 등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대학 및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2004년 이후 유학생이 급증하고 학업 수행 및 적응이 극히 어려운 학부 재학 외국인 유학생이 대부분이어서 학교 이탈, 불법취업, 혐한(嫌韓)의식 확대 등의 문제점이 급증하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로서도 이들 정보의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 평가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평가 정보와 유학생 실태를 알기 위한 조사방법은 일단 16개 광역지자체별 학교 명단과 각 대학별·과정별 유학생 분포를 감안한 유의추출을 통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통계청은 매 3~5년마다 노동시장 참여실태(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노동시장 참여의 계절성 정도, 보수 등), 생활실태, 소비실태, 체류비용(학비, 생활비) 등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이들 정보의 통합을 통해 유학생들의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의 유학생 급증 추세에 비추어볼 때 교과부는 통계청 조사와 별도로 매 1~2년마다 국내 대학의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 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 현황, 외국이 유학생의 국내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애로점 등을 조사 발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차원에서 유학생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학생 출신 취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를 작성하고 직종 등에 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도입되는 단순인력 외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유학생의 활용을 위한 정책 모색을 위한 통계가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계 작성상 접근성과 비용적 측면에서 법무부의 취업비자 소지자 정보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유학생의 취업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향후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이수 후 일정기간 연수 혹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되는 시점이나, FTA로 아시아 주변국 간 연수생 이동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좀더 상세한 정보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학생 출신 취업자와 연계하여 사이언스 카드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전문인력 풀(pool)을 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를 살펴볼 수 있게끔 통계 관리 항목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는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 통계를 지자체 단위에서 바라볼 때 학교별 정보를 통해 지역별 정보를 생산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정책 및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 정형화된 체류유학생 마이크로데이터 셋을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지자체 단위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 노력을 보조하기 위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조사」는 지방자치단체별 외국계 주민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고, 통계 작성의 기본 개념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 및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통계 작성 개편작업은, 내부 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흡한 편이나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의 개편이 있는 경우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보고서에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 간행물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자료가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 국가통계 승인시 포함된 모든 항목의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또 그 자료를 국가통계 DB에 등록한다. 매년,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조사 결과의 공표일을 명시하여 그 날짜를 사전에 예고한다. 그리고 예고한 공표 일을 준수한다. 그러나 보고서의 인쇄물과 파일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결과 자료 제공에는 미흡하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거한 자료만 작성하고, 마이크로데이터는 없다.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제결혼건수의 누적치와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수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인 통계작성 과정은 미흡한 수준이다.

외국계 주민 현황 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마이크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자료를 만들었던 방식을 적용하

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출처의 통계자료와 비교를 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이크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행정안전부 조사의 당초 목적 달성 가능성이 더욱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계 인력자료로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3)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대한 통계 품질 진단을 실시한 김석호·이민아·강정환(2010)의 결론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전수조사보다는 엄밀한 표집을 거친 표본조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현황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표가 구성되어야 한다. 조사표는 반복핵심문항(replicating core), 주제 모듈, 지역 모듈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반복핵심문항에는 위에서 기술한 다문화가족조사에 필수적인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제 모듈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정책의 수립을 위해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자녀양육이나 사회참여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정 주제 문항들은 5년을 주기로 반복되어 조사됨으로써 기초자료 활용을 통한 복지욕구 파악 및 정책 수립과 정책 실행의 효과 검증을 가능케 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별로 다문화가족의 분포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표가 구성되어야 한다. 지방광역단체가 지정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모듈도 주제 모듈과 마찬가지로 구성되고 조사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효과 검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사 주기는 3년보다는 1년 주기가 바람직하다.

다섯째, 복지 및 정책 욕구의 파악과 정책 실행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조사 설계에 신경써야 한다.

제6장 결론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 및 외국인력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고용실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국인 관련 행정 및 조사통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통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외국인 인력 현황 및 사회경제적 특징 분석을 하였다. 여기서는 체류외국인의 개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인 경제활동 통계 파악을 위한 체류외국인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해 왔는데 특히 2007년 3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등록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8월 사상 처음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였고, 2007년 인구 대비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어서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체류외국인은 1,168,477명으로 인구 대비 2.35%에 이르고 있다.

120만 명에 육박하는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 경제활동상태 분석을 위한 모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자 유형별 특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체류뿐만 아니라 취업활동까지 가능한 취업사증으로는 단기취업자에게 발급되는 단기취업 사증(C-4)과 전문기술인력에게 발급되는 전문인력 사증(E-1에서부터 E-7), 단순기능인력에게 발급되는 사증(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그리고 관광취업 사증(H-1)이 있다.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사증은 전문인력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E-6), 특정활동(E-7) 등이 있다.

그러나 위의 범주 외에 언론인(D-5), 종교인(D-6), 상사주재원(D-7), 기업투자자(D-8), 무역경영자(D-9), 유학생(D-2), 구직연수자(D-10) 등도 넓은 의미의 전문인력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D-10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의 배우자(F-2)·재외동포(F-4)·영주권자(F-

5) · 등록외국인의 배우자(F-3)도 취업자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경제활동상태 파악을 위한 체류외국인 모집단의 범위로는 일차적으로 등록외국인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외국인의 경우 취업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이 제외된다는 점, 단기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등록외국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상당수가 경제활동상태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모집단의 규모가 실제보다 과소추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경제활동상태 파악을 위한 모집단의 범위로 비자 유형으로는 등록외국인의 범주로 하되 외국인의 규모는 체류외국인 수로 파악하며, 추가적으로 등록외국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를 모집단에 포함하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단기취업 비자(C-4)의 경우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외국인 모집단 규모는 등록외국인 비자의 체류외국인수+단기취업비자+비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수로 계산되며 2009년 말 기준 101만 6,209명이다. 다만 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이 15세 이상임을 고려할 때 이들 비자에서 15세 미만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제2장 제2절에서는 체류외국인 중 주요 집단별로 사회경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비전문외국인력, 전문외국인력, 유학생, 결혼이민자, 불법체류자 등의 인구학적 특성, 노동시장 상태 등에 대한 기존의 행정자료 및 조사 연구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민자 수용이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외국인력 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통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구 노동력수요동향조사)이다. 동 조사는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충원되지 않는 빈 일자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족인력 규모를 조사하여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입안자료로 활용키 위함에 목적이 있다.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숙련수준별 고용인원 및 부족인원이다. 고용인원 및 부족인원은 성, 내 외국인, 상용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참고로 2010년 상반기 조사 결과의 경우 외국인은 모두 175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동 조사는 외국인력 고용 비중이 높은 5

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어 있고, 외국인력 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숙련인력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취업해 있지만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표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둘째, 방문취업자중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비중이 상당수이고 나머지 비자의 경우도 일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취업상태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비자 체류자가 모두 경제활동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별로 DB가 생성되고 있다. 사업장 관련 자료는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는 고용허가서 발급 관련 자료와 구인신청 후 알선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정보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구직신청시 제출하는 외국인 근로자 개인정보와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업종, 직종, 지역, 임금 등)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는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지원센터가 담당하며 해당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분석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즉, 한국어 시험에서부터 구직신청서 작성 후 구직자 명부 관리까지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며,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에서 외국인 근로자 알선과 관련된 업무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mployment Permit System)에 누적·관리되고 있는데, 구축된 DB는 행정처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추가·수정되는 체계이다. 이처럼 관련 업무 담당기관과 자료관리 담당기관이 상이한데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업무 이관 혹은 자료간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www.eps.go.kr>)을 관리하며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의 고용노동행정통계(<http://laborstat.molab.go.kr/>)를 통해 월 단위로 공표되고 있다. 이 자료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상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허가제에 의한 월별·업종별 국가별 취업인원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노동행정통계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월별 외국인 근로자(일반, 동포), 업종 및 국적별 고용동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특성 및 고용사업장 특성,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는 행정 DB인 관계로 학술·정책분석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37,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동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개인별 자료(individual data)가 아닌 사업체별 집계자료(aggregate data)로서 사업체조사표에서 외국인 근로자수, 총 근로시간 및 임금총액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2009년 6월 급여계산 기간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185천 명, 5인 미만 사업체 23천 명으로 전체 208천 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음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출입국통계 월보, 분기보,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사증 발급, 출입국심사, 체류민원처리, 조사사범 보호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축적되는 각 통계자료 및 해당 부서의 자료를 기초로 집계·제공되고 있다. 여기서 제공되는 통계정보는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 외국국적동포, 난민불법체류자별로 구분되어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체류외국인은 전체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유학생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체류외국인의 인적 속성(국적, 체류자격, 성, 연령) 및 거주지역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통계에는 연도별·국적별·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정보를 담고 있다. 국적 통계는 귀화 및 국적회복자, 혼인귀화자,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자별로 구분하여 정보가 제공된다. 외국국적동포 통계는 체류자격 및 국적별 그리고 거소지역별 통계가 제공되며, 난민 통계는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국적, 사유, 성, 연령, 지역, 체류기간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경우도 국적, 사유, 성, 연령, 지역, 체류기간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 통계는 국적 및 체류자격, 체류기간별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출입국통계 마이크로데이터는 학술과 정책분석 차원에서만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체류외국인의 인적 특성 및 고용사업장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 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 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외국인 여부를 따로 조사하거나 층화 변수로 고려는 하지 않지만, 15세 이상 인구라는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직근 반기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증감을 15세 이상 인구에 반영하고 있다. 즉 적법·불법 외국인 모두 15세 이상 인구에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또한 조사 표본에 들어오므로, 이들의 조사와 집계를 위해 표본가구 내 외국인은 외국어조사표(11종)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있다. 주요 지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작성하며 조사표 자체에는 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 정보가 없으나 명부 보완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내·외국인을 구분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으로 인해 샘플링 1단계에서 외국인 층화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 추출 정보가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의 과소표집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분포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 층화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것은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가구조사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 공장, 병원 등 기숙사와 특수사회시설과 같은 집단시설가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특정 특성을 가진 외국인 집단이 조사가구에서 포착되지 않아 편의(bias)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외국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센서스 조사에 외국인을 포함한 만큼 향후 부가조사 형식을 통한 설문조사를 강화하여, 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외에도 유학생 통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제4장은 외국의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국제적 기준 및 통계 현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인구이동을 정의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다. 법제상의 이민에 대한 정의는 나라에 따라 다르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도 없다. 그 결과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나라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제인구이동을 집계할 경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국제인구이동의 개념을 통일하여 동질적 데이터를 집계하려는 노력이 192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다. 국제인구이동을 판별

하는 주요 기준은 국적(또는 시민권)·거주지·거주기간·체류 목적·출생지 등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거주지이다. 일상 용어에서는 흔히 이입자(immigrants)를 국내에 영주하기 위해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출자(emigrants)를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출국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나라마다 거주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르다. 나라마다 이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국내 거주 또는 해외 거주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민자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적 또는 법적 시민권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자국 내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지만, 국경을 넘어 이주할 때는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국민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자국인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의 국내 진입이 국제인구이동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인구이동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1998)에서는 1년 이상 일상적 거주지를 국경을 넘어 옮기는 것을 ‘장기이동’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옮기는 것을 ‘단기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산출하는 나라는 불과 몇 나라에 불과하다. 보통은 이들을 아울러 적어도 3개월 이상 삶의 근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국제인구이동으로 파악한다. 국제연합의 정의에 따르면, 통근자나 3개월 미만의 계절이동자·폼팔이·여행객 등은 이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거처를 외국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인구이동을 식별하는 최소 거주기간 요건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력이동 데이터베이스(ILO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Database)는 광범위하게 가용한 국제노동력이동 통계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유럽공동체 통계청(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 유엔 통계부(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UNSD),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 COE) 등에서 사용하는 공통 질문지에 토대를 두고 만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고용·노동·사회업무부(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에서는 ‘국제인구이동 영구관찰 시스템’(System d’Observation Permanente de Migration Internationale: SOPEMI)을 구축하고 있다. 그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사무국과 회원국 대표들 간의 조직을 뜻한다. SOPEMI에 바탕을 두고 취업자의 직업, 업종, 종사상 지위와 더불어 학업 성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과 관련한 통계를 통계국, 후생노동성, 법무성에서 작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사통계는 통계국에서 작성하는 ‘국세조사’가 유일하다.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이 작성하는 통계는 행정통계로서 주로 사업주의 신고에 따라 생성된다. 이때 법무성이 작성하는 2종의 행정통계란 ‘출입국관리통계조사’와 ‘등록외국인통계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국세조사는 외국인 통계와 직접 관련되는 통계라기보다는 일본의 인구와 세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 목적으로 조사되는 통계이다. 일본의 경우에 국세조사는 192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2010년 10월 1일 현재 19회 조사가 실시되었다. 국세조사의 국세는 ‘국가의 정세’를 뜻하는 것으로 「통계법」 제5조 제2항(“총무대신은 전 항에 규정하는 전수조사(이하 ‘국세조사’라 한다)를 10년마다 실시하여 국세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세조사를 실시한 해로부터 5년째에 해당하는 해에는 간이방법에 의한 국세조사를 행하여 국세통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에 따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0으로 끝이 나는 해에는 대규모의 국세조사를 실시하고, 5로 끝나는 해에는 간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조사의 조사대상은 일본에 상주(常住)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외국인이 포함된다. 주요 조사 항목으로서는 성, 생년월일, 5년 전의 주거 소재지, 취업상태, 종업지(從業地)·통학지, 주거 종류 등이다. 조사의 흐름은 총무성-도도부현(都道府縣)-시정촌-지도원-조사원-세대이다. 국세조사의 조사 항목 가운데 ‘국적’이 세대원 각각에 대하여 파악이 되므로 국세조사를 통하여 국세조사가 실시되는 해에 일본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파악된다.

2010년 10월 1일에 조사가 시작된 19회 국세조사는 2011년 2월에 속보치가 공표될 예정이므로 18회 조사인 2005년의 국세조사 결과를 통하여 외국인 통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의 오국인수는 1,555천 명이며, 이 가운데 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수가 1,069천 명으로 외국인 전체의 68.7%에 이른다.

대만은 개별 사업체나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 상황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참고자료로 삼는다. 법적 근거로는 통계법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행정원 노동위원회 조직조례(行政院勞工委員會組織條例)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조사 범위를 보면 지역은 대만 및 민남 지역(금문도, 마조도 등의 도서 지역을 뜻함)이며,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체와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가정이고, 조사 대상은 행정원 노동위원회 노동국(勞工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체 및 가정이다. 제조업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 조사로 고용 경로, 행방불명 실태, 고용 및 관리상의 문제점, 사업체에서의 노동인력 부족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 등을

과악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 측면의 조사 항목으로는 제조업 분야의 3D 업종과 3교대 근무가 필요한 업종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개방에 대한 정책, 관련 업체 중 C급의 3D업종 및 3교대 근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허가 배당의 비중, 외국인 노동자 중개업체의 주요 서비스 대상에 대한 의견 등이다. 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인원, 외국인 노동자 인원 및 해당 직종별 인원을 조사하며, 급여, 근무시간 및 관련 복지항목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월별 평균 급여와 근무시간, 급여 지급방식 및 노동자의 모국어로 발행된 급여명세서의 첨부 여부, 외국인 노동자의 보험가입 제공 여부, 숙식제공 여부, 생활지도 대책, 의사소통 방법 및 수습교육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 근무성, 작업 효율, 의생 습관, 본국 노동자와의 협력 상황 및 전반적 근무태도 등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우편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표본추출된 조사 결과를 통해 전체 모집단을 추정하였다.

제5장은 외국인 인력통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체 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동안 외국인 인력 관련 통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력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경제활동상태란 외국인 인력의 인적 특성 현황(성, 연령, 국적, 비자 유형 등), 취업상태, 취업분야(산업, 직종, 규모), 근속기간 등에 관한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 둘째, 취업 외국인 노동시장 특성, 즉 임금, 고용구조 및 기타 근로실태 등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특성 및 이와 관련된 내국인 노동시장과의 비교분석에 관한 정보들이다. 이러한 두 가지 통계 정보는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첫째 과제에 대해 제시한 통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인력통계 작성을 위해서 가구조사를 통한 통계 작성 방안, 외국인 등록 자료를 이용한 조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아울러 두 조사를 함께 진행하여 종합하는 방안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 외국인 현황 통계를 추정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외국인 인력에 대한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전체 비자 유형 중에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가능한 26개 비자 유형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26개 비자 유형에는 속하지 않지만 불법체류하고 있는 기타 불법체류자(다른 용어로 비합법 이주자)의 경우도 대부분 취업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모집단에 포함하였다. 외국인 인력에 대한 통계 작성을 위한 표본추출틀은 인구주택총

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이용하는 경우와 외국인 등록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취업가능한 외국인 인력의 전체를 포괄한다. 하지만 실제 가구조사 과정에서 기숙사와 집단시설가구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자 유형에 따라 표본추출틀의 과소포함(undercoverag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자료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의 소재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가 부정확하여 추적할 수 없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소포함(undercoverag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정보만을 표본추출틀로 이용하는 표본조사는 전체 외국인 인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활용한 표본추출틀과 외국인 등록자료를 이용한 표본추출틀은 각각 모집단의 포괄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의 표본추출틀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두 종류의 표본추출틀을 함께 이용하는 이중추출틀 조사(dual frame survey)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종류의 표본추출틀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조사구 리스트 또는 외국인 등록정보만을 이용하여 외국인 인력통계를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표본추출틀의 과소포함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표본가구 내 외국인은 외국어 조사표(11종)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있다. 매월 약 400명의 외국인이 응답하고 있고, 이 중 취업자는 대략 250명이다.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외국인 조사 사례는 전체적으로 너무 적고, 가구조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외국인도 비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 관련 통계로서 외국인 인력의 통계 작성을 위해서 조사 항목을 늘리거나 표본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외국인 인력통계 생산에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현행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약 8,8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전국적으로 175,000 가구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표본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약 5.3

배에 해당한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서 표본크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외국인 조사 사례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조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외국인 인력 통계의 표본오차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외국인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만으로 외국인 인력통계를 직접 생산하는 방법은 실제 외국인 인력을 상당히 과소추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외국인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중추출틀 조사(dual frame survey)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지역별 고용조사」 질문지에 추가로 비자 유형, 국적, 출신국, 외국인 등록 여부 등의 조사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중추출틀 조사(dual frame survey)는 표본추출틀이 완벽하지 않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표본추출틀을 활용하여 표본추출하고 추정함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조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추출틀 조사를 통해서 얻은 조사 결과를 마치 단일추출틀 조사에서 얻어진 것처럼 자료 형태와 가중치를 산정하여 분석할 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설계가중치는 기본적으로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할 수 있고, 두 종류의 표본추출틀에서 얻은 응답자에 대해서 무응답 조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 단계로 모집단에 대한 외부정보(예를 들어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보정 과정을 거친다. 모집단의 정보를 이용한 보정 과정은 설계가중치 작성과 무응답 조정을 거친 가중치에 대해서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나 사후층화 조정(post-stratification adjustment)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외국인 인력통계 조사를 위한 모집단 정보로는 해당 조사 시점의 법무부 체류외국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보정 과정은 표본추출틀이 모집단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거나 표본추출틀상의 정보가 부정확하여 그 일부가 조사대상에서 누락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정의 편의(bias)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외국인 인력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외국인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행정통계 개선방안, 조사통계 개선방안 그리고 기타 통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행정통계 개선방안이다. 외국인 취업자의 임금 및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가능한 통계자료는 행정통계자료이다. 외국인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현행 행정통계로서 대표적인 것이 출입국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 그리고 방문취업제 동포들의 근로개시 신고 정보이다. 이들 세 자료를 이용할 경우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력의 인적 특성별 정보와 노동시장 정보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월별 자료의 구축도 가능하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통계의 연계 그리고 고용보험 DB와의 결합을 통한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마이크로데이터, 법무부 출입국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그리고 방문취업자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저숙련 외국인력의 취업실태에 대한 행정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행정통계에 연결 키를 만들고 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를 적용하여 자료의 호환성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력 통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핵심적인 수요는 외국인력의 고용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정통계의 체계적인 구축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의 활용도 중요하며 앞에서 언급한 자료들은 모두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자료의 접근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처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료의 구축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시장 파악을 위한 필요정보를 각 부처에서 제공하고 이를 종합하여 행정통계 DB를 구축한 후 마이크로데이터로서 관리를 하며 이를 통해 정기간행물로 발표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기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계관리 주체, 정기적인 통계자료의 내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상세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의 생성 기능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협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두 기관 내에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이들 자료 중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정보를 국가통계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통계로는 국적, 성별·연령별 외국인 통계를 기초로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산업, 규모, 지역, 그리고 직종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고 이를 월별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더 나아가 해당 사업장 정보와 소속 근로자의 정보(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패널자료로서 활용 가치를 갖는 만큼 외국인 인력의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초기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발하나 장기적으로는 관련 정보가 통계 작성 기관에 실시 간으로 혹은 실시 간에 가깝게 축적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해당 자료의 생산부처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가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이 행정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심을 가지고, 가칭 외국인 취업자 통계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사통계 개선방안이다. 부처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조사통계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통계와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의 포괄성 문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 생산의 미흡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다. 이하에서는 조사통계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외국인 인력통계를 생성하는 사업체 조사로는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있다.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는 국내 기업들의 인력부족률 추이를 살펴보고 인력부족률 해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외국인력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동 실태조사는 조사 단위가 사업체인 관계로 국내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숙련수준, 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수요 존재 여부, 외국인 근로자 채용률(구인인원 대비 채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전문인력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 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조사표본인 관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유형별(전문인력, 비전문인력, 국적동포) 인적 특성(성, 연령, 학력, 국적 등)이나 고용구조(임금, 직무, 근속 등)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조사 목적에서 차이가 있지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앞의 제3장에서 보듯이 포괄성 문제를 담보해 주지 못한다. 이는 외국인 인력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가사 간병, 농수산업 등인데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이들 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현행 조사들 내에서 단기적으로는 조사통계의 포괄성이 높은 업종(예; 제조업)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체조사표를 통한 집계자료 조사 및 중단된 개인조사표를 복원하여 외국인 근로자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내국인 및 외국인 임금근로자를 보다 포함하고 있는 모집단 확보와 이에 기반한 표본추출과 별도의 조사통계를 마련하여 근로자수 및 임금·근로시간 등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항목들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제조업을 포함하여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저숙련 외국인 취업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가 주로 고용구조와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책 수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외국인 조사를 위해 조사표본을 개편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별도의 조사를 신설하여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차적으로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이나 유학생, 결혼이민자에 대한 조사를 포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동포에 대한 조사를 사업체 조사를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동포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동포 취업 허용업종은 36개 업종에 걸쳐 있고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동포 근로자가 보다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는 간헐적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여 동포 고용사업체 정보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체조사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만의 조사를 참고할 수 있는데, 즉 현행 외국인 인력을 고용허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조사에 응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내용들, 가령 외국인력의 고용 현황, 임금 및 근로조건, 외국인 정책에 대한 평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 등 정책을 위한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조사는 표본조사로 수행하되 1년에 1회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에 한 번씩 특별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사의 경우 외국인 관련 각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협의하여 공통 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조사 또한 부처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표본의 설계, 조사 항목의 개발, 조사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자의 고용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근로자 연계조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문외국인력의 취업실태가 간헐적으로 연구기관 등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도 요청된다. 향후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가 조사통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전문외국인력 고용사업체에 대한 정보는 법무부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파악이 가능한 만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력 수요조사 개선방안이다. 그 동안 적정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어 왔던 점은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적정외국인력 도입 규모의 결정논리를 보면 노동통계로 산출한 중소기업의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 경제성장 등을 감안해 일부 조정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2010년의 경우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 산출방법을 보면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 = ①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의 인력부족률 근거로 업종별 외국인력 추가 수요 + ② 출국 및 불법체류 단속에 따른 외국인력 대체 수요(행정통계 활용)를 이용하여 결정하여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부족률 특히 외국인력 부족률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포괄성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 더구나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의 표본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특성(업종, 규모별 비중 등)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농축산업 및 어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외국인 수요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절반 가량이 5인 미만 사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기존의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별도의 조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에서 누락된 농축산업·어업 및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표본 틀을 구성하되 동 조사의 목적이 인력부족 및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에 초점이 있는 만큼 비자 유형이나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인력부족 및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조사표는 간략히 구성하되, 고용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사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실태 및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만큼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관련 통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체류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통계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외국인의 특성상 조사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통계의 경우에도 정부부처간 관련 통계 수집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통계 DB 구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작성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 작성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통계 개선방안이 시행착오를 거쳐 제대로 정착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계 개선을 위한 중앙 차원의 기획 및 집행기능의 구축이 필요하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각 부처가 포함된 가칭 외국인 통계개선 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필요한 통계의 개발, 행정통계의 개선작업,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의 타당성의 검토 및 예비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통계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석호·이민아·강정환(2010),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0년 수시 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통계청.
- 박세훈·정소양(2009),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과 시사점」, 『국토정책Brief』, 제254호.
-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2009),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
- 박영범·설동훈·이규용(2010), 『외국인력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고용노동부.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설동훈(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 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길상·이규용(2008),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중앙회.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09),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정진호(2008), 『각국의 외국인력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적용현황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중앙회.
- 이규용 외(2005),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8), 『해외우수기술인력 유치지원제도 발전방안』, 산업기술진흥원.
- _____ (2008), 「외국인력 고용현황과 노동시장 효과」, 한국은행 발표 논문.
- _____ (2009), 『동포취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영향분석』, 노동부.
- 이혜경·설동훈·김명아(2009),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 다문화가족 사

회통합도 측정』, 법무부.

행정안전부(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_____ (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Bankier, M. D. (1986), “Estimators Based on Several Stratified Samples With Applications to Multiple Frame Survey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1, 1074-1079.

Bodvarsson, Örn B., and Hendrik Van den Berg. 2009.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Berlin: Springer-Verlag.

Borjas, George(1994),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2(4): 1667-1717.

Castles, Stephen, and Godula Kosack(1985),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cture in Western Europe*, 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iswick, Barry R.(2005),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Selected Papers of Barry R. Chiswick*. Cheltenham, England: Edward Elgar Publishing.

DeVoretz, Don J.(2004), “Immigration Policy: Methods of Economic Assessment,” *IZA Discussion Paper* No. 1217. Bonn, Germany: Das 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 (IZA).

Ehrenberg, Ronald G., and Robert S. Smith(2006),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ublic Policy*, Ninth Edition, Boston, MA: Pearson/Addison-Wesley.

Gott, Ceri, and Karl Johnston(2002), “The Migrant Population in the UK: Fiscal Effects,” *RDS Occasional Paper* No. 77, London: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RDS).

Hovy, Bela(2009a.),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Global Policies and Implications for Data Collection,” Paper presented at the Regional Workshop on International Migration Statistics, 30 June - 3 July 2009 in Cairo, Egypt.

_____ (2009b), “United Nations Recommendation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igration Statistics,” Paper presented at the Regional Workshop on International Migration Statistics, 30 June - 3 July 2009 in Cairo, Egypt.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05), *World Migration 2005: Costs and Benefi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Geneva, Switzerland: IOM.
- Kalton, G., and Anderson, D. W. (1986), "Sampling Rare Popula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 A, 149, 65-82.
- Kronauer, Martin(1998),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New Concepts for the Analysis of Poverty," In *Empirical Poverty Research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Hans-Jürgen Andreß. pp.51-75. Aldershot, England: Ashgate Publishing Limited.
- Lohr, S. L., and Rao, J. N. K. (2000), "Inference From Dual Frame Survey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5 (449): 271-280.
- Petersen, William(1958), "A General Typology of Migr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3 (3): 256-265.
- Potts, Lydia(1990), *The World Labour Market: A History of Migration*, London: Zed Books.
- Seol, Dong-Hoon(2004),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in Women in Korea: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untermeasure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0 (2): 7-47.
- Silver, Hilary(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6): 531-577.
- Skinner, C. J. (1991), "On the Efficiency of Raking Ratio Estimation for Multiple Frame Survey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6: 779-784.
- Skinner, C. J., and Rao, J. N. K. (1996), "Estimation in Dual Frame Surveys With Complex Design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1: 349-356.
- U.K. House of Lords(2007a), *The Economic Impact of Immigration*, Volume I. Report, London: House of Lords.
- U.K. House of Lords(2007b), *The Economic Impact of Immigration*, Volume II. Evidence. London: House of Lords.
- United Nations(1998),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New York: United Nations.
- _____ (2002),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02*, New York: United Nations.

_____ (2006), *International Migration 2006*, New York: United Nations.

Wirth, Louis(1945), “The Problem of Minority Groups,” *In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edited by Ralph Linton, pp. 347–37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부 록】

**행정원 노동위원회 직업훈련국
외국인 노동자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사업장 단위)**

자료시점: 2010년 6월

심사기관: 행정원 기획예산처(行政院主計處)

심사문서번호: 처보3자 제0990002919호

유효기간: 2012년 12월말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02)8590-2284~6

회사명칭:()

설문작성자:()

연락처:()

이메일:()

아래의 설문 문항에 대한 해당사항에 (V)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업장은 과거 일 년 중(2009년 7월-2010년 6월) 외국인 노무자를 고용한 적이 있습니까?

(1)있음 (2)없음 (없음에 표시한 분은 바로 10번 문제로 넘어가시오.)

【외국노동자 운용 및 관리 상황】

2. 귀 사업장이 고용한 외국인 노무자가 과거 1년(2009년 7월-2010년 6월)간 행방불명이 된 적이 있습니까?

(1)없음

(2)있음, 당신은 행방불명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고용기간의 만기가 다가와서 ⑦다른 외국 노동자의 종용이나 소개를 받아서
- ②소통불량 ⑧임금 분쟁
- ③향수병 ⑨소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 ④인력회사의 개입 ⑩외국배우자의 개입
- ⑤생활이나 작업환경에 적응 불가 ⑪기타, _____
- ⑥높은 대우를 바라서

3. 귀 사업장은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 노무자를 고용하였습니까?

- (1)직접고용
- (2)인력중개회사를 통해서
- (3)다른 곳으로 진출되는 외국인 간병노무자를 승계
- (4)기타, 설명 하세요

4. 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무자를 고용 및 관리할 때 어떤 어려움에 부딪칩니까?

- (1)없음
- (2)있음, 어려움의 원인은?(복수 선택 가능)
 - ①언어 장벽, 소통이 어려워서 ⑤음주를 좋아하고 싸우거나 소란을 피워서
 - ②본국 노무자와의 관계가 안 좋음 ⑥도벽이 있어서
 - ③생활환경을 적응하지 못해서 ⑦근무 환경에 적응하지 못 해서
 - ④위생습관이 좋지 않아서 ⑧기타 _____

5. 귀 사업장의 2010년 6월 노무자 부족 상황은 2009년 6월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1)현재 부족하지 않음
- (2)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____명 정도의 노무자가 부족함
- (3)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심각해서 아직____명 정도의 노무자가 부족함

6. 귀 사업장은 인력운용에서 외국인 노무자를 들여오는 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 인력부족에 대처하십니까?

(1)어떠한 대응조치도 없음

(2)있음, 대응조치는? (복수 선택 가능)

①초과 근무 시간을 증가

⑦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생산력 제고

②본국 노무자 고용을 증가

⑧산업체를 외국으로 이동

③작업 감축

⑨폐업

④자동화 생산 채택

⑩아웃소싱방식 채택

⑤임금 인상

⑪외부 파견인력 채용

⑥사원 복지 강화

기타,

7. 귀 사업장은 직업훈련국이 매년 인력중개회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본국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을 아십니까?

(1)네

(2)아니요

8. 귀 사업장은 직업훈련국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인력중개회사를 선택하신 적이 있습니까?

(1)네

(2)아니요

(3)인력중개회사에 위임한 적이 없음

9. "직접고용 연합서비스센터"가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 사업장으로 하여금 이 센터를 통하여 직접 외국인 노무자를 구할 수 있게 해 준다면?(복수 선택 가능, 최다 선택 3항) 【다이렉트 고용 센터 전화: (02)6608-5001】

(1)고용주와 외국인 간병노무자는 국내외에서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2)외국인 노무자가 빠르면 1일 내에 귀국하고 또 다시 대만으로 올 수 있다.

(3)고용주와 협조하여 노동위원회 직업훈련국에 외국노무자 신청 처리안을 대신 보낸다.

(4)고용주와 협조하여 각국에 증명서를 대신 보낸다.

(5)고용주와 협조하여 외국인 노무 기간 만기 전에 외국인 입국 비자 문건을 본국의 각 재외영사관에 대신 보낸다.

(6)외국인 노무자가 재입국하기 전에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고용주에게 처리할 사항을 통지해 준다.

(7)의견 없음

10. 당신은 직접(인력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국인 노무자를 데려온 적이 있습니까?

(1)네

(2)아니요, 직접고용방식으로 외국인 노무자를 데려오지 않은 원인은?

- ①관련 정보를 알지 못 해서
- ②최초 고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 ③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 ④직접 수속할 시간이 없어서
- ⑤수속절차를 알지 못 해서
- ⑥기타, _____

【고용된 외국인 노무자의 기본자료】

11. 당신이 현재 고용한 외국인 노무자의 기본자료

| | | |
|-------------|----------------------------|--------|
| 외국인 노무자 직종별 | (1)기층 기술공 및 노동자 (조립공정 종사자) | _____인 |
| | (2)기계설비 가동 종사자 | _____인 |
| | (3)엔지니어 | _____인 |
| | (4)사무지원 종사자 | _____인 |
| | (5)기타 | _____인 |

기타 사항: 각 직종의 총 인원은 외국인 노무자 총 인원과 같음.

설명:

(1)기층 기술공 및 노동자(조립공정 종사자): 간단한 노무에 종사하는 인원. 본 직종의 근무는 청소, 자재운반, 폐기물 수집, 수공분류나 상품포장, 비동력 차량 운전, 채광노무자, 건설노무자, 제조노무자 및 운송노무자 같은 체력과 인내력을 필요로 함.

(2)기계설비 가동 종사자: 현장에서 공장설비 및 생산기계 가동 종사자, 자동차 운전과 이동설비 가동 종사자.

(3)엔지니어: 전문지식과 기능을 응용한 건설 종사자. 금속 주조, 선반, 공작기계 설정 및 가동 종사자. 기계설비의 제조 설치 정비 수리. 인쇄, 식품, 방직, 목재품, 금속 및 기타 제품의 제조와 처리, 그리고 수공 제작하는 각종 공예품 공정의 종사자.

【급료, 업무시간 및 상관 복지】

12. 2010년 6월 외국인 노무자의 평균 임금과 근무시간

| | | | |
|--------------|-----------|---------------------------|-----------|
| 임금 합계(1+2+3) | _____ 원/월 | 근무시간(4+5) | _____ 시/월 |
| 1정상성 임금 | _____ 원/월 | 4정상근무 (규정시간, 공휴일 불 포함) | _____ 시/월 |
| 2초과 근무 수당 | _____ 원/월 | 5 초과 근무 시간 | _____ 시/월 |
| 3기타(비정상성 임금) | _____ 원/월 | | |

설명:

(1)정상성 임금: 매월 고용인이 지급하는 근무 보수, 기본급과 집세 보조금, 교통비, 식사비, 물세와 전기세, 근무 장려금 같이 매월 지급하는 고정 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 만약 현물로 지급하면 실질 가격으로 가치를 환산. 이상 모두 소득세, 보험료 및 노동조합 회비 미공제.

(2)근무 초과 수당: 근무시간이 연장되어 지급하는 보수.

(3)기타(비정상성 임금): 매월 고용인이 지급하는 근무 보수에 해당하지 않음. 연말 상여금, 사원 보너스(현금 및 주식 배당), 단오절, 중추절과 같은 절기 상여금, 출장비, 식사보조비 등.

(4)정상근무시간: 사업장마다 규정한 근무 시간 내의 실제 근무 시간 총수, 휴가, 공휴일, 국정휴일 및 사원의 청원 휴가로 인한 미근무 부분 불포함.

(5)초과 근무 시간: 정상 근무 시간 이외의 유료 근무 시간의 수.

13. 귀 사업장은 외국인 노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1)아니요, 숙식 제공하지 않음

(2)네, 외국인 노무자의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합니까?

②의료보험

④기타보험: _____

18. 귀 사업장은 외국인 노무자에 대한 생활지도 조치가 있습니까?

(1)생활지도 조치가 없음.

(2)있음,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

①문화 건강 센터 설립

⑤외국인 노무자 자문서비스 센터를 통합

②휴일 여가 활동 안배

⑥근무 및 여가 시간 모두 전문 지도사 파견

③휴일 종교 활동 안배

⑦생활지도팀 조직

④매월 외국인 노무자 좌담회 개최

⑧기타, _____

19. 귀 사업장과 외국인 노무자와 소통통로는?

(1)없음

(2)있음, 어떤 소통통로가 있습니까?

①의견함 설립

②직접 상사에게 반응

③외국인 노무관리자를 통합

④외국인 노무자 자문서비스 센터를 통합

⑤중개회사를 통합

⑥기타 _____

20. 귀 사업장은 외국인 노무자에게 취업 전 교육을 제공하였습니까?

(1)없음

(2)있음, 어떤 교육을 제공했습니까?

①선도 비디오 관람

②선도 수첩 제공

③노무 안전 위생 교육 제공

④기타, _____

【만족도 조사】

21. 귀 사업장의 외국인 노무자의 근무와 생활 태도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1)노무관계: ①매우 원만 ②원만 ③보통 ④원만하지 않음 ⑤매우 원만하지 않음

(2)근로정도:

①매우 열심히 일함②열심히 일함③보통④열심히 일하지 않음⑤매우 불량

(3)근무효율: ①매우 높음 ②높음 ③보통 ④높지 않음 ⑤매우 높지 않음

(4)위생습관: ①매우 좋음 ②좋음 ③보통 ④좋지 않음 ⑤매우 좋지 않음

(5)본국 노무자와 협력 상황:

①매우 좋음 ②좋 ③보통 ④좋지 않음 ⑤매우 좋지 않음

(6)전체태도: ①매우 좋음 ②좋음 ③보통 ④좋지 않음 ⑤매우 좋지 않음

기타 사항: 본 표 아래의 샘플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기입 후 자료의 유실을 피하기 위해
자료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stat@evta.gov.tw)로 보내거나 혹은
(02)8590-2436으로 직접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샘플번호: 8-_____

(받으신 설문조사표에 따라 오른쪽 상단이나 엽서의 정면에 번호를 쓰십시오.)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상담은(02)8590-2284~6, 팩스는 (02)8590-2436로 연락주십시오

행정원 노동위원회 직업훈련국
외국인 노동자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외국간병인)

자료시점: 2010년 6월

심사기관: 행정원 기획예산처(行政院主計處)

심사문서번호: 처보3자 제0990002919호

유효기간: 2012년 12월말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02)8590-2284~6

회사명칭:()

설문작성자:()

연락처:()

이메일:()

아래의 설문 문항에 대한 해당사항에 (V)하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지난 1년(2009년 7월-2010년 6월)동안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까?

(1)있음

(2)없음

【외국인노동자 운용 및 관리 상황】

2. 당신이 고용한 외국인 간병인이 지난 1년(2009년 7월-2010년 6월)동안 행방불명이 된 적이 있습니까?

(1)없음

(2)있음, 당신은 행방불명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중복 선택 가능)

①고용기간의 만기가 다가와서

⑦다른 외국 노동자의 종용이나 소개를 받아서

②소통불량

⑧임금 분쟁

③향수병

⑨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④인력회사의 개입

⑩외국배우자의 개입

⑤생활이나 작업환경에 적응 불가 ⑪기타 _____

⑥높은 대우를 바라서

3.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셨습니까?

- (1)직접고용(인력중개회사를 통하지 않고)
- (2)인력중개회사를 통해서
- (3)다른 사람이 진출하는 외국인 간병인을 승계함
- (4)기타 _____

4. 당신은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1)없음
- (2)있음, 어려움의 원인은?(복수 선택 가능)
 - ①언어 장벽, 소통이 어려워서 ⑤다른 사람과 전화나 잡담하는 것을 좋아해서
 - ②간병 기술이 좋지 않아서 ⑥도벽이 있어서
 - ③생활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⑦작업환경에 적응 못 해서
 - ④위생습관이 좋지 않아서 ⑧기타 _____

5. 당신이 고용한 외국인 간병인이 작업에 적합하지 않을 때, 당신의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 하에서 고용주를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1)동의함 (2)동의하지 않음

6. 당신이 고용한 외국인 간병인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됩니까?

- (1)간병인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음
- (2)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3)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줌
- (4)가사의 부담을 줄여줌
- (5)가족이 외부에 나가 일을 할 수 있게 함
- (6)기타_____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은 분은 20번 문제로 넘어가서 답해 주십시오

7. 피간병인과 당신과의 관계는?

- (1)배우자
- (2)부모(시부모)
- (3)자녀
- (4)친척
- (5)친구
- (6)기타 _____

8. 피간병인은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기 전, 누가 보살폈습니까?

- (1)가족
- (2)친척
- (3)친구
- (4)본국 가정부
- (5)외국 가정부
- (6)본국 특별 간병
- (7)국내 간병 기구
- (8)기타 _____

9. 만약 외국인 간병인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1)가족이 보살핌
- (2)친구에게 보살핌을 부탁함
- (3)본국의 간병인을 찾음
- (4)피간병인을 양로원이나 양호기관으로 보냄
- (5)기타 _____

10. 당신의 경제상황은 어떻습니까?

(1)저소득 가정

(2)고소득 가정

(3)일반 가정

***현재 고용한 외국인 간병인의 상황을 적으세요

【고용된 외국인 간병노무자의 기본자료】

11. 당신이 현재 고용한 외국인 간병인의 기본자료

| | | |
|------------------------|------------|------------|
| (1)성별 | ①남 | ②여 |
| (2)연령 | ①29세 이하 | ③40~49세 이하 |
| | ②30~39세 이하 | ④50세 이상 |
| (3)교육 정도 | ①중졸 및 그 이하 | ③초대졸 |
| | ②고졸(직업학교) | ④대학원 이상 |
| (4)국적 | ①인도네시아 | ④태국 |
| | ②말레이시아 | ⑤베트남 |
| | ③필리핀 | ⑥몽골 |
| (5)간호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 ①있음 | ②없음 |

【급료, 업무시간 및 복지】

12. 2010년 6월 외국인 간병인의 임금

| | |
|------------|-----------|
| (1)기본 임금 | _____ 원/월 |
| (2)초과 근무수당 | _____ 원/월 |
| (3)기타 | _____ 원/월 |
| 합계 | _____ 원/월 |

주의: (1)기본 임금: 기본급과 매월 지급하는 고정 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해서 매월 지급하는 근무 보수. 소득세, 보험료 및 기타 비용 미공제.

(2)기타: 상여금, 점심 식대, 고용보험, 의료보험, 취업안정비 불포함.

13. 당신이 외국인 간병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1)온라인으로 외국인 간병인의 은행(우체국)계좌로 송금하며, 통장은 외국인 간병노무자 본인이 보관하고 있음.

①네 ②아니요

(2)현금으로 직접 외국인 간병노무자에게 지급

(3)중개업자에게 지급 처리

(4)기타 _____

14. 당신은 임금을 지급할 때, 중국어 및 간병인의 모국어로 된 임금명세서로 인쇄해서 외국인 간병인에게 줄 것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1)네

(2)아니요

15. 외국인 간병노무자의 업무 시간은?

(1)규정이 있음, 매일 업무시간은 아침 __시부터 저녁 __시까지

(2)규정이 없음, 매일 업무시간은 아침 __시부터 저녁 __시까지

16.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은 외국인 간병인과 교대로 피간병인을 돌보십니까?

(1)네, 매일 교대로 돌보는 시간은 약 __시간입니다.

(2)아니요.

17. 외국인 간병인은 공휴일의 경우 쉽니까?

(1)쉽니다.

(2)부분적으로 쉽니다.

(3)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을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십니까?

①네

②아니요

18. 당신은 외국인 간병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1)어떠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_____

(2)가입했을 경우, 어떤 보험에 가입했습니까?(복수 선택 가능)

①노동보험

③상해보험

②의료보험

④기타보험 _____

【만족도 조사】

19. 당신이 고용한 외국인 간병인의 행동

(1)간병기술:

①매우 숙련 ②숙련 ③보통 ④숙련되지 않음 ⑤매우 숙련되지 않음

(2)근무태도:

①매우 열심히 ②열심히 일함 ③보통 ④열심히 일하지 않음 ⑤매우 불량

(3)근무정서: ①매우 안정 ②안정 ③보통 ④불안정 ⑤매우 불안정

(4)근무효율: ①매우 높음 ②높음 ③보통 ④높지 않음 ⑤매우 높지 않음

(5)고용관계:

①매우 원만 ②원만 ③보통 ④원만하지 않음 ⑤매우 원만하지 않음

(6)위생습관: ①매우 좋음 ②좋음 ③보통 ④좋지 않음 ⑤매우 좋지 않음

(7)전체태도: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견해】

20. 만약 국내 간병서비스 시스템이 잘 정비 되었으며 또한 간병서비스 자원이 충분하다면 당신은 본국 출신의 간병인을 우선 고용해야 하고, 본국의 간병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만 외국인 간병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네 (2)아니요 (3)의견 없음

21. 기본임금으로 외국인 간병인의 임금을 정한다면 당신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1)합리적

(2)불합리, 당신은 매월 임금이 얼마 정도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식비를 포함해서 _____ 원/월.

22. 당신은 외국인 간병인이 매일 휴식시간을 갖는데 동의하십니까?

(1)동의하지 않음

(2)동의함, 매일 휴식시간이 최소 ___시간이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3. 당신은 외국인 간병인의 휴가나 휴식시간에 정부가 마땅히 대체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네

(2)아니요

(3)의견 없음

24. 만약 외국인 간병인이 노동기본법 보호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당신은 여전히 간병인을 고용하시겠습니까?

(1)네

(2)아니요

(3)의견 없음

25. 당신은 외국인 간병인이 입국하기 전에 언어 교육을 받고 합격한 후, 입국해서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네

(2)아니요

(3)의견 없음

26. 만약 정부가 외국인 간병인 입국 후, 재직훈련을 기획한다면 당신은 외국인 간병인에게 재직훈련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1)네

(2)아니요

(3)의견 없음

27. "직접고용 연합서비스센터"가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이 센터를 통하여 직접 외국인 간병인을 구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복수 선택 가능, 최다 선택 3항) 【다이렉트 고용 센터 전화: (02)6608-5001】

(1)고용주와 외국인 간병인은 국내외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2)외국인 간병인이 빠르면 1일내로 귀국하고 다시 대만으로 올 수 있다.

(3)고용주와 협조하여 노동위원회 직업훈련국에 외국인 노동자 신청 안을 대신 보낸다.

(4)고용주와 협조하여 각국에 증명서를 대신 보낸다.

(5)고용주와 협조하여 외국인의 근무 기간 만기 전에 외국인 입국 비자 문건을 본국의 각 재외영사관에 대신 보낸다.

(6)외국인 노동자가 재입국하기 전에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고용주에게 처리할 사항을 통지해 준다.

(7)의견 없음

28. 당신은 직접(인력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방식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데려온 적이 있습니까?

(1)네

(2)아니요. 그렇다면, 직접고용방식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데려오지 않은 원인은?

- ①관련 정보를 알지 못 해서
- ②최초 고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 ③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 ④직접 수속할 시간이 없어서
- ⑤수속절차를 알지 못 해서
- ⑥기타 _____

29. 당신은 직업훈련국이 매년 인력중개회사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본 국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네

(2)아니요

30. 당신은 직업훈련국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인력중개회사를 선택하신 적이 있습니까?

(1)네

(2)아니요

(3)인력중개회사에 위임한 적이 없음

기타 사항: 본 표 아래에 번호를 기입하시오. 기입 후 자료의 유실을 피하기 위해 자료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로 stat@evta.gov.tw로 보내거나 혹은 (02)8590-2436으로 직접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샘플번호:2-

(받으신 조사표에 따라 오른쪽 상단이나 엽서 정면에 번호를 기입하시오.)

의문사항이 있을 시, 전화상담은(02)8590-2284~6, 팩스는 (02)8590-2436입니다.